연구총서 18-AA-05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for Juvenile Offenders

이승현·권해수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머리말

본 연구는 2015년 대검찰청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다양화〉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관련부처가 모여 조건부 기소유예 다양화를 논의하긴 하나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연구과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소년보호처분 대상소년과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이 특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조사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의 경우 가정의 경제력과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보호력이 조금만 강화되면 개선될 여지를 갖고 있었으며, 비행력이 보호처분 대상자에 비해 경미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경각심 부여와 선도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여지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연구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은 소년사법의 초기단계에 있어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다양화되기 이전에 '다이버전'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실화가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전문가 의견조사와 외국제도를 바탕으로 다양화의 유형이 어떠해야 할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오랜기간 함께 고생해주신 조선대학교 권해수 교수님과 이정주 박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 수행과정에서 설문조사 협조뿐만 아니라 관련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주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대검찰청 형사2과, 전국법사랑위원 협의회 관계자,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위원 이 승 현

목 차

국문요약 ····· 1

| 제1장 | 서 론 • 이승현 ·····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7
제2절 연구내용 ····· 10

| 제2장 |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의의와 운영실태 분석 • 이승현 ····· 13

제1절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 15
1.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 15
가. 단순 기소유예와의 차이 ····· 16
나. 성인범 조건부 기소유예와의 차이 ····· 16
2.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 ····· 17
3.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성격 ····· 18
제2절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변화흐름 ····· 19
제3절 국내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형태 ····· 21
1.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절차 ····· 21
가. 검사의 기소재량과 기소유예 ····· 21
나. 소년사건에서 검사의 개입범위 ····· 22
다. 결정전 조사제도 ····· 23
라.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의 효과 ····· 24
2.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유형 ····· 24
가.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24
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32
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35

라. 기타 조건부 기소유예 ····· 37
제4절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 현황 ····· 40
1.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실시 현황 ····· 40
2.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별 현황 ····· 43
가.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43
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46
다.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 48
제5절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 51
1. 소년범 재범률의 지속적 증가 ····· 51
2. 다이버전보다는 제재 성격으로 변화 ····· 52
3.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별 대상자 선별기준의 불명확 ····· 53
가. 유형별 대상자 선정기준 모호 ····· 53
나. 결정전 조사서의 활용도 저조 ····· 55
4.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 56
가. 소년전담검사의 전문성 부족 ····· 56
나.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부족 ····· 56
다. 보호관찰관의 업무성 부족 ····· 57
라. 비행예방센터 교육인력 부족 ····· 57
5.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부족 ····· 58
6. 대상소년 및 보호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59

| 제3장 | 외국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형태

• 이승현 ····· 61

제1절 서설 ····· 63
제2절 독일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 64
1. 독일사회의 소년범 개입에 대한 인식 ····· 64
2. 독일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 개입범위 ····· 66
3.「소년법원법」제45조 제1항의 절차의 중지 ····· 69
가. 요건 ····· 69

나. 경미한 책임(Geringe Schuld) ····· 70
다. 공공의 이익의 부재(Mangelndes öffentliches Interesse) ····· 71
4. 「소년법원법」 제45조 제2항의 절차의 중지 ····· 71
가. 적용범위 ····· 71
나. 소년전담검사의 결정권한(Entscheidungskompetenz) ····· 72
다. 소년전담검사의 명령권한(Anordnungskompetenz) ····· 73
라. 교육처분(Erzieherische Maßnahme) ····· 73
5. 베를린주 다이버전 행정규칙에 따른 「소년법원법」 제45조의 적용 ····· 77
가. 개관 ····· 77
나. 적용요건 ····· 78
다. 제45조 제1항의 적용요건 ····· 78
라. 제45조 제2항의 적용요건 ····· 79
6.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의 실시현황 ····· 81
제3절 미국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 83
1. 미국사회의 소년범의 개입에 대한 인식 ····· 83
2. 미국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의 개입범위 ····· 84
3.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 ····· 86
4. 미국 조건부 기소유예의 운영현황 ····· 91
제4절 영국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 93
1. 영국사회의 소년범의 개입에 대한 인식 ····· 93
2. 영국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의 개입범위 ····· 94
3.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 유형 ····· 95
4. 영국 조건부 기소유예의 운영현황 ····· 97
제5절 일본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형태 ····· 99
1. 일본사회의 소년범의 개입에 대한 인식 ····· 99
2. 일본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 개입범위 ····· 100
3. 일본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개입 현황 ····· 101
제6절 외국의 조건부기소유예 형태의 시사점 ····· 104

| 제4장 | 대상소년 및 종사자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분석 • 권해수 ····· 107

제1절 대상소년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 109
1. 조사 목적 ····· 109
2. 조사 방법 ····· 109
가. 조사대상 및 방법 ····· 109
나. 조사 내용 ····· 110
3. 주요 결과 ····· 112
가. 대상소년 사회인구학적 배경 ····· 112
나. 대상소년의 비행 경력 ····· 113
다. 기소유예 처분 명령 이전 활동 ····· 116
라. 이번 기소유예 프로그램 참여 경험 ····· 117
마. 이번 기소유예 처분 및 참여 과정 경험 ····· 122
바. 이번 기소유예 참여 성과 ····· 123
제2절 조건부 기소유예 종사자 인식조사 ····· 127
1. 조사 목적 ····· 127
2. 조사 방법 ····· 127
3. 주요 결과 ····· 129
가. 기소유예 처분 실무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 129
나. 기소유예 관련 업무 현황 ····· 130
다. 기소유예 운영의 실제 ····· 132
라.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 ····· 137
마. 기소유예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인식 ····· 138
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 143
사.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 145
제3절 인식조사 결과 요약 ····· 149
1. 대상소년의 인식조사 결과 요약 ····· 149
2. 종사자의 인식조사 결과 요약 ····· 152

| 제5장 |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 이승현 ····· 157

제1절 조사개요 ····· 159
1. 조사대상 ····· 159
2. 조사방법 ····· 160
3. 조사내용 ····· 160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 162
1.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의견 ····· 162
가.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성격 ····· 162
나. 다른 제도와의 차이 ····· 165
2.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에 관한 의견 ····· 169
가.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의 적절성 평가 ····· 169
나. 각 유형별 기소유예 대상의 적절성 평가 ····· 170
다.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의 기간 및 방법의 적절성 ····· 176
라. 새롭게 추가할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 ····· 178
3.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운영에 관한 의견 ····· 181
가.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의 주요 판단기준 ····· 181
나. 결정전 조사서의 활용 ····· 183
다. 보호자교육의 의무화 필요성 ····· 187
라. 조건 위반에 대한 재기수사 예외의 필요성 ····· 188
마.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확대·축소에 관한 의견 ····· 191
4.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 ····· 192
가.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 전반의 문제점 ····· 192
나.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별 문제점 ····· 194
5.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 198
가.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 198
나.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선별방안 ····· 199
다.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개선방안 ····· 200
라.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절차 개선방안 ····· 200
마. 결정전 조사제도 활용도 제고방안 ····· 201
바. 소년전담검사의 전문성 강화방안 ····· 202

사. 조건부 기소유예의 다양화방안 ····· 203
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 204
자.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사후관리방안 ····· 205

| 제6장 |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 이승현 ····· 207

제1절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선별방안 ····· 209
1.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기준 변경 ····· 209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기준 마련 ····· 211
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대상자 기준 변경 ····· 212
4. 이전 보호처분 전력자에 대한 기소유예 자제 ····· 213
제2절 조건부기소유예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방안 ····· 214
1. 검사의 전문성 강화방안 ····· 214
가. 검사의 업무전문성 확보 ····· 214
나. 결정전 조사서 활용도 제고 ····· 216
2.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강화방안 ····· 217
3.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강화방안 ····· 218
제3절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다양화방안 ····· 219
1. 가족캠프 등 보호자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활성화 ····· 219
2. 교육과 선도의 병합 기소유예 ····· 220
3. 회복적 사법을 접목한 화해조건부 기소유예 ····· 220
4.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221
5. 담임교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222
제4절 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리절차 개선방안 ····· 222
1. 절차상 설명의무 부여 ····· 222
2.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방법 마련 ····· 223
3. 조건부 기소유예 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 ····· 223
제5절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안 ····· 224

1. 조건부 기소유예 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 224
2.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강화 ····· 225

참고문헌 ····· 227

Abstract ····· 233

부록 ····· 237

[부록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 설문지 ····· 237
[부록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 설문지 ····· 248
[부록3]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종사자 설문지 ····· 259
[부록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종사자 설문지 ····· 268
[부록5]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종사자 설문지 ····· 277
[부록6] 제1차 관련전문가 의견조사지 ····· 286
[부록7] 제2차 관련전문가 의견조사지 ····· 298

표 차례

〈표 2-3-1〉 결정전 조사 현황 ····· 24
〈표 2-3-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현황 ····· 32
〈표 2-3-3〉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프로그램(안산센터 기준) ····· 34
〈표 2-3-5〉 각 지역청별 기타 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 37
〈표 2-4-1〉 연도별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 40
〈표 2-4-2〉 검찰의 소년범죄 처리현황 ····· 41
〈표 2-4-3〉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 43
〈표 2-4-4〉 각청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시 현황 ····· 44
〈표 2-4-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 ····· 45
〈표 2-4-6〉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 현황 ····· 45
〈표 2-4-7〉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직업별 현황 ····· 46
〈표 2-4-8〉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실시 현황 ····· 47
〈표 2-4-9〉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조사 실시 현황 ····· 48
〈표 2-4-10〉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접수 추이 ····· 48
〈표 2-4-11〉 연도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 49
〈표 2-4-12〉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2016년) ····· 50
〈표 2-5-1〉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현황 ····· 52
〈표 3-3-1〉 2016년 미국 소년범 체포건수(추정치) ····· 91
〈표 4-1-1〉 대상소년 설문문항 구성 체계 ····· 111
〈표 4-1-2〉 참여자 인적사항 ····· 112
〈표 4-1-3〉 기소유예 대상자의 비행 경력 ····· 114
〈표 4-1-4〉 기소유예 처분 유형(중복응답) ····· 115
〈표 4-1-5〉 과거 보호처분 유형(중복응답) ····· 115
〈표 4-1-6〉 비행유형 집단 비교 ····· 116
〈표 4-1-7〉 기소유예 처분 명령 이전 활동 ····· 117
〈표 4-1-8〉 이번 기소유예 처분 시 비행명(중복응답) ····· 117
〈표 4-1-9〉 선도조건부 담당 선생님과 연락 빈도 ····· 118
〈표 4-1-10〉 선도조건부 담당 선생님과 만남 빈도 ····· 119
〈표 4-1-11〉 선도조건부 담당 선생님과 만남 장소(중복응답) ····· 119
〈표 4-1-12〉 선도조건부 담당선생님과 1회 만남 시간 ····· 120

〈표 4-1-13〉 교육조건부 교육 기간 및 이수프로그램 ····· 121
〈표 4-1-14〉 기소유예 담당선생님으로부터 도움 받고 있는 것(중복응답) ····· 121
〈표 4-1-15〉 이번 기소유예 처분의 공정성 ····· 122
〈표 4-1-16〉 담당선생님(직원) 인격적 대우 ····· 123
〈표 4-1-17〉 이번 기소유예에 대한 본인의 참여도 ····· 123
〈표 4-1-18〉 담당선생님과의 만남에 대한 만족도 ····· 124
〈표 4-1-19〉 기소유예 기간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한 본인의 노력(중복응답) ····· 124
〈표 4-1-20〉 교육조건부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 125
〈표 4-1-21〉 제공되는 서비스의 도움정도 ····· 125
〈표 4-1-22〉 기소유예 프로그램의 재범 효과에 대한 인식 ····· 126
〈표 4-1-23〉 향후 재범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 ····· 127
〈표 4-2-1〉 종사자의 설문문항 구성 체계 ····· 129
〈표 4-2-2〉 기소유예 실무자 인구학적 정보 ····· 130
〈표 4-2-3〉 직원의 업무현황 ····· 131
〈표 4-2-4〉 법사랑위원, 보호관찰소 실무자의 대상자 연락 및 만남 횟수 ····· 132
〈표 4-2-5〉 교육조건부 실무자의 교육시간 및 대상자 개별 면담 횟수 ····· 133
〈표 4-2-6〉 대상자에게 도움제공 항목(중복응답) ····· 135
〈표 4-2-7〉 대상자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항목(중복응답) ····· 136
〈표 4-2-8〉 실무자가 인식하는 대상자의 참여도 ····· 137
〈표 4-2-9〉 실무자의 제도 이해 수준 ····· 138
〈표 4-2-10〉 실무자 만족도 ····· 139
〈표 4-2-11〉 대상자 제공서비스의 도움정도 ····· 140
〈표 4-2-12〉 기소유예 기간 중 재범 발생 비율 ····· 141
〈표 4-2-13〉 기소유예제도의 재범방지 효과 ····· 142
〈표 4-2-14〉 보호처분 대상자와의 재범위험성 비교 ····· 143
〈표 4-2-15〉 대상자 관리 시 겪는 어려움(중복응답) ····· 144
〈표 4-2-16〉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문제점(중복응답) ····· 144
〈표 4-2-17〉 기소유예 유형별 축소 및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 147
〈표 4-2-18〉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개선방안(중복응답) ····· 148
〈표 5-1-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 특성 ····· 160
〈표 5-2-1〉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유형 ····· 173
〈표 5-2-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유형 ····· 174
〈표 5-2-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유형 ····· 176
〈표 5-2-4〉 조건부 기소유예의 새로운 유형에 관한 의견 ····· 178

〈표 5-2-5〉 기소유예 결정의 중요판단요소 ····· 182
〈표 5-2-6〉 결정전 조사사의 활용비율(추정치) ····· 185
〈표 5-2-7〉 결정전 조사의 주요기준 ····· 186
〈표 5-2-8〉 재기수사의 예외사유 ····· 189
〈표 5-2-9〉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 192
〈표 5-2-10〉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 195
〈표 5-2-1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 196
〈표 5-2-12〉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 197
〈표 5-2-13〉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 ····· 198
〈표 5-2-14〉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선별방안 ····· 199
〈표 5-2-15〉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개선방안 ····· 200
〈표 5-2-16〉 조건부기소유예 처리절차 개선방안 ····· 201
〈표 5-2-17〉 결정전 조사제도 활용도 제고방안 ····· 202
〈표 5-2-18〉 소년전담검사 전문성 강화방안 ····· 203
〈표 5-2-19〉 조건부 기소유예 다양화방안 ····· 204
〈표 5-2-20〉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방안 ····· 204
〈표 5-2-21〉 조건부기소유예 대상자 사후관리방안 ····· 205

그림 차례

[그림 2-3-1] 청소년선도경과보고서 양식 ····· 28
[그림 2-3-2] 전국 법사랑위원 연합회 조직현황 ····· 29
[그림 2-3-3] 법사랑위원 봉사활동 마일리지 선정기준표 ····· 31
[그림 3-2-1] 독일 일반형법과 소년형법상 제재현황 ····· 81
[그림 3-2-2] 독일 소년형법상 공식·비공식 제재형태(상대치) ····· 82
[그림 3-2-3] 독일 소년형법상 공식·비공식 제재형태(절대치) ····· 83
[그림 3-4-1] 최근 10년간 소년 경고 추이 ····· 98
[그림 3-4-2] 소년사법단계에 들어온 초기진입자 추이 ····· 99
[그림 3-5-1] 경찰의 비행소년 검거인원 추이 ····· 102
[그림 3-5-2] 검찰의 범죄소년 수리인원 ····· 103
[그림 3-5-3] 가정재판소에서 검찰로 역송된 소년수 ····· 103
[그림 4-2-1] 법사랑위원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 134
[그림 4-2-2] 보호관찰소 실무자 대상자 만남 시 주요활동 ····· 134
[그림 4-2-3]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의의에 대한 실무자 인식 ····· 138
[그림 4-2-4] 보호처분 대상자와의 재범위험성 비교 ····· 143
[그림 4-2-5]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문제점 ····· 145
[그림 4-2-6] 법사랑위원 전문성 강화방안 ····· 146
[그림 5-2-1] 도입 당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성격 ····· 162
[그림 5-2-2]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성격 ····· 164
[그림 5-2-3] 성인범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와의 차이 ····· 166
[그림 5-2-4] 단순 기소유예와의 차이 ····· 167
[그림 5-2-5] 현행 기소유예 유형의 적절성 ····· 169
[그림 5-2-6]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의 기간 및 방법 적절성 ····· 177
[그림 5-2-7] 처분결정에 있어 결정전 조사서의 영향 ····· 183
[그림 5-2-8] 결정전 조사서의 도움영역 ····· 184
[그림 5-2-9] 보호자교육 의무화 필요여부 ····· 187
[그림 5-2-10] 재기수사의 예외 필요 여부 ····· 189
[그림 5-2-11] 조건부 기소유예의 확대 여부 ····· 191

국문요약

검사는 범죄소년 사건처리에 있어서 형사처분으로 할지 보호처분으로 할지에 대한 1차적 선택권을 가진다. 또한 검사는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라 소년사건 중 소년의 선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조건을 부과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소년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성인과 달리 인격형성기에 있는 소년의 경우 개선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시설내 수용보다는 다양한 선도처우를 할 수 있는 사회내처우를 하여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다이버전이다. 1978년부터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현재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성인범죄자의 다양한 처우에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소년범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으로는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가 대표적이다.

소년사건에 대하여 기소할지 여부뿐만 아니라 단순 기소유예를 할지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지에 대한 선택은 모두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검찰청 「소년사건처리지침」과 법무부 관련 훈령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별에 있어서 검사의 재량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처분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들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도입당시와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낙인을 최소화하고 공식적인 사법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다이버전의 목표에 충실한가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법사랑위원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법사랑위원이라는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내 지도감독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월 1회의 만남이 대부분이고, 법사랑위원 개인별로 소년에 대한 이해와 개입에 있어 차이가 많아 법사랑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다양한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학업지장 등을 이유로 3~5일의 단기교육만 실시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월 1~2회 대면지도 외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나 지도감독이 없다는 점에서 선도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와 같이 검사에게 광범위한 처분결정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의 경우 「소년법원법」 제45조 제1항 검사의 절차 중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이버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각 주별 다이버전 행정규칙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소년법원에서 소년사건을 판단하므로, 검사의 개입범위가 넓지 않다. 영국의 경우 1985년 왕립검찰제도 도입 이후 점차 검사의 개입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나 소년전담검사의 전문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제한된 요건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년사건을 모두 법원으로 바로 송치되도록 하고 있어 검사의 개입여지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선도가 필요한 소년범을 적절하게 선별하여 선도하고 있는지, 실제로 각각의 기소유예 유형이 재범방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있는 소년 5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건부기소유예 대상소년 76.8%가 중·고등학교 재학생이었다.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의 경우 '양친부모'가 있는 경우가 71.0%이었으며, 경제적 수준이 '보통이상'인 경우가 87.1%으로, 소년원생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보다 가정환경이 열악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 및 검찰 수사경험, 보호처분 경험 등을 살펴볼 때 비행경력이 많지 않았으나, 기소유예 반복 형태가 17.8%, 기소유예와 보호처분을 오가는 형태가 37.8%를 차지하였다. 기소유예 유형별 처분 상황을 살펴본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들은 평균 1개월에 20분 정도 면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들은 3~5일간 실시되는 비행예방교육에 집중되고 있었다. 집단간 비교에서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들이 재범효과가 가장 높다고 평가하였다.

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종사자 19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법사랑위원의 경우 근무경력이 길었으나, 보호관찰소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종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았다. 조건부 기소유예 업무담당자들은 인정과 격려, 규칙적인 생활 관리, 자신감 회복 등에 주력하고 있으나, 법사랑위원은 가족관계 회복과 물질적 후원에, 보호관찰관은 규칙적 생활관리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은 법의식 향상에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종사자가 보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대상자의 비행 경각심이 낮아 개입이 어려운 점, 문제유형별 전문프로그램이 부족한 점, 대상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관리 지속이 어려운 점, 선도교육 처분기준이 모호한 점 등이 제시되었다. 종사자가 판단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기준 정립,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조건부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일원화된 관리, 소년사법관련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 각각의 대상자 기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새롭게 도입이 필요한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으로는 보호자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결합형태, 회복적 사법을 접목한 화해조건부 기소유예,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제시되었다.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종사자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유사하였다.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대상소년의 참여의식 부족, 유형별 대상자 선정기준의 불명확, 검사의 소극적 인식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대상자 선별기준 강화, 결정전 조사제도의 적극 활용, 충분한 예산과 인력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대검찰청「소년사건 처리지침」상의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선별기준이 유형의 특성에 맞게 변경되어야 하고, 이전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자제되어야 한다.

둘째, 검사의 업무 전문성이 확보되고, 결정전 조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법사랑위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전문성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소년보호관찰 전담인력이 확대되고, 기소유예 단계와 보호처분 단계가 분리되어 대상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대상자별 개별처우가 가능하도록 조건부 기소유예가 보호자교육조건부, 치료조건부, 화해조건부, 담임교사 선도조건부 등으로 다양화되어야 한다.

넷째,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처리절차가 개선되기 위해 절차단계에서 설명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취소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상소년이 이후 재범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년사법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처분 이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 1 장

서 론

이 승 현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소년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인격형성 단계에 있고, 개선가능성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개선여지가 크고 선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시설 내 수용을 하기 보다는 사회내 선도를 통해 사회적 낙인을 배제하는 다이버전 성격의 제도로 도입되었다. 1978년 4월 1일 소년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선도의 효과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후 성인에게로까지 확대되었다.

검사는 소년사건에 대하여 검사선의주의에 따라 절차 선택권을 가진다. 검사는 범죄소년의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형사법원에 기소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1차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재범가능성이 희박하고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조건을 부과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소년사건에 대하여 기소할지 여부뿐만 아니라 단순 기소유예를 할지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지에 대한 판단 모두가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현재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처분에 대한 선별기준이 대검찰청 「소년사건 처리지침」과 기타 법무부 훈령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고 있어 선별에 있어서 검사의 재량 판단에 맡겨둔 경우가 많아 처분의 공정성과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제도 도입 당시 목표한대

로 대상자의 낙인을 최소화하고 공식적 사법절차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다이버전으로서 그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내 지도감독이라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으나, 월 1-2회 만남이 전부이고 법사랑위원 개인의 소년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지도의 차이가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업무에 부수적인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다양한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학업 지장 등을 이유로 3-5일의 단기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재범방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월 1-2회의 대면지도 외에 소년범에 특화된 지도감독체계가 없어 선도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조건부 기소유예의 확대 실시에도 불구하고 소년범 중 전과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37.8%를 차지하였고, 1년 이내 동종범죄로 재범을 저지르는 소년범의 비율이 35.4%를 차지하여서[1], 초기 비행소년에 대한 개입장치로써 조건부기소유예가 소년범의 재비행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등 최근 언론에 부각된 몇 가지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비행단계에 있는 소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초기비행소년에 대한 개입장치로써 조건부 기소유예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소유예가 실시된 지 3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선도가 필요한 소년범을 적절히 선별하여 선도하고 있는지, 실제 재비행 예방과 교화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2012년 4월 대검찰청에서 「소년범 기소유예 다양화 방안」 추진 이후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외에도 각 지방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부가된 기소유예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소년범 기소유예 대상자 중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비율은 16.1%(9,419명)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 다양화방안 추진 이후 조건부

1)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 676쪽, 684쪽.

기소유예 비율이 급증하면서, 2017년에는 소년범 전체 기소유예 대상자 중 조건부 기소유예자 비율은 2017년에는 50.5%(12,752명)에 이르고 있다.[2] 소년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활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기소유예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후속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2016년 2월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내실화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회」가 개최되고 전문기관에 상담을 위탁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추진되고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 다양화가 추진되는 현 상황에서,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가 「소년사건 처리지침」 상의 대상소년 분류에 따라 개선가능성이 있는 대상소년에게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기소유예 대상소년의 특성 및 비행력이 어떠한지,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운영실태가 어떠한지,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처리절차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화에 필요한 개별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에 맞게 각각의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과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와 변화흐름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외국이 소년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개입정도와 기준이 어떠한지를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소년 및 종사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참여 경험, 만족도, 그리고 재범 예방에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파악하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 진단해보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과정을 통해 전문가가 인식하는 현행 조건부기소유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을 대상자 선별방안,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다양화방안, 전문가 양성방안, 처리절차 개선방안, 대상자 사후관리방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2) 대검찰청 형사2과 내부통계자료(2018).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운영현황 진단 및 외국에서 검사의 소년사건 개입범위 비교를 통한 현제도의 문제점 진단, 대상자 및 종사자 설문조사와 관련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연구내용으로 삼고 있고,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구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언급한다.

제2장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와 변화흐름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진단하며,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조건부 기소유예 형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독일, 미국, 영국, 일본 각국에서 소년범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고, 검사의 소년사건 개입범위가 어떠하며, 어떠한 기준 하에 적용되고 있는지, 국내 실시현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대상소년 및 종사자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대상소년에게는 설문조사를 통해 과거 비행력, 기소유예 참여경험, 기소유예 참여성과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본다. 법사랑위원, 보호관찰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종사 현황,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현황, 제도의 성과,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제5장에서는 소년전담검사, 소년관련 학계전문가, 법무부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국내 현황 파악결과, 외국의 제도 비교분석 결과, 대상자 및 종사자의 인식설문조사 결과, 관련전문가의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각 영역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외국제도와의 비교연구, 대상소년 및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조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대검찰청 〈범죄분석〉과 법무부 〈검찰연감〉 등 공식통계자료를 분석했고, 이들을 통해 분석이 어려운 사항은 대검찰청 형사2과와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의 협조를 받아 내부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서울남부지검 법사랑위원회 및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운영사례를 분석하였다.

외국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각 국가의 검찰청 및 법무부 공식사이트 내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검사의 개입범위와 관련된 주석서를 비롯한 외국문헌을 조사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독일의 경우 검사가 실제 운용하는 다이버전 지침을 확인하기 위해 각주 다이버전 행정규칙까지 파악하였고, 영국의 경우 전국지방검사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뉴얼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상소년 및 직원 설문조사를 위해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과 대검찰청 형사2과의 협조를 받아 대상소년 및 종사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법사랑위원의 경우 전국법사랑위원 협의회를 통해 조사협조를 받았다. 대상소년에게는 과거 비행력, 조건부 기소유예 참여경험, 참여과정에서의 문제점 인식, 재범방지 효과에 대한 인식 등을 질문하였고, 직원에게는 조건부 기소유예 관련 업무현황, 대상자의 참여태도,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성과, 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관련전문가 의견조사는 소년관련 학계전문가와 법무부 실무종사자, 소년전담검사에게 이메일로 두차례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차 개방형 질문을 통해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고 2차 설문에서 중요도 및 우선순위별로 순위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취합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대상소년 및 종사자의 제도 참여경험 및 인식조사 결과, 관련전문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 2 장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의의와 운영실태 분석

이 승 현

제2장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의의와 운영실태 분석

제1절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1.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일반적으로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독점주의가 인정되는 한편, 재량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도 인정되고 있다. 기소유예는 공식적 사법처리절차로 인한 낙인을 피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라는 전통적인 형사절차 방식에서 유예를 하는 제도이다.

검사의 기소재량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소년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범죄소년을 초기에 공식적 소년사법절차 단계에서 벗어나 민간자원의 선도보호나 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통해 선도보호를 받아 소년의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도모하는 제도[3]"를 말한다.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검사가 범죄소년에 대하여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해당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거나 재범을 하지 않고 선도 기간을 경과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이다.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기존의 소년비행에 대한 시각 및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예방중심 정책을 추구하고, 지역사회 중심이 되어 비행소년의 선도 및 보호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비행예방 및 지도에 있어서 비공식적 인간관계를 활용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4]

---

3) 정태균, 소년범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관련하여, 법조문화사, 1981, 199쪽.

4) 김을룡,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운영실태 및 내실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1쪽.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소년이 전과자가 됨으로써 사회에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소년범을 소년교도소나 소년원 등 일정한 국가시설에 수용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5]”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기소유예와 보호관찰 등을 결합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공소제기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피의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검사의 처분으로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것은 검사의 사법기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6]”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가. 단순 기소유예와의 차이

단순 기소유예는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이거나 피해자 등의 합의에 의한 경우 주로 실시되고 있다. 반면에 조건부 기소유예는 단순 기소유예와 달리 소년범의 개인적·환경적 위험요인이 있고 적극적인 상담과 원호활동을 통해 재범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조건을 부과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건의 기준이 중요요소가 되고 있다.

나. 성인범 조건부 기소유예와의 차이

성인범 대상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로는 가정폭력사범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생계형 범죄자에게 직업훈련 참가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 등이 있다. 성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기소유예든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는 기소유예든 초기비행에 대한 선처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성인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기소에 의한 형사처벌이 재범방지 효과에 회의적일 때 기소를 포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낙

---

5) 김용우, 소년법개론, 도서출판 상린, 2007, 279쪽; 이재상/박미숙, 검사의 기소재량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77쪽.

6) 신동운, “소년선도보호제도의 장래”, 청소년범죄연구 제4집, 법무부, 1986, 86~87쪽.

인의 부작용을 줄이고 조기개입으로 재사회화시키는 것을 더 중요한 요소로 보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성인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조건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재기 수사하여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조건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더 중한 처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2.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

소년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는「소년법」제49조의3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는 소년범에 대하여 법사랑위원의 선도 또는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의 상담교육 활동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의 구체적인 유형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인「소년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분류되어 실시되고 있다. 첫째, 법사랑위원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고 ① 피해회복이 된 사건 중 소년이 실질적 보호자가 없어 경제적·정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 ② 입시생으로 수업결손을 피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경제적 생계곤란 또는 결손가정으로 인한 범죄로서 장기적인 후원과 인성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고 있다(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0조 제1호~3호, 소년선도보호지침). 둘째, 학교폭력·절도·인터넷 및 약물중독으로 인한 범죄·성범죄 예방, 교통안전 및 진로지도 등의 전문교육을 위해「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의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가능하다. 셋째,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① 계획적·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소년이 이미 대안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거나 대안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③ 일정기간 체계적인 선도·교화가 필요한 경우, ④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나 재범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실시하고 있다(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4조 제1호~제4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그밖에도 소년의 선도 및 교화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소년희망재단 상담·멘토링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조건을 부가하여 기소유예를 실시할 수 있다(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6조). 이들 처분은 병과

할 수 있다.

3.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성격

일반적으로 소년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는 '다이버전'으로 보고 있다. 이는 소년에 대하여 공식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낙인이 되어 사회복귀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재범을 유발하므로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 다이버전이다. 성인 형사사법제도와 달리 소년사법제도는 국친사상 및 교육형주의에 근거하여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개입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소년보호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년보호이념에 바탕을 둔 소년사법제도가 소년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소년보호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소년에게 불이익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자 소년범에 대한 다이버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7]

1967년 미국의 '법집행과 사법집행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다이버전이 강조되었으며, 1984년 제13회 국제형법학회에서 다이버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98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청소년의 해(International Youth Year) 법률회의'에서 소년사법에서 비공식적 절차를 최대한 이용할 것을 결의하였고, 1985년「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 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1990년「소년비행 방지를 위한 유엔지침(UN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뿐만 아니라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정부이행상황 점검보고서에서도 다이버전의 적극적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8]

다이버전은 범죄인에 대한 낙인을 자제하고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실무에서 법원의 업무 부담을 덜고 사건처리를 신속히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9]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

---

7) 오영근/최병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1쪽.
8) 오영근/최병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2쪽.
9) 오영근/최병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28쪽.

제도는 민간위원 또는 보호관찰소 위탁 등을 통해 형사처벌 위주의 선도에서 다양한 시설 외 처분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다이버전으로 보고 있다.[10]

제2절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변화흐름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시작은 법사랑위원이 중심이 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서부터였다. 1972년 서울지방검찰청이 소년범에 대한 획일적 엄벌주의를 완화할 목적으로 「학생사범단속요강」을 마련하였으나, 범죄소년이 '학생'이라고 해서 기소유예처분을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은 학생이 아닌 다른 소년에 대하여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학생이 아닌 범죄소년에게도 기소유예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1] 이에 따라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범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미국과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일본의 갱생보호제도, 인도의 임의보호관찰제도 등의 영향을 받았다.[12] "검찰의 선도유예처분 활용은 법령을 따로 손질하지 않고 범죄소년을 공소제기나 소년부송치로 처리하는 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소년전과자의 양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검찰과 선도위원이 협업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소년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소년범죄의 예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3]고 보았다.

광주지검의 재범률 감소효과[14]에 힘입어 1981년 1월 20일 「소년선도보호지침」(법무부훈령 제88호)에 따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전국에 확대 실시되었다. 선도

---

10) 신동운, "Diversion 운동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정책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87, 10쪽; 안경옥, "청소년범죄의 형사법적 대책과 검사의 역할", 경희법학 제42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16쪽.

11) 김양균, "소년선도보호제도의 배경", 청소년범죄연구 제4집, 법무부, 1983, 269쪽.

12) 정태균, 소년범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관련하여, 법조문화사, 1981, 151쪽 이하.

13) 정태균, 소년범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관련하여, 법조문화사, 1981, 199쪽-203쪽.

14) 광주지검에서 1978년 4월부터 175명, 1979년 123명, 1980년 8월까지 총 992명에게 선도유예처분을 한 결과 재범자는 2.5%인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양균, 앞의 논문, 264-265쪽).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이후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 2013년 5월 15일 개정된 「소년선도보호지침(법무부훈령 제1066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15]

지방검찰청 단위의 친목모임 선도위원단체가 1987년 전국선도위원연합회를 구성했고, 1993년 법무부훈령에 의해 대검찰청 산하 단체로 인정되었다.[16] 이후 '범죄예방위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이들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5년 9월 1일부터 범죄예방위원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3월 3일 범죄예방의 업무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봉사단체가 되자는 취지로 '범죄예방위원'이라는 명칭에서 '법사랑위원'으로 변경되었다.[17] 이에 따라 2007년 8월 21일부터 각 검찰청 산하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미술, 원예 등 예술심리치료 및 치료놀이(power play)를 실시하고 있다. 소년범에 대하여 실시되었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1995년부터 성인범에게도 확대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법」에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으로 편입되었다.

지금은 폐지되었으나, 1985년 3월 5일부터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에서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한 유형으로 시범 실시된 바 있다.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은 개선·교화 가능한 비행소년에게 시설에 수용하는 대신에 단기간 동안 교정시설을 견학하도록 하고 수형자로부터 직접 수형생활에 관한 체험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선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이다.[18] 검사가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소년을 선정하여 동의를 받고 교도소와 협조로 매월 1회 10명~20명 단위로 교정시설로 인솔해 교육하고, 교육을 마친 소년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다.[19] 이 제도는 1986년 4월 15일부터 관내 구치소가 있는 지청에까지 확대하여 실시되었으나, 2007년 이후로 검찰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1995년 「갱생보호법」이 폐지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15조

15)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7, 733쪽.
16) 오영근/최병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23쪽.
17)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 제7회 청소년상담실 워크숍 자료집, 2016, 6쪽.
18)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8, 444쪽.
19)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8, 444쪽.

제3호(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 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에 따라 1995년 4월 15일 법무부훈령 제332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20]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 소년비행예방정책이 한 장으로 삽입되었고, 이에 근거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설치되었다, 이후 전국 단위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가 설치되면서 비행청소년의 대안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제3절 국내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형태

1.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절차

가. 검사의 기소재량과 기소유예

우리나라는 검사가 국가소추주의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근거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고,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충분한 혐의가 있고, 모든 소송조건을 갖춘 경우 재량판단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소유예란 형법 제51조에 따라 검사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피고인의 장래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기소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기소유예처분 자체가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는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21]

---

20)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7, 734쪽.
21) 김용우, 소년법 개론, 도서출판 상린, 2007, 276쪽.

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한 지역에의 출입금지, 피해배상, 또는 수강명령 이행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을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권한은 본래 법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이러한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였으므로 조건부 기소유예도 당연히 허용된다는 긍정설[22]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설[23]이 있다. 성인범에 대한 기소유예에 관하여는 아직도 학계에서 찬반의 논의가 활발하나, 소년범에 대한 기소유예에 관하여는 소년법 제49조의3 규정 신설로 인해 이러한 논란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기소유예제도는 법률위반사건을 모두 기소함으로써 야기되는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한다는 점, 기소를 유보한 채 피의자를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석방함으로써 개선가능성이 높은 범죄인을 조기에 복귀시킴으로써 재범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24]

기소유예한 경우 수사는 종료되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유예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再起搜査)하거나 재차 공소 제기할 수 있고,[25] 공소제기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26] 그런데 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이나 범죄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는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로 인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및 동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27]

나. 소년사건에서 검사의 개입범위

소년법상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직접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

22)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형사소송법 제2판, 홍문사, 2016, 242쪽.
23) 손동권·신이철, 형사소송법 제2판, 세창출판사, 2014, 341쪽; 신동운, 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11, 377쪽; 신양균, 형사소송법(신판), 화산미디어, 2009, 318쪽; 이은모, 형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2015, 398~399쪽; 진계호, 형사소송법(제2판), 형설출판사, 2004, 378쪽.
24) 이재상/박미숙, 검사의 기소재량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31쪽.
25) 신양균, 형사소송법(신판), 화산미디어, 2009, 287쪽; 최영승, 형사소송법(제3판), 피엔씨미디어, 2015, 186쪽.
26) 대법원 1983.12.7. 선고, 83도2686 판결.
27) 최영승, 형사소송법(제3판), 피엔씨미디어, 2015, 186~187쪽.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범죄소년의 경우 경찰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28] 검사는 검사선의주의에 따라 절차의 선택권을 가진다. 검사는 범죄소년의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형사법원에 기소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1차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범가능성이 희박하고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한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일 때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형사소송법 제448조), 소추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한다(형사소송법 제246조).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가 없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아 공소권이 없는 경우 협의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검사는 소년이 초범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위험성이 없는 경우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범죄를 저질러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거나 그에 관한 형이 확정된 소년에 대해 새로 송치된 사건이 종천 처분 전의 사건일 경우 두 사건의 경중, 종전 처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단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검사는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이 재범을 하는 경우 종전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재기하여 병합처분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병합처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사건을 재기하지 않을 수 있다(소년사건 처리지침 제8조). 그러나,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특별한 조건을 붙일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한다(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0조~제18조).

다. 결정전 조사제도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결정전 조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검사는 소년사건에 대하여 ① 소년부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구속·불구속 여부, 구속 취소 등 신병결정에 필요한 경우, ③ 기소유예시 선도조건의 내용 결정에 필요한 경우, ④ 양형자료 수집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28)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116쪽.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 등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보호필요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한다(소년사건 처리지침 제5조).

2008년부터 결정전조사제도가 실시된 이후 결정전 조사제도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기소유예 되는 사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조사에 의뢰되는 사건수는 적어 결정전 조사의 결과가 소년전담검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3-1〉 결정전 조사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결정전 조사	1,415	3,670	4,524	3,906	5,547	5,084	5,855	3,805	4,379	3,626

출처: 법무부, 2018년 법무연감, 2018, 201쪽.

라.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의 효과

검사는 대상소년이 기소유예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건을 재기하여 재범에 준해 처리한다. 다만, 조건 불이행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 소년의 교화 및 선도를 고려하여 재기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범에 준해 가중하지 않는다. 검사는 선도위탁이 취소되는 등 소년이 기소유예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없다(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7조).

2.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유형

가.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 개념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법사랑위원(구 범죄예방위원)이 대상소년에 대하여 지원, 선도 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1조). 오래전부터 실시되어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대상소년의 재범율을 낮추는 효과도 보였고, 선도위원의 적극적 선도활동에 의해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소년사건처리에 있어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받았다.[29]

2) 대상

「소년선도보호지침」 제4조에 따르면 법사랑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 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재범가능성이 적은 18세 미만 범죄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공안사범, 마약사범, 흉악범, 조직적·상습적 폭력배, 소매치기, 현저한 파렴치범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소년사건처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법사랑위원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된 사건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① 조손가정, 편부·편모가정,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없어 경제적·정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
② 입시생으로 수업결손을 피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경제적 생계곤란 또는 결손가정으로 인한 범죄로서 장기적인 후원과 인성교육이 필요한 경우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18세 미만 범죄소년이긴 하나 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치지 못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방법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의 선도방법은 '접촉선도'와 '원호선도'로 구분된다.

'접촉선도'란 귀주처가 있는 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

29) 김양균, "소년선도보호제도의 배경", 청소년범죄연구 제1집, 1983, 279쪽; 박영수, "한국 소년선도보호제도의 과제", 법무자료 제135집, 법무부, 1990, 312~313쪽; 조광훈, "수사기관에 의한 다이버전의 활성화방안", 사법행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51쪽; 정태균, 소년범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관련하여, 법조문화사, 1981, 198쪽.

귀시키는 방식이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3조 제2항). 다만, 선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비 보조, 취학 알선, 취업 알선, 기타 경제적 지원은 접촉선도의 일부로 보고 있다.

'원호선도'란 귀주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돌아가는 것이 부적당한 소년에 대하여 법사랑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지내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선도하는 방식이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3조 제3항).[30]

4) 절차

주임검사는 소년사건의 죄질과 범정을 살펴 대상소년을 선별한다. 주임검사는 ① 비행성 예측자료표, ② 소년범 환경조사서를 필수적으로 참작하고, 필요에 따라 ① 대상소년의 보호자, 교사, 직장상사의 의견, ② 피해보상 여부와 피해자 감정, ③ 유치장 행장기록 등을 참작할 수 있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5조 제2항). 주임검사는 비행성 예측자료표상의 예측점수를 기초로 하되, 사건기록 일체, 신문 중에 감지한 범죄소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재범가능성 정도를 결정한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5조 제4항).

주임검사가 대상소년의 주거지 법사랑위원에게 선도보호를 위탁함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주거지에 법사랑위원이 없거나 타 지역 법사랑위원이 선도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6조 제1항). 단, 주임검사는 1인의 법사랑위원이 동시에 3명을 초과하여 대상소년의 선도보호 책임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6조 제3항).

주임검사는 필요시 법사랑위원을 선정하여 선도보호책임의 인수를 권고할 수 있다(권고인수, 소년선도보호지침 제7조). 선도보호책임을 인수한 법사랑위원에게 '소년선도보호위탁서'를 교부하면, 법사랑위원은 선도와 통보를 따른다는 내용의 '소년선도보호책임 인수서'를 제출한다. 또한 법사랑위원이 자진하여 대상소년의 선도보호책임을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다(자진인수, 소년선도보호지침 제8조).

법사랑위원은 선도보호 책임인수에 앞서 ① 대상소년의 귀주처 및 선도시 접촉장소, ② 대상소년의 주변환경 및 범인성 요인, ③ 대상소년의 가족상황 및 보호자 등 가족과의 관계, ④ 대상소년의 성장과정(학력, 경력) 및 교우관계, ⑤ 대상소년의 건강

30)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7, 733쪽.

상태, ⑥ 기타 선도시 유의할 사항을 예비 조사하여 구체적인 선도방법을 강구해야 한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15조). 예비조사는 대상소년과의 대화, 보호자 등과의 대화, 학교·직장에의 조회, 이웃에 수소문, 친우면접, 관계공무소에의 조회, 기타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16조). 예비조사 결과 선도보호의 장애사유가 발견시 주임검사 등에게 통보하여 시정 보완하여 인수하거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17조).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소속 위원과 6개월 내지 1년 동안 월 1회 이상 대면상담을 실시하고 수시로 전화상담도 병행하고 있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18조). 면담횟수나 시간은 법사랑위원과 대상소년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필요한 경우 대상소년의 가족, 이웃사람, 친지 등과 접촉할 수도 있다. 법사랑위원은 선도 기간 중 3개월마다 대상소년에 대한 선도경과보고서를 전담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1조 제2항).

검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상담사 상담, Wee센터 상담 및 심리치료, 대안교육 참가 등 선도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병과할 수도 있다(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1조 제3항). 대상소년에 대한 선도기간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1급 유예소년에 대하여 1년,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2급 유예소년에 대하여 6개월로 하고, 3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등급결정에 있어서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개전의 정, 가족환경, 교우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25조). 전담검사는 대상소년에 대한 기본기간 또는 1차 연장기간 중 접촉선도 경과가 미흡했다고 인정될 때 담당 법사랑위원의 의견을 들어 선도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선도하게 한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26조).

선도 조치를 해제하였을 경우 이후 대상소년이 재범을 하더라도 유예한 사건을 재기수사하지 않는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27조 제4항). 그러나 선도 기간 중 ① 재범, ②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 ③ 소재불명이 발생하였을 때 법사랑위원의 의견을 들어 선도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28조).

<table>
<tr><td>수 신</td><td colspan="3">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장</td><td>발 신</td><td colspan="2">법사랑위원 :
연 락 처 :</td></tr>
<tr><td colspan="2">형제번호</td><td></td><td>소년카드번호</td><td></td><td colspan="2">대상청소년 :</td></tr>
<tr><td colspan="5">선도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td><td colspan="2">보고회수 ( )회</td></tr>
<tr><td rowspan="3">사전
점검
상황</td><td>가정상황</td><td colspan="5">☐ 원만 ☐ 보통 ☐ 불화 (불화사유 :)
☐ 결손가정(조손, 편부모, 소년소녀가장 등) ☐ 가족 없음 ☐ 기타</td></tr>
<tr><td>학업관계</td><td colspan="5">☐ 우수 ☐ 보통 ☐ 부진 (부진사유 :)</td></tr>
<tr><td>교우관계</td><td colspan="5">☐ 원만 ☐ 보통 ☐ 불화 (불화사유 :)</td></tr>
<tr><td rowspan="7">선도
상황</td><td>직접접촉</td><td colspan="5">☐ 대면상담(회) ☐ 가정방문(회) ☐ 보호자·교사 등(회) ☐ 기타</td></tr>
<tr><td>간접접촉</td><td colspan="5">☐ 전화(회) ☐ 문자메시지(회) ☐ SNS (회) ☐ 이메일 (회) ☐ 기타</td></tr>
<tr><td>멘토결연</td><td colspan="5">☐ 1:1결연 ☐ 2인 이상 다수결연(대학생, 상담사 등 전문가 결합) ☐ 기타</td></tr>
<tr><td>맞춤형
선 도</td><td colspan="5">☐ 심리상담(회) ☐ 음악치료(회) ☐ 미술치료(회) ☐ 연극치료(회)
☐ 사회봉사참여(회) ☐ 대안교육참여(회) ☐ 기타</td></tr>
<tr><td>타기관
연 계</td><td colspan="5">☐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회) ☐ 보호관찰소(회)
☐ 청소년전문상담기관 (회) ☐ 종교단체 ☐ 기타</td></tr>
<tr><td>원호지원</td><td colspan="5">☐ 학비지원(원) ☐ 생활비지원(원) ☐ 취학알선 ☐ 직업훈련
☐ 취업알선(회) ☐ 주거제공 ☐ 의료지원 ☐ 기타</td></tr>
<tr><td colspan="7">선도경과 (해당란에 ○로 표시하십시오.)
1. 양호함 2. 희망적임 3. 보통 4. 사후조치 필요(재범, 소재불명, 이주, 사망,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 기타 계속 선도 곤란사유 발생)</td></tr>
<tr><td colspan="7">위 항의 선도조치내용, 선도경과의 구체적 내용(대상자의 소감문 첨부 등)과 그 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십시오. (필요시 별지 사용)</td></tr>
<tr><td colspan="7">20 년 월 일 법사랑위원 :</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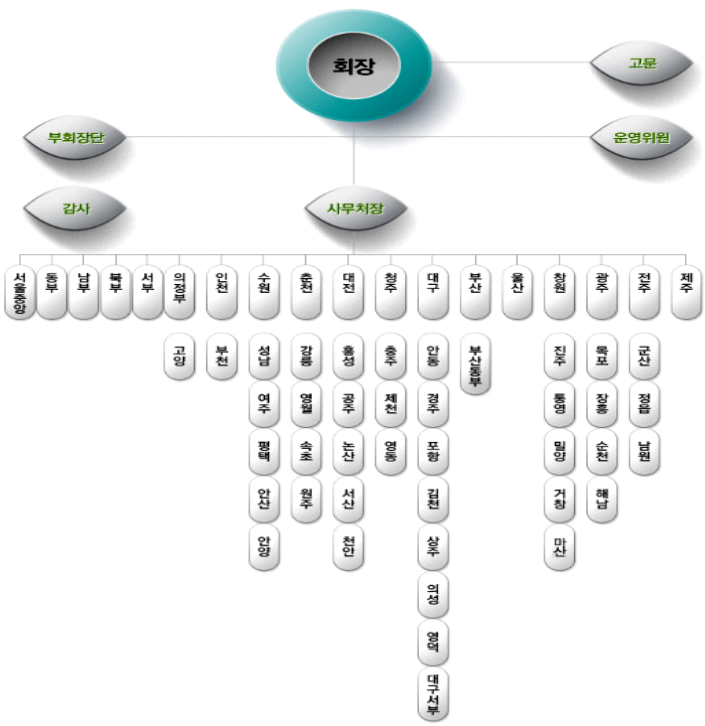
[그림 2-3-1] 청소년선도경과보고서 양식[31)]

31)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 범죄예방활동 실무노트, 2018, 45쪽.

5) 법사랑위원의 역할

법사랑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촉된 자를 말한다. 다만, 범죄예방으로 위촉되지 않았으나 제6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소년의 선도보호 책임을 인수한 자도 법사랑위원으로 보고 있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3조 제5항).

법사랑위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므로 범죄소년에게 접근이 용이하고, 법사랑위원과 비행소년이 동일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쉽게 접촉이 가능하며, 사회 내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법사랑위원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유대관계에 따라 기소유예 기간 만료 후에도 선도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32]



[그림 2-3-2] 전국 법사랑위원 연합회 조직현황[33]

32) 송영구, 범죄자원봉사위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4쪽.

법사랑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기법, 멘토 기법 등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소년보호관찰, 소년선도에 관한 내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1회 이상 각 법사랑위원 협의회별로 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 협의회 소속 1년 이내에 신임교육 및 5년 후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법사랑위원은 지방검찰청 및 지청 산하 전국 58개의 법사랑위원 지역 연합회와 각 지역연합회로 구성된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국 법사랑위원 1,083명에 대하여 선도예방 및 보호관찰에 관한 전문화교육과 신입교육을 실시하였다.[34]

법사랑위원 소속 개인별로 연간 목표설정을 통해 법사랑위원 각자가 본연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2개월마다 지역별 우수활동 사례를 취합하여 현장에 공유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35] 법사랑위원의 업무는 [그림 2-3-3]과 같이 봉사활동 마일리지 선정기준표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33)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홈페이지(http://www.bumbang.or.kr/sub01/sub01_04.php, 2018년 6월 23일 최종검색).
34) 법무부, 2018년 법무연감, 2018, 167쪽.
35) 법무부, 2018년 법무연감, 2018, 166쪽.

♥ 공통분야

구 분	활동내용	적립 마일리지
자금(금품)지원	10만원당	1P
교육수강	반 일	2P
	종 일	5P
	1일 초과	10P
회의참석 (월례회, 간담회 워크숍)	법사랑자체 주최	1회 1P
	유관기관 주최	1회 2P
	워크숍	교육수강과 동일 기준
봉사활동	반 일	2P
	종 일	3P
홍보활동	언론노출	1P
	기고	3P
1:1 멘토링 사업 (결연사업)		
	* 경제적 지원(10만원당 1P), 상담지도(반일 3P, 종일 5P), 직업알선(본인 사업장 20P, 업체알선10P)등 구체적인 활동에는 별도로 해당 포인트 추가 * 분기별 우수활동 선정자에게는 추가 5P제공 * 역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 포상 중요기준으로 활용	
순찰, 계도 활동 참석	반 일	2P
	종 일	3P
놀이방 운영 (기관 평가에 활용)	반 일	2P
	종 일	3P
	*별도 놀이방을 마련한 기관에는 5P제공	
각종 행사 참석	반 일	2P
	종 일	3P
상담 · 법률지원	반 일	3P
	종 일	5P
사업기획, 아이디어제공	사업 당	10P
지구회장 가점 마일리지	총 30P	위원 1명에게 년 최대 5P제공

♥ 소년선도 분야

구 분	활동내용	적립마일리지	
선도유예자 선도활동	수탁 대상자 지정	1인당 5P	경과통보서 1회 접수시 인정
	경과통보서 제출	1회당 2P	경과통보서 2회 접수시 부터 인정
특별지도	각종 체험활동, 봉사활동, 집단 교육 등 특별활동	반 일	2P
		종 일	5P
	푸른쉼터, 상담실 활동	2시간 이내	2P
		2시간 초과	3P

[그림 2-3-3] 법사랑위원 봉사활동 마일리지 선정기준표[36)]

36)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실무노트, 2018, 48쪽.

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 개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에 따른 일정한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37]는 기소유예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와 법원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에 대안교육, 청소년 심리검사와 상담,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에 대한 보호자교육,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및 법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현재 전국에 16개가 설치되어 있다.

〈표 2-3-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현황

기관명	대내 명칭	주요임무
부산솔로몬파크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교육, 법체험, 법캠프, 교사 등 직무연수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대안교육, 상담조사, 청소년심리상담, 보호자교육, 법교육·법체험
부산동부 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솔로몬파크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교육, 법체험, 법캠프, 교사 등 직무연수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대안교육, 상담조사, 청소년심리상담, 보호자교육, 법교육·법체험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37)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대외명칭을 '청소년꿈키움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기관명	대내 명칭	주요임무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청소년꿈키움센터 소개자료
(http://www.cppb.go.kr/HP/TSPB13/tspb13_03/sub_03_03.jsp)

2) 대상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학교 등에서 학교폭력 및 학교부적응 등을 이유로 의뢰된 대상소년(「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소년법」 제49조의3), 법원의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서 교육 대상소년(「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을 중심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는 지침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으나, 학교폭력·절도·인터넷·약물중독으로 인한 범죄·성범죄 등의 예방, 교통안전과 진로지도 등의 전문교육이 필요한 대상이다(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2조 제1항).

3) 절차

담당검사가 교육위탁결정을 하게 되면, 피의자와 보호자를 소환하여 '교육참가동의서'를 교부하고, 교육위탁 공문과 작성된 교육위탁카드, 교육참가동의서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송부되면 센터에서는 교육위탁카드를 접수하고 선도인수서를 팩스로 즉시 송부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년과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3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대상자에 따른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비행유형별 전문교육이 실시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은 4시간, 1일, 3일, 5일, 2주 교육(심리치료 포함) 등으로 나누어 있으나, 주로 검찰에서 의뢰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통 3일(18시간) 또는 5일(30시간) 과정의 통학형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 13명 이내의 소규모반을 편성하고 전문담임교사를 배정하여 생활지도를 병행하고 있다.[38]

38)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18학년도 교육계획, 2018, 14쪽.

교육 실시 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검찰청에 교육결과를 통보한다. 검찰에서는 교육수료 또는 미수료를 확인 후 재의뢰하거나 법원에 사건을 송부하는 결정을 한다.[39]

4) 교육프로그램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학교, 검찰, 법원에서 각각 의뢰된 대상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2-3-3〉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프로그램(안산센터 기준)

구분	교육내용	수업시수
비행예방 전문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절도 예방교육 성비행예방교육, 중독 예방교육 교통안전	3일과정: 10시간(필수) 5일과정: 10시간(필수)
인성교육 및 체험교육	법교육, 법체험, 모의법정, 헌법가치 생활예절교육, 배려교육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 장애체험, 등산·암벽등반 등 자기도전 프로그램 체육,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생활공예, 미술치료, 문학치료, 심리검사 및 이해, 공감체험형 역할극	3일과정: 3시간(선택) 5일과정 13시간(선택)
진로지도	진로적성검사, 진로특강, 진로체험	3일과정: 2시간(2과목 필수) 5일과정 4시간(2과목 필수)
입교식, 담임시간, 수료식		3시간
계		3일과정: 18시간 5일과정: 30시간

출처: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18학년도 교육계획, 2018, 24쪽~27쪽.

검찰에서 의뢰된 조건부기소유예 대상자 교육프로그램 내용으로는 ① 전문교육으로 학교폭력·절도·중독·성비행 예방교육, 교통안전, 교권침해예방교육, ② 인성 및 체험교육으로 법교육, 모의법정, 생활예절 및 배려교육, 생활 공예, 미술치료, 연극치료, ③ 진로지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소유예 다양화 방안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캠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가 서울북부, 부산,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39)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18학년도 교육계획, 2018, 14쪽.

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1) 개념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선도업무를 관장하고,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호, 대검찰청 예규인 「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4조~제15조, 법무부훈령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에 따라 전국 47개 보호관찰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2) 대상

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4조에 따르면 검사는 다음의 대상에게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할 수 있다. 기소유예 대상조건을 살펴보았을 때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기소유예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보다 비행의 정도나 재범가능성이 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① 계획적·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소년이 이미 대안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거나 대안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③ 일정기간동안 체계적인 선도·교화가 필요한 경우
④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나 재범가능성이 높은 경우

3) 절차

검사는 소년과 보호자로부터 서약서를 받고, 보호관찰소에 소년에 대한 선도위탁서 및 선도위탁카드를 송부한다. 선도인수 책임을 인수한 보호관찰관은 선도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보호관찰소 선도인수서를 송부하고, 주임검사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제5조). 주임검사는 선도대상자로부터 서약서를 받고 준수사항 위배조치를 엄중 경고한다(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제6조). 준수사항으로는 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담당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② 선도기간 중 임의로 주거지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동하거나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성이 있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할

것, ④ 선도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선도 교육 및 제반지시에 순응할 것, ⑤ 생업에 종사하며 맡은 일을 태만히 하지 아니할 것, ⑥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본드, 신나, 부탄가스 등 해로운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⑦ 사행행위에 빠지지 말고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말 것, ⑧ 이상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유예사건의 재기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 있다(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제6조).

주임검사는 ① 선도대상자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학력, 경력, 교우관계, 범죄사실 요지, ② 선도시 유의사항, ③ 선도상황, ④ 선도의 연장, 해제, 취소, 선도성패 평가,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담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카드를 작성한다(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제7조). 검사는 선도실시 방법이 부적당하거나 기타 그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선도실시 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제12조).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에 대한 선도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선도위탁 경과보고서를 사건과를 경유해 검사에게 송부한다. 선도기간 중 선도대상자에게 재범,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 소재불명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 선도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제18조).

4) 방법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처분 단계에서 실시하는 4호와 5호 보호관찰과 동일한 형태로 실시된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은 보호관찰관이 대상소년을 선도교육, 집단치료, 상담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선도위탁 대상자의 가족, 이웃, 친구와 접촉하기도 한다.[40] 재범위험성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는 선도위탁 없이 상담교육·봉사활동 처분만을 부과하기도 한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보호관찰관은 6개월(선도위탁 2급) 또는 1년(선도위탁 1급)을 실시하거나 20시간 이내의 상담교육·봉사활동을 부가하는 경우도 있다(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제4조). 보호관찰관이 소년면담을 위해 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에 방문 후 면담 및 상담교육 병과 여부를 결정한다. 선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비 보조, 취학·취업 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40)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7, 734쪽.

있다(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제11조).

소년의 반성 여부, 재범위험성, 보호자의 보호의지 등을 반영하여 개별처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등급상 '집중'에 해당하는 경우 월 4회 이상 출석이 요구되고, '주요'는 월 1~2회 이상, '일반'은 격월로 출석이 요구된다.

라. 기타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으로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외에 기타유형으로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청소년희망재단 등 각 지역 소년보호기관 등에 상담 및 교육 등을 의뢰하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실시되고 있다. 대학생과 소년이 일대일로 결연을 맺어 상담, 스포츠, 문화활동,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해당소년을 선도하는 '멘토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교육',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 전문상담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 기간은 각 기관의 사정 및 프로그램에 따라 달리 진행되고 있다.

〈표 2-3-5〉 각 지역청별 기타 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순번	시행청	프로그램	주요내용
1	서울중앙지검	멘토링조건부('파랑마니또')(2012.5)	· 청소년희망재단과 연계 · 청소년희망재단에서 소년범에게 상담 및 멘토 지정(소통 및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대학생, 회사원, 시민단체 회원 등 젊은 멘토)을 통해 고충상담 등 선도 역할 수행 · 재범방지 효과가 뛰어나 적극 활용 중
		소년범 예술정서교육 조건부(2014.7)	· 가정환경, 교우관계 불만 등 심리적, 정서적 극복이 필요한 소년범 대상 ·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병과하여 실시, 보통 6개월 단위 교육기간 소요 · 미술, 음악 등 예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예술치료 대상을 소년범으로 확대 시행
2	서울서부지검	미술체험활동 프로그램(2015.8)	· 숙명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비행청소년 대상으로 체험활동 실시 · 총 12회(주1회) 과정

순번	시행청	프로그램	주요내용
3	수원지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상담교육 이수조건부 (2016.6)	·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습 및 자립 지원 기회 제공 및 재범방지를 위해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 진로교육 프로그램 병과' ※ 대검에서 여가부와 협의하여 위 프로그램마련, `16.6.1부터 1년간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에서 시범시행 중
		우범 환경개선 조건부 ('게릴라 가드닝') (2016.10)	· 소년범들로 하여금 버려진 공간에 화단을 조성하고, 이를 유비, 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년 선도와 우범지역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두 가지 효과 제고방안 · 법사랑연합회, 보호관찰소, 지자체 등 참여 · 원예치료사가 원예활동을 통한 소년범들의 정서적 치료 지원
4	안양지청	예술치료 조건부 (2012. 9)	·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예술치료기법 도입 · 예술치료 전문위원(미술,심리,음악치료위원) 12명 위촉 · `12년부터 `17.2 까지 총 117명이 각 6~12회기의 예술치료과정 수료
5	대전지검	보호자참여 대안교육 이수 조건부 (2015.5.)	· 비행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대전소년원과 연계하여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 · 심리상담기법을 도입한 쌍방형·참여형 교육 · 5일 간의 교육과정 · 교육장소가 소년원인 바,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이 강하여 활성화 되지는 못함
		대전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조건부 (2014.11)	· 학교밖청소년 소년범 대상으로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 및 학업복귀,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 · 당청 자체 상담실을 이용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활성화 되지 못함
6	포항지청	봉사활동 조건부 (2012.5)	· 죄질이 중한 소년범 중 선도위탁의 필요성이 낮은자 대상 · 보호관찰소 주관 아래 16~24시간의 봉사활동 이행
		감사노트 작성 조건부 (2012.5)	· 통상적 기소유예 대상자에게 반성문 대신 약 50개 항목의 감사노트를 작성케 하여 삶에 대한 긍정적 의식 고양
		심성치료 조건부 (2012.5)	· 죄질이 중한 소년범 중 심성치료의 필요성이 있는자 대상 · 보호관찰소 주관 아래 16~24시간의 심성치료 실시, 원예치료와 미술치료 등 병행
		법질서위원 선도조건부 (2012.5)	· 조직적 학교폭력이 적발된 중·고등학생 소년범 대상 · 학생, 교사, 법사랑위원들로 구성된 법질서위원회를 설치, 자치법정을 열어 모의재판 실시, 정기적 법질서·인성교육 실시 · 학생들의 자치적 문제해결을 통한 학교 자치정화 도모, 대상학교 학생들의 준법의식 고양, 지역 친화적 검찰상 확보 등의 기대효과

순번	시행청	프로그램	주요내용
7	부산지검	상담 조건부 (2013.6)	· 법사랑연합회와 연계하여 청내 청소년상담실 운영 · 미술치료전문가, 독서치료전문가, 가정폭력상담사,중등교사 자격자 등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24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 · `16년 월평균 25명씩 총 304명 상담실시, `13.6. 상담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1,543명 상담실시
		교원 선도조건부 (2014.4)	· 교육청, 법사랑연합회 위원과 연계 · 각 학교 선도위원(학교폭력 책임교사, 교감 등)의 선도조건, 맞춤형 특별준수사항(반성문쓰기, 교내 청소 등) 부과
8	울산지검	법사랑 푸른교실 (2015.7)	· 소년범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효율적 교육과정을 적용한 '개인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 ·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병과 시행 · 공계실습, 봉사활동, 음악·미술치료 등 지역 청소년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 ·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소질 개발, 정서 함양 및 사회적응력 향상에 기여
9	광주지검	'청소년 상담실' 상담조건부 (2015.5)	· 청내 '청소년 상담실'운영, 상담위원(무보수 명예직) 33명 위촉 · 청소년과 부모를 소년전담검사실로 출석하게 하여 사전면담 후 청소년상담실에서 전문상담 위원이 심층 상담 실시 · 상담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대상 '치과치료',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사랑 캠프' 등 맞춤형 선도·지원 활동
10	목포지청	가족참여 교육조건부 (2016.4)	· 초범 또는 경미한 사건의 소년범 대상 (`16.3.15~ `17.1.13.까지 소년범 121명) · 전남문화예술재단과 업무협약 체결(공연티켓은 잔남도립국악원에서 제공) · 남도소리울림터,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소년범과 그 가족이 국악공연을 관람하고 감상문 제출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11	순천지청	'마음톡톡 예술치유 프로그램' 참여 조건부 (2016.4)	· 법사랑전남동부지역연합회(소년범에 대한 행정지원), GS칼텍스(비용부담 및 진행), 이화여대(음악치료학과장 등 3명이 음악창작 및 공연지도 담당)와 업무협약체결 · 청소년의 심리치유를 위한 '예술(음악)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 주 1회 60분, 총 15회 실시, 음악창작 및 악기연주 교습 ※ `16.12.17 여수 소재 소극장에서 '연말콘서트'를 개최하여 청소년 5팀 창작곡발표 등 행사개최
12	전주지검	'아버지교실' 개최 (2016.1)	· 조건부기소유예 소년범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청소년기 문제행동 원인 이해', '자녀와의 건강한 소통법', '마음 들여다보기' 프로그램 시행 ·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연계하여 Wee 센터 내에서 프로그램 진행
		'꿈나무교실' 개최 (2016.4)	·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소년범 · 전주지검 중회의실에서 소년범 및 보호자, 법사랑위원, 심리연구소 청소년상담사 등 참여 · 검사와의 대화, 상담프로그램 진행(심리역할극), 대화의 시간(다과회) 등 진행

순번	시행청	프로그램	주요내용
13	남원지청	국악 교육조건부 (2015.3)	· 결정전 조사를 통해 소년범의 품행 등 파악 후 사안 경미, 재범위험성 적으며, 보호자의 선도의지 뚜렷한 소년범들 대상으로 실시 · 소년범이 보호자와 함께 남원국립민속국악원에서 상연하는 공연 관람 후 감상문 및 반성문 제출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 정서 안정, 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소년범 교화에 효과적
14	고양지청	가족사랑 체험조건부 (2017.9)	· 고양문화재단 및 토당청소년수련관과 업무협약 체결 · 보호자와 소년범간의 정서적 공감대 강화, 소년범의 부정적 인식완화 및 정서순화 목적 · 고양문화재단 산하 고양어울림누리 · 고양아람누리에서 상연하는 공연을 소년범과 보호자가 함께 관람한 후 공연소감문을 제출하게 하거나, 토당수련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

출처: 대검찰청 형사2과 내부분석자료, 2018.

제4절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 현황

1.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실시 현황

최근 10년간 소년범죄를 살펴보면, 소년범죄가 2008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 76,000명이었다. 이는 소년인구 10만명당 소년범죄자 수를 감안하더라도 감소하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표 2-4-1〉 연도별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단위: 명(%))

구분	소년범죄자수			전년대비 증감율	전체범죄자 중 점유비율	소년인구 10만명당 소년범 수
	소년형법범	소년특별법범	계			
2007	60,426(68.6)	27,678(31.4)	88,104	27.3	4.5	709.7
2008	79,766(59.1)	55,226(40.9)	134,992	53.2	5.5	1,117.6
2009	81,378(72.0)	31,644(28.0)	113,022	-16.3	4.5	1,111.5
2010	70,045(78.0)	19,731(22.0)	89,776	-20.6	4.6	933.6
2011	66,240(79.7)	16,828(20.3)	83,068	-7.5	4.4	940.6
2012	87,779(81.7)	19,711(18.3)	107,490	29.4	5.1	1,006.9
2013	74,509(81.3)	17,124(18.7)	91,633	-14.8	4.3	875.1
2014	63,145(81.4)	14,449(18.6)	77,594	-15.3	4.1	786.0

구분	소년범죄자수			전년대비 증감율	전체범죄자 중 점유비율	소년인구 10만명당 소년범 수
	소년형법범	소년특별법범	계			
2015	56,962(80.2)	14,073(19.8)	71,035	-8.5	3.6	737.4
2016	61,162(80.5)	14,838(19.5)	76,000	6.4	3.8	810.6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8-2017 재구성.
박준휘 외, 2017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108쪽.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년범죄자 76,000명 가운데 검찰단계에서 진입하는 소년범은 60,669명으로 79.8%에 해당한다. 최근 10년간 검찰에서 소년범죄를 처리한 결과를 보면, 2007년도에 기소유예된 소년범이 50.7%(44,689명)이었고, 소년보호 송치가 24.3%(21,368명)이었고, 기소비율이 11.8%(10,367명)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16년 '기소유예' 소년범이 34.7%(21,044명)로 가장 높았고, '소년보호송치' 소년범의 비율도 33.9%(20,597명)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났다. 반면 기소된 소년범은 10.1%(6,113명)을 차지하였다. 최근 10년간 기소율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10년간 검찰에서 처리된 소년사건 중 기소유예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소유예된 소년범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소년보호 송치되는 소년범이 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4-2〉 검찰의 소년범죄 처리현황

(단위: 명(%))

연도	계	기 소			불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성매매 보호 송치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07	88,104 (100)	10,367 (11.8)	2,815 (3.2)	7,552 (8.6)	54,424 (61.8)	3,029 (3.4)	44,689 (50.7)	394 (0.4)	6,312 (7.2)	21,368 (24.3)	22 (0.0)	21 (0.0)	93 (0.1)	1,809 (2.1)
2008	134,992 (100)	15,150 (11.2)	4,823 (3.6)	10,327 (7.6)	88,932 (65.9)	4,944 (3.7)	62,977 (46.7)	2,073 (1.5)	18,938 (14.0)	28,360 (21.0)	30 (0.0)	46 (0.0)	104 (0.1)	2,370 (1.8)
2009	133,022 (100)	7,795 (6.9)	3,929 (3.5)	3,866 (3.4)	71,100 (62.9)	4,684 (4.1)	56,715 (50.2)	1,184 (1.0)	8,517 (7.5)	32,453 (28.7)	37 (0.0)	16 (0.0)	86 (0.1)	1,535 (1.4)
2010	89,776 (100)	5,443 (6.1)	2,913 (3.2)	2,530 (2.8)	52,685 (58.7)	4,801 (5.3)	42,021 (46.8)	339 (0.4)	5,524 (6.2)	30,143 (33.6)	9 (0.0)	11 (0.0)	93 (0.1)	1,392 (1.6)
2011	83,060 (100)	4,691 (5.6)	3,025 (3.7)	1,666 (2.0)	46,224 (55.7)	4,151 (5.0)	36,582 (44.0)	272 (0.3)	5,219 (6.3)	30,587 (36.8)	10 (0.0)	7 (0.0)	86 (0.1)	1,455 (1.8)

연도	계	기 소			불 기 소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성매매보호송치	참고인중지	기소중지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2012	102,871 (100)	7,877 (7.7)	4,898 (4.8)	2,979 (2.9)	56,668 (55.1)	6,113 (5.9)	43,013 (41.8)	324 (0.3)	7,218 (7.0)	36,478 (35.5)	21 (0.0)	- (0.0)	141 (0.1)	- (0.0)
2013	88.062 (100)	8,758 (9.9)	5,293 (6.0)	3,465 (3.9)	47,486 (53.9)	5,925 (6.7)	34,914 (39.6)	202 (0.2)	6,445 (7.3)	29,641 (33.7)	35 (0.0)	2 (0.0)	108 (0.1)	2,032 (2.3)
2014	62,010 (100)	6,408 (10.3)	3,885 (6.3)	2,523 (4.1)	32,991 (53.2)	4,343 (7.0)	22,995 (37.1)	152 (0.2)	5,501 (8.9)	20,588 (33.2)	45 (0.1)	-	103 (0.2)	1,875 (3.0)
2015	56,050 (100)	6,252 (11.2)	4,034 (7.2)	2,218 (4.0)	30,198 (53.9)	4,518 (8.1)	19,623 (35.0)	105 (0.2)	5,952 (10.6)	18,216 (32.5)	119 (0.2)	-	54 (0.1)	1,211 (2.2)
2016	60,669 (100)	6,113 (10.1)	3,755 (6.2)	2,358 (3.9)	32,235 (53.1)	4,815 (7.9)	21,044 (34.7)	136 (0.2)	6,240 (10.3)	20,597 (33.9)	147 (0.2)	-	34 (0.1)	1,539 (2.5)

출처: 대검찰청(2008-2017), 범죄분석, 표 재구성.

소년범 중 기소유예된 대상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소년범으로 접수된 인원 가운데 단순기소 유예가 아닌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대상자 비율은 2008년에 16.1%(9,419명)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 51.0%(12,752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관의 선도 및 교육 등을 받지 않고 단순히 사건이 종료되는 비율이 49.0%에 이르고 있어 초기비행자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17년 소년범 기소유예자 중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처분을 받은 소년은 20.0%(4,900명),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처분을 받은 소년은 13.0%(3,260명),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소년은 11.0%(2,669명), 기타 청소년희망재단 또는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위탁 등의 처분을 받은 소년이 8.0%(1,923명)이다. 최근 10년간 조건부 기소유예 변화흐름을 보면, 기소유예가 다양하지 않았던 2008년에 비해 현재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형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별다른 교육이나 상담 없이 월 1회 면담정도에 그치고 있고, 법사랑위원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에 대한 비판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일정기간 예방교육 등을 통해 생활지도부터 체계화

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3년 이후 대검찰청이 기소유예 다양화방안을 내놓으면서 기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2-4-3〉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단위: 명, %)

구분	소년범 접수 인원	기소 유예	조건부 기소 유예	조건부 기소 유예율 (%)	조건별 기소유예 현황			
					법사랑위원 선도조건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교육조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기타
2008	133,072	58,369	9,419	16.1	6,354	799	2,256	10
2009	134,155	57,957	10,826	18.7	7,655	729	2,420	22
2010	105,033	45,317	6,853	15.1	3,139	406	3,301	7
2011	104,108	41,722	5,838	14.0	1,399	305	3,584	550
2012	119,122	44,371	13,048	29.4	5,736	329	4,212	2,771
2013	100,835	35,130	12,634	36.0	4,656	1,208	3,925	2,845
2014	89,910	31,037	15,616	50.3	3,181	4,801	4,589	3,045
2015	90,467	30,371	15,017	49.4	3,374	5,352	3,875	2,416
2016	87,403	26,448	14,308	54.0	3,162	5,181	3,571	2,394
2017	84,116	25,241	12,752	51.0	2,669	4,900	3,260	1,923

출처: 대검찰청 형사2과 내부통계자료, 2018.

2.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별 현황

가.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재 전국 검찰청 산하에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실시되고 있다. 전국 18개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6,610명에게 실시되던 선도위탁이 2016년에 3,409명으로 절반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법사랑위원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시행 당시 재범방지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부족, 대상자의 욕구에 미부합, 특별한 처우 프로그램이 없음 등을 이유로 재범방지에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처분되는 사례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당시에는 서울남부지청에서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가장 활발하게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4〉 각청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분 / 청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중앙	120	173	72	35	15	254	179	80	42	21
서울동부	271	189	141	31	20	375	134	108	39	7
서울남부	754	734	500	186	114	164	141	145	86	158
서울북부	497	546	1,224	328	119	161	204	160	113	80
서울서부	239	115	116	28	0	113	87	106	131	36
의정부	311	462	354	194	26	135	503	662	417	718
인천	343	209	210	336	44	571	243	165	119	171
수원	971	714	932	360	451	899	583	395	673	648
춘천	375	382	382	57	17	136	269	128	98	78
대전	380	450	359	158	94	360	332	270	602	295
청주	215	180	332	59	32	362	155	160	69	145
대구	420	420	504	304	204	551	344	261	127	126
부산	472	219	205	76	52	552	138	172	95	65
울산	30	64	49	53	0	444	484	157	306	261
창원	440	399	712	100	22	198	284	169	154	212
광주	332	350	685	577	120	267	387	179	140	258
전주	384	242	282	59	33	225	70	132	160	122
제주	56	38	45	26	0	45	11	24	42	8
계	6,610	5,886	7,104	2,967	1,363	5,812	4,548	3,473	3,413	3,409

출처 :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8-2017, 표 재구성.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죄명별로 살펴보면, 절도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폭력범죄자〉교통사범〉재산범죄자 순이다. 강력범에 해당하는 강도범죄자와 강간범죄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인 것으로 보아,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경미범죄자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폭력	절도	강도	강간	교통사범	재산범죄	기타
2007	6.610	1,629	3,370	35	40	920	129	487
2008	5,886	1,751	2,379	64	45	1,023	317	307
2009	7,104	1,774	3,438	45	31	860	217	739
2010	2,967	763	1,319	4	13	289	194	385
2011	1,363	364	603	7	7	196	66	120
2012	5,812	1,680	2,277	25	36	569	275	950
2013	4,548	1,015	2,068	12	32	424	345	652
2014	3,473	672	1,503	1	12	375	241	690
2015	3,413	664	1,503	1	23	328	325	569
2016	3,409	521	1,314	3	39	368	353	811

출처 :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8-2017, 표 재구성.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대상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07년 당시 16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5세>17세>14세>18세 순이었으나, 2016년에 17세의 비율이 가장 높고, 16세>18세>15세>14세 순이었다. 17세, 18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소년보호처분 대상자에 비해 고연령 초기비행자들이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4-6〉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7	6,610	961	1,638	1,737	1,332	640	233
2008	5,886	830	1,640	1,626	1.050	498	174
2019	7,104	833	1,788	1,893	1,573	743	274
2010	2,967	352	675	755	629	390	166
2011	1,363	176	297	353	267	185	85
2012	5,812	790	1,296	1,388	1,247	701	390
2013	4,548	649	928	1,122	1,081	607	161

구분 / 연도	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14	3,473	477	723	874	830	488	81
2015	3,413	341	671	866	780	534	221
2016	3,409	258	492	755	856	643	405

주: 2007년과 2008년 통계의 경우 '19세 이상'의 연령도 집계하고 있었다.
2007년과 2008년의 총인원 수는 19세 이상 각 69명, 68명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8-2017, 표 재구성.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학생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년사건 처리지침」에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로 입시생이 요건으로 있는데, 실제로 이들 대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7〉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학생	재수생	유직자	무직자	기타
2007	6,610	5,458	211	146	706	89
2008	5,886	4,988	68	57	695	78
2009	7,104	5,412	35	290	1,087	280
2010	2,967	2,510	11	24	354	68
2011	1,363	1,133	0	20	206	4
2012	5,812	4,443	15	71	588	695
2013	4,548	3,530	27	51	535	405
2014	3,473	2,745	0	57	362	309
2015	3,413	2,764	17	37	276	319
2016	3,409	2,815	26	34	312	222

출처 :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8-2017, 표 재구성.

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되는 대안교육 대상자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의뢰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부적응학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검찰에서 의뢰된 기소유예

대상자 비율이 높다.

〈표 2-4-8〉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학교 부적응자	검 찰 기소유예자	법 원 보호처분자
2008	6,410	4,683	1,516	211
2009	7,348	5,629	1,425	294
2010	12,862	11,396	1,124	342
2011	23,382	21,280	1,191	911
2012	30,122	26,814	2,034	1,274
2013	23,013	19,739	2,767	507
2014	23,630	18,359	4,993	278
2015	36,638	31,298	5,123	217
2016	49,317	43,305	5,757	255
2017	54,019	48,410	5,416	193
전체	256,741	230,913	31,346	4,482

출처 : 법무부, 법무연감, 2018, 224쪽.

검찰에서 의뢰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수는 2008년 1,516명에서 2017년까지 총 31,346명이고, 2008년 1,516명에서 2017년 5,416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4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대안교육 외에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상담조사, 검사 결정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검사의 결정전 조사 현황을 보면, 분류심사와 상담조사에 비해 수치는 매우 낮고, 2012년 이후 조사비율이 감소하여 2017년에 193명에 불과하였다. 결정전 조사 수치가 감소한 이유는 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서 검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점과 현재 대부분 보호관찰소에서 결정전조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41) 법무부, 법무연감, 2018, 227쪽.

〈표 2-4-9〉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조사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분류심사	상담조사	결정전조사
2008	5,198	5,952	211
2009	5,627	5,106	294
2010	5,723	5,301	342
2011	6,007	5,296	911
2012	5,435	5,148	1,274
2013	6,357	4,382	507
2014	5,543	4,261	278
2015	5,804	4,119	217
2016	5,116	3,993	255
2017	5,614	4,179	193
계	56,424	47,737	1,429

출처 : 법무부, 법무연감, 2018, 224쪽.

다.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2016년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가운데 소년보호처분자가 23,48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소유예처분자 4,297명, 임시퇴원자 1,233명, 집행유예자 471명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소년보호관찰 추이를 보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범이 증가하고 있다.

〈표 2-4-10〉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접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선고유예	집행유예	소년보호	가석방	임시퇴원	가정보호	성매매보호	기소유예	성구매자교육	벌금대체	이수명령
2007	29,005	4	1,560	24,555	142	432	5	15	2,265	27	-	-
2008	36,099	1	1,907	30,488	97	945	9	32	2,591	29	-	-
2009	46,686	4	2,174	40,139	95	1,156	6	29	3,060	24	9	-
2010	45,990	1	1,723	38,681	53	1,177	3	15	4,255	8	78	2
2011	46,336	0	905	40,164	34	1,089	2	7	4,087	9	35	4

구분 / 연도	계	선고유예	집행유예	소년보호	가석방	임시퇴원	가정보호	성매매보호	기소유예	성구매자교육	벌금대체	이수명령
2012	47,621	1	1,203	38,131	51	2,009	6	1	6,172	9	34	4
2013	45,040	1	927	36,598	45	2,091	7	-	5,301	10	50	10
2014	34,362	-	679	26,408	23	1,357	13	3	5,800	2	75	2
2015	31,542	-	494	25,433	17	1,084	12	2	4,426	2	72	-
2016	29,588	1	471	23,485	10	1,233	29	1	4,297	15	46	-

주 : 접수는 신수와 이입을 합산, 보호관찰은 광의의 의미임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2017.

연도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현황을 살펴보면, 소년범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표 2-4-11〉 연도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단위 : 명)

구분 / 청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중앙	117	104	37	31	148	109	89	192	77	166
서울동부	91	137	218	96	63	145	73	71	59	35
서울남부	53	68	75	77	99	73	87	62	93	21
서울북부	55	86	49	167	145	178	367	198	311	36
서울서부	31	4	2	120	124	76	38	63	89	49
의정부	47	148	297	206	182	404	455	355	538	328
인천	169	197	298	410	345	255	217	511	1,021	444
수원	374	442	630	712	701	719	955	1,089	661	678
춘천	248	218	265	230	375	276	273	146	12,370	148
대전	104	150	103	337	587	409	179	323	42	452
청주	129	145	76	155	388	182	142	233	236	127
대구	479	504	500	464	390	475	329	442	292	518
부산	1,170	288	278	114	151	230	227	295	257	159
울산	441	392	177	211	165	173	141	232	105	140
창원	1,603	254	382	273	269	421	206	243	455	546
광주	247	60	178	402	572	533	330	427	371	379
전주	423	156	153	314	190	213	152	155	111	147
제주	17	68	89	92	56	105	235	75	109	46
계	5,258	3,421	3,807	4,411	4,950	4,976	4,495	5,112	5,184	4,419

출처 :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8-2017, 표 재구성.

2016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는 4,149명이었고, 연장을 포함하여 계속 위탁 중에 있는 인원은 2,776명, 위탁이 해제된 인원은 2,087명, 재범으로 취소된 인원은 253명이었다.

〈표 2-4-12〉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2016년)

(단위 : 명)

구분 / 청명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현황			
		선도대상자	계속 (연장 포함)	해제	취소
서울중앙	23,111	4,419	208	69	3
서울동부	9,815	166	31	9	0
서울남부	11,368	35	94	55	7
서울북부	12,994	21	64	42	13
서울서부	11,772	36	43	5	1
의정부	24,032	49	309	194	2
인천	33,580	328	49	71	34
수원	63,265	444	479	373	39
춘천	13,046	678	77	93	9
대전	22,217	148	12	117	24
청주	8,799	452	102	55	4
대구	31,418	127	155	126	14
부산	29,828	518	185	145	9
울산	11,399	159	12	20	1
창원	17,042	140	185	313	33
광주	26,626	546	505	252	32
전주	10,006	379	119	88	14
제주	7,683	147	147	60	14
계	368,001	4,419	2,776	2,087	253

출처 :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7, 626쪽.

제5절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1. 소년범 재범률의 지속적 증가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재범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가족참여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재범율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목포, 영암, 신안, 무안 등 목포지청 관할 기소유예처분 받은 소년범 121명 중 재범자는 7명으로 재범률이 5.8%이었다. 이는 제도 시행 이전인 2015년 재범률이 10.4%와 비교하면 절반가량 감소한 셈인데 이는 전국 소년범 평균 재범률 12.3%보다도 낮은 수치로 평가되고 있다.[42] 의정부 지검에서도 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참여캠프 등 소년범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다양한 기소유예를 활용하고, 소년범의 눈높이에 맞는 상담을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선도위원 129명을 위촉하였으며, 경기북부지역 청소년상담센터 9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노력한 결과 재범률이 2011년 24.5%보다 2012년 20.1%로 4.4% 감소하였다.[43] 부산지검에서도 전국검찰청 최초로 2014년 4월부터 '교원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대안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 맞춤형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재범률이 19.6%로 청소년범죄 평균 재범률 36.5%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44]

그러나 조건부 기소유예의 좋은 성과들이 단기간의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각 지역마다 소년의 특성에 맞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보니, 지속적으로 재범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재범률에 관한 별도의 통계가 추출된 것은 아니나, 대검

---

42) 연합뉴스, "가족참여교육 효과 있네, 소년범 재범률 뚝 떨어졌다", 2017년 1월 13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3/0200000000AKR20170113094700054.HTML?input=1195m, 2018년 11월 8일 최종검색).

43) 연합뉴스, "경기북부 소년범 재범률 작년 20.1%..전년보다 낮아져", 2013년 11월 26일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17902, 2018년 11월 8일 최종검색).

44) 국제신문, "청소년범죄 감소, 비결은 '조건부 기소유예'", 2014년 12월 30일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1231.22008191914, 2018년 11월 8일, 최종검색).

찰청과 법무부 통계자료를 보면, 소년범의 재범률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소년범 전과별 현황을 보더라도, 2007년 전과가 없는 소년범의 비율이 63.0%이었으나 2016년에 54.2%로, 전과자의 비율이 8.8% 상승하였고[45], 보호처분대상자의 1년 이내 소년원 재입원율도 2014년 9.5%에서 2016년 14.0%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아[46], 초기비행단계에서의 조건부 기소유예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인범과 비교할 때 여러 영역에서 재범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을 보면 성인의 경우 2015년 7.6%에서 2017년 7.8%로 증가폭이 높지 않으나, 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2015년 11.7%에서 2017년 12.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 중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의 기소유예 형태가 재범방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5-1〉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현황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6.
소년	12.0	11.1	10.6	11.7	12.3	12.8	8.5
성인	4.1	4.5	5.1	5.2	5.6	5.6	3.4
전체	7.9	7.6	7.4	7.6	7.9	7.8	4.9

출처: 법무부, 소년범죄 대응현황 및 개선방안, 2018, 4쪽.
금태섭의원실, "「보도자료」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재범률 11%", 2017년 10월 7일자 (http://www.gsgold.kr/bbs/board.php?bo_table=gs_board3&wr_id=96&sfl=wr_subject&stx=%EB%B3%B4%ED%98%B8%EA%B4%80%EC%B0%B0+%EC%9E%AC%EB%B2%94%EB%A5%A0&sop=and, 2018년 11월 5일 최종검색)

2. 다이버전보다는 제재 성격으로 변화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는 원래 소년범에 대한 공식적 사법절차에서 벗어나 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에 따라 처우를 함으로써 사법적 낙인을 자제하자는 다이버

45)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8-2017.
46) 박주민 의원실, "「보도자료」 1년만에 소년원에 돌아오는 소년범 증가추세", 2018년 10월 24일자.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omincenter&logNo=221383597331&categoryNo=14&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2018년 11월 5일 최종검색)

전의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따라서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사법적 제재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보호와 개입이 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초기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경우 민간인에 의한 원호적 지원 및 감독이라는 점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판단되나,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지도·감독에만 치중하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등이 강제성을 띄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재에 가까운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일반 형사사법과 구별되긴 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재제의 발동요건이 되는 범죄행위나 장래 범죄행위를 할 위험성에 전제하여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광의의 형사제재에 포함"될 수 있다.[47] 특히,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보호처분의 한 유형인 보호관찰(4호, 5호)과 차별화되어 있지 않고, 선도내용에 있어서도 범죄사실과 재범가능성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선도내용이 지도 감독이고 실시방법도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형사제재와 유사하다.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가 다이버전이 아니라 형사제재에 가까워질수록 초기에 제도가 목표했던 조기에 개입하여 공식적 사법절차를 배제함으로써 사법적 낙인을 최소화하고 재범방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3.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별 대상자 선별기준의 불명확

가. 유형별 대상자 선정기준 모호

소년사법 체계상 소년범에 대한 기소유예, 선도유예, 소년부 송치결정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소년사건 처리지침」에 관련 규정은 있으나 각각의 유형에 대한 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각 검사 또는 각 청마다 다른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48]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판단에 있어서도 소년법 제49조의3에서 어떠한 유형의 선도교육을 할 수 있는지만 기술되어 있지, 각각의 조건부 기소유예가 어떠한 대상자

47) 오영근/최병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90쪽.
48) 이재상/박미숙, 앞의 보고서, 81쪽.

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는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소년사건 처리지침」에서는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을 열거하고 있지만, 그 대상자 선별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해당유형의 대상자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유형이 발견되고 있다.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의 경우 「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0조에 의하면 "① 조손가정, 편부·편모가정,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없어 경제적 ·정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 ② 입시생으로 수업결손을 피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경제적 생계곤란 또는 결손가정으로 인한 범죄로서 장기적인 후원과 인성교육이 필요한 경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제1호와 제3호의 유형에 있어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결손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력이 없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에, 입시생으로 수업결손을 피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시생이라는 이유로 비행을 저질렀음에도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사랑위원이라는 민간자원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 적절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경우 「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4조에서 보듯이 "① 계획적·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소년이 이미 대안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거나 대안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③ 일정기간 동안 체계적인 선도·교화가 필요한 경우, ④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나 재범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비교할 때 비교적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호와 같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러한 대상은 기소나 소년부 송치대상이지 선도위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과 구별하지 않고 대상자로 삼고 있다. 또한 제2호의 대안교육 이수를 거부한 자의 경우 기소유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도위탁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대상에게 선도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대상에 관하여는 소년사건 처리지침에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상자가 모호하다.

검사가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갖는다는 것은 다양한 처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으나, 대상자에 대하여 적기에 적절한 처우가 투입되지 않을 경우 초기비행자가 형사사법망에서 이탈하게 되고 재비행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현재와 같이 소년전담 검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 하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별로 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누구나 동일한 기준 하에 판단하고 선택에 있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년사건 처리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과 개별 유형별 구체적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검사가 공소권 행사에 있어 커다란 부담을 느끼게 되고 대상소년은 불평등한 처분을 받았다고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49]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나. 결정전 조사서의 활용도 저조

결정전조사 제도는 검사가 선의권을 행사함으로써 범죄사실의 경중에 중점을 두어 개선가능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검사의 소년사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보완을 위해 2007년 소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정대상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결정전 조사서 작성이 중요하고 대상소년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50]

그러나 결정전 조사가 실제로 검찰단계에서 많이 의뢰되고 있지 않고, 의뢰된다 하더라도 검사가 업무의 과중 등을 이유로 결정전 조사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의 통계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검찰단계에 접수된 사건이 84,116명이었고, 이 중 25,241명이 기소가 유예되었고, 12,752명이 조건부 기소유예 되었다고 하나, 이 가운데 결정전 조사가 실시되는 대상은 고작 3,626명에 불과하였다. 검찰에 접수된 사건 중 5% 미만에 대하여만 결정전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결과다. 따라서 검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결정전 조사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 판단이 소년의 비행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자료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검사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우려되는 바다.

---

49) 오영근/최병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92-93쪽.
50) 강동욱, "소년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9집, 한양법학회, 2006, 161쪽.

4.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가. 소년전담검사의 전문성 부족

검사의 소년사건 판단에 있어 전문성 부족이 문제시되면서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결정전 조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결정전 조사서가 작성되어 오는 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됨으로써 판단의 지연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소년전담검사가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결정전 조사서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결정전 조사서가 검사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사의 역할이 소년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충분히 전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최근 소년전담검사가 늘어나고 있으나 소년사건은 전체 형사사건 비중 가운데 소수를 차지하고 있고, 소년전담검사가 있긴 하나 사건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반형사사건과 병행하는 사례가 많고, 소년전담검사가 아닌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사례도 있다. 검사가 소년비행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일반형사사건과 유사하게 비행의 종류와 내용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력이 전제된다고 평가하여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검사의 자의적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의 업무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나.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부족

민간자원인 법사랑위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소년의 선도에 앞장선다는 점에서 법사랑위원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다이버전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민간봉사자인 법사랑위원이 대상 소년과 적절한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고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법사랑위원의 활동을 보면, 한달에 1번 정도 1시간 이내 면회를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지원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법사랑위원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본업이 있으면서 봉사차원에서 선도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행소

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고, 개인간 자질에 있어서 편차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법사랑위원이 민간이다 보니, 선도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선도경과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대상소년의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고 기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사랑위원 전국협의회가 각 지청별로 마련되어 있긴 하나, 법사랑위원의 지정 등에 대하여만 역할을 하고 있어서 대상소년의 선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 법사랑위원에 대한 활동비 등이 지급되지 않아 많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 보호관찰관의 업무성 부족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는 초기비행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속적 관리감독 형태로 유용하나, 보호관찰소 내에서 보호처분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비행자와 중비행자 관리에 있어 차별화가 필요하다.

대상자에 맞는 차별화된 개입을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의 업무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보호관찰소 내 소년전담 보호관찰 업무담당자가 있긴 하나 성인 업무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1-2년 순환보직으로 인해 소년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시기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비행소년의 특성을 이해한 다차원적 개입보다는 주로 지도감독 즉,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어 초기비행자의 근본적 비행단절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성인보호관찰 대상자를 포함하여 관리대상자가 포화상태인 것도 문제이다. 보호관찰 대상자 수가 날로 늘어감에 따라 보호관찰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우선순위인 성인보호관찰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 소년보호관찰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이다.

라. 비행예방센터 교육인력 부족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단기간에 비행단절과 관련된 집중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재범방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러나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현재 전국에 16개에 불과하여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통고대상자 교육, 법원의 대안교육명령 대상자까지 모두 교육하고 있어 교육인력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5.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부족

1980년대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 대상소년이 비행 상황과 여건이 많이 변화했고, 다양한 전문기관에 의한 개입도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세가지 유형의 조건부 기소유예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기타 유형들은 각 지역 검찰청의 자체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각 지역 검찰청별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좋은 사례나 실패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과정이 없다.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의 경우 가정환경이 나쁜 상황이 아님에도 보호력 부재로 인해 비행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은 바, 보호자가 자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일부 청에서는 가족캠프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1-2일의 한시적인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가족관계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비행소년 중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으로 인해 비행에 노출되는 소년범의 비율이 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선도보다는 치료적 형태의 개입이 필요한데, 현재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초기비행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자각·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공감, 사과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교육이나 선도기간이 종료하면 기소가 유예되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비행소년의 경우에도 공감의식 부족으로 재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건부 기소유예 내용에서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공감하고 자기반성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나 현재 이러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6. 대상소년 및 보호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대상자와 부모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하고 있다. 실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통해 변화를 경험해야 할 부모와 대상소년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처분이 면제되거나 경감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조건부 기소유예절차 진행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동의를 하지 않겠다고 반감을 드러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과정에서 대상자 및 보호자가 학업지장을 이유로 교육을 거부하거나 부담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담당검사가 교육기간을 1일 또는 몇시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비행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건부 기소유예 진행과정에 대해 대상소년 및 보호자가 제대로된 설명이나 절차 안내를 받지 않아 제도 이해 부족이 더해지는 측면도 있다.

제 3 장

외국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형태

이 승 현

제3장

외국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형태

제1절 서설

우리나라의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 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기반한 형태로, 이와 동일한 형태의 제도를 실시하는 외국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외국의 경우 다이버전의 관점에서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개입을 자제하고 다른 조건들을 부과하는 형태로 절차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형태들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의 조건부 기소유예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소년사법 개입이 실시되고 있는 독일은 소년사법단계에서 검사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나, 교육을 조건으로 절차를 중지하는 제도가 있다. 다이버전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검사가 다이버전 단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검사의 기소기준에서 다이버전을 하기 위한 요건들을 마련해 두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년사건을 경찰단계에서 법원으로 모두 보내는 전건송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소년사법에서 검사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 국가의 이러한 상황적 여건을 중심으로 소년사법에서 검사의 개입범위와 조건부 기소유예와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독일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1. 독일사회의 소년범 개입에 대한 인식

소년법원법(Jugendgerichsgesetz)의 적용대상은 14~17세 소년(Jugendliche)과 18~20세의 청년(Heranwachsende)이다. 독일사회는 18~20세의 청년을 소년법원법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한 논쟁은 그들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성인범죄자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년형법 및 특별한 절차관련 규칙에 보다 차별화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4세 이하의 소년에게는 형사책임이 없다. 다만 중비행을 저지른 경우 아동 및 소년 서비스 관련 법률 및 가족법에 따른 적절한 개입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개입에는 폐쇄형태의 소년그룹홈 수용도 포함된다.[51]

독일 사회는 청소년기의 방황과 일탈행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하여 사법적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소년범의 문제를 특별형법적·사회교육적·범죄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이 소년사법에서 검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소년범에 대한 제재보다는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변화할 수 있도록 욕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 출장 당시 독일법무부에서 소년사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설명한 자료[52]에 근거하여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가. 소년에 대한 특별형법적 관점

독일 사회에서 청소년은 개인적인 발달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므로 성인과 같이 동일한 형사책임을 가지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따라 소년과 청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을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의 발달단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범죄자보다 영향을 받기 쉽고 그러므로 보다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특별 예방적인 조치에 맞는 제재 및 처분, 절차와 집행에 관한 특별규칙이 마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사회교육적 관점

51)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Juvenile Criminal Law: overview, 2012, p.6 (독일 연방법무부 출장 당시 제공자료)

52)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Juvenile Criminal Law: overview, 2012, p.2-6 (독일 연방법무부 출장 당시 제공자료)

1) 범죄가 아닌 범죄자 중심

독일 소년형법은 위법한 범죄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교육의 필요성'이 없을 때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소년형법은 소년복지법이나 사회교육법이 아닌 형법이긴 하나, 사회교육적 관점에서 일반 형법에서와 같이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적절하고 필요한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의 경우 소년에 대한 처벌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교육적인 필요가 없는 경우에 부과될 수 있다(소년법원법 제17조 제2항). 독일사회에서 범죄자 중심은 범죄 중심에 반대되는 개념이지 피해자 중심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 소년범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 및 배려뿐만 아니라 범죄의 결과를 다루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2) 사회 교육(socio-education)은 목표가 아니라 지도원칙

오늘날 독일전문가들은 소년형법의 핵심은 성격 및 발달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교육"이라고 한다. 그것은 형법의 목적이 아니며 단지 형법상의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소년형법의 사회교육적인 목적은 미래의 형사책임을 예방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발달을 유인할 수 있는 교육적인 특성의 처우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처우방식들이 강압적이고 제한적인 제재보다 더 강조된다. 따라서 절차나 제재조치들의 부정적인 부작용들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고 본다. 2007년 12월 소년법원법 제2차 개정법과 기타 연방법률은 이러한 관점을 소년법원법 제2조 제1항에 반영하고 있다.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제2조 제1항〉

소년에 대한 형법의 적용은 소년이나 청년이 범한 새로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 조치는 교육적인 것이어야 한다.

3) 절차에서의 사회교육적 인식

연방헌법재판소는 절차에서 부모를 배제시키는 결정에 대하여 판결 이전에 형사절차에서 소년에게 교육의 원칙을 강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재판절차 중에 이루어지는 사회교육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한 처분은 그 처분에 어떠한 강제적인 특성이 없거나 유익하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때에는 허용가능하다. 단순히 소년에게 유익하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조치와 대조적인 조치로는 소년법원법 제72조 제1항의 구금을 대신하는 감독명령이 있다.

다. 범죄학적 관점

1) 소년비행의 특징

독일사회에서 소년범죄는 심화되었다고 평가하지 않고 있고, 대중매체의 관심 및 대중의 인식이 심각한 폭력범죄에 집중하고 있지만 범죄의 상당수는 경미한 범죄이거나 중간 수준의 범죄로 보고 있다. 독일소년의 6.1%만이 경찰에 소년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은 10.2%를 차지하고 있다. 소년범죄 중 약 2/3 정도가 절도나 재산범죄였고, 이 중 1/5은 상점절도였으며, 일반적으로 발생한 범죄피해 정도와 강도는 성인범죄자보다 낮다고 보고 있다.

2) 보편성

독일 암수범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중간레벨보다 경미한 비행의 경우는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청소년은 아직 사회적 기준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지 않았고, 충동적이며, 모험을 좋아하고, 한

계에 도전하길 좋아하고, 특정연령대의 역학적인 부분 등 소년의 발달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이는 소년범이 범죄자로서의 위험이나 특정 범죄와 관련된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 이유로 보고 있다. 또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많은 경우 비행행동은 심지어 형사사법시스템의 어떠한 개입 없이 소년이 성숙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보고 있다.

3) 공식적 형사기소의 부작용

독일은 소년범에 대한 공식적인 형사 기소는 낙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는 사회적 배제, 취업에서의 제한 등 긍정적인 자아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이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자리잡을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4) 구금의 부정적 영향

형법 적용에 따른 자유의 박탈은 보다 강력한 낙인효과 및 부정적인 자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손실, 경험 많은 동료 범죄자와의 유대감 형성 및 범죄 학습, 교도소 하위문화 규칙 습득 등 부정적인 영향들로 인해 강해질 수 있다.

라. 인식의 결과

독일은 소년범에 대한 특별형법적 관점, 및 사회학적 · 범죄학적 관점에 따라 소년형사절차에서 기소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다이버전을 실시하고 있다(소년법원법 제45조). 형사사법절차에서 소년의 비행이 경미한 경우, 부모와 학교의 개입, 경찰 훈방, 소년 원조 등 다른 사회교육적 조치들이 이미 취해진 경우, 회복적 정의(피해자-가해자 중재)가 이미 실현된 경우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53조). 이러한 절차중지를 위해서는 소년전담검사가 사회교육적 조치(socio-educational measure)를 하기 위한 사회교육적 기술(socio-educational skills) 및 전문성이 필요하다(제37조)고 보고, 이에 따라 소년검사는 범죄학 및 교육학에 있어 적절한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2. 독일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 개입범위

독일 형사소송법은 1877년부터 유지되어온 전통적 기소법정주의의 틀을 깨고 1924년 사건의 경미성을 이유로 한 절차 중지를 허용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도입하였고, 이후 사법실무상 관행이 만연되자 1974년 부담부 절차 중지를 도입하게 되었다.[53]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다이버전이 인정되지 않으나, 검사와 법관에 의한 소년사건의 비공식 처리절차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은 형사소송법 제153조에 따라 경미사건에 대한 절차중지 규정을 두고 있다.

53) 양인철, "독일의 부담부 기소유예제도",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13호, 대검찰청, 2008, 68쪽.

〈제153조 경미사건에 대한 절차 중지 (Absehen von der Verfolgung bei Geringfügigkeit)〉[54]

(1) 경미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행위자의 책임이 경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형사소추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공판개시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동의를 얻어 형사소추를 배제할 수 있다. 최저한도의 가중형이 규정되지 않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이미 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공판이 제205조에서 인용한 사유로 인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제231조 제2항, 제232조 및 제233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로 공판이 진행된 때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결정에 의한다. 당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독일 소년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조건부 기소유예와 유사한 형태로 검사가 절차를 중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 소년법원법 제45조에 따라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53조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판사의 동의 없이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Absehen von der Verfolgung)(소년법원법 제45조 제1항). 검사는 교육처분(erzierische Maßnahme)이 이미 실행되었거나 시작되었고 제3항에 따른 판사의 참여 및 공소의 제기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추를 면제할 수 있다. 피해자와 소년의 화해 노력은 교육처분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소년법원법 제45조 제2항). 피의자가 자백을 하였고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년전담판사(Jugendrichter)에게 훈계(Ermahnung), 제10조 제1항 제1문 제1호, 제7호, 제9호의 준수사항(Weisung) 또는 의무사항(Auflage)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55]

54) 법무부, 독일형사소송법, 2012, 142쪽; 독일법연구회, 독일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231쪽.

§ 153 Absehen von der Verfolgung bei Geringfügigkeit

(1) Hat das Verfahren ein Vergehen zum Gegenstand, so kann die Staatsanwaltschaft mit Zustimmung des fü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zuständigen Gerichts von der Verfolgung absehen, wenn die Schuld des Täters als gering anzusehen wäre und kein öffentliches Interesse an der Verfolgung besteht. Der Zustimmung des Gerichtes bedarf es nicht bei einem Vergehen, das nicht mit einer im Mindestmaß erhöhten Strafe bedroht ist und bei dem die durch die Tat verursachten Folgen gering sind.

(2) Ist die Klage bereits erhoben, so kann das Gericht in jeder Lage des Verfahrens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mit Zustimmung der Staatsanwaltschaft und des Angeschuldigten das Verfahren einstellen. Der Zustimmung des Angeschuldigten bedarf es nicht, wenn die Hauptverhandlung aus den in § 205 angeführten Gründen nicht durchgeführt werden kann oder in den Fällen des § 231 Abs. 2 und der §§ 232 und 233 in seiner Abwesenheit durchgeführt wird. Die Entscheidung ergeht durch Beschluß. Der Beschluß ist nicht anfechtbar.

55) 준수사항(Weisung)이란 유죄가 인정된 소년에게 그의 생활태도 등을 규율함에 있어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부과되는 각종 명령으로 일정 거주지역을 벗어나지 않을 것, 일정 지역에서 숙

소년전담판사가 검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처분을 명하면 검사는 소추를 면제하나, 다만 의무사항이나 준수사항을 명한 경우에는 소년이 명령을 이행한 이후에 소추를 면제한다. 이때 제11조 제3항 및 제15조 제3항 제2문은 적용하지 아니하지 않고, 제47조 제3항은 준용한다.[56] 기소 이후에도 보충적인 절차로서 소년법원법 제47조에 따라 기소 후 절차중지(Einstellung des Verfahen durch den Richter)도 가능하다(소년법원법 제45조 제3항).

〈제45조 절차의 중지(Absehen von der Verfolgung)〉[57]

(1) 검사는「형사소송법」제153조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판사의 동의 없이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검사는 교육처분(erzierische Maßnahme)이 이미 실행되었거나 시작되었고 제3항에 따른 판사의 참여 및 공소의 제기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중지한다. 피해자와 화해하려는 소년의 노력은 교육처분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피의자가 자백을 하였고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전담판사(Jugendrichter)에게 훈계(Ermahnung), 제10조 제1항 제1문 제1호, 제7호, 제9호의 준수사항(Weisung) 또는 의무사항(Auflage)을 명할 것을 제의한다. 소년전담판사가 검사의 제의에 따라 위의 처분을 명하면 검사는 소추를 면제하나, 다만 의무사항이나 준수사항을 명한 경우에는 소년이 명령을 이행한 이후에 절차를 중지한다. 제11조 제3항 및 제15조 제3항 제2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제3항은 준용한다.

식할 것 등이 요구되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의무사항(Auflage)이란 비행으로 야기한 손해의 원상회복, 피해자에 대한 사과, 사회봉사 이행 등 확정적 조치를 말한다(윤춘구, "한국과 독일의 소년사법제도", 북부검찰실무연구 제2집, 서울북부지검, 2009, 360쪽, 363쪽).

56) 이진국, "소년다이버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78쪽.

57) § 45 Absehen von der Verfolgung
(1) Der Staatsanwalt kann ohne Zustimmung des Richters von der Verfolgung absehen, wenn die Voraussetzungen des § 153 der Strafprozeßordnung vorliegen.
(2) Der Staatsanwalt sieht von der Verfolgung ab, wenn eine erzieherische Maßnahme bereits durchgeführt oder eingeleitet ist und er weder eine Beteiligung des Richters nach Absatz 3 noch die Erhebung der Anklage für erforderlich hält. Einer erzieherischen Maßnahme steht das Bemühen des Jugendlichen gleich, einen Ausgleich mit dem Verletzten zu erreichen.
(3) Der Staatsanwalt regt die Erteilung einer Ermahnung, von Weisungen nach § 10 Abs. 1 Satz 3 Nr. 4, 7 und 9 oder von Auflagen durch den Jugendrichter an, wenn der Beschuldigte geständig ist und der Staatsanwalt die Anordnung einer solchen richterlichen Maßnahme für erforderlich, die Erhebung der Anklage aber nicht für geboten hält. Entspricht der Jugendrichter der Anregung, so sieht der Staatsanwalt von der Verfolgung ab, bei Erteilung von Weisungen oder Auflagen jedoch nur, nachdem der Jugendliche ihnen nachgekommen ist. § 11 Abs. 3 und § 15 Abs. 3 Satz 2 sind nicht anzuwenden. § 47 Abs. 3 findet entsprechende Anwendung.

3.「소년법원법」제45조 제1항의 절차의 중지

가. 요건

독일「소년법원법」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년전담검사(Jugendstaatsanwalt)에 의한 절차중지(Einstellung des Verfahrens)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미범죄(Bagatell-und Massendelikt) 사건에서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경미범죄 사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미사건은 아니지만 소년의 특수한 성장환경 및 생활환경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차중지를 할 수도 있다. 독일 각 주의「다이버전 행정규칙(Diversionsrichtlinie)」[58]에서 따르면 절차중지를 할 수 있는 범죄유형을 "① 독일형법 제248조의a에서 정한 모든 범죄, ② 과실상해, ③ 경미한 고의상해, ④ 경미한 모욕, ⑤ 자동차의 무단사용, ⑥ 부정승차, ⑦ 경미한 재물손괴, ⑧ 도로교통법상 경죄"로 열거하고 있다. 부수형법(Nebenstrafrecht)에서는 "① 무면허운전,「의무보험법」(Pflichtversicherungsgesetz) 위반, ②「무기법」(Waffengesetz)이 정한 경죄, ③「저작권법」(Urhebersgesetz)이 정한 경죄, ④「체류법」(Aufenthaltsgesetz)이 정한 경죄, ⑤「마약법」(Betäubungsgesetz)이 정한 경죄"도 제45조의 범죄유형으로 보고 있다.[59]

소년전담검사는 모든 개별사건에서 절차중지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법률상 재량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죄(Verbrechen)의 경우에는 제45조 제1항이「형사소송법」제153조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것을 요구하므로, 절차중지를 할 수 없다.[60]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이 소년이 자백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소년법원법」은 이미 여러 번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서도 제45조에 따른 절차중지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몇몇 주의 다이버전행정규칙에서는 소년전담검사에게 여러 번 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다이버전을 할 수 없다고 하거나 제45조가 정한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기도 한다.[61]

---

58) 다이버전 행정규칙(Diversionsrichtlinie)이란 다이버전을 통일적으로 집행하고 형사절차 관계자들에 다이버전 절차를 알리면서 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각 주에서 정한 규칙으로, 주마다 그 내용이 상이하다.

59) Meier/Rössner/Trüg/Wulf, Jugendgerichtsgesetz: Handkommentar, Nomos, 2014, S.467.

60) 윤춘구, "한국과 독일의 소년사법제도", 북부검찰실무연구 제2집, 서울북부지검, 2009, 360쪽, 372쪽.

61) 이에 대해 Blessing과 Weik교수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명령된 처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나. 경미한 책임(Geringe Schuld)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려면「형사소송법」제153조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데, 책임이 경미해야 하며, 형사소추를 해야 할 공공의 이익도 없어야 한다. 책임의 정도는 우선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평가된다. 원칙적으로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동종의 범죄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책임 정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책임은 경미하다고 평가한다.[62] 예를 들어, 범행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의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형벌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책임이 경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책임이 경미한지를 판단할 때에는「형법」제46조 제2항에서 열거한 범죄자의 책임과 관련한 여러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한 사정들을 기준으로 삼고서 소년범을 바라보고 그의 개인적인 발달상황을 고려하여 평가를 내려야 한다. 소년의 책임에 관한 이러한 평가는 성인의 책임에 관한 평가와 확연히 구분되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의 능력, 책임 정도, 그가 저지른 범행의 결과를 평가하면 되지만, 특히 14세부터 18세 사이에 있는 소년범의 경우에는 그가 역동적인 성숙과정에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인다. 책임의 정도를 확정할 때에는 이 연령대의 소년이 통상적으로 겪는 사춘기, 사회적 환경이 미치는 강한 영향, 이민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영향, 이혼이나 부모의 질병・죽음 등 특수한 가정환경이 주는 부담은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야만 한다. 따라서 소년범의 경우에는「형법」제46조에서 말하는 '범죄자의 전력'과 '개인적 사정'이라는 요소에 성인의 경우에서보다 더 강조된다.[63] 또래집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역동적인 영향은 성인의 경우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를 지니므로, 소년범에 대한 절차에서 제45조 제1항의

소년이 재범했다고 해서 반드시 – 제45조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음에도 – 정식절차(förmliches Verfahren)로 전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나쁜 생활환경에서 자란 탓에 행위능력이 불충분해 여러 번 죄를 범한 소년이야말로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보면 제45조 제2항이 정한 절차중지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물론 재범은 이전에 명령된 처분의 정당성과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처분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만, 상이한 범죄들이 저질러졌고 그 범죄들의 시간적 간격이 넓다면 정식절차를 밟기에 앞서 새로운 다이버전을 취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Meier/Rössner/Trüg/Wulf, Jugendgerichtsgesetz: Handkommentar, Nomos, 2014, S.467).

62) Beulke/Swoboda, Strafprozessrecht, C.F. Müller, 2018, §153 StPO Rn.24.

63) Meier/Rössner/Trüg/Wulf, Jugendgerichtsgesetz: Handkommentar, Nomos, 2014, S.468.

다이버전으로 종결되는 비율은 성인범에 대한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53조의 절차중지 비율과 비교하면 높을 것으로 예측하나, 실무에서는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다.[64]

다. 공공의 이익의 부재(Mangelndes öffentliches Interesse)

독일의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에 있어서 '경미한 책임'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구속된다.[65] 책임이 경미한 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해야 할 공공의 이익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유로는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관점,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일반인의 특별한 관심 또는 범행이 야기한 매우 중대한 결과 등을 들 수 있다.[66]

4. 「소년법원법」 제45조 제2항의 절차의 중지

가. 적용범위

독일 소년법원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절차중지는 교육처분이 이미 실행되었거나 시작된 이후에 할 수 있다. 이 절차중지는 「형사소송법」 제153조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소년전담검사가 비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매우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45조 제2항은 재량규정(Ermessensnorm)이 아니다. 따라서 소년전담검사는 이미 실행되었거나 시작된 교육처분이 소년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제3항에 따른 판사의 참여가 불필요해졌거나 정식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추를 면제해야 한다.[67] 이러한 판단을 하는 소년전담검사에게는 법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

제45조 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153조 및 제153조a에 따라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

64) Wolfgang Heinz, Kriminalität und Kriminalitätskontrolle in Deutschland: Berichtsstand 2015 im Überblick, 2017, S.84. (http://www.uni-konstanz.de/rtf/kis/Kriminalitaet_und_Kriminalitaetskontrolle_in_Deutschland_Stand_2015.pdf, 2018년 10월 10일 최종검색)

65) 김성은, "독일의 기소유예와 법관동의제도", 안암법학 제29권, 안암법학회, 2009, 167쪽.

66) Meier/Rössner/Trüg/Wulf, Jugendgerichtsgesetz: Handkommentar, Nomos, 2014, S.468-469.

67) Meier/Rössner/Trüg/Wulf, Jugendgerichtsgesetz: Handkommentar, Nomos, 2014, S.469.

범죄에 비해 그 정도가 중한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범행을 한 소년이 매우 어린 경우 – 강도처럼 중죄에 해당하는 범행이더라도 – 범행이 학교에서 벌어졌고 피해 및 폭력의 행사나 위협의 정도가 경미한 때에는 교육처분을 하면서 기소를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223조 및 제224조를 위반한 죄의 경우에도 그 죄가 여럿이 공동으로 범한 것이며(「형법」 제224조 제1항 4호) 피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완전성이 현저하게 침해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정식절차를 밟아야만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68]

나. 소년전담검사의 결정권한(Entscheidungskompetenz)

제45조 제2항의 절차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소년전담검사에게만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권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다. 즉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관여하기 전에 경찰이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절차중지를 감안해 교육처분을 부과했고 해당 교육처분이 시작되거나 실행되었다면 소년은 그러한 교육처분을 다 이행한 후에도 검사에 의한 절차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경찰이 소년에게 즉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사과를 하라고 제의한 때에는 그러한 위험이 없다. 학교, 교육기관, 그 밖의 사설기관이나 종교기관이 교육처분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경찰은 기소법정주의(Legalitätsprinzip)에 예외 없이 기속되므로 자신이 주도하여 다이버전을 시작하거나 실행할 권한이 없다.[69] 다만 권한의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은 경찰의 다이버전을 검사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승인하고 감독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그러한 업무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다. 또 그러한 업무방식은 비행행위에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하기도 한다.[70] 다만 이러한 업무방식은 소년전담경찰과 소년전담검사 간의 의사소통구조가 수립되어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는 점과 소년전담검사가 사건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

68) Meier/Rössner/Trüg/Wulf, Jugendgerichtsgesetz: Handkommentar, Nomos, 2014, S.469.
69) Heribert Ostendorf, Jugendgerichtsgesetz, Nomos, 2014, §45 Rn 16.
70) Meier/Rössner/Trüg/Wulf, Jugendgerichtsgesetz: Handkommentar, Nomos, 2014, S.472.

다. 소년전담검사의 명령권한(Anordnungskompetenz)

소년전담검사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절차중지를 결정할 권한(Entscheidungskompetenz)은 있지만, 교육처분을 명령할 권한(Anordnungskompetenz)은 없다. 소년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부모, 「사회법전」 제8권(SGB VIII)이 정한 보호자(Erzieher), 가정법원 판사(Familienrichter) 및 후견법원판사(Vormundschaftsrichter)에게만 인정된다.[71] 후견을 받지 않는 청년(Heranwachsende)에게는 교육처분을 명할 수 없다. 명령은 공권력에 기초해 집행되고 이행되지 않는 때에는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소년전담검사에게는 그러한 수단이 없고, 검사에게는 특정한 교육처분을 제안하거나 준비하는 데 국한되어 인정된다.[72] 따라서 피의자가 처분을 거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 공소제기는 제45조 제2항이 정한 처분이 아니라 비정식적인 절차를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로 인해 피의자에게 법률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 교육처분(Erzieherische Maßnahme)

제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교육처분'이라는 개념은 넓게 해석되고 있다. 교육처분은 '사적 또는 공적으로' 시작되어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이하에서 교육처분의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 및 보호자의 교육권(Erziehungsrecht der Eltern und Erziehungsberechtigten)

교육처분에 소년의 가정을 참여시키는 것은 독일 「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소년을 직접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부모가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에 따라 부모는 소년형사절차에서도 자녀의 교육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73] 그러므로 소년전담검사는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절차중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소년의 교육권자가 범행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권자인 부모가 하는

---

71) Heribert Ostendorf, Jugendgerichtsgesetz, Nomos, 2014, §45 Rn 12.
72) Meier/Rössner/Trüg/Wulf, Jugendgerichtsgesetz: Handkommentar, Nomos, 2014, S.472.
73) Gerhard Nothacker, Erziehungsvorrang und Gesetzesauslegung im Jugendgerichtsgesetz.: Eine systematisch-methodologische Analyse jugendstrafrechtlicher Rechtsanwendungsprinzipien, Duncker & Humblot, 1985, S.343.

교육처분은 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국가의 조치보다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교육처분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74]

- 가정 안에서 대화를 통한 범죄행동 반성
- 용돈 금지
- 외출 금지, 텔레비전 또는 컴퓨터의 사용 금지 등 기타 제한
- 성직자,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같은 신뢰할 만한 사람과의 만남
- 피해자에 대한 사과 유도, 자신의 용돈이나 저금을 통한 손해배상
- 청소년후원기관의 활용
- 치료전문가와의 상담 또는 그에 의한 진료

교육처분이 법률상 부모에게 인정되는 교육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소년전담검사는 그 처분의 적절성과 성공가능성을 평가할 때 주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처분을 제의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부모, 검사, 경찰, 청소년청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75] 그러나 그러한 처분은 심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소년전담검사는 피의자 또는 그 부모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주위' 사람을 통한 처분(Maβnahmen durch Personen des "sozialen Umfelds")

소년전담검사 또는 청소년청이 소년 피의자의 주변에 있는 개인이나 사적 기관을 처분에 관여하게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한 처분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시행에 앞서 원치 않은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매우 자세히 심사해야 한다.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스포츠단체나 청소년단체와 같이 소년이 접촉하는 다른 조직들을 관여시키는 방법 등을 취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범행이 학교에서 또는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졌고 그 범행의 결과가 학교의 수업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76] 대상소년이 교육조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조치 과정에서 피의자의 범행이 언급되거나 특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절차중지를 할 수 있다.

---

74) Meier/Rössner/Trüg/Wulf, Jugendgerichtsgesetz: Handkommentar, Nomos, 2014, S.473.
75) Meier/Rössner/Trüg/Wulf, Jugendgerichtsgesetz: Handkommentar, Nomos, 2014, S.473.
76) Meier/Rössner/Trüg/Wulf, Jugendgerichtsgesetz: Handkommentar, Nomos, 2014, S.473.

3) 훈계대화(Ermahnungsgespräch)

훈계대화는 교육처분으로서 소년전담검사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소년사법보조관(Jugendgerichtshilfe) 또는 사인인 소년전문가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훈계대화를 누가 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소년전담검사에게 있다. 결정할 때에는 이동거리와 교통비 같은 장소에 관한 요소들과 교육학적 요소들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 부모와 보호자들에게는 대화의 일시 및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훈계대화는 다른 교육처분과 결합하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약 상담, 도로교통 교육, 절도예방 교육을 하거나 저지른 범행과는 상관없이 특별히 위험에 처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시행할 수 있다.[77] 이러한 조치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권한은 「사회법전」 제8권이 정한 소년사법보조관이나 처분을 명한 소년검사에게 있다. 제45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사회훈련과정(sozialer Trainingskurs)이나 공격성향감퇴과정(Anti- Aggressionkurs)처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은 제외한다.[78] 「형사소송법」 제153조a와 관련하여 볼 때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거나 공익시설에 일정액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79] 이러한 명령은 그 조치가 소년전담법관이 제45조 제3항에 따라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처분은 강제할 수 없고, 소년 및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호자의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소년이 그러한 명령을 이행하기 시작했고 보호자가 적어도 그에 반대하지 않았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거부할 경우에 발생할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80] 그러나 이때 피의자의 자백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4) 가해자-피해자-조정(Täter-Opfer-Ausgleich)

제45조 제2항이 정한 교육처분 중 가해자-피해자 조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피해자와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절차중지를 할

77) Meier/Rössner/Trüg/Wulf, Jugendgerichtsgesetz: Handkommentar, Nomos, 2014, S.474.
78) Schaffstein/Beulke/Swoboda, Jugendstrafrecht, Kohlhammer, 2015, S. 232.
79) 이진국, "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79쪽.
80) Meier/Rössner/Trüg/Wulf, Jugendgerichtsgesetz: Handkommentar, Nomos, 2014, S.474.

수 있는 요건은 충족된다. 배상하고 화해하려는 노력이 실현되었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법률은 범행자가 화해를 위해 노력했다면 경우에 따라 다른 교육처분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화해를 위한 노력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도 있고 제안을 받고서 할 수도 있다.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소년전담검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45조 제2항 제2문에서 언급한 화해는 제45조 제2항 제1문에서 정한 교육처분이 아니라 교육처분을 대신하는 처분이다.[81]

가해자-피해자-조정이 다이버전으로 실행되는 경우, 즉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가해자-피해자-조정으로 실행되는 경우, 검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화해했거나 화해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면 판사에게 제의를 하고 승인을 얻어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절차중지를 할 수 있다.[82] 검사는 소년사법보조관, 청소년청이 설치한 부서 또는 업무를 위임받은 사인을 조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시킬 때에는 사전에 매우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 가해자-피해자-조정에 관여하는 사람은 개별사안에서 각 조치가 적합한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적합한 때에는 해당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가해자-피해자-조정은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가해자가 책임을 통감하고 불법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조정에 관여한 사람이 보기에 가해자가 자기 범행의 책임과 불법을 인식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조정은 실패한 것이고, 절차는 정식절차로 넘겨진다.[83] 가해자-피해자조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을 통해 범죄행위로 인해 야기된 결과의 의미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독일법상 법규정이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84]

소년전담검사의 절차중지는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를 할부로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은 후 가해자가 지급을 시작했고 완납할 때까지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진지하게 표현된 경우 가능하다. 물론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절차중지를 통보받은 이후에 원상회복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절차중지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당하게 원상회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85]

---

81) Meier/Rössner/Trüg/Wulf, Jugendgerichtsgesetz: Handkommentar, Nomos, 2014, S.475.
82) Meier/Rössner/Trüg/Wulf, Jugendgerichtsgesetz: Handkommentar, Nomos, 2014, S.475.
83) Meier/Rössner/Trüg/Wulf, Jugendgerichtsgesetz: Handkommentar, Nomos, 2014, S.475.
84) 박재윤/김병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한독간의 비교", 법학논총 제9집,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59쪽.
85) Meier/Rössner/Trüg/Wulf, Jugendgerichtsgesetz: Handkommentar, Nomos, 2014, S.476.

5. 베를린주 다이버전 행정규칙에 따른「소년법원법」제45조의 적용

가. 개관

「소년법원법」제45조는 경미하거나 중죄에 준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의 면제(다이버전)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범행에 교육적으로 대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86]「소년법원법」제45조 제1항은 검사에게「형사소송법」제153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 없이 절차를 중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소년법원법」제45조 제2항은 검사에게 ① 교육조치 또는 피해자와 화해하려는 노력이 범행의 대한 조치로서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조치가 이미 실행되었거나 시작된 경우, 제3항에 따라 판사가 참여해야 할 필요도 없고 정식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는 경우에 형사소추를 면제할 수 있다.「소년법원법」제45조 제3항은 검사에게 판사가 명한 교육처분이 종료한 후에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87]

다이버전 행정규칙에 따르면 경죄뿐만 아니라 중죄에도 다이버전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소년법원법」제45조 및 아래의 기본원칙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소년의 특성을 띠고 있거나 행위 당시에 소년과 다름없다고 볼 만한 청년(Heranwachsende)에게도 적용된다(「소년법원법」제105조 제1항, 제109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년형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검사의 결정권한에 속하는 문제다. 검사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 행정규칙에 나온 대응방안과는 다른 대응방안을 취할 수도 있고, 행정규칙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건에서도「소년법원법」제45조에 따른 절차중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88]

---

86) Diversionsrichtlinienin Berlin, 2014, S.1(https://www.dvjj.de/sites/default/files/medien/imce/documente/themenschwerpunkte/diversionsrichtlinie_berlin_2014.pdf, 2018년 11월 4일 최종검색)

87) Diversionsrichtlinienin Berlin, 2014, S.1(https://www.dvjj.de/sites/default/files/medien/imce/documente/themenschwerpunkte/diversionsrichtlinie_berlin_2014.pdf, 2018년 11월 4일 최종검색)

88) Diversionsrichtlinienin Berlin, 2014, S.1(https://www.dvjj.de/sites/default/files/medien/imce/documente/themenschwerpunkte/diversionsrichtlinie_berlin_2014.pdf, 2018년 11월 4일 최종검색)

나. 적용요건

다이버전절차가 무죄추정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70조가 언제나 「소년법원법」 제45조보다 우선해서 적용된다. 검사는 범죄혐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소년법원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은 소년의 자백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소년이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때에는 다이버전을 하지 않는다.[89] 왜냐하면 소년이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때에는 판사가 정식절차에서 소년이 범행을 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 제45조 제1항의 적용요건

베를린 다이버전 행정규칙에 따르면 「소년법원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교육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형사소추의 면제(절차중지)를 하려면 다음 요건들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90]

1) 인적 적용범위

베를린 다이버전 행정규칙에 따르면 대상자가 초범일 것을 요구하고 재범이라 하더라도 이전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것과 침해된 법익이 유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a) 소년은 초범이어야 한다. 다음 경우는 초범이다.
- 소년이 형사절차에 관련된 적이 없는 경우
- 소년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경우
- 소년에 대한 수사절차가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중지되었던 경우

b) 재범(두 번째 범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에는 저지른 범죄가 「소년법원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경죄여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두 범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넓어야 한다.
- 두 범죄에 의해 침해된 보호법익 또는 두 범죄의 방식이 비슷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89) Diversionsrichtlinienin Berlin, 2014, S.2(https://www.dvjj.de/sites/default/files/medien/imce/documente/themenschwerpunkte/diversionsrichtlinie_berlin_2014.pdf, 2018년 11월 4일 최종검색)
90) Diversionsrichtlinienin Berlin, 2014, S.2(https://www.dvjj.de/sites/default/files/medien/imce/documente/themenschwerpunkte/diversionsrichtlinie_berlin_2014.pdf, 2018년 11월 4일 최종검색)

2) 물적 적용범위

베를린주 다이버전 행정규칙에 따르면 소년법원법 제45조 제1항의 물적 적용범위는 경죄일 뿐만 아니라 책임과 경미한 범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조치를 부과할 필요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91]

a) 경죄여야 한다.

b) 책임이 경미하고 결과도 경미한, 전형적인 청소년 범죄여야 한다. 전형적인 청소년 범죄인가의 여부는 상황과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려 목적과 계획 없이 경솔하게 저지른 행동인지, 인정받으려는 욕구나 호기심처럼 청소년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이 동기가 되어 저지른 행동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해액이 100유로 이하이면 경미한 피해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액이 더 크더라도 사안에 따라 경미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

c) 소년이 특별한 교육조치를 받지 않아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교육조치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다음 경우가 그렇다.
- 범행을 발각하고 수사하는 절차가 소년에게 미친 영향만으로도 이미 소년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년이 자기 범행이 불법임을 깨닫고 범행을 후회한다고 솔직하게 표현한 경우
- 범행이 발생한 지 오래 지났고 그 이후 소년이 재범하지 않고 착실히 생활해 온 경우

라. 제45조 제2항의 적용요건

「소년법원법」 제45조 제2항에서 교육조치를 실행한 후에 하는 형사소추 면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된 때에 하도록 하고 있다.[92]

1) 인적 적용범위

베를린주 다이버전 행정규칙에 따르면「소년법원법」제45조 제2항에서의 절차중지보다 중죄의 초범일 것과 재범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a) 제1항에 따라 절차중지를 할 수 없는 중죄의 초범이어야 한다.

b) 재범, 특히 제1항에 따라 절차중지를 할 수 있는 죄의 재범이어야 한다.

---

91) Meier/Rössner/Trüg/Wulf, Jugendgerichtsgesetz: Handkommentar, Nomos, 2014, S.475.

92) Diversionsrichtlinienin Berlin, 2014, S.2(https://www.dvjj.de/sites/default/files/medien/imce/documente/themenschwerpunkte/diversionsrichtlinie_berlin_2014.pdf, 2018년 11월 4일 최종검색)

2) 물적 적용범위

베를린주 다이버전 행정규칙에 따르면「소년법원법」제45조 제2항에서의 절차중지는 교육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93]

a) 범행이 야기한 손해 및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중죄의 경우에도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b) 소년이 범행 및 그 결과의 불법을 인식하고서 재범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육처분을 한다.

aa) 교육처분은 소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인(예를 들면 보호자, 법정대리인, 교사, 강사, 교관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소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하면 그 외의 다른 사람이 교육할 때보다 소년은 더 강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소년에게 범행의 불법을 인식시켜 재범하지 않게 하는 데 매우 적절하다. 소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교육처분을 하는 경우 교육처분을 할 때마다 기록을 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bb) 교육처분은 검사 또는 – 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 경찰이 제안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교육처분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cc) 소년전담검사는「소년법원법」제45조 제3항의 교육처분만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소년전담검사의 권한은 제3항에서 정한 법원의 권한을 넘지 못한다. 교육처분이 제재조치나 다름없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데, 다이버전절차는 교육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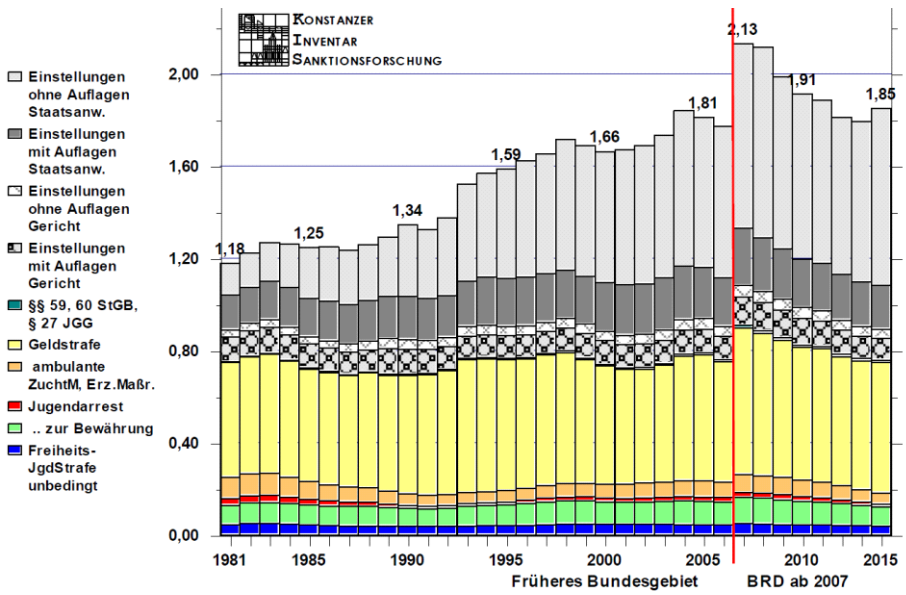
dd) 다음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사과
(2) 실질적 손해배상
(3) 위자료 지급
(4)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인 활동
(5) 가해자-피해자-조정
(6)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7) 공익시설에의 기부
(8) 경찰의 교통교육이나 응급조치코스 수강
(9) 소년사법보조관과의 교육적 대화
(10) 베를린주의 안전과 질서의 보호를 위한 일반법(ASOG)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명령의 이행
(11) 검사 또는 (검사와 협의한) 경찰과의 교육을 위한 대화

ee) 교육조치를 시행하거나 시작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지 않을 것(자백한 경우 이 요건은 불필요하다)
– 소년이 동의할 것
–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반대하지 않을 것

93) Diversionsrichtlinienin Berlin, 2014, S.2-3(https://www.dvjj.de/sites/default/files/medien/imce/documente/themenschwerpunkte/diversionsrichtlinie_berlin_2014.pdf, 2018년 11월 4일 최종검색)

6.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의 실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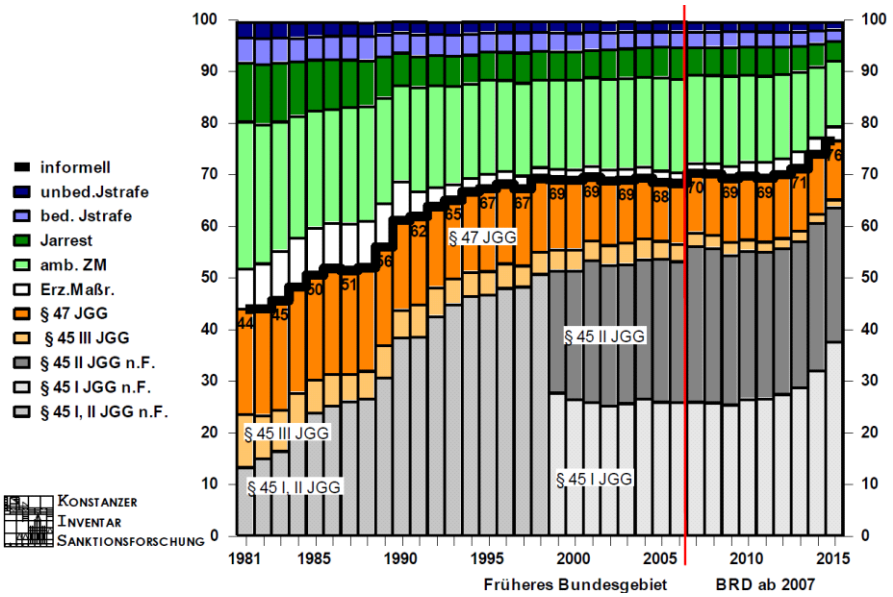
독일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형사소추 통계자료에도 '소년범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절차중지'에 관한 통계는 파악할 수 없었다.[94] 콘스탄츠 대학에서 매년 발간하는 범죄통계에 따르면, 일반형법 또는 소년형법에 따라 유죄판결은 받은 소년범은 1981년 63.7%에서 2015년 36.8%로 감소하였다. 반면, 검사에 의해 다이버전된 대상자 비율은 1981년에 67.4%에서 2015년 89.8%로 증가하였다.[95]



[그림 3-2-1] 독일 일반형법과 소년형법상 제재현황[96]

독일의 소년범에 대한 기소유예 현황을 보면, 제45조의 절차중지 규정에 따른 다이버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유박탈처분인 소년형은 10%~20%에 불과하다.

94) Statistisches Bundesamt, 2016 Rechtspflege: Strafverfolgung, 2017, S.13.
95) Wolfgang Heinz, Kriminalität und Kriminalitätskontrolle in Deutschland: Berichtsstand 2015 im Überblick, 2017, S.84. (http://www.uni-konstanz.de/rtf/kis/Kriminalitaet_und_Kriminalitaetskontrolle_in_Deutschland_Stand_2015.pdf, 2018년 10월 10일 최종검색)
96) Wolfgang Heinz, Kriminalität und Kriminalitätskontrolle in Deutschland: Berichtsstand 2015 im Überblick, 2017, S.85. (http://www.uni-konstanz.de/rtf/kis/Kriminalitaet_und_Kriminalitaetskontrolle_in_Deutschland_Stand_2015.pdf, 2018년 10월 10일 최종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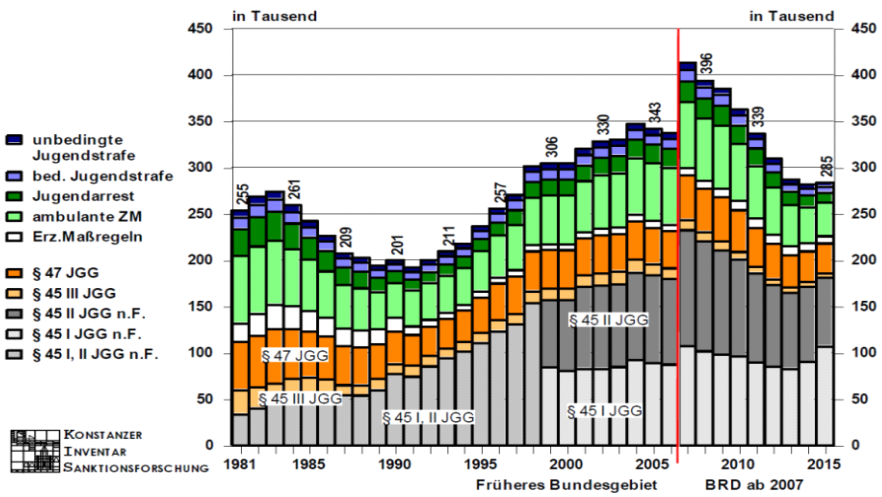
[그림 3-2-2] 독일 소년형법상 공식·비공식 제재형태(상대치)[97]

독일 소년형법상 제재 실무상 공식적·비공식적 제재행태는 시기별로 통계수집의 차이[98]가 있는 점을 감안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0년 소년법원법상 전체 제재는 306,433건이었고, 이 중 비공식적 제재는 68.8%(210,567건)이었고, 소년법원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검사의 절차 중지는 51.2%(156,712건), 제45조 제1항에 의한 검사의 절차중지는 26.2%(80,304건), 제45조 제2항에 의한 절차중지는 25.0%(76,408건), 제45조 제3항에 의한 절차 중지는 4.1%(12,453건)이었다. 2015년 소년법원법상 전체 제재는 285,175건으로 2000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 중 비공식적 제재는 76.4%(217,846건)로 200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5년 소년법원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검사의 절차 중지는 63.4%(180,793건), 제45조 제1항에 의한 검사의 절차중지는 37.4%(106,571건), 제45조 제2항에 의한 절차중지는 26.0%(74,222건), 제45조 제3항에 의한 절차 중지는 1.6%(4,454건)로, 2000년에 비해

97) Wolfgang Heinz, Kriminalität und Kriminalitätskontrolle in Deutschland: Berichtsstand 2015 im Überblick, 2017, S.90. (http://www.uni-konstanz.de/rtf/kis/Kriminalitaet_und_Kriminalitaetskontrolle_in_Deutschland_Stand_2015.pdf, 2018년 10월 10일 최종검색)

98) 본 통계자료는 1981년부터 1994년까지는 서베를린만, 1995년부터 2006년까지는 베를린 전체, 2007년부터는 독일 전체 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제45조 제1항 및 제1항에 의한 검사의 절차 중지, 제45조 제1항에 의한 검사의 절차중지, 제45조 제2항에 의한 절차중지가 모두 늘어난 반면에, 제45조 제3항에 의한 검사의 절차중지는 감소하였다.[99]



[그림 3-2-3] 독일 소년형법상 공식·비공식 제재형태(절대치)[100]

제3절 미국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1. 미국사회의 소년범의 개입에 대한 인식

미국에서는 1960년대 교정주의를 추구했던 교도소가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범죄 증가 등을 이유로 자유형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교도소 밖의 사회에서 범죄인을 처우하는 것이 비용적 측면이나 인도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아 공식적 사법절차의 대안으로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이 도입되었

99) Wolfgang Heinz, Kriminalität und Kriminalitätskontrolle in Deutschland: Berichtsstand 2015 im Überblick, 2017, S.89. (http://www.uni-konstanz.de/rtf/kis/Kriminalitaet_und_Kriminalitaetskontrolle_in_Deutschland_Stand_2015.pdf, 2018년 10월 10일 최종검색)

100) Wolfgang Heinz, Kriminalität und Kriminalitätskontrolle in Deutschland: Berichtsstand 2015 im Überblick, 2017, S.89. (http://www.uni-konstanz.de/rtf/kis/Kriminalitaet_und_Kriminalitaetskontrolle_in_Deutschland_Stand_2015.pdf, 2018년 10월 10일 최종검색)

다. 비록 범죄소년이라 할지라도 또래집단에서 소외되면 범죄소년의 틀에 맞추어 행동하게 되고, 구금시설에 수용될 경우 더 범죄소년들과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쉽게 된다는 우려에서 출발하였다.[101]

1970년대 '법집행보조위원회(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LEAA)과 소년봉사국(Youth Service Bureau)이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면서 소년다이버전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정책적으로 강화되었고, 전지역에서 다양한 다이버전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활발히 진행되던 다이버전이 1981년 범죄투쟁을 위한 기구인 '법집행보조위원회(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LEAA)'의 해체와 함께 연방자금이 삭감되고 이에 따라 연방재정이 줄어들고, 1980년대 이후 다이버전에 대한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이 늘어나면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이 줄어들었다.[102] 그러나 소년사법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에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한 재정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지위비행자에 대한 비범죄화, 사회내처우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면서 소년범에 대한 다이버전은 다시 부활하였다.[103]

주로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 공식적 사법절차를 통해 대상자가 낙인을 경험하거나 누범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식처리절차에서 배제시키는 다양한 다이버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경찰이 소년범을 체포하거나 접수한 때 조사단계에서 비행내용, 대상소년의 가정환경,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성, 장래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침에 따라 훈방하는 절차가 활발하고[104], 검찰단계에서 하는 다이버전이나 기소유예 형태는 많지 않다.

2. 미국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의 개입범위

미국은 다이버전이 가장 먼저 시작된 국가이고 지금도 다양한 소년범 다이버전이

101) 강석배, 청소년선도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검찰선도유예제도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9쪽.
102) 옥필훈, 소년사법에 있어서 다이버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4쪽.
103) 강석배, 청소년선도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검찰선도유예제도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0쪽.
104) 전지연, "경찰다이버전의 도입필요성과 그 내용",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4, 196쪽.

실시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 소년사법제도는 대부분 소년법원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전담검사의 관여가 많지 않다. 다만, 미국 일부 주에서는 검사에게 사건에 대한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소년사법에서 소년전담검사는 어떤 대상을 기소해야 하고, 어떤 대상을 기소로부터 다이버전 해야 하며, 성인법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년법원에서 적절한 기소재량의 행사는 성인법원에서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고,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법적 전문성, 목적의 일관성, 그리고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 혐의가 있다면 어떠한 형량이 적절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 없이 책임감을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이버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사건에서 가능한 한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청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처우, 피해보상, 공공서비스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기존 보호관찰이나 지역내 서비스기관에 위탁될 수도 있다.[105] 검사의 주된 의무가 정의를 추구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소년의 개별적인 욕구와 관심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106]

소년사법에서 검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주의 이익을 충분히 그리고 충실히 대변하는 한편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피해자, 지역사회의 안전 및 복지도 검사의 주요 관심사이지만 검사는 주된 역할과 지나치게 충돌하지 않는 정도로 소년의 구체적인 상황 및 잠재적 사회복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107] 또한 소년법원이나 성인형사법원에 위탁된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를 위한 서류는 검사가 준비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전국지방검사협회(National District Attorney Association: NDAA)에서 만든 소년사법에 대한 기소기준에서는 공식적으로 기소할 대상인지 기소로부터 다이버전해야 할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108]

---

105) National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National Prosecution Standards Third Edition, NDAA, 2016, p.1 (http://ndaa.org/wp-content/uploads/NDAA-Juvenile-Prosecution-Standards-Revised-11-12-2016-Final.pdf, 2018년 8월 20 최종검색)

106) James C. Backstrom, Gary L. Walker, "The Role of the Prosecutor in Juvenile Justice: Advocacy in the Courtroom and Leadership in the Community", William Mitchell Law Review Vol. 32 Issue3, 2006, p.970.

107) National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National Prosecution Standards Third Edition, NDAA, 2016, p.1 (http://ndaa.org/wp-content/uploads/NDAA-Juvenile-Prosecution-Standards-Revised-11-12-2016-Final.pdf, 2018년 8월 20 최종검색)

108) National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National Prosecution Standards Third Edition, ND

(1) 범죄의 심각성
(2) 범행에 있어 대상소년의 역할(가담정도)
(3) 경찰이나 다른 기관정보에 따른 과거 사건의 특성 및 사건 수, 그 사건에서의 처분결과
(4) 대상 소년의 연령 및 성숙도
(5) 적용가능한 적절한 처우 혹은 서비스
(6) 소년이 유죄, 혹은 기소된 범죄의 가담정도를 인정하는지 여부
(7)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 대상소년이 미치는 위험성 위협정도
(8)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여부
(9) 위탁기관, 피해자, 변호인의 권고사항

기소 및 처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다이버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은 일반대중이 신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적격기준이 공정하고 차별적이지 않으며 적절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대상 소년, 변호인, 부모로 하여금 누가 프로그램에 적절한 대상인지 프로그램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

「Fair and Just Prosecution」[109]에서는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 중 잘 운영되고 있는 몇 가지 유형을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검찰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년범 대상 다이버전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형태로 5가지가 있는데[110], 이를 요약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A, 2016, p.2 (http://ndaa.org/wp-content/uploads/NDAA-Juvenile-Prosecution-Standards-Revised-11-12-2016-Final.pdf, 2018년 8월 20 최종검색)

109) 「Fair and Just Prosecution」는 15년간 연방검사로 재직하였다가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사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Miriam Krinsky가 형사사법 시스템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에 설립한 비영리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 구금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적절하고 인권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원하는 검사들을 교육하고 서로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Huffpost, "If You Want to Totally Change Americas Criminal Justice System", 2018, (https://www.huffingtonpost.com/entry/fair-just-prosecution-criminal-justice-reform_us_5aff5a94e4b0463cdba1e59d, 2018년 11월 7일 최종검색))

110)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1) 워싱턴 D.C.의 『Alternatives to the Court Experience(ACE)』

ACE 프로그램은 지위비행 및 저위험군 범죄(low-level delinquency offense)로 Washington D.C. 지역 소년사법당국으로부터 위탁이 된 17세까지의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소년은 경찰단계에서 체포 이전에 다이버전 되거나, 지위비행자의 경우 검찰청(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OAG))과 법원의 사회서비스부서(Court Social Services)와의 협의 하에 체포 이후 혹은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이버전이 될 수 있다. 검사는 소년의 개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의 다이버전을 결정할 최종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검사가 저위험군 소년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부서와 협의 하에 최종적으로 다이버전을 결정한다.[111]

ACE와 다이버전을 하게 되는 소년의 가족이 협력하여 대상소년의 욕구를 반영하여 6개월간 실시되는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CE의 코디네이터는 선정된 서비스제공자에게 위탁하고, 대상 소년, 가족, 서비스제공자와 다이버전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업무를 진행한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종료 시에는 소년의 참여 정도와 발전된 상황 대한 ACE 보고서가 위탁받은 기관에 전달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6개월간 진행되며 연간 대략 6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12]

Washington D.C.지역에서 형사사건을 기소하는 검사는 사건을 다이버전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검사와 ACE는 정기적으로 사건 진행상황과 재범에 대하여 정보를 나누며, 다이버전 프로그램 이수를 제대로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 기소할 수 있다. 검사는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재범을 판단하는 연간 두 번 발간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추후 어떤 범죄기록이 남지 않거나 소년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되며, 프로그램 이수에 실패하거나 재범을 하는 경우에 대상 소년은 잠재적 기소가능성을 가지고 위탁한 기관에서 다시 이송된다. 이때 체포기록은 삭제되지 않는다.[113] Washington D.C.지역 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첫 번째 분기에 다이버전을 받은 소년의 88%가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51%는 출석이 향상되었고, 81%는 추가적인 사건 발생이 없었으며, 91%는 아동·청소년 기능 평가척도(Child and Adolescent Functional Assessment Scale)에서 이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과 연방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실시되고 있다.[114]

2) 뉴욕 브루클린의 『Project Re-Direct』

Project Re-Direct 프로그램은 조직범죄에 연루된 초범인 14~22세의 남자소년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성범죄, 방화, 살인, 총기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제외하나 총기 소지로 체포된 경우에는 다이버전 될 수 있다. 소년은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유죄협상(plead guilty)할 것이 요구된다. 유죄협상이 한번 이루어지면 최종처분은 연기된다. 검사는 다이버전이 가능한 대상자들에 대

111)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p.10.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112)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p.10.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113)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p.10.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114)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p.10.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한 추가적인 선별작업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 진행 직원에게 위탁한다.[115]

이 프로그램은 18~24개월 동안 진행되며 발찌착용, 직원과의 정기적인 면담, 상담, 비정기적 약물 검사, 교육, 고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는 대상 소년을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위탁하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를 기각(dismiss charge)할 수 있다.[116]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혐의 기각이 되고, 실패하는 경우 구금이 이루어지게 된다. 뉴욕 주의 이 프로그램은 비용감축 측면에 있어 연간 $800,000을 감축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소년 1인당 약 $40,000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117]

3) 워싱턴 킹카운티의 『The 180』

「The 180」 프로그램은 King County의 지역 검사인 Dan Satterberg가 고안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검사들이 기소단계 이전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소년의 범죄행위가 범칙금 정도의 행위이거나, 경범죄, 총과 관련된 경범죄(gross-misdemeanor), 혹은 C등급의 중범죄인 재산범죄, 약물범죄이며 증거가 충분한 경우 공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180 프로그램을 통해 다이버전으로 위탁된다. 소년의 범죄 경력이 과거 한번 정도의 다이버전 위탁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위탁이 가능하다.[118]

「The 180」 프로그램은 연간 대략 400명의 경한 범죄(minor offenses)로 체포된 소년들에 대하여 기소단계 이전에 실시되는 지역사회 기반 개입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반나절동안 진행되는 워크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워크샵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전달자(credible messengers)"가 범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그 후 대상 소년은 그 전달자가 운영하는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 소그룹모임에서 소년은 그들의 범죄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변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한다.[119]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기소되지 않는다. 「The 180」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상 소년의 1년 이내 재범률은 대조군 그룹에 비하여 4% 낮았다. 이 프로그램의 비용은 검찰청(Prosecuting Attorney's Office)에서 지원하고 있다.[120]

---

115)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p.11.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116)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p.11.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117)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p.10.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118)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p.11.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119)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p.11.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120)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p.12.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

4) 캘리포니아의 『Make it Right』

「Make it Right」 프로그램은 처음 중범죄를 저지르고 특정한 비행의 반복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13-17세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소년은 보호관찰 중이거나, 조직에 가담해서는 안 되며, 해당 범죄는 무기와 관련이 없거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대상 소년 및 피해자가 참여에 동의해야 한다.[121]

이 프로그램은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활용하여 대상 소년에게 개인의 행동을 피해와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책임을 느끼게 하고 이러한 상황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 소년과 피해자는 가해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 지역사회, 가족, 그리고 자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그 후 지역사회 기반 사건 담당자는 소년이 그 계획 실행을 완료하는 6개월 동안 소년을 지원한다.[122]

샌프란시스코 지역검사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다. 주 소년부(Juvenile Division)의 담당 검사가 프로그램 적용가능한 모든 사건을 확인하고, 그중 70%가 기소 이전에 「Make It Right」 프로그램으로 다이버전 된다. 검사는 회복적 사법 회합에 참여하지 않으며 그 이후 진행되는 법원절차에서 회합에서 지득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회합과 지역사회기반 사례관리는 샌프란시스코 검찰청의 보조금으로, 두 개의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된다.[123]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게 되면 기소되지 않지만 기록을 바꾸거나 삭제하지는 않는다. 소년사법시스템상의 기록은 기밀정보로 남게 된다. 무작위 통제집단을 활용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한 14명 중 2명의 소년이 재범하였고, 이는 대조군 재범률이 55%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이다.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은 지역재단이나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124]

5) 뉴욕 브루클린과 브롱스의 『Common Justice』

뉴욕 브루클린과 브롱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Common Justice」 프로그램은 구금에 대한 대안적 프로그램이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회복적 사법을 기반으로 한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폭력, 강도를 포함하여 여러 유형의 범죄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유할 수 있는 기회, 가해소년에 대해서는 긴 시간 구금대신 잘못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브루클린, 브롱스 지역 대법원에 중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16~26세 가해 소년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전 연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피고인의 사건은 엄격하게

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121)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p.12.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122)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p.12.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123)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p.12.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124)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p.13.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선별되며, 범죄 피해자, 검찰청, Common Justice[125]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 프로그램은 성범죄, 가정폭력범죄, 배우자폭력 등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26]

「Common Justice」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이수 자격을 갖춘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해당 사건은 대화단계를 진행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가 치유할 수 있고, 가능하면 옳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범죄의) 영향, 욕구,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화 단계에서 모든 당사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의미 있는 방법으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금 대신 다른 제재방법을 적용한다. 담당직원은 가해소년이 구금의 대안 프로그램에 대한 동의로 진행되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및 기타 사항들의 준수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Common Justice」는 광범위한 영역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인구학적 대상은 유색인종의 남자이다. 놀랍게도 피해자의 70%가 유색인종 남자였다.[127]

「Common Justice」는 브루클린 지역검찰청(Brooklyn District Attorney's Office), 브루클린 대법원(Brooklyn Supreme Court), 브롱스 지역검찰청(Bronx District Attorney's Office), 브롱스 대법원(Bronx Supreme Court)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성인 형사법원 시스템의 유관기관들의 지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프로젝트로, 심각하고 폭력적인 범죄사건에 대하여 참여를 기반으로 가해자에게는 구금을 대신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책임성을 느끼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128]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소년은 일시구금을 포함한 다양한 점진적 제재(graduated sanctions)의 대상이 되며, 궁극적으로 계약 위반으로 프로그램으로부터 제외된다. 각 준수사항을 잘 이행한 대상자는 「Common Justice」 프로그램을 졸업하게 된다. 그러면 중죄의 혐의는 없어지며, 조건적 석방이 부과된다.[129]

「Common Justice」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 가해소년 75명, 피해자 108명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새로운 재범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중단한 가해소년은 7%이하였고, 프로그램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소년은 11%이었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소년의 77%는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높은 프로그램 이수율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는 접근이 어려운 대상인 피해자, 유색인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제시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이지만 프로그램 담당자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측면(특히 트라우마 증상에 있어 호전(자기보고조사))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125) 「Common Justice」는 지역검찰청과 연계하여 구금에 대한 대안프로그램과 심각한 범죄, 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The Marshall Project, "Is Prison the Answer to Violence?", 2017. (https://www.themarshallproject.org/2017/02/16/is-prison-the-answer-to-violence,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126)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p.13.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127)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p.13.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128)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p.13.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129)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p.13.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 재단 기부금 및 기타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130]

4. 미국 조건부 기소유예의 운영현황

미국에서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FBI 통합범죄보고서(Uniform Crime Reports: UCR)에 따르면, 2016년 18세 이하 소년범의 체포 건수는 856,130건으로, 2007년도 체포건수와 비교하면 58.0%가 감소하였다. 폭력범죄의 경우 전체 범죄율의 11.7%, 재산범죄의 경우 전체 범죄율의 18.0%를 차지하였다.[131] 살인(murder), 강간(forcible rape), 강도(robbery), 폭행(aggravated assault)을 포함한 폭력범죄는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증가하다가 1995년부터 대폭 감소하여 2005년 이후부터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132]

〈표 3-3-1〉 2016년 미국 소년범 체포건수(추정치)[133]

구 분		체포 건수	추이변화 (2007-2016)
총계		856,130	-58%
폭력범죄 (Violent Crime)	살인 및 무과실 고살 (murder and nonnegligent manslaughter)	850	-36%
	강간[134](rape)	-	-
	강도(Robbery)	19,200	-44%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	28,060	-51%
재산범죄 (Property Crime)	주거침입 절도(Burglary)	31,990	-61%

130)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p.14.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131) OJJDP Statistical Briefing Book(https://www.ojjdp.gov/ojstatbb/crime/qa05101.asp, 2018.9.25. 최종검색)

132)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125.

133) OJJDP Statistical Briefing Book(https://www.ojjdp.gov/ojstatbb/crime/qa05101.asp, 2018.9.25. 최종검색)

구 분		체포 건수	추이변화 (2007-2016)
	절도(Larceny-theft)	134,180	-55%
	자동차절도(Motor vehicle theft)	15,720	-47%
	방화(Arson)	2,550	-64%
기타 (Non index)	기타 폭행(other assault)	128,930	-47%
	위조 및 화폐위조(Forgery and Counterfeiting)	1,220	-61%
	사기(Fraud)	4,640	-36%
	횡령(Embezzlement)	680	-59%
	장물(Stolen property)	10,890	-51%
	공공기물파손(vandalism)	39,120	-65%
	무기소지(Weapons(carrying, possessing))	19,420	-55%
	성매매 및 상업적 범죄 (Prostitution and commercialized vice)	500	-67%
	약물남용위반(Drug abuse violations)	98,490	-50%
	도박(Gambling)	260	-87%
	가족·아동대상 범죄 (Offenses against the family and children)	3,470	-40%
	음주운전(Driving under the influence)	6,480	-64%
	주류법 위반(Liquor law violations)	36,710	-74%
	주취(Drunkenness)	4,770	-72%
	무질서행위(Disorderly conduct)	65,710	-68%
	부랑행위(Vagrancy)	780	-80%
	외출제한 위반 및 배회행위(Curfew and loitering)	34,180	-76%
	교통범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범죄 (All other offenses (except traffic))	155,180	-59%

미국 공식통계에서 경찰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체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검사가 얼마나 많은 다이버전(우리의 조건부 기소유예

134) 2013년 초, FBI은 강간의 개념범위를 확장하여 죄명 및 그에 대한 설명에 "forcible"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새로운 정의에서는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NIBRS)의 범죄분류방법에 따라 강간 외에도 동성애간 성행위(sodomy), 성폭행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경찰청은 강간 체포건수의 경우 경찰청마다 보고실무의 차이로 인해 미국 전체 통계에서 "강간(rape)" 및 "성범죄(sex offense)"에 대한 통계자료는 2012년 이후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forcible rape"을 포함하고 있는 Violent Crime Index에서도 이 범주에 속하는 통계는 2012년 이후로 가능하지 않아 과거 이전 통계와의 비교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에 해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공식통계가 없어 미국 검찰에서 얼마나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다이버전을 실시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제4절 영국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1. 영국사회의 소년범의 개입에 대한 인식

지난 40년 동안 영국에서 실시된 연구와 실무경험상 범죄소년이 공식적 형사사법절차를 경험하는 것이 해당 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범으로 나아가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소년의 범죄행동은 그들 개인적인 환경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범죄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해당 소년이 직면한 근본적인 어려움들을 다루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영국에서 범죄소년에 대한 개입을 위한 다이버전은 다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35]

첫째, 다이버전은 범죄가 기소를 할만큼 충분히 심각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적절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결정은 절차지연이 소년의 의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어진 구체적인 기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가능한 정보는 해당 소년 및 가족과 연계되어 있는 주요한 모든 기관으로부터 신뢰성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넷째, 소년이 보다 긍정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재범이 예방될 수 있도록 가족의 개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소년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은 그들의 구체적인 니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이버전 프로그램 적합성에 대한 추정은 성별이나 장애의 내용과 같은 일반적인 특징만으로 이루어져서는 공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대한 소년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관련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형사사법국(Criminal Justice Board)에서 활용가능 해야 한다.

135) The Scottish Government, Diversion from Prosecution Toolkit-Diverting Young People from Prosecution, 2011, p.4(https://www.gov.scot/Resource/Doc/351942/0118158.pdf, 2018년 11월 1일 최종검색).

2. 영국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의 개입범위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의 개입과 관련하여 잉글랜드 웨일즈 지역의 자료는 찾을 수 없었고, 스코틀랜드의 경우 다이버전과 관련하여 소개한 자료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영국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은 본래 경찰이 수사 후 기소까지 하는 형태이었으나 기소가 남용됨으로 인해 공소유지만을 목적으로 1985년부터 『왕립검찰제도(Crown Prosecution Service)』가 도입되었고, 이후 검사의 개입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지역검사가 할 수 있는 공식적 결정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다이버전(diversion from prosecution)이 가능하다. 경찰에서 사건을 보고받으면, 검사는 해당 소년을 지역사회 복지팀(local social work team)으로 다이버전 할지 다른 서비스기관으로 다이버전 할지 결정할 수 있다.[136]

소년전담검사는 구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해당 소년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혹은 프로그램 참여와 함께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특정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는 소년이 공식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 벗어나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줄 기회를 주는 요소로 작용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해 검사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137]

소년 다이버전은 모든 16-17세의 소년에게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는 있지만 기소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① 과거 다이버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이 경우 소년이 다이버전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② 다이버전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고 계속 특정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기소가 적절한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③ 지역사회 피해배상명령(Community Payback Order)과 같은 법원이 내린 처분의 대상자인

136) The Scottish Government, Diversion from Prosecution Toolkit-Diverting Young People from Prosecution, 2011, p.2(https://www.gov.scot/Resource/Doc/351942/0118158.pdf, 2018년 11월 1일 최종검색).

137) The Scottish Government, Diversion from Prosecution Toolkit-Diverting Young People from Prosecution, 2011, p.2(https://www.gov.scot/Resource/Doc/351942/0118158.pdf, 2018년 11월 1일 최종검색).

경우 다이버전 대상으로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138]

다이버전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범죄유형도 있지만, 특정 사례의 경우 사실관계 및 상황이 특히 소년의 연령을 고려할 때 다이버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성범죄, 가정폭력범죄, 증오범죄를 위한 활용 가능한 적합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다이버전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유형에 대한 다이버전은 최근의 기소 관련 정책에 따라 중앙검사(Procurators Fiscal in Crown Office and Procurator Fiscal Service: COPFS)가 지방검사와 상의한 후에 실시된다.[139]

기소단계의 다이버전은 범죄소년에 대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팀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140] 이를 위해서는 검찰과 서비스제공자사이의 소년의 다이버전을 위해 관련된 민감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정보공유에는 국가기관,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교환도 포함된다.

3.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 유형

기소 포기(Waiver)의 경우 지방검사가 해당 소년이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소를 하지 않는다. 기소유예(Deferred prosecution)의 경우 우선 다이버전이 완료되면 소년이 해당 서비스를 받았는지, 프로그램의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소년의 다이버전 프로그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소가 유예되는 형태이다. 주로 기소유예(Deferred prosecution)의 형태로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검사가 실시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141]

---

138) The Scottish Government, Diversion from Prosecution Toolkit-Diverting Young People from Prosecution, 2011, p.5(https://www.gov.scot/Resource/Doc/351942/0118158.pdf, 2018년 11월 1일 최종검색).

139) The Scottish Government, Diversion from Prosecution Toolkit-Diverting Young People from Prosecution, 2011, p.5.(https://www.gov.scot/Resource/Doc/351942/0118158.pdf, 2018년 11월 1일 최종검색).

140) The Scottish Government, Diversion from Prosecution Toolkit-Diverting Young People from Prosecution, 2011, p.9(https://www.gov.scot/Resource/Doc/351942/0118158.pdf, 2018년 11월 1일 최종검색).

141) The Scottish Government, Diversion from Prosecution Toolkit-Diverting Young People from Prosecution, 2011, p.7(https://www.gov.scot/Resource/Doc/351942/0118158.pdf, 2018년 11월 1일 최종검색).

1) 사회사업 다이버전(Social Work Diversion)

지방검사가 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조언,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내 사회복지 부서에 위탁하는 형태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행과 관련된 문제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이 프로그램에서 소년은 소년의 필요에 따라 개인적 혹은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강하게 되는데, 범죄행동, 알코올 교육, 약물교육, 성건강, 사회적 기술, 고용 및 연수기회, 문제해결과 같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기관에서는 필요한 경우 소방교육도 실시된다.[142]
다이버전 프로그램 실무자들은 어떤 것들이 다이버전을 통해 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평가함에 있어서 담당 검사와 함께 협의해야 한다. 다른 기관들이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관련 자원들을 제공해야 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143]

2)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Restorative Justice Programs)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대체로 회복적사법의 절차에서는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자산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의 목적은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소년의 문제행동을 다루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절차가 진행이 되면 각 당사자들은 절차 중에 철회도 가능하다.[144]

3) 자동차범죄 다이버전(Motoring Offence Diversion)

자동차범죄관련 다이버전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대의 운전자들이 부족한 운전기술에 대해 인지하고 가능하다면 사건이 법원까지 갈 필요 없이 문제된 행동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개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의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사회복지 부서에서 활용하는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다.[145]

4) 정신건강관련 다이버전(Psychiatric Diversion)

정신건강 관련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경우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 범죄소년들은 정신건강관련 서비스나 심리서비스로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146]

---

142) The Scottish Government, Diversion from Prosecution Toolkit-Diverting Young People from Prosecution, 2011, p.7(https://www.gov.scot/Resource/Doc/351942/0118158.pdf, 2018년 11월 1일 최종검색).
143) The Scottish Government, Diversion from Prosecution Toolkit-Diverting Young People from Prosecution, 2011, p.7(https://www.gov.scot/Resource/Doc/351942/0118158.pdf, 2018년 11월 1일 최종검색).
144) The Scottish Government, Diversion from Prosecution Toolkit-Diverting Young People from Prosecution, 2011, p.7(https://www.gov.scot/Resource/Doc/351942/0118158.pdf, 2018년 11월 1일 최종검색).
145) The Scottish Government, Diversion from Prosecution Toolkit-Diverting Young People from Prosecution, 2011, p.7(https://www.gov.scot/Resource/Doc/351942/0118158.pdf, 2018년 11월 1일 최종검색).
146) The Scottish Government, Diversion from Prosecution Toolkit-Diverting Young People from Prosecution, 2011, p.7(https://www.gov.scot/Resource/Doc/351942/0118158.pdf, 2018년 11월 1일 최종검색).

4. 영국 조건부 기소유예의 운영현황

영국의 경우 공식통계자료에서 경찰단계 진입한 소년범의 수와 법원에 유죄선고를 받은 소년범의 비율만 제공되고 있어 검찰단계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몇 명인지 파악하기 어렵다.[147] 다만 여기서는 영국 소년사법에 진입한 대상소년범의 수를 살펴보는 것으로 추산해볼 수밖에 없다.

영국 소년사법 내 소년범의 수를 살펴보면, 소년사법에 초기 진입한 소년(First Time Entrants: FTEs)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6년 3월 말과 비교하면, 유죄판결을 받은 소년은 83%, 주의(caution) 또는 유죄판결(court conviction)을 받은 소년은 81% 감소하였고, 구금 소년범의 수도 66% 감소하였다.[148] 재범자와 재범의 총수도 전년 대비 각각 15%, 10%씩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에, 범죄소년의 12개월 내 재범율은 37.9%로, 2006년 3월말보다는 4.3% 높아졌지만, 전년에 비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149]

2017년 3월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지역 소년사법시스템에서 10세~17세에 해당하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영국 소년사법체계에 처음 진입한 소년범의 수는 16,500명으로 전년도대비 11% 감소하고, 주의처분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소년범의 수는 전년도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50] 구금된 소년의 수는 10년 전에 비하면 74% 감소하였으나 전년도와 비교하면 7%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2016년 3월 기준 소년범의 재범률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4.0%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151]

---

147) 소년사법절차에서 다이버전 되는 소년범의 수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Youth Justice Board, Youth Justice Statistics 2016/17 England and Wales, Youth Justice Board, 2018, p5).

148) U.K. Youth Justice Board/Ministry of Justice, Youth Justice Statistics 2016 to 17 England and Wales Statistics Bulletin, Ministry of Justice, 2018, p.11.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76072/youth_justice_statistics_2016-17.pdf, 2018년 7월 14일 최종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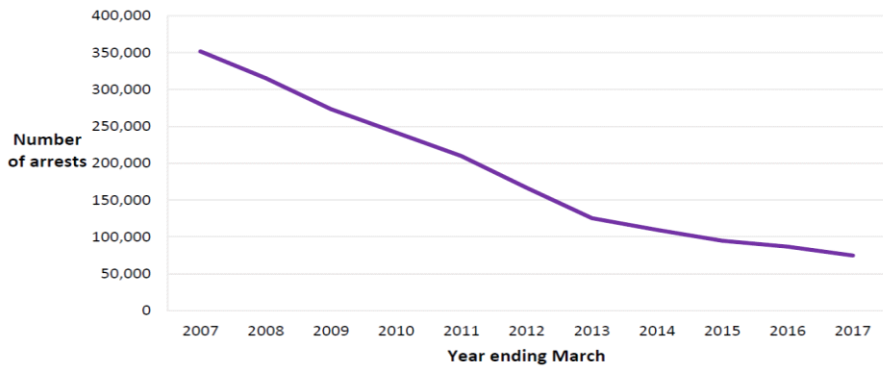
149) U.K. Youth Justice Board/Ministry of Justice, Youth Justice Statistics 2016 to 17 England and Wales Statistics Bulletin, Ministry of Justice, 2018, p.11.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76072/youth_justice_statistics_2016-17.pdf, 2018년 7월 14일 최종검색)

150) U.K. Youth Justice Board/Ministry of Justice, Youth Justice Statistics 2016/17 England and Wales Statistics Bulletin, Ministry of Justice, 2018, p.11.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76072/youth_justice_statistics_2016-17.pdf, 2018년 7월 14일 최종검색)

151) U.K. Youth Justice Board/Ministry of Justice, Youth Justice Statistics 2016 to 17 England

1) 체포(Arrests)와 주의(youth cautions) 현황

2017년 3월 말 경찰 통계에 의하면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74,800명의 10세~17세의 소년이 체포되었는데, 이는 2007년에 비하여 79% 감소한 수치이다.[152] 동일한 시기에 주의처분(Youth Caution)을 받은 소년은 13,500명으로, 이는 2007년을 기준으로는 90%, 전년도 기준으로 20% 감소한 수치이다.[153]



[그림 3-4-1] 최근 10년간 소년 경고 추이[154]

2) 초기진입(First Time Entrants: FTEs) 현황

10~17세 소년사법단계에 처음 진입한 초범의 수는 감소하여, 2017년 3월 말에는 초범이 16,500명으로 2007년을 기준 85%, 전년도 기준 11% 감소하였다. 2017년 3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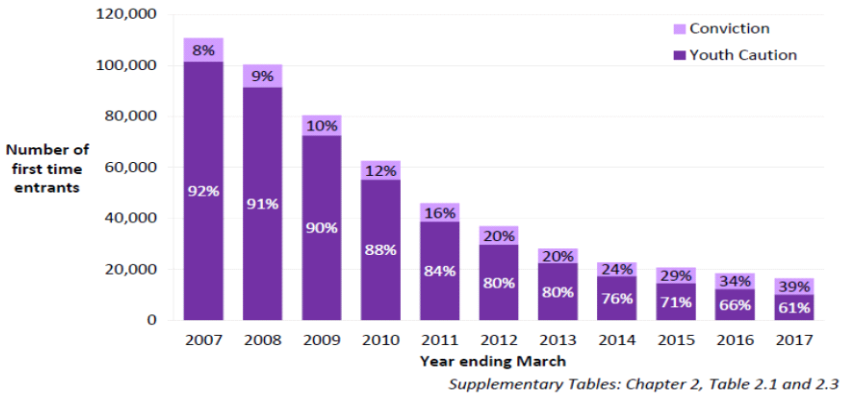
and Wales Statistics Bulletin, Ministry of Justice, 2018, p.11.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76072/youth_justice_statistics_2016-17.pdf, 2018년 7월 14일 최종검색)

152) U.K. Youth Justice Board/Ministry of Justice, Youth Justice Statistics 2016/17 England and Wales Statistics Bulletin, Ministry of Justice, 2018, p.6.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76072/youth_justice_statistics_2016-17.pdf, 2018년 7월 14일 최종검색)

153) U.K. Youth Justice Board/Ministry of Justice, Youth Justice Statistics 2016/17 England and Wales Statistics Bulletin, Ministry of Justice, 2018, pp.7-8.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76072/youth_justice_statistics_2016-17.pdf, 2018년 7월 14일 최종검색)

154) U.K. Youth Justice Board/Ministry of Justice, Youth Justice Statistics 2016 to 17 England and Wales Statistics Bulletin, Ministry of Justice, 2018, p.11.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76072/youth_justice_statistics_2016-17.pdf, 2018년 7월 14일 최종검색)

말 기준 16,500명 중 61%인 약 10,100명이 주의처분을 받았고, 6,500명은 기소되어 사회내처우(community sentence)를 받았다.[155] 초범자 중 기소비율은 2007년 3월에 8%로, 전년도에 비해 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2] 소년사법단계에 들어온 초기진입자 추이[156]

제5절 일본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형태

1. 일본사회의 소년범의 개입에 대한 인식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몇 가지 강력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년범에 대한 온정주의에 대한 비판과 강력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사회에서는 소년에 대한 복지적 개입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보호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소년사법단계에서의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

155) U.K. Youth Justice Board/Ministry of Justice, Youth Justice Statistics 2016/17 England and Wales Statistics Bulletin, Ministry of Justice, 2018, p.9.(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76072/youth_justice_statistics_2016-17.pdf, 2018년 7월 14일 최종검색)

156) U.K. Youth Justice Board/Ministry of Justice, Youth Justice Statistics 2016/17 England and Wales Statistics Bulletin, Ministry of Justice, 2018, p.9.(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76072/youth_justice_statistics_2016-17.pdf, 2018년 7월 14일 최종검색)

일본은 1993년 山形사건과 1997년의 神戸아동살인사건 등 소년흉악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년사건처리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년범죄 예방시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157] 2000년 소년법(평성12년 법률 제142호) 개정을 통해 ① 소년사건 처분 방식의 재검토, ② 소년심판 인정절차의 적정화, ③ 피해자 배려의 충실 등이 다수 개선되었다.

일본은 2003년 소년육성추진본부에서 마련한 「소년육성대책대강(少年育成対策大綱)」, 2003년 12월 범죄대책각료회의에서 채택한 '범죄에 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犯罪に強い社会の実現のための行動計画)'을 통해 소년범에 대한 개입을 보다 실질화하였다.

재범률 상승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2012년 7월 범죄대책각료회의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결정하여 정부가 나서 재범방지에 관한 수치목표를 내세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2014년 12월 범죄대책각료회의에서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하자(犯罪に戻らない・戻さない)』선언 결정을 하고, 2016년 12월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서 지역의 상황에 따른 재범방지시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다. '재범방지추진계획등 검토회(再犯防止推進計画等検討会)'에서는 법무대신이 「재범방지추진에 관한 법률(再犯の防止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 제7조 제3항에 기초하여 작성된 재범방지추진계획안(再犯防止推進計画の案)을 통해 교도소 등 재입소율 20%이상 감소를 목표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158]

2. 일본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 개입범위

일본은 1922년 형사소송법에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에 의한 기소유예제도를 인정하고 단순형 다이버전을 활발하게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경찰단계에서 다이버전의 일환으로 검사의 기소유예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경죄처분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159]

---

157) 河村 博, 少年法その動向と実務, 東京法令出版, 2010, 18頁

158) 再犯防止推進計画等検討会(http://www.moj.go.jp/hisho/seisakuhyouka/hisho04_00050.html, 2018년 10월 14일 최종검색)

159) 심상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8쪽.

1955년부터 검사가 피의자에게 보호관찰과 유사한 특별보도조치를 받을 것으로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를 실시하였는데, 20세를 갓 넘긴 청년을 대상으로만 하였지만, 이 제도는 일본 갱생보호 발전과정에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었다.[160] 1961년에는 요코하마 지방검찰청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내규를 마련하여 모범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이 제도는 10년 만에 사라졌다.[161]

일본 소년사법제도에서는 경찰이 소년사건에 관해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가정재판소에 송치하는 전건송치주의(全件送致主義)를 취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하여 검사가 이를 다시 가정재판소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162] 따라서 우리나라 소년사법과 같이 검사가 소년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기소유예도 할 수 없다.

다만, 조사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이 판명된 때(제19조 제2항)와 조사 결과 죄질 등에 비추어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제20조)에 검찰에 송치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검사 송치' 또는 '역송(逆送)'이라고 부른다. 형사처분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 형사처분에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송치의 절차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역송'할 수 있다.[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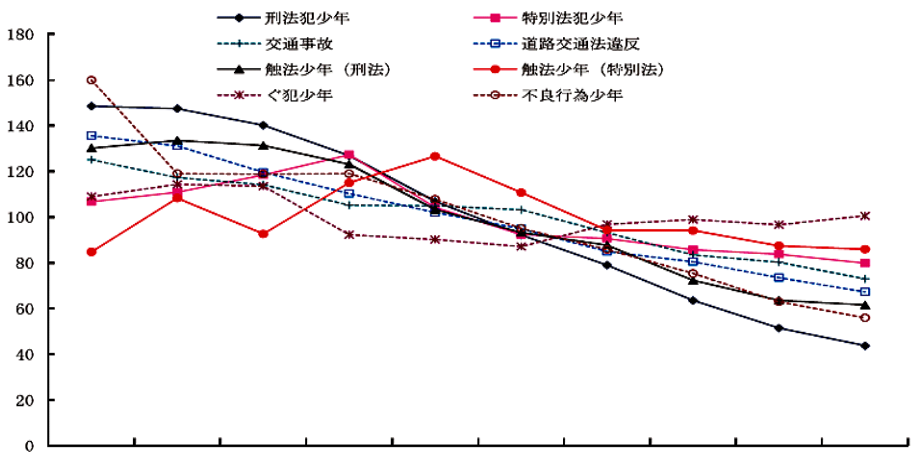
실무상 경찰이 소년사건을 검찰 또는 가정재판소에 송치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훈방이 정착되었고,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바로 가정재판소에 간이 송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164]

3. 일본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개입 현황

경찰 통계에 따르면, 형법범 소년의 검거인원은 2004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17년에는 2,6797명이었다. 또한 이 중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160) 강석배, 청소년선도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검찰선도유예제도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3쪽.
161) 강석배, 청소년선도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검찰선도유예제도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3쪽.
162) 丸山雅夫, 少年法講義, 成文堂, 2016, 68-69頁.
163) 武内謙治, 少年法講義, 日本評論社, 2015, 414-415頁.
164) 김승구, 외국의 소년범죄처리제도와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59쪽.

검거인원도 2010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고, 2013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별형법소년은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에5,041명으로 6년 연속 감소하였다.[165] 이는 청소년인구의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형법범인 소년의 인구비(동 연령층 인구 1000명당 검거인원)도 2010년 이후 7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인구 이외의 요인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66]



[그림 3-5-1] 경찰의 비행소년 검거인원 추이[167]

2016년 검찰에 신규 수리된 범죄소년 사건 수는 72,274명이고, 이 중 형버범은 37,482명, 과실운전치사상범은 1,6407명, 특별법범이 18,385명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을 제외한 특별법범은 2,802명이었다.[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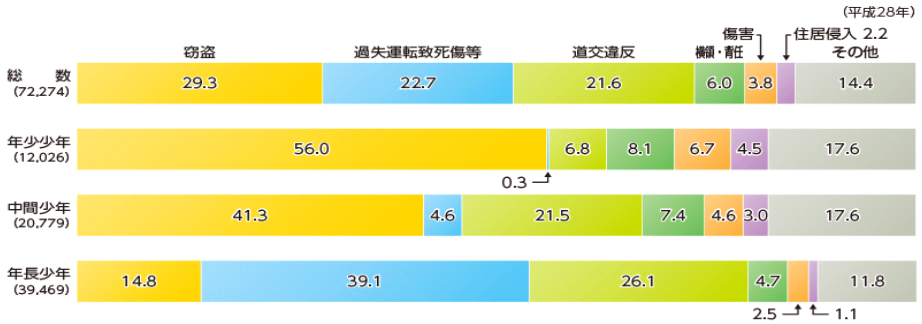
---

165)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平成29年中における少年の補導及び保護の概況, 1頁(http://www.npa.go.jp/safetylife/syonen/hodouhogo_gaikyou/H29.pdf, 2018년 10월 14일 최종검색)

166)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平成28 年における少年非行､児童虐待及び児童の性的搾取等の状況について, 2017, 1頁 (https://www.npa.go.jp/safetylife/syonen/hikou_gyakutai_sakusyu/H28.pdf, 2017.11.25. 최종검색); 内匠舞, 少年法の適用年齢引下げをめぐる議論, 国立国会図書館 調査と情報 ISSUE BRIEF No.963, 2017, 10頁.

167)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平成29年中における少年の補導及び保護の概況, 1頁(http://www.npa.go.jp/safetylife/syonen/hodouhogo_gaikyou/H29.pdf, 2018년 10월 14일 최종검색)

168) 法務省, 平成29年版 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jp/64/nfm/n64_2_3_2_2_1.html, 2018년 10월 14일 최종검색)



[그림 3-5-2] 검찰의 범죄소년 수리인원[169]

검사가 소년사건을 가정재판소에 송치할 때에는 어떠한 처분이 상당한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붙일 수 있다. 검사처분의견은 다음과 같다.

区分		計	検察官送致〔刑事処分相当〕	少年院送致	保護観察	その他
総数						
年少少年 (7,924)	検察官	100.0	0.1	5.8	38.4	52.8
	家庭裁判所	100.0	–	7.8	33.2	59.0
中間少年 (11,764)	検察官	100.0	0.3	18.1	36.0	45.6
	家庭裁判所	100.0	0.1	12.2	31.9	55.8
年長少年 (9,789)	検察官	100.0	4.8	24.5	34.8	35.9
	家庭裁判所	100.0	4.4	16.4	29.3	49.9
刑法犯						
年少少年 (7,561)	検察官	100.0	0.1	9.0	38.5	52.6
	家庭裁判所	100.0	–	8.0	33.4	58.6
中間少年 (10,904)	検察官	100.0	0.3	18.3	35.4	46.0
	家庭裁判所	100.0	0.1	12.2	31.6	56.1
年長少年 (8,404)	検察官	100.0	4.3	25.7	33.8	36.1
	家庭裁判所	100.0	4.1	17.1	29.0	49.8
殺人・強盗						
年少少年 (43)	検察官	100.0	2.3	65.1	20.9	11.6
	家庭裁判所	100.0	–	41.9	37.2	20.9
中間少年 (76)	検察官	100.0	6.6	78.9	14.5	–
	家庭裁判所	100.0	1.3	69.7	19.7	9.2
年長少年 (128)	検察官	100.0	46.9	48.4	3.1	1.6
	家庭裁判所	100.0	4.7	60.2	20.3	14.8
道交違反を除く特別法犯						
年少少年 (363)	検察官	100.0	0.3	4.7	38.8	56.2
	家庭裁判所	100.0	–	5.0	28.4	66.7
中間少年 (860)	検察官	100.0	0.7	15.9	43.8	39.5
	家庭裁判所	100.0	–	11.6	36.4	52.0
年長少年 (1,385)	検察官	100.0	7.9	17.3	40.6	34.3
	家庭裁判所	100.0	6.1	12.1	30.9	50.9

[그림 3-5-3] 가정재판소에서 검찰로 역송된 소년수[170]

169) 法務省, 平成29年版 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jp/64/nfm/n64_2_3_2_2_1.html, 2018년 10월 14일 최종검색)

제6절 외국의 조건부기소유예 형태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 검사에게 소년사건에 대한 판단재량 자체가 많지 않고 입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독일의 사례에 불과하다. 독일은 우리와 동일한 기소유예 형태는 없으나, 소년법원법 제45조의 절차중지 방식을 통해 검찰단계의 조건부 기소유예와 유사한 결과를 얻고 있다.. 독일은 소년사건의 2/3 이상이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 소년범죄 대부분이 암수범죄이고 청소년일탈문제는 광범위하게 발생된다는 점, 소년의 성장과 함께 대부분 문제가 해소된다는 점, 조기에 형사적인 개입이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다이버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검사가 절차중지의 판단을 위해서는 사회교육적 조치 등을 하기 위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검사에게 명령권한이 없고 교육처분을 제안하거나 준비하는 역할만 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절차중지의 형태는 주로 가해자-피해자 조정 방식이나, 주변인을 통한 대화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는데, 가해자-피해자 조정방식은 가해소년이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공감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새로운 제도로 도입하여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명확한 법률 근거가 없고, 경찰에서 법원으로 소년사건이 이송되는 것이 대체적인 원칙이라 검찰의 개입범위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단계에서 다양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기소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경우 전국지방검사협회에서 다이버전을 위한 주요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각 주별로 우수사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저위험군 대상, 조직범죄 연루 초범, 중범죄자 등으로 범죄유형별로 개입할 프로그램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뉴욕 브루클린과 브롱스에서 실시되는「Common Justice」프로그램은 회복적 사법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와 연계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

170) 法務省, 平成29年版 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jp/64/nfm/n64_2_3_2_2_1.html, 2018년 10월 14일 최종검색)

영국의 경우도 소년전담검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고, 검사가 다이버전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부서에 위탁하는 Social Work Diversion, Motoring Offence Diversion, Psychiatric Diversion 등이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전건송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지고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역송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지라 검사의 역할이 크지 않고, 우리와 같이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게 없다. 다만, 과거 기소편의주의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의 실패 경험에 비추어 우리의 조건부 기소유예가 장기간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 4 장

대상소년 및 종사자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분석

권 해 수

제4장

대상소년 및 종사자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분석

제1절 대상소년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가 「소년사건 처리지침」 상의 대상소년 분류에 따라 개선가능성이 있는 대상소년에게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기소유예 대상소년의 특성 및 비행력은 어떠한지,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운영실태 및 관련기관간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현황 검토를 바탕으로 다양화에 필요한 개별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에 맞게 각각의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과 후속조치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조사 방법

가. 조사대상 및 방법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참여 소년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등 세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참여 대상자의 경우 법무부와 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전국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대상자는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임의표집하였다.

다음으로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참여 대상자의 경우 법무부의 원활한 협조를 받아 전국 보호관찰소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협조 공문을 전달하였다. 이후 보호관찰소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에 의해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때 대상자의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임의 표집하였다.

총 조사기간은 모두 4주~6주 정도가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진의 검수를 거쳐 코딩작업을 마무리한 후 SPSS 통계 패키지 2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나. 조사 내용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참여 소년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 영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설문조사의 여섯 가지 영역은 (1) 인구사회학적 배경, (2) 비행경력, (3) 기소유예 처분 명령 이전 활동, (4) 이번 기소유예 참여 현황, (5) 이번 처분 및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 대한 인식, (6) 조건부 기소유예 성과 인식 등이다. 참여대상자 설문지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2종류로 제작되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재학 여부', '가족사항', '가정경제수준', '주거형태'를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비행경험〕은 '첫 경찰 체포 나이', '경찰 체포 횟수', '기소유예처분 횟수 및 유형', '보호처분 횟수 및 유형'을 파악하였다. 이후 '기소유예 처음 집단', '기소유예 반복집단', '기소유예와 보호처분 중복 집단'으로 구분하여 주요 변인에 대한 차이 분석을 하였다.

〔기소유예 처분 명령 이전 활동〕에서는 기소유예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처분을 받기 전에 검사결정전 조사를 받았는가?', '담당검사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가?', '담당검사로부터 처분을 받을 때 부모님(혹은 보호자)이 함께 출석했는가?'를 확인하였다.

〔이번 기소유예 참여 현황〕에서는 '이번 처분 비행명', '담당선생님과 연락빈도', '만남 빈도', '만남 장소', '1회 만남 시 소요시간', '담당선생님으로부터 도움받은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번 기소유예 처분 및 참여 과정 경험〕에서는 탈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참고하여 '이번 처분의 공정성', '담당 선생님(담당실무자)의 인격적 대우', '재통합적 수치심(사회에서 아는 사람들이 내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봐 두렵다)'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2: 거의 아니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였다.

〔기소유예 성과 인식〕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개인 노력', '담당선생님과의 만남에 대한 만족도', '본인의 참여도', '기소유예 담당선생님으로부터 도움 받은 내용 및 도움 정도'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2: 거의 아니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였다.

〈표 4-1-1〉 대상소년 설문문항 구성 체계

항목	기소유예처분 대상자
인구사회학적 배경	• 성별, 연령, 학력(교육수준) • 학업중단 여부, 보호자 유형 • 가정의 경제적 수준, 주거형태
비행 경력	• 최초 경찰체포 연령 및 체포 횟수 • 기소유예 횟수 및 유형 • 보호처분 횟수 및 유형
기소유예 처분 명령 이전 활동	• 처분 이전 검사결정전조사 유무 • 담당검사로부터 처분 이유에 대해 설명듣기 • 처분 받을 당시 보호자 동반 출석 유무
기소유예 참여 현황	• 이번 처분 비행명 • 담당선생님과 연락 횟수(선도조건부) • 담당선생님과 면담 장소(선도조건부) • 담당선생님과 면담 횟수 및 1회 면담 시간 • 교육 일수 및 이수프로그램 종류(교육조건부) • 담당선생님으로부터 도움 받은 내용
기소유예 처분 및 참여 과정 경험	• 처분 공정성 • 담당선생님(직원)의 인격적 대우(태도) • 재통합적 수치심
이번 기소유예 참여 현황	• 본인의 참여도 • 담당선생님과의 만남 만족도 • 교육프로그램 만족도(교육조건부) • 재범방지를 위한 본인의 노력 • 담당선생님의 서비스 도움 정도 • 기소유예 처분의 재범 예방 효과에 대한 인식 • 본인이 재범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

3. 주요 결과

가. 대상소년 사회인구학적 배경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건부 기소유예 참여자는 총 582명으로, '법사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8.4%(107명),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49.8%(290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31.8%(185명)로 집계되었다. '남자'의 비율이 78.5%(457명), '여자'의 비율이 21.5%(125명)로 '남자'의 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 연령을 살펴본 결과 '16-17세'가 50.3%(286명), '14-15세'가 27.1%(154명), '18세-19세'가 21.8%(124명), '13세 미만'이 0.9%(5명)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재학'이 53.7%(31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재학 이하'가 23.1%(134명)로 높았다. 학업중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재학 중'이 85.5%(496명)이었으며, '학업중단'은 14.5%(84명)였다.

참여자들의 보호자는 전체의 71.0%가 '친부모'이고, 13.3%가 '친어머니', 7.4%가 '친아버지'로 나타났으며, '법사랑 선도조건부' 참여자의 경우 '조부모' 응답 비율(9.3%, 10명)이 타 유형에 비해 많았다. 가족의 경제 수준은 전체의 대다수(72.0%)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부유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4.1%(82명)이었다. 마지막으로 주거 형태는 전체의 92.9%가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고 답했다.

〈표 4-1-2〉 참여자 인적사항

(단위: 명, %)

구분		전체	법사랑 선도조건부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교육조건부
성별	남	457 (78.5)	72 (67.3)	235 (81.0)	150 (81.1)
	여	125 (21.5)	35 (32.7)	55 (19.0)	35 (18.9)
연령	13세 미만	5 (0.9)	0 (0.0)	0 (0.0)	5 (2.8)
	14-15세	154 (27.1)	32 (31.1)	66 (23.2)	56 (30.9)
	16-17세	286 (50.3)	57 (55.3)	134 (47.0)	95 (52.5)
	18-19세	124 (21.8)	14 (13.6)	85 (29.8)	25 (13.8)
교육수준	중학교재학 이하	134 (23.1)	31 (29.0)	52 (18.1)	51 (27.7)
	중학교 졸업	12 (2.1)	3 (2.8)	4 (1.4)	5 (2.7)
	고등학교 중퇴	63 (10.9)	8 (7.5)	41 (14.2)	14 (7.6)
	고등학교 재학	311 (53.7)	59 (55.1)	151 (52.4)	101 (54.9)

구분		전체	법사랑 선도조건부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교육조건부
	고등학교 졸업	37 (6.4)	4 (3.7)	23 (8.0)	10 (5.4)
	(전문)대학 중퇴, 휴학, 재학	22 (3.8)	2 (1.9)	17 (5.9)	3 (1.6)
학업 중단 여부	학업중단	84 (14.5)	10 (9.4)	51 (17.6)	23 (12.5)
	재학 중	496 (85.5)	96 (90.6)	239 (82.4)	161 (87.5)
보호자	친부모	413 (71.0)	66 (61.7)	204 (70.3)	143 (77.3)
	친어머니	76 (13.3)	16 (15)	41 (14.1)	19 (10.3)
	친아버지	43 (7.4)	7 (6.5)	26 (9.0)	10 (5.4)
	친모와 계부	17 (2.9)	5 (4.7)	7 (2.4)	5 (2.7)
	친부와 계모	6 (1.0)	2 (1.9)	1 (0.3)	3 (1.6)
	조부모	18 (3.1)	10 (9.3)	7 (2.4)	1 (0.5)
	친척	2 (0.3)	0 (0.0)	1 (0.3)	1 (0.5)
	양부모	1 (0.2)	0 (0.0)	1 (0.3)	0 (0.0)
	기타	6 (1.0)	1 (0.9)	2 (0.7)	3 (1.6)
경제수준	매우 가난	10 (1.7)	2 (1.9)	6 (2.1)	2 (1.1)
	가난	65 (11.2)	15 (14.0)	36 (12.4)	14 (7.6)
	보통	419 (72)	78 (72.9)	208 (71.7)	133 (71.9)
	부유	82 (14.1)	12 (11.2)	39 (13.4)	31 (16.8)
	매우 부유	6 (1.0)	0 (0.0)	1 (0.3)	5 (2.7)
주거 형태	가족과 함께 거주	539 (92.9)	100 (93.5)	265 (91.7)	174 (94.6)
	혼자 자취	25 (4.3)	2 (1.9)	17 (5.9)	6 (3.3)
	동성친구, 선후배와 거주	7 (1.2)	2 (1.9)	3 (1.0)	2 (1.1)
	이성친구와 동거	1 (0.2)	0 (0.0)	1 (0.3)	0 (0.0)
	보호시설 거주	8 (1.4)	3 (2.8)	3 (1.0)	2 (1.1)

나. 대상소년의 비행 경력

1) 비행 경력

비행 경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첫 경찰 체포 나이, 경찰체포 횟수, 기소유예횟수, 보호처분 횟수 등으로 세분화하여 '비행 경험'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첫 체포 나이는 '16~17세'가 42.9%(199명), '14~15세'가 36.2%(168명), '18~19세'가 14.4%(67명),

'13세 미만'이 6.5%(3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체포 횟수는 '1번'이 50.3%(228명), '2번'이 23.8%(108명), '4번 이상'이 14.8%(67명), '3번'이 11.0%(50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소유예 횟수는 '1번'이 66.5%(387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번'이 23.9%(139명), '3번 이상'이 9.6%(56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처분 횟수에서는 '없다'가 61.5%(358명), '1번'이 28.0%(163명), '2번'이 7.2%(42명), '3번 이상'이 3.3%(1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3〉 기소유예 대상자의 비행 경력

(단위 : 명, %)

구분		전체	법사랑 선도조건부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교육조건부
첫 체포나이	13세 미만	30 (6.5)	6 (7.0)	13 (5.6)	11 (7.6)
	14-15세	168 (36.2)	29 (33.7)	87 (37.3)	52 (35.9)
	16-17세	199 (42.9)	41 (47.7)	94 (40.3)	64 (44.1)
	18-19세	67 (14.4)	10 (11.6)	39 (16.7)	18 (12.4)
경찰체포 횟수	1번	228 (50.3)	51 (62.2)	99 (43.6)	78 (54.2)
	2번	108 (23.8)	9 (11.0)	72 (31.7)	27 (18.8)
	3번	50 (11.0)	10 (12.2)	21 (9.3)	19 (13.2)
	4번 이상	67 (14.8)	12 (14.6)	35 (15.4)	20 (13.9)
이번포함기 소유예 횟수	1번	387 (66.5)	83 (77.6)	168 (57.9)	136 (73.5)
	2번	139 (23.9)	15 (14.0)	87 (30.0)	37 (20.0)
	3번 이상	56 (9.6)	9 (8.4)	35 (12.1)	12 (6.5)
보호처분 횟수	없다	358 (61.5)	68 (63.6)	132 (45.5)	158 (85.4)
	1번	163 (28)	33 (30.8)	112 (38.6)	18 (9.7)
	2번	42 (7.2)	5 (4.7)	32 (11.0)	5 (2.7)
	3번 이상	19 (3.3)	1 (0.9)	14 (4.8)	4 (2.2)

2) 과거 기소유예 처분 유형

이번 처분을 제외하고, 과거에 처분 받은 기소유예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단순 기소유예'가 54.8%(92명)로 가장 많았고 이후 '보호관찰선도조건부'와 '교육조건부'가 각 14.9%(25명), '법사랑선도조건부'가 8.3%(14명), '상담(치료) 조건부'가 7.1%(12명)를 차지했다.

〈표 4-1-4〉 기소유예 처분 유형 (중복응답)

(단위 : 명, %)

유형	전체	법사랑 선도조건부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교육조건부
단순기소유예	92 (54.8)	21(63.6)	48(65.8)	23(67.6)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14 (8.3)	2(6.1)	10(13.7)	2(5.9)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25 (14.9)	5(15.2)	14(19.2)	6(17.6)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25 (14.9)	6(18.2)	12(16.4)	7(20.6)
상담(치료) 조건부	12 (7.1)	3(9.1)	8(5.7)	1(0.7)

3) 과거 보호처분 유형

지금까지 받은 보호처분 유형에 대해 살펴본 결과 '4호'가 58.7%(105명), '1호'가 56.4%(101명)로 높았고, 다음으로 '2호' 28.5%(51명), '3호' 27.4%(49명)로 나타났다. 보호처분은 2~3개가 병합 처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5〉 과거 보호처분 유형 (중복응답)

(단위 : 명, %)

유형	전체	유형	전체
1호	101 (56.4)	6호	3 (1.7)
2호	51 (28.5)	7호	1 (0.6)
3호	49 (27.4)	8호	5 (2.8)
4호	105 (58.7)	9호	1 (0.6)
5호	15 (8.4)	10호	0(0.0)

4) 기소유예 참여 유형

기존 기소유예 처분 및 보호처분 유형을 통합하여 기소유예 참여 유형을 살펴본 결과, '기소유예가 처음'인 응답자가 45.0%(262명)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와 보호처분을 반복'하고 있는 응답자가 37.8%(220명), '기소유예를 반복'하고 있는 응답자가 17.2%(100명)로 나타났다. 〈표 4-1-3〉에서 이번을 포함하여 기소유예가 처음인 응답자가 387명이었는데, 〈표 4-1-6〉에서 '기소유예가 처음인 형태'의 26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125명(전체 응답자의 21.5%)은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고 이번에 기소유예 처분

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사랑선도조건부' 대상자와 '교육조건부' 대상자는 기소유예가 처음인 경우가 많았으나(법사랑 52.3%; 교육조건부 67.0%),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대상자의 경우 보호관찰 처분을 이미 받은 경험자가 54.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비행유형 집단 비교

(단위 : 명, %)

구분	전체	법사랑 선도조건부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음	262 (45.0)	56 (52.3)	82 (28.3)	124 (67.0)
기소유예 반복	100 (17.2)	13 (12.1)	51 (17.6)	36 (19.5)
보호처분과 기소유예 반복	220 (37.8)	38 (35.5)	157 (54.1)	25 (13.5)

다. 기소유예 처분 명령 이전 활동

이번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을 받기 전 검사결정전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42.7%(247명)가 '모르겠다'고 답했고, 35.9%는 '아니오', 21.4%는 '예'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들에게 검사결정전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거나, 시행되더라도 충분한 설명 고지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담당 검사로부터 처분을 받을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참여자의 86.4%(503명)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처분명령을 받을 때 부모님이나 법적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참여자의 88.5%(515명)이 '예'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대다수가 보호자와 동행한 상태에서 검사로부터 조건부기소유예 처분 명령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7〉 기소유예 처분 명령 이전 활동

(단위 : 명, %)

구분		전체	법사랑 선도조건부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교육조건부
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듣기	예	503 (86.4)	94 (87.9)	254 (87.6)	155 (83.8)
	아니오	15 (2.6)	1 (0.9)	5 (1.7)	9 (4.9)
	모르겠다	64 (11.0)	12 (11.2)	31 (10.7)	21 (11.4)
처분 시 보호자 동행	예	515 (88.5)	93 (86.9)	266 (91.7)	156 (84.3)
	아니오	38 (6.5)	8 (7.5)	12 (4.1)	18 (9.7)
	모르겠다	29 (5.0)	6 (5.6)	12 (4.1)	11 (5.9)
검사결정전 조사 경험	예	124 (21.4)	18 (16.8)	82 (28.3)	24 (13.2)
	아니오	208 (35.9)	48 (44.9)	66 (22.8)	94 (51.6)
	모르겠다	247 (42.7)	41 (38.3)	142 (49.0)	64 (35.2)

라. 이번 기소유예 프로그램 참여 경험

1) 이번 기소유예 처분 비행명

'이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당시 비행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도 및 특수절도'가 36%, '(공동)폭행 및 상해'가 26.5%로 나타났고,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음주운전' 15.1%, '사기' 4.6%, '성폭행 및 강간' 2.6%, '야간건조물침입' 0.9%, '보호관찰법 위반' 0.4% 순으로 나타났다. 기소유예 세 유형 간 참여자의 비행명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8〉 이번 기소유예 처분 시 비행명 (중복응답)

(단위 : 명, %)

이번 처분명	전체	법사랑 선도조건부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교육조건부
절도, 특수절도	205 (36.0)	63(43.8)	96(33.7)	46(35.0)
사기	26 (4.6)	3(2.9)	19(6.7)	4(2.2)
(공동)폭행, 상해	151 (26.5)	27(25.7)	81(28.4)	43(23.9)
성폭행, 강간	15 (2.6)	1(0.2)	8(2.8)	6(3.3)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86 (15.1)	13(12.4)	45(15.8)	28(15.6)

이번 처분명	전체	법사랑 선도조건부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교육조건부
보호관찰법 위반	2 (0.4)	0(0.0)	2(0.7)	0(0.0)
야간건조물침입	5 (0.9)	1(1.0)	3(1.1)	3(1.1)
기타	125 (21.9)	24(22.9)	57(20.0)	57(20.0)

2) 담당 선생님과 연락 빈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참여자를 대상으로 '담당 선생님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보호관찰 선도조건부'의 경우 '1개월에 한 번'이 가장 높은 56.6%를 보였으며, 이후 '전혀 하지 않음' 15.7%, '2주에 한 번' 14.7%로 나타났다. '법사랑 선도조건부'의 경우 '1개월에 한 번' 31.1%, '1주에 한 번' 26.2%, '2주에 한 번' 17.5%, '기타' 15.5%로 나타났다.

〈표 4-1-9〉 선도조건부 담당 선생님과 연락 빈도

(단위 : 명, %)

구분	전체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법사랑 선도조건부
1주에 한 번	54 (13.9)	27 (9.4)	27 (26.2)
2주에 한 번	60 (15.4)	42 (14.7)	18 (17.5)
1개월에 한 번	194 (49.9)	162 (56.6)	32 (31.1)
2개월에 한 번	1 (0.3)	0 (0.0)	1 (1.0)
전혀 하지 않음	54 (13.9)	45 (15.7)	9 (8.7)
기타	26 (6.7)	10 (3.5)	16 (15.5)

3) 선도조건부 담당 선생님과 만남 빈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와 담당 선생님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보호관찰 선도조건부'는 '1개월에 한 번'이 74.5%, '법사랑 선도조건부'는 '1개월에 한 번'이 52.4%로 두 집단 모두 '1개월에 한 번'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선도조건부 대상자들은 처분 유형과 상관없이 1개월마다 1회씩의 만남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10〉 선도조건부 담당 선생님과 만남 빈도

(단위 : 명, %)

구분	전체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법사랑 선도조건부
1주에 한 번	28 (7.2)	18 (6.3)	10 (9.7)
2주에 한 번	61 (15.7)	42 (14.7)	19 (18.4)
1개월에 한 번	267 (68.6)	213 (74.5)	54 (52.4)
2개월에 한 번	1 (0.3)	0 (0.0)	1 (1.0)
전혀 만나지 않음	20 (5.1)	11 (3.8)	9 (8.7)
기타	12 (3.1)	2 (0.7)	10 (9.7)

4) 선도조건부 담당 선생님과 만나는 장소

'선도조건부 참여자들이 담당 선생님과 주로 만나는 장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호관찰 선도조건부'의 경우 '보호관찰소'가 96.8%로 압도적인 반면, '법사랑 선도조건부'는 '식당(음식점)'이 22.9%, '기타' 21.9%로 높았고 이후 '카페(커피숍)'이 15.6%, '자택(소년)'이 14.6%, '검찰청 내 상담실'이 13.5%, '보호관찰소'가 9.4%, '길거리/공원'이 6.3% 순으로 나타났다.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대상자들은 보호관찰소 혹은 상담실과 같은 통제적인 장소보다는 카페, 식당, 길거리 등 자유롭고 외부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장소에서 면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표 4-1-11〉 선도조건부 담당 선생님과 만남 장소 (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전체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법사랑 선도조건부
보호관찰소	282 (74.6)	273 (96.8)	9 (9.4)
검찰청 내 상담실	16 (4.2)	3 (1.1)	13 (13.5)
카페(커피숍)	16 (4.2)	1 (0.4)	15 (15.6)
식당(음식점)	23 (6.1)	1 (0.4)	22 (22.9)
길거리/공원	7 (1.9)	1 (0.4)	6 (6.3)
자택(소년)	21 (5.6)	7 (2.5)	14 (14.6)
자택(담당선생님)	2 (0.5)	2 (0.7)	0 (0.0)
기타	24 (6.3)	3 (1.1)	21 (21.9)

5) 1회 만남 시간

'담당 선생님과 1회 평균 만남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법사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20~30분' 26.0%, '30분~40분' 24.0%로 나타났고,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10~20분' 44.9%, '20~30분' 2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12〉 선도조건부 담당선생님과 1회 만남 시간

(단위 : 명, %)

구분	전체	법사랑 선도조건부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10분 이내	30 (5.7)	0 (0.0)	22 (7.7)
10~20분	145 (27.7)	8 (8.0)	129 (44.9)
20~30분	117 (22.3)	26 (26.0)	83 (28.9)
30~40분	40 (7.6)	24 (24.0)	15 (5.2)
40~50분	22 (4.2)	14 (14.0)	7 (2.4)
50분 이상	26 (5.0)	18 (18.0)	7 (2.4)
해당사항 없음	92 (17.6)	4 (4.0)	4 (1.4)
모르겠음	52 (9.9)	6 (6.0)	20 (7.0)

6) 교육조건부 교육기간 및 참여 프로그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받고 있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기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5일' 47.8%, '3일' 42.9%, '1일' 3.8%, '기타' 3.3%, '4일' 2.2%로 조사되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받고 있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프로그램 종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도비행예방프로그램' 67.2%, '폭력예방프로그램' 63.3%, '교통안전프로그램' 49.4%, '성비행예방프로그램' 49.4%, '중독예방프로그램' 4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육조건부 대상자들은 이번 처분의 비행명과 상관없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13〉 교육조건부 교육 기간 및 이수프로그램

(단위 : 명, %)

교육기간		참여(이수) 프로그램	
1일	7 (3.8)	폭력예방	114 (63.3)
3일	79 (42.9)	절도비행예방	121 (67.2)
4일	4 (2.2)	교통안전	89 (49.4)
5일	88 (47.8)	중독예방	81 (45.0)
기타	6 (3.3)	성비행예방	89 (49.4)
		기타	20 (11.1)

7) 담당선생님으로부터 도움 받은 내용

'기소유예 담당 선생님 또는 센터의 교육과 면담을 통해 어떤 도움을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규칙적인 생활 관리' 40.8%, '법의식 향상' 89.4%, '인정과 격려' 36.3%, '진로 및 진학지도' 31.8% 순으로 나타났다. '법사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서는 '인정과 격려'가 59.1%, '규칙적인 생활관리'가 41.9%로 나타났으며,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규칙적인 생활관리'가 48.0%, '인정과 격려'가 34.4%로 높은 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법의식 향상'이 55.6%, '진로 및 진학지도'가 29.4%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4-1-14〉 기소유예 담당선생님으로부터 도움 받고 있는 것 (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전체	법사랑 선도조건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교육조건부
물질적 후원	7 (1.4)	2 (2.2)	3 (1.2)	2 (1.3)
진로 및 진학지도	156 (31.8)	37 (39.8)	74 (30.3)	45 (29.4)
취업 알선	13 (2.7)	0 (0.0)	6 (2.5)	7 (4.6)
규칙적인 생활 관리	200 (40.8)	39 (41.9)	117 (48.0)	44 (28.8)
사회재적응 다짐	113 (23.1)	30 (32.3)	50 (20.5)	33 (21.6)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결	4 (0.8)	1 (1.1)	2 (0.8)	1 (0.7)
가족관계 회복	38 (7.8)	21 (22.6)	12 (4.9)	5 (3.3)
인정과 격려	178 (36.3)	55 (59.1)	84 (34.4)	39 (25.5)
자신감 회복	121 (24.7)	36 (38.7)	47 (19.3)	38 (24.8)

구분	전체	법사랑 선도조건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교육조건부
또래 등 대인관계 개선	65 (13.3)	23 (24.7)	26 (10.7)	16 (10.5)
법의식 향상	193 (39.4)	31 (33.3)	77 (31.6)	85 (55.6)

마. 이번 기소유예 처분 및 참여 과정 경험

1) 이번 기소유예 처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이번에 받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공정하다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75.8%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유형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참여자의 78.1%, '교육조건부' 참여자의 75.4%, '법사랑 선도조건부' 참여자의 70.1%가 '공정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15〉 이번 기소유예 처분의 공정성

(단위 : %, 점)

구분	어느 정도 공정했다	매우 공정했다	종합	집단 간 차이	
			공정함	평균 표준편차	F
법사랑	34.6	35.5	70.1	4.04 (.85)	1.25
보호관찰	35.4	42.7	78.1	4.18 (.84)	
교육조건	36.1	39.3	75.4	4.11 (.86)	
전체	35.5	40.3	75.8	4.13 (.85)	

* : p<0.05, ** : p<0.01, *** : p<0.001

2) 담당선생님(직원)의 태도

'처분 집행동안 담당 선생님 혹은 직원들의 태도가 인격적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83.9%가 '담당선생님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세 집단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대상자의 89.2%, '법사랑 선도조건부' 대상자의 80.3%, '교육조건부' 대상자의 77.8%가 처분 집행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세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보호관찰 선도조건부의 대상자들이 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인식하는 수준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77, p<.05).

〈표 4-1-16〉 담당선생님(직원) 인격적 대우

(단위 : %, 점)

구분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집단 간 차이	
			공정함	평균 표준편차	F
법사랑	22.4	57.9	80.3	3.32 (.95)	3.77*
보호관찰	25.0	64.2	89.2	3.49 (.81)	
교육조건	15.8	62.0	77.8	3.26 (1.11)	
전체	21.6	62.3	83.9	3.39 (.95)	

* : p<0.05, ** : p<0.01, *** : p<0.001

바. 이번 기소유예 참여 성과

1) 본인의 적극적 참여도

'이번 기소유예 처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6%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을 비교한 결과, '법사랑 선도조건부' 대상자들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3.83, p<.05).

〈표 4-1-17〉 이번 기소유예에 대한 본인의 참여도

(단위 : %, 점)

구분	대체로 참여한다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종합	집단 간 차이	
			참여한다	평균 (표준편차)	F
법사랑	34.0	40.6	74.6	4.14 (.82)	3.83*
보호관찰	41.3	47.2	88.5	4.35 (.71)	
교육조건	37.7	49.7	87.4	4.37 (.70)	
전체	38.8	46.8	85.6	4.32 (.73)	

* : p<0.05, ** : p<0.01, *** : p<0.001

2) 담당선생님과 만남에 대한 만족도

'담당선생님과 만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6%가 담당선생님과의 만남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간 비교한 결과,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대상자들이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대상자 및 교육조건부 대상자보다 담당선생님과의 만남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03, p<.05).

〈표 4-1-18〉 담당선생님과의 만남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점)

구분	대체로 만족	매우 많이 만족	종합	집단 간 차이	
			만족	평균 (표준편차)	F
법사랑	36.5	35.6	72.1	4.08(.80)	3.03*
보호관찰	45.1	39.9	85.0	4.24(.74)	
교육조건	45.9	32.6	78.5	4.08(.81)	
전체	43.8	36.8	80.6	4.16(.78)	

* : p<0.05, ** : p<0.01, *** : p<0.001

3) 기소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한 본인의 노력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특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전체의 62.7%로 가장 높았고 이후로 '미래에 대한 꿈이나 목표' 49.3%, '규칙적인 생활 태도' 47.4% 순으로 나타났다. 세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19〉 기소유예 기간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한 본인의 노력(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전체	법사랑 선도조건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교육조건부
경제적 자립	42 (7.3)	8 (7.5)	21 (7.3)	13 (7.1)
학업 유지(복교 및 진학)	182 (31.6)	41 (38.7)	98 (34.3)	43 (23.4)
규칙적인 생활 태도	273 (47.4)	49 (46.2)	133 (46.5)	91 (49.5)
비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361 (62.7)	62 (58.5)	178 (62.2)	121 (65.8)
미래에 대한 꿈이나 목표	284 (49.3)	51 (48.1)	135 (47.2)	98 (53.3)

구분	전체	법사랑 선도조건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교육조건부
가족관계 회복	78 (13.5)	12 (11.3)	36 (12.6)	30 (16.3)
대인관계 능력	131 (22.7)	28 (26.4)	56 (19.6)	47 (25.5)
비행친구와의 단절	117 (20.3)	25 (23.6)	59 (20.6)	33 (17.9)
자기조절능력	182 (31.6)	33 (31.1)	78 (27.3)	71 (38.6)
진로탐색 및 취업 준비	126 (21.9)	21 (19.8)	62 (21.7)	43 (23.4)

4) 교육조건부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8%가 교육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0〉 교육조건부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대체로 만족	매우 많이 만족	종합 만족	평균 (표준편차)
교육조건부	47(40.7)	53(29.1)	127(69.8)	3.91(.92)

5) 담당선생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도움 정도

'제공되는 서비스가 기소유예 참여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조사한 결과, '자기조절능력 향상' 72.7%, '규칙적인 생활 태도 습득' 70.6%, '대인관계 능력향상' 66.9%, '진로 탐색 및 취업' 66.8%, '학교 복귀 및 진학' 66.1%, '가족관계 회복' 62.5%, '비행친구 단절' 59.2%, '경제적 자립' 5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21〉 제공되는 서비스의 도움정도

(단위 : %, 점)

내용	대체로	매우 도움	종합	집단 간 차이	
			도움된다	평균 표준편차	F
규칙 생활태도 습득	38.9	31.7	70.6	3.99 (.86)	1.68
대인관계 능력 향상	37.3	29.6	66.9	3.93 (.87)	0.16
자기조절능력 향상	40.0	32.7	72.7	4.01 (.87)	0.48

내용	대체로	매우 도움	종합	집단 간 차이	
			도움된다	평균 표준편차	F
가족 관계 회복	32.9	29.6	62.5	3.84 (.96)	0.41
학업 복귀 및 진학	35.3	31.8	66.1	3.92 (.94)	0.73
진로 탐색 및 취업	35.8	31.0	66.8	3.92 (.91)	0.29
경제적 자립	30.3	23.9	54.2	3.69 (.97)	0.16
비행친구 단절	28.9	30.3	59.2	3.80 (1.00)	3.38*

* : p<0.05, ** : p<0.01, *** : p<0.001

6) 기소유예 프로그램의 재범 예방 효과에 대한 인식

'현재 받고 있는 기소유예 처분이 재범을 예방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5%가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이 재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세 집단 간에 차이를 비교해보면,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참여자들의 83.8%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고, '교육조건부' 참여자들은 77.5%가, '법사랑 선도조건부' 참여자들의 76.7%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1-22〉 기소유예 프로그램의 재범 효과에 대한 인식

(단위 : %, 점)

구분	대체로 효과적	매우 많이 효과적	종합	집단 간 차이	
			효과적임	평균 표준편차	F
법사랑	37.4	39.3	76.7	4.13 (.84)	1.78
보호관찰	43.3	40.5	83.8	4.24 (.71)	
교육조건	38.5	39.0	77.5	4.11 (.90)	
전체	40.7	39.8	80.5	4.18 (.80)	

* : p<0.05, ** : p<0.01, *** : p<0.001

7) 본인이 재범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재범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1%가 '재범하지 않을 것이다'에 응답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응답자들의 89.2%, '법사랑 선도조건부' 응답자들의 81.3%, '교육조건부' 응답자들의 74.5%가 '재범 가능성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세 집단간 비교에서 보호관찰선도조건부 참여

소년이 재범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91, p<.015).

〈표 4-1-23〉 향후 재범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 점)

구분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종합	집단 간 차이	
			재발 가능성 없음	평균 표준편차	F
법사랑	30.8	50.5	81.3	1.74 (.92)	6.91**
보호관찰	30.2	59.0	89.2	1.57 (.85)	
교육조건	28.3	46.2	74.5	1.90 (1.04)	
전체	29.7	53.4	83.1	1.71 (.94)	

* : p<0.05, ** : p<0.01, *** : p<0.001

제2절 조건부 기소유예 종사자 인식조사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기소 유예 참여 경험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기소유예 실무자가 대상 소년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본 제도가 대상소년의 재범 방지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2. 조사 방법

가. 조사대상 및 방법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참여 소년 및 종사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설문조사의 다섯 가지 영역은 (1) 인구사회학적 배경, (2) 조건부 기소유예 관련 업무 현황, (3)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의 실제, (4)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성과, (5)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 방안 이다. 실무자 설문지는 법사랑위원용, 보호관찰소 실무자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실무자용의 3종

류로 제작되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전공', '보유자격증', '근무경력(법사랑선도위원 활동 경력)'을 질문하였다.

〔조건부 기소유예 관련 업무 현황〕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관리 업무 총 기간', '전체 업무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관리가 차지하는 비율', '현재 담당하고 있는 기소유예 대상자 인원 수' 등을 파악하였다.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의 실제〕에서는 '대상자와의 연락 및 만남 빈도'(선도조건부), '대상자 교육시간'(교육조건부)', '대상자 만남 시 주로 하는 활동', '기소유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도움 내용', '기소유예 대상자 관리 시 심혈을 기울이는 것', '대상자와의 만남에 대한 만족도', '기소유예대상자의 참여도에 대한 인식', '기소유예대상자 중에서 기소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는 비율'을 질문하였다. '대상자와의 만남에 대한 만족도'와 '기소유예 대상 소년의 참여도에 대한 인식'은 5점 리커트로 조사하였다.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성과 인식〕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근거, 취지,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소년사법절차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가 다이버전 프로그램(공식사법절차를 최소화하여 소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중간체제 프로그램(시설 내 처우 이전에 보다 엄격한 환경에서 개입하는 것), 이차적 범죄예방 프로그램(재범위험요인을 관리하고 보호요인을 확장하는 것)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실무자의 제공 서비스가 대상소년에게 도움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 '기소유예제도가 대상소년의 재범방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인식', '보호처분 대상자와 비교 시, 기소유예대상자의 비행 재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5점 리커트로 조사하였다.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문제점〕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관리 시 어려움',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개선방안〕에서는 '법사랑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기소유예 유형별 축소 및 확대 방안',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개선 방안'을 조사하였다. 각 문항의 항목은 조건부 기소유예 실무자의 인터뷰 내용 및 기소유예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여 개발되었다.

〈표 4-2-1〉 종사자의 설문문항 구성 체계

항목	기소유예처분 대상자
인구사회학적 배경	• 연령, 성별, 학력(교육수준) • 전공 및 보유자격증 • 보호직 근무경력(혹은 법사랑위원 활동기간)
조건부 기소유예 관련 업무 현황	• 기소유예 대상자 관리 업무 총 기간 • 전체 업무 중 기소유예 대상자 관리 비율 • 현재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 인원수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의 실제	• 대상자와 연락 및 만남 빈도(선도조건부) • 대상자 교육시간(교육조건부) • 대상자 만남 시 주로 하는 활동 •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도움 내용 • 대상자와의 만남에 대한 만족도 • 대상자 관리 시 심혈을 기울이는 항목 • 대상자의 참여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취지 인식	• 제도의 법적 근거, 취지, 목적에 대한 인식 • 소년사법절차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의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성과 인식	• 대상자 만남에 대한 만족도 • 실무자 제공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미치는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 • 기소유예 기간 중 대상자의 재범 비율 • 대상자 재범방지에의 효과 • 기소유예 대상자의 비행 재범위험성의 정도(보호처분과 비교)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문제점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관리 시 어려움 •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문제점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 방안	•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 기소유예 유형별 축소 및 확대 방안 •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개선 방안

3. 주요 결과

가. 기소유예 처분 실무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건부 기소유예 실무자는 총 190명으로 '법사랑위원' 41.6%(79명), '보호관찰관' 28.9%(55명), '비행예방센터 실무자' 29.5%(56명)로 집계되었다. '남자'의 비율은 75.8%(144명), '여자'의 비율은 24.2%(46명)로 남자가 3배 정도 많았다. 연령은 '50대 이상'이 45.3%(86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6.3%(50명), '40대' 21.1%(40명), '20대' 7.4%(14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법사랑 위원의 경우 50대

이상이 84.8%(67명)를 차지하였다.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이 85.8%(166명)를 차지하였다. 근무 기간(법사랑위원의 활동기간)은 전체적으로 보면 3년 이하부터 15년 초과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다만 보호관찰소 실무자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실무자의 경우 '6년 이내'인 실무자가 각각 57.6%(30명), 41.9%(23명)로 법사랑위원(31.6%)에 비해 많았다.

〈표 4-2-2〉 기소유예 실무자 인구학적 정보

(단위: 명, %)

항 목		전체	법사랑위원	보호관찰	비행예방센터
전체		190(100)	79(41.6)	55(28.9)	56(29.5)
성별	남자	144(75.8)	60(75.9)	46(83.6)	38(67.9)
	여자	46(24.2)	19(24.1)	9(16.4)	18(32.1)
연령	20대	14(7.4)	0(0.0.)	8(14.5)	6(10.7)
	30대	50(26.3)	1(1.3)	27(49.1)	22(39.3)
	40대	40(21.1)	11(13.9)	15(27.3)	14(25.0)
	50대 이상	86(45.3)	67(84.8)	5(9.1)	14(25.0)
학력	고졸이하	11(5.8)	4(5.1)	4(7.3)	3(5.4)
	초대졸	16(8.4)	7(8.9)	3(5.5)	6(10.7)
	대졸	137(72.1)	53(67.1)	44(80.0)	40(71.4)
	석사학위	23(12.1)	13(16.5)	4(7.3)	6(10.7)
	박사학위 이상	3(1.6)	2(2.5)	0(0.0)	1(1.8)
근무기간 (활동기간)	3년이하	32(17.5)	8(10.5)	15(28.8)	9(16.4)
	3년초과 6년이하	45(24.6)	16(21.1)	15(28.8)	14(25.5)
	6년초과 9년이하	22(12.0)	7(9.2)	9(17.3)	6(10.9)
	9년초과 12년이하	26(14.2)	18(23.7)	4(7.7)	4(7.3)
	12년초과 15년이하	15(8.2)	9(11.8)	2(3.8)	4(7.3)
	15년초과	43(23.5)	18(23.7)	7(13.5)	18(32.7)

나. 기소유예 관련 업무 현황

조건부기소유예 관리 업무 담당 기간을 살펴본 결과, '3년 이상'이 36.8%(70명)로 가장 많고, '1년 미만'이 33.2%(63명), '2년 이상 3년 미만'이 15.3%(29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14.7%(28명)로 나타났다. 법사랑위원의 경우 '3년 이상'이 67.1%(53명)인 반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실무자의 경우 업무담당기간이 '1년 미만'인 실무자가 53.6%(30명)로 법사랑위원의 관련 업무 기간이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다.

다음으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기소유예 대상자 수는 '1명 이하'가 34.6%(6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6~10명'이 24.3%(45명), '2~5명'이 22.2%(41명), '11~15명'이 12.4%(23명), '16명 이상'이 6.5%(12명)로 나타났다. 법사랑위원의 경우 '6명 이상'인 경우가 13.2%인 반면에 보호관찰관은 4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업무 중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보호관찰관의 경우 63.6%가 '10%'로 응답하였다. 보호관찰관의 경우 법사랑위원에 비해 담당 대상자 수는 많지만,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관리가 차지하는 업무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관의 경우 조직 구조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선도대상자 관리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3〉 직원의 업무현황

(단위: 명, %)

항 목		전체	법사랑	보호관찰	비행예방센터
전체		190(100.0)	79(41.6)	55(28.9)	56(29.5)
업무 담당 기간	1년미만	63(33.2)	13(16.5)	20(36.4)	30(53.6)
	1년이상~2년미만	28(14.7)	4(5.1)	11(20.0)	13(23.2)
	2년이상~3년미만	29(15.3)	9(11.4)	11(20.0)	9(16.1)
	3년이상	70(36.8)	53(67.1)	13(23.6)	4(7.1)
담당 대상자수	1명 이하	64(34.6)	47(61.8)	15(27.3)	2(3.7)
	2~5명	41(22.2)	19(25.0)	15(27.3)	7(13.0)
	6~10명	45(24.3)	4(5.3)	16(29.1)	25(46.3)
	11~15명	23(12.4)	1(1.3)	3(5.5)	19(35.2)
	16명 이상	12(6.5)	5(6.6)	6(10.9)	1(1.9)
전체 업무 중 대상자 관리 비율	10% 이내	79(41.6)	27(34.2)	35(63.6)	17(30.4)
	10~30%	60(31.6)	25(31.6)	14(25.5)	21(37.5)
	31~50%	29(15.3)	14(17.7)	6(10.9)	9(16.1)
	51%이상	22(11.6)	13(16.5)	0(0.0)	9(16.1)

다. 기소유예 운영의 실제

1) 선도조건부 대상자 연락 및 만남 횟수

법사랑위원과 보호관찰소 실무자들 중 45.5%(61명)는 '1개월에 한번', 26.9%(36명)는 '2주에 한번', 19.4%(26명)는 '1주에 한번', 2.2%(3명)는 '2개월에 한번'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매월 1회 이상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남 빈도를 보면 '1개월에 한번' 70.9%(95명), '2주에 한번' 18.7%(25명), '2개월에 한번' 4.5%(6명), '1주에 한번' 3.0%(4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2.6%는 최소 1개월에 1번 이상 만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무자들은 월 1회의 전화 연락과 월 1회 이내의 면담을 하면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4〉 법사랑위원, 보호관찰소 실무자의 대상자 연락 및 만남 횟수

(단위: 명, %)

항목		전체	법사랑	보호관찰
연락 빈도	1주에 한번	26(19.4)	26(32.9)	0(0.0)
	2주에 한번	36(26.9)	27(34.2)	9(16.4)
	1개월에 한번	61(45.5)	20(25.3)	41(74.5)
	2개월에 한번	3(2.2)	1(1.3)	2(3.6)
	전혀 하지 않음	1(0.7)	0(0.0)	1(1.8)
	기타	7(5.2)	5(6.3)	2(3.6)
만남 빈도	1주에 한번	4(3.0)	4(5.1)	0(0.0)
	2주에 한번	25(18.7)	19(24.1)	6(10.9)
	1개월에 한번	95(70.9)	47(59.5)	48(87.3)
	2개월에 한번	6(4.5)	6(7.6)	0(0.0)
	기타	4(3.0)	3(3.8)	1(1.8)
전체		190(100)	79(41.6)	55(28.9)

2) 교육조건부 대상자에 대한 교육 시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실무자들의 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5시간' 58.9%(33명), '6시간~10시간' 16.1(6명), '1시간 이내' 12.5%(7명), '10시간~15시간' 3.6%(2명)

순으로 보고되었으며 '해당사항 없음'도 8.9%(5명) 이었다. 비행예방센터 실무자들의 경우 71.4%가 '1회 이하'의 면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조건부 대상자 관리는 교육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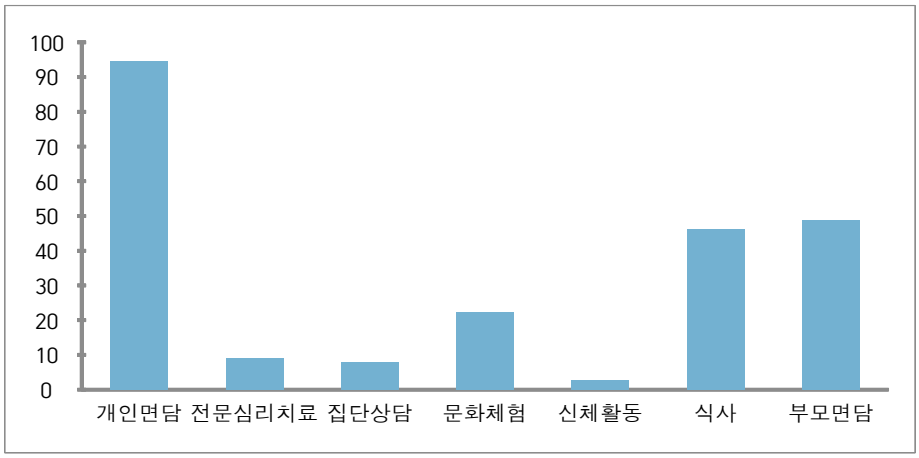
〈표 4-2-5〉 교육조건부 실무자의 교육시간 및 대상자 개별 면담 횟수

(단위: 명, %)

항목		청소년비행예방 센터실무자
교육시간	1시간이내	7(12.5)
	1시간~5시간	33(58.9)
	5시간~10시간	9(16.1)
	10시간~15시간	2(3.6)
	해당사항없음	5(8.9)
개인상담 평균횟수	전혀하지않음	8(14.3)
	1회	21(37.5)
	2회	9(16.1)
	3회	4(7.1)
	4회이상	3(5.4)
	해당사항없음	11(19.6)
전체		56(100)

3) 법사랑위원의 대상자 만남 시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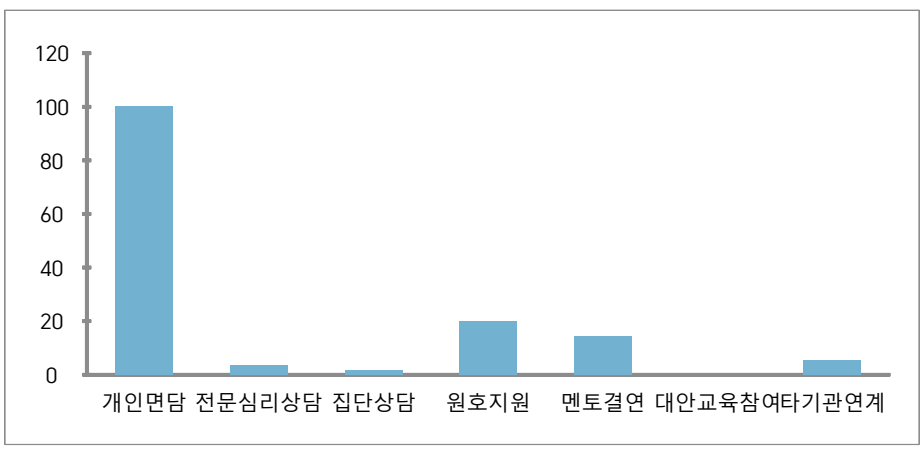
법사랑위원이 대상자와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지 살펴본 결과, '개인면담' 94.7%(72명), '부모면담' 48.7%(37명), '식사' 46.1%(35명), '문화체험' 22.4%(17명), '전문심리치료' 9.2%(7명), '집단상담' 7.9%(6명), '신체활동' 2.6%(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법사랑위원들은 선도조건부 대상자뿐만 아니라 부모 및 환경 수준까지 다차원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1] 법사랑위원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중복응답, %)

4) 보호관찰관의 대상자 만남 시 주요 활동

보호관찰관은 100%(55명)가 '개인면담'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원호지원' 20.0% (11명), '멘토 결연' 14.5%(8명), '타 기관 연계' 5.5%(3명), '전문심리상담' 3.6%(2명), '집단상담' 1.8%(1명)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호관찰관은 개인면담 위주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2] 보호관찰소 실무자 대상자 만남 시 주요활동(중복응답, %)

5)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도움 내용

대상자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법의식 향상' 56.4%(105명), '인정과 격려' 54.8%(102명), '규칙적 생활관리' 49.5%(92명), '자신감 회복' 46.8%(87명), '진로 및 진학지도' 41.9%(78명), '또래 및 대인관계 개선' 36.0%(67명), '가족관계 회복' 32.3%(60명), '사회재적응' 31.2%(58명), '물질적 후원' 14.0%(26명), '전문기관 연결' 9.1%(17명), '취업알선' 6.5%(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을 비교해보면, 법사랑위원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해 '가족관계 회복'(52.6%), '물질적 후원'(28.9%), '취업 알선'(11.8%) 항목의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보호관찰관은 '규칙적 생활 관리'(78.2%)를, 비행예방센터 실무자는 '법의식 향상'(67.3%)을 위해 조력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4-2-6〉 대상자에게 도움제공 항목(중복응답)

(단위: 명, %)

도움항목	전체	법사랑	보호관찰	비행예방센터
물질적 후원	26(14.0)	22(28.9)	4(7.3)	0(0.0)
진로 및 진학지도	78(41.9)	41(53.9)	28(50.9)	9(16.4)
취업알선	12(6.5)	9(11.8)	3(5.5)	0(0.0)
규칙적 생활 관리	92(49.5)	32(42.1)	43(78.2)	17(30.9)
사회 재적응	58(31.2)	27(35.5)	18(32.7)	13(23.6)
전문기관연결	17(9.1)	8(10.5)	5(9.1)	4(7.3)
가족관계회복	60(32.3)	40(52.6)	15(27.3)	5(9.1)
인정과 격려	102(54.8)	44(57.9)	30(54.5)	28(50.9)
자신감회복	87(46.8)	54(71.1)	17(30.9)	16(29.1)
또래대인관계개선	67(36.0)	34(44.7)	26(47.3)	7(12.7)
법의식향상	105(56.4)	29(38.2)	39(70.9)	37(67.3)

6) 대상자 관리 시 심혈을 기울이는 항목

실무자들이 대상자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항목들에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비행하지 않겠다는 의지' 73.8%(138명), '미래 꿈과 목표 설정' 59.4%(111명), '학업 유지 및 진학' 54.5%(102명), '규칙적 생활 태도 형성' 44.9%(84명), '자기조절 능력 향상'

39.6%(74명), '비행친구 단절' 38.5%(72명), '가족 관계 회복' 28.3%(53명),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 28.3%(53명), '대인관계능력 향상' 15.5%(29명), '경제적 자립' 2.7%(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 비교를 해보면, 법사랑위원의 76.3%(58명)는 '미래 꿈과 목표의 설정'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반면, 보호관찰관의 87.3%(48명)와 비행예방센터 실무자의 76.8%(43명)은 '비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상소년들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항목과 실무담당자들이 재범방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항목을 비교한 결과, 대상소년과 실무자 모두 '비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꿈이나 목표 설정', '학업 유지', '규칙적인 생활 태도 습관 형성'의 순서로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대상 소년의 노력과 재범방지를 위해 실무자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항목의 순위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4-2-7〉 대상자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항목(중복응답)

(단위: 명, %)

대상자관리 주요 항목	전체	법사랑	보호관찰	비행예방센터
경제적 자립	5(2.7)	5(6.6)	0(0.0)	0(0.0)
학업 유지	102(54.5)	50(65.8)	38(69.1)	14(25.0)
규칙적 생활 태도	84(44.9)	37(48.7)	31(56.4)	16(28.6)
비행안할 의지	138(73.8)	47(61.8)	48(87.3)	43(76.8)
미래 꿈, 목표	111(59.4)	58(76.3)	25(45.5)	28(50.0)
가족관계회복	53(28.3)	44(57.9)	6(10.9)	3(5.4)
대인관계능력	29(15.5)	21(27.6)	3(5.5)	5(8.9)
비행친구단절	72(38.5)	25(32.9)	32(58.2)	15(26.8)
자기조절능력	74(39.6)	36(47.4)	18(32.7)	20(35.7)
진로탐색취업준비	53(28.3)	29(38.2)	15(27.3)	9(16.1)

7) 실무자가 인식하는 기소유예 대상자의 참여도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들이 실무자와의 만남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법사랑위원의 57.9%, 보호관찰관의 45.5%, 청소년비행예방센

터 실무자의 41.1%는 대상 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세 집단을 비교해 보면, 세 집단 간에 대상 소년의 참여도 인식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대상 소년과 담당실무자 간 대상 소년의 적극적 참여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대상 소년의 인식(M=4.32)은 실무자의 인식(M=3.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상 소년에 비해 실무자들은 대상 소년의 참여 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8〉 실무자가 인식하는 대상자의 참여도

(단위: %, 점)

구분	대체로 적극적	매우 적극적	종합	집단 간 차이	
			적극적이다	평균 (표준편차)	F
법사랑	43.4	14.5	57.9	3.59(.90)	2.23
보호관찰	36.4	9.1	45.5	3.40(.87)	
비행예방센터	39.3	1.8	41.1	3.29(.73)	
전체	40.1	9.1	49.2	3.44(.85)	

*p<.05, **p<.01, ***p<.001

라.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

1)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근거, 취지, 목적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실무자의 85.2%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세 집단 유형간 비교를 해보면, 비행예방센터 실무자(91.0%), 법사랑위원(89.2%), 보호관찰관(72.8%), 의 순으로 본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법사랑위원의 이해 수준은 타 유형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F=4.82, p<.01).

〈표 4-2-9〉 실무자의 제도 이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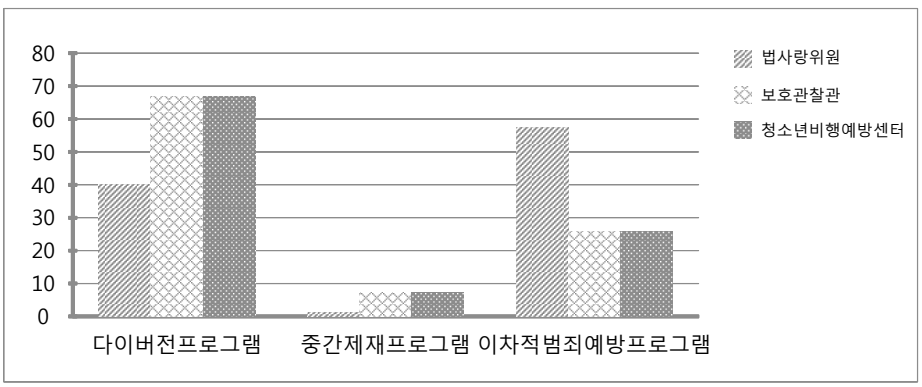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대체로 아는편	매우 아는편	종합	집단 간 차이	
			알고있다	평균(표준편차)	F
법사랑	48.1	41.6	89.2	4.31(.65)	4.82**
보호관찰	47.3	25.5	72.8	3.95(.80)	
비행예방센터	69.6	21.4	91.0	4.13(.54)	
전체	54.3	30.9	85.2	4.15(.69)	

*p<.05, **p<.01, ***p<.001

2)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의의에 대한 실무자 인식

소년사법절차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에 대해 물어본 결과, 법사랑위원의 57.3%(43명)은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이차적 범죄 예방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보호관찰관의 66.7%와 비행예방센터 실무자의 66.7%는 '다이버전 프로그램으로 공식 사법 절차를 최소화하여 소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림 4-2-3]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의의에 대한 실무자 인식

마. 기소유예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인식

1) 기소유예 대상자와의 만남에 대한 만족도

실무자들이 대상자와의 만남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실무자의 57.5%

가 대상자와의 만남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 집단 간 비교해보면, 법사랑위원의 69.3%, 보호관찰관의 47.3%, 비행예방센터 실무자의 51.8%가 '대상자와의 만남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법사랑위원의 만족도가 타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76, p<.01).

한편, 기소유예 참여 대상자들이 실무자와의 만남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와 실무자가 대상자와의 만남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대상 소년의 만족도(M=4.16)가 실무자의 만족도(M=3.7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0〉 실무자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약간만족	매우만족	종합	집단 간 차이	
			만족한다	평균(표준편차)	F
법사랑	41.3	28.0	69.3	3.97(0.77)	6.76**
보호관찰	30.9	16.4	47.3	3.55(0.90)	
비행예방센터	46.4	5.4	51.8	3.54(0.69)	
전체	39.8	17.7	57.5	3.71(0.81)	

*p<.05, **p<.01, ***p<.001

2) 기소유예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기소유예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조사한 결과, '자기조절능력 향상'(63.6%), '규칙적인 생활 태도 형성'(57.5%), '학업 복귀 및 진학'(53.8%), '진로 탐색 및 취업'(53.0%), '비행친구 단절'(51.4%), '가족관계 회복'(44.1%), '대인관계능력 향상'(43.8%), '경제적 자립'(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유형별로 도움 정도 인식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규칙적인 생활 태도 형성', '대인관계 능력 향상', '가족관계 회복', '학업 복귀 및 진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생활태도 F=4.09, p<.05; 대인관계 형성 F=3.48, p<.05; 가족관계 회복 F=10.22, p<.001; 복교 및 진학 F=7.56, **p<.01).

한편, 실무자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는 수준과 대상소년이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 항목에서 대상 소년이 도움 받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무자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는 영역과

대상소년이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영역의 순위를 비교한 결과, '자기조절능력의 향상'과 '규칙적인 생활태도 형성'이 각각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하였다. 즉 실무자가 도움을 준 영역과 대상소년이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항목의 1순위와 2순위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학업 복귀 및 진학', '비행친구 단절' 항목에서는 실무자와 대상 소년 간 인식 차이가 있었다.

〈표 4-2-11〉 대상자 제공서비스의 도움정도

(단위: %, 점)

구분		대체로 도움	매우 도움	종합	집단 간 차이	
				도움된다	평균(표준편차)	F
규칙 생활태도 형성	법사랑	36.0	9.3	45.3	3.48(0.78)	4.09*
	보호관찰	43.6	9.1	52.7	3.51(0.81)	
	비행예방센터	67.9	10.7	78.6	3.84(0.68)	
	전체	47.8	9.7	57.5	3.60(0.77)	
대인관계 능력향상	법사랑	48.6	1.4	50.0	3.47(0.60)	3.48*
	보호관찰	30.9	3.6	34.5	3.15(0.85)	
	비행예방센터	42.9	1.8	44.6	3.38(0.68)	
	전체	41.6	2.2	43.8	3.35(0.71)	
자기조절 능력향상	법사랑	50.0	13.5	63.5	3.73(0.75)	0.79
	보호관찰	46.3	11.1	57.4	3.56(0.88)	
	비행예방센터	64.3	5.4	69.6	3.68(0.72)	
	전체	53.3	10.3	63.6	3.66(0.78)	
가족관계 회복	법사랑	45.3	13.3	58.7	3.68(0.76)	10.22***
	보호관찰	25.5	5.5	30.9	3.10(0.89)	
	비행예방센터	33.9	3.6	37.5	3.10(0.91)	
	전체	36.0	8.0	44.1	3.34(0.89)	
학업 복귀 및 진학	법사랑	38.4	17.8	56.2	3.66(0.87)	7.56**
	보호관찰	56.4	12.7	69.1	3.72(0.85)	
	비행예방센터	28.6	7.1	35.7	3.14(0.92)	
	전체	40.8	13.0	53.8	3.52(0.91)	
진로탐색 및 취업	법사랑	45.9	10.8	56.8	3.53(0.89)	0.31
	보호관찰	40.0	9.1	49.1	3.45(0.86)	
	비행예방센터	48.2	3.6	51.8	3.41(0.80)	
	전체	44.9	8.1	53.0	3.47(0.85)	

구분		대체로 도움	매우 도움	종합	집단 간 차이	
				도움된다	평균(표준편차)	F
경제적 자립	법사랑	12.5	0.0	12.5	2.75(0.75)	2.40
	보호관찰	12.7	3.6	16.4	2.65(0.97)	
	비행예방센터	10.9	0.0	10.9	2.41(0.88)	
	전체	12.1	1.1	13.2	2.62(0.86)	
비행친구 단절	법사랑	32.4	10.8	43.2	3.35(0.94)	2.86
	보호관찰	49.1	16.4	65.5	3.46(1.00)	
	비행예방센터	42.9	5.4	48.2	3.21(1.06)	
	전체	40.5	10.8	51.4	3.40(1.01)	

*p<.05, **p<.01, ***p<.001

3) 기소유예 기간 중 대상자의 재범 발생 비율

실무자가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의 기소유예 기간 중 재범한 소년 비율에 대해 묻는 질문에 '1~10%' 43.5%(81명), '11~20%' 19.4%(36명), '전혀 없다' 18.3%(34명), '31% 이상' 5.4%(10명), '21~30%' 3.8%(7명)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 비교에서, 법사랑위원은 '전혀 없다'에 34.7%(26명)가 응답하였고, 비행예방센터 실무자들은 '모르겠다'에 30.4%(17명)가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법사랑위원은 대상 소년의 재범 여부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비행예방센터 실무자들은 교육 기간(최대 5일) 이후 대상자들을 관리하거나 재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12〉 기소유예 기간 중 재범 발생 비율

(단위: 명, %)

구분	전체	법사랑	보호관찰	비행예방센터
전혀없다	34(18.3)	26(34.7)	7(12.7)	1(1.8)
1~10%	81(43.5)	29(38.7)	32(58.2)	20(35.7)
11~20%	36(19.4)	14(18.7)	12(21.8)	10(17.9)
21~30%	7(3.8)	1(1.3)	2(3.6)	4(7.1)
31% 이상	10(5.4)	4(5.3)	2(3.6)	4(7.2)
모르겠다	18(9.7)	1(1.3)	0(0.0)	17(30.4)
	186(100.0)	75(40.3)	55(29.6)	56(30.1)

4)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재범방지에 미치는 효과 인식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실무자의 74.9%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세 집단 간 비교를 한 결과,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 법사랑위원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으며, 비행예방센터 실무자의 인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8.62, p<.001).

한편, 기소유예제도의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 실무자의 인식과 대상소년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대상소년의 재범 효과 인식(M=4.18)이 실무자의 재범효과 인식(M=3.8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3〉 기소유예제도의 재범방지 효과

(단위: %, 점)

구분	대체로 도움	매우 도움	종합	집단 간 차이	
			도움된다	평균(표준편차)	F
법사랑	57.1	28.6	85.7	4.12(0.71)	8.62***
보호관찰	61.8	10.9	72.7	3.70(0.88)	
비행예방센터	54.5	7.3	61.8	3.58(0.81)	
전체	57.8	17.1	74.9	3.83(0.82)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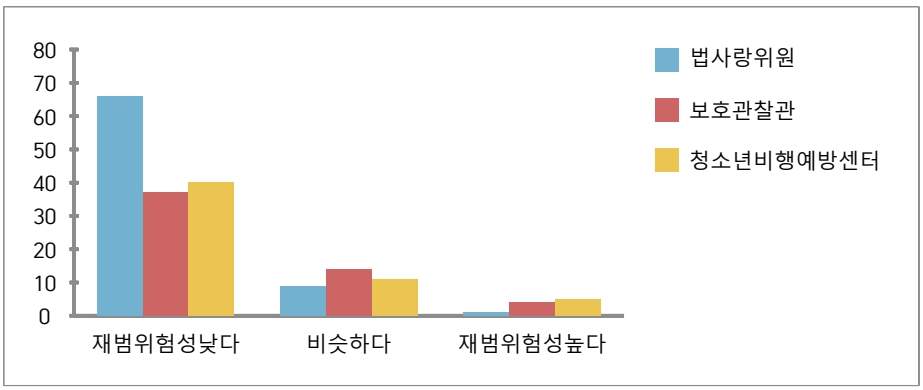
5) 기소유예 처분과 보호처분 대상자의 재범위험성 비교

기소유예 대상자의 비행 재범위험성 정도의 수준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와 보호처분 대상자와 비교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5%(143명)는 '기소유예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더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비슷하다' 18.2%(34명), '높다' 10.0%(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기소유예 실무담당자들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들이 보호처분 대상자들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집단 간 비교를 한 결과, 법사랑위원은 타 유형에 비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 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4〉 보호처분 대상자와의 재범위험성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법사랑	보호관찰	비행예방센터
재범위험성 낮다	143(76.5)	66(86.8)	37(67.2)	40(71.4)
비슷하다	34(18.2)	9(11.8)	14(25.5)	11(19.6)
재범위험성 높다	10(5.4)	1(1.3)	4(7.3)	5(8.9)
전체	187(100.0)	76(40.6)	55(29.4)	56(29.9)



[그림 4-2-4] 보호처분 대상자와의 재범위험성 비교

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1) 기소유예 대상자 관리 시 겪는 어려움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관리할 때 겪는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전문프로그램 미제공' 52.8%(94명), '비행 경각심 낮아 개입이 곤란' 51.7%(92명), '태도 불성실로 지속 어려움' 48.3%(86명), '타 업무 과다' 39.3%(70명), '비행 심각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림' 36.5%(65명), '대상자에 대한 정보 부족'22.5%(40명), '청소년을 다루는 스킬 부족' 18.5%(33명), '재범으로 의욕상실' 6.7%(1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 집단 간 비교를 한 결과, 법사랑위원의 경우 80.3%(57명)가 '전문프로그램 미제공'을, 보호관찰관의 90.7%(49명)가 '비행 심각도에서 순위 밀림', 소년비행예방센터 실무자의 75.5%(40명)가 '대상자의 태도 불성실'을 주요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관과 비행예방센터 실무자는 '업무 과다'와 '대상자의 태도 불성실'을 주요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15〉 대상자 관리 시 겪는 어려움(중복응답)

(단위: 명, %)

항목	전체	법사랑	보호관찰	비행예방센터
태도 불성실로 지속 어려움	86(48.3)	39(54.9)	7(13.0)	40(75.5)
비행 경각심 낮아 개입 곤란	92(51.7)	41(57.7)	17(31.5)	34(64.2)
잦은 재범으로 의욕 상실	12(6.7)	8(11.3)	1(1.9)	3(5.7)
청소년 다루는 스킬 부족	33(18.5)	19(26.8)	8(14.8)	6(11.3)
타업무 과다	70(39.3)	13(18.3)	35(64.8)	22(41.5)
비행심각도에서 순위 밀림	65(36.5)	8(11.3)	49(90.7)	8(15.1)
대상자 정보 부족	40(22.5)	14(19.7)	18(33.3)	8(15.1)
전문프로그램 미제공	94(52.8)	57(80.3)	17(31.5)	20(37.7)
전체	178(100.0)	71(39.9)	54(30.3)	53(29.8)

2)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문제점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선도조건부 혹은 교육조건부 처분의 기준이 모호하다' 54.2%(97명),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소유예 취소 요청이 어렵다' 52.0%(93명), '검사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 41.3%(74명), '대상자가 기소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는 비율이 많다' 32.4%(58명), '심리치료, 멘토링, 인성교화 등 다양한 형태의 조건이 난무한다' 26.8%(48명), '조건부 기소유예자의 재범여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25.1%(45명), '비전문기관이나 처분 목적에 맞지 않는 기관 연계' 22.3%(40명), '혐의 없음 수준의 처분을 받아야 할 대상자까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17.3%(3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세 집단 간 비교를 한 결과, 법사랑위원들은 '재범의 실효성의 의심된다'(42.3%)를, 보호관찰관과 비행예방센터 실무자는 '검사의 자의 개입 여지'(보호관찰 50.9%; 비행예방센터 47.3%)를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표 4-2-16〉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문제점(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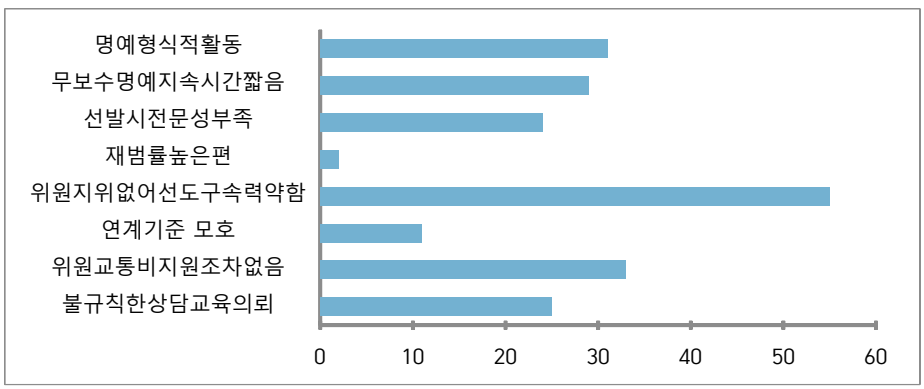
(단위: 명, %)

항목	전체	법사랑	보호관찰	비행예방센터
검사의 자의 개입 여지	74(41.3)	21(29.6)	27(50.9)	26(47.3)
선도 교육 처분 기준 모호	97(54.2)	31(43.7)	29(54.7)	37(67.3)
기소유예 기간 중 재범	58(32.4)	21(29.6)	20(37.7)	17(30.9)

항목	전체	법사랑	보호관찰	비행예방센터
관리 대상자 증가	31(17.3)	15(21.1)	9(17.0)	7(12.7)
기소유예 취소 요청 어려움	93(52.0)	33(46.5)	38(71.7)	22(40.0)
다양한 형태의 조건 난무	48(26.8)	21(29.6)	13(24.5)	14(25.5)
실효성 의심	45(25.1)	30(42.3)	3(5.7)	12(21.8)
처분목적에 맞지 않는 기관 의뢰	40(22.3)	18(25.4)	8(15.1)	14(25.5)
전체	179(100.0)	71(39.7)	53(29.6)	55(30.7)

3)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문제점

법사랑 위원을 대상으로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위원의 지위가 없어 구속력이 약한 점' (74.3%), '교통비와 같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 없는 점'(44.6%), '명예, 공명의 목적으로 무성의하고 형식적으로 활동'(41.9%),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속시간이 짧음'(39.2%), '불규칙한 상담과 교육의뢰가 되어 스케줄 계획이 어려운 점'(33.8%), '선발 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점'(32.4%), '대상자를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로 의뢰할 때 연계 기준이 모호한 점'(14.9%), '다른 조건부 기소유예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점'(2.7%)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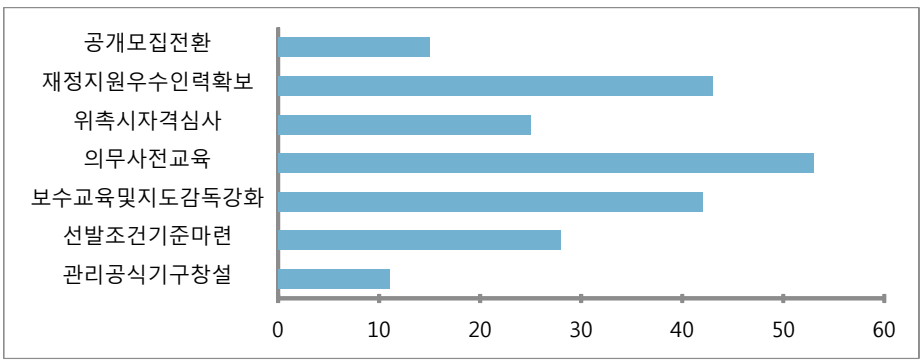
[그림 4-2-5]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문제점(중복응답)

사.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1)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법사랑위원을 대상으로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살펴본 결과, '위촉시

사전교육 의무화'(71.6%), '재정지원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58.1%), '보수교육 및 지도감독 강화'(56.6%), '선발 조건 기준 마련'(37.8%), '위촉 시 자격심사'(33.8%), '공개모집 전환'(20.3%), '관리 감독을 위한 공식기구 창설'(14.9%)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4-2-6] 법사랑위원 전문성 강화방안(중복응답)

2) 기소유예 유형별 축소 및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기소유예 제도의 축소 및 확대 방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단순기소유예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9.6%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48.9%)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40.0%)는 의견이 엇비슷하였다. 이를 세 집단별로 비교해보면, 보호관찰관은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48.1%)는 의견이 많은 반면에, 법사랑위원과 비행예방센터 실무자들은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법사랑 52.1%, 센터 실무자 58.2%)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4가지 유형(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교육조건부, 상담치료조건부)로 유지, 확대, 축소 의견을 파악한 결과,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와 '보호관찰선도조건부'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법사랑선도조건부의 경우 '유지' 42.5%, '확대' 32.8%, '축소' 24.7%; 보호관찰선도조건부의 경우 '유지' 52.6%, '확대' 30.1%, '축소' 17.3%). 이에 반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와 '상담치료조건부'는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교육조건부 '유지' 41.0%, '확대' 47.2%, '축소' 11.8%; 상담치료조건부 '유

지' 40.9%, '확대' 50.9%, '축소' 8.2%).

〈표 4-2-17〉 기소유예 유형별 축소 및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항목		현행대로 유지	현행보다 확대	현행보다 축소
단순기소유예 제도	법사랑	42(62.7)	19(28.4)	6(9.0)
	보호관찰	36(66.7)	8(14.8)	10(18.5)
	비행예방센터	24(48.0)	7(14.0)	19(38.0)
	전체	(59.6)	(19.9)	(20.5)
조건부기소유예제도	법사랑	31(43.7)	37(52.1)	3(4.2)
	보호관찰	26(48.1)	19(35.2)	9(16.7)
	비행예방센터	15(27.3)	32(58.2)	8(14.5)
	전체	102(40.0)	34(48.9)	35(11.1)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법사랑	29(39.7)	42(57.5)	2(2.7)
	보호관찰	26(49.1)	8(15.1)	19(35.8)
	비행예방센터	19(39.6)	7(14.6)	22(45.8)
	전체	74(42.5)	57(32.8)	43(24.7)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법사랑	40(58.8)	17(25.0)	11(16.2)
	보호관찰	27(49.1)	17(30.9)	11(20.0)
	비행예방센터	24(48.0)	18(36.0)	8(16.0)
	전체	91(52.6)	52(30.1)	30(17.3)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교육조건부	법사랑	30(44.1)	27(39.7)	11(16.2)
	보호관찰	27(50.0)	24(44.4)	3(5.6)
	비행예방센터	16(28.6)	33(58.9)	7(12.5)
	전체	73(41.0)	84(47.2)	21(11.8)
기타(상담치료 조건부)	법사랑	18(29.5)	40(65.6)	3(4.9)
	보호관찰	26(52.0)	19(38.0)	5(10.0)
	비행예방센터	21(43.8)	22(45.8)	5(10.4)
	전체	65(40.9)	81(50.9)	13(8.2)

3)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개선 방안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본 결과, '선도조건부 처분 기준 정립' 59.2%(109명), '법사랑위원 전문성 강화' 38.0%(70명), '교육조건부와 선도조건부 일

원화 관리' 29.3%(54명), '형사 사법통합 정보체계로 소년기록 공유' 26.1%(48명), '예산 확대로 민간 전문가 위촉과 대상자 관리지역 전문기관으로 확대' 21.2%(39명), '기소유예 유형의 다양화' 20.7%(38명), '유형별 재범 현황 파악으로 효과성 검증' 19.6%(36명), '선도조건부 교육조건부 병합 처분' 16.3%(30명), '결정전 조사제도 활성화' 15.8%(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 집단 간 비교를 해보면, 법사랑위원의 66.2%(49명)은 '법사랑위원 전문성 강화'를, 보호관찰관의 63.0%(34명)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실무자의 60.7%(34명)은 '선도조건부 처분기준 정립'을 중요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표 4-2-18〉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개선방안(중복응답)

(단위: 명, %)

항목	전체	법사랑	보호관찰	비행예방센터
선도조건부 처분 기준 정립	109(59.2)	41(55.4)	34(63.0)	34(60.7)
결정전조사제도 활성화	29(15.8)	14(18.9)	8(14.8)	7(12.5)
법사랑위원 전문성 강화	70(38.0)	49(66.2)	14(25.9)	7(12.5)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로 소년 기록 공유	48(26.1)	10(13.5)	22(40.7)	16(28.6)
조건부 기소유예자 관리 일원화	54(29.3)	13(17.6)	18(33.3)	23(41.1)
기소유예 유형 다양화	38(20.7)	13(17.6)	12(22.2)	13(23.2)
유형별 재범 효과성 검증	36(19.6)	13(17.6)	9(16.7)	14(25.0)
예산확대로 민간전문가 위촉	39(21.2)	20(27.0)	6(11.1)	13(23.2)
선도조건과 교육조건 병합 처분	30(16.3)	15(20.3)	8(14.8)	7(12.5)
대상자관리지역 전문기관으로 확대	39(21.2)	8(10.8)	21(38.9)	10(17.9)
전체	184(100.0)	74(40.2)	54(29.3)	56(30.4)

제3절 인식조사 결과 요약

1. 대상소년의 인식조사 결과 요약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소년 총 582명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 소년의 인구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본 결과, '16~17세'가 50.3%를 차지하고, 76.8%가 중·고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학업중단자는 14.5% 수준이었다. 가정배경에서 71.0%가 양친부모가 있고, 92.9%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경제적 수준이 '보통이상'인 경우가 87.1%였다. 이를 통해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그리 열악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비행 경력을 살펴본 결과, 첫 경찰 체포 나이가 '만 16세' 이상인 경우가 57.3%, '경찰체포 횟수가 1회'인 경우가 50.3%,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38.5%이었다. 이를 통해 조건부기소유예 참여 대상자들은 초범이거나 비행 수준이 경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2회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기존 기소유예 처분 유형을 살펴본 결과, 54.8%가 단순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 기소유예 처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동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을 포함하여 누적된 기소유예처분과 보호처분을 통합한 결과 '기소유예가 처음인 형태'는 45.0%, '기소유예를 반복하는 형태'는 17.2%, '기소유예처분과 보호처분을 오가는 형태'가 37.8%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기소유예가 처음인 경우는 387명이고, '기소유예가 처음인 형태'가 262명인 점을 볼 때, 125명(전체 응답자의 21.5%)은 이전에 보호처분을 먼저 받고 이번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번 기소유예 처분 이전에 이뤄진 활동들을 살펴본 결과, '검사결정전조사를 받은 경험'은 21.4%에 불과하며, '모르겠다'는 응답이 42.7%인 점으로 미뤄보아,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들에게 검사결정전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혹은 시행되더라도 대상자에게 그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참여자

의 대다수가 보호자와 동행하여 검사로부터 직접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번 기소유예 처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세 유형(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교육조건부) 간에 대상자의 비행명에서 차이가 없었다. 즉 선도조건부 유형 처분을 결정할 때 대상자의 비행명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법사랑위원 및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락빈도, 만남빈도, 장소 등을 비교한 결과,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참여자들이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대상자들에 비해 더 자주 연락을 받고, 더 자주 담당실무자와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유형의 경우 '만남 장소'에서 대조적이었는데,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참여자들은 96.8%가 보호관찰소에서 만남이 이뤄진 반면에,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참여자들은 카페, 식당, 길거리/공원 등에서 자유롭고 외부 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남이 이뤄지고 있었다. 한편, 선도조건부 참여자들의 경우 실무자와의 면담 시간이 보호관찰관의 경우 '10~30분'이 44.9%를 차지하고, 법사랑위원의 경우 '20~40분'이 5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의 경우 평균 1개월에 1회, 20분 정도의 면담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조건부 참여자들은 교육기간이 5일(47.8%)과 3일(42.9%)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행명에 따른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닌 공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이번 처분 명령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이번 처분 명령이 공정했다는 응답이 75.8%를 차지하고, 처분 집행동안 담당 직원들이 본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다는 비율이 83.9%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 비교에서 '보호관찰선도조건부' 대상 소년들이 타 유형에 비해 이번 처분이 공정했고, 직원들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처분 명령의 공정성'과 '직원들의 인격적 대우' 변인은 탈비행의 주요 요인으로, 이 항목의 점수와 기소유예 처분 종료 이후 탈비행과의 상관을 추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이번 기소유예 참여성과를 살펴본 결과, '이번 처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한 비율이 85.6%이었고, 80.6%가 '담당실무자와의 만남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간 비교에서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참여자의 참여도와 만족

도가 타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소유예 제도가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효과에 미치는 인식을 살펴본 결과, 참여자의 80.5%가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39.8%는 매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83.1%가 '재범하지 않을 것이다'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기소유예제도가 이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 비교에서,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대상자들이 본 프로그램의 재범 효과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조건부 대상자들은 본인이 재범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 인식조사 결과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582명 중 '기소유예가 처음'인 응답자가 45.0%(262명), '기소유예와 보호처분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37.8%(220명), '기소유예를 반복'하고 있는 응답자는 17.2%(100명)를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소년사법시스템의 재범방지 효율성은 매우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재범률은 최소 55%정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법사랑 선도조건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참여자의 비행명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대상자 선정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교육조건부 대상자들은 학교폭력·절도·인터넷·약물중독으로 인한 범죄·성범죄 등의 예방교육이 필요한 자들인데, 이번 처분의 비행명과 상관없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소유예의 효과가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

넷째, 상대적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전과자 비중이 높은 보호관찰 선도조건부의 대상자들이 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유의하게 높고, 담당선생님과의 만남에 대해 더 만족해하며, 재범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궁극적으로 소년사법당국은 각 유형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들을 실제 추적조사한 후, 재범률을 파악하여야 한다. 만약 그 조사결과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면 보호관찰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재정

적, 행정적 투자를 집중시킬 필요성이 크다.

2. 종사자의 인식조사 결과 요약

본 조사에서는 실무자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법사랑위원, 보호관찰관, 비행예방센터 담당자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무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서, 법사랑위원의 경우 '50대 이상'이 84.8%를 차지하여 타 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근무(활동) 기간) 또한 '9년 초과한 자'가 전체의 59.2%로 보호관찰관과 비행예방센터의 실무자에 비해 활동 경력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소유예 관련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법사랑위원의 경우 업무담당기간이 '3년 이상'(67.1%)이 가장 많았고, 담당 대상자 수는 '1명 이하'가 61.8%를 차지하고 있는 등 현재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해 보호관찰관들은 전체 응답자의 29.1%가 현재 '6~10명'을 담당하고, '16명 이상'인 경우도 1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보호관찰관의 63.6%가 전체 업무 중 조건부 기소유예자 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보아 보호관찰관의 경우 타 업무 가중으로 기소유예 대상자 관리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행예방센터 실무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6.3%는 1회 교육 시 '6~10명'을 관리하며, 전체 직무 중 본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에서 응답자의 67.9%가 30% 이내라고 응답한 점으로 미뤄보아, 보호관찰관에 비해 본 업무의 몰입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소유예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면, 법사랑위원은 보호관찰관에 비해 대상 소년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대상 소년을 더 자주 만나고 있다. 반면에 보호관찰관은 월 1회 면담 위주로 대상자를 관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비행예방센터 실무자 전체 응답자의 '71.4%가 1회 이하의 면담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보아 비행예방센터에서는 교육 위주로 대상소년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사랑위원들은 개인면담(94.7%)뿐만 아니라 부모면담(48.7%), 식사(46.1%), 문화체험(22.4%) 등 다차원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반면에 보호관찰관은 개인면담 위주로 대상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영역의 실무자들이 대상 소년에게 제공하는

도움 항목을 살펴본 결과, '인정과 격려'(54.8%), '규칙적 생활 관리'(49.5%), '자신감 회복'(46.8%)에 주력하고 있으며, 법사랑위원은 타 유형에 비해 '가족관계 회복'(52.6%), '물질적 후원'(28.9%), '취업알선'(11.8%)에, 보호관찰관은 '규칙적 생활 관리'(78.2%)에, 비행예방센터 실무자는 '법의식 향상'(67.3%)에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상자 관리 시 심혈을 기울이는 항목'을 살펴본 결과, '비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73.8%), '미래의 꿈과 목표 설정'(59.4%), '학업 유지'(54.5%), '규칙적 생활 관리'(44.9%)의 순이었다. 대상 소년들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항목과 실무자가 대상자 관리 시 심혈을 기울이는 항목의 순위를 비교해 본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무자와 대상 소년들은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각각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소유예의 적극적인 참여 수준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대상 소년 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대상 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한 수준(M=4.32)에 비해, 실무자들이 인식하는 대상 소년의 참여 수준(M=3.44)은 낮게 나타났다.

넷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법사랑위원들은 타 유형의 실무자에 비해 이 제도에 법적 근거, 취지, 목적에 대한 이해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에 비행예방센터 실무자의 이해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소유예제도의 의의에 대한 인식 수준에서는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랑위원의 57.3%는 본 제도를 '이차적 범죄 예방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보호관찰관과 비행예방센터 실무자는 '다이버젼 프로그램으로 공식 사법절차를 최소화하여 소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다섯째, 본 제도의 성과에 대한 인식에서, 실무자의 57.5%는 대상자와의 만남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세 유형 중에서 법사랑위원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소년과 실무자 간 상호 만남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대상 소년의 만족도(M=4.16)가 실무자 만족도(M=3.71)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소유예 실무자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도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자기조절능력 향상'(63.6%), '규칙적인 생활 태도'(57.5%), '학업 복귀 및 진학'(53.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무자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는 수준과 대상소년이 도움을 받았다

고 인식하는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 항목에서 대상 소년이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항목에서도 대상 소년과 실무자 간에 '자기조절능력 향상'(63.6%, 1순위), '규칙적인 생활 태도'(57.5%, 2순위)의 순위는 같았으나, '학업 복귀 및 진학' 및 '비행친구 단절'에서는 실무자와 대상 소년 간에 순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상소년의 재범과 관련된 실무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20% 이내로 재범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법사랑위원 92.1%, 보호관찰관 92.7%, 비행예방센터 실무자 55.4%). 여기에서 나타난 특이한 반응을 살펴보면, 법사랑위원의 경우 응답자의 34.7%가 '재범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비행예방센터 실무자의 30.4%는 '재범 여부를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법사랑위원의 경우 대상소년의 재범 여부에 대해 타 유형에 비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비행예방센터 실무자의 경우 교육기간(최대 5일) 이후 기소유예 대상자를 관리하거나 재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재범 방지에 미치는 효과 인식에서, 실무자의 74.9%가 본 제도가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법사랑위원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소유예제도의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 대상소년과 실무자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대상소년의 효과 인식(M=4.18)이 실무자의 효과 인식(M=3.8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 소년과 실무자 간에 대상소년의 적극적 참여도 및 상호 만남에의 만족도, 제공한 서비스의 도움 정도, 본 제도가 재범 방지에 미치는 효과 인식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대상소년의 인식 수준이 실무자보다 더 긍정적이고 만족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처분 대상자와 기소유예처분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비교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5%는 기소유예처분 대상자가 보호처분의 대상자에 비해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일곱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을 대상자 관리의 어려움, 현행 제도의 문제점 순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대상자 관리에서 겪는 어려움은 '대상자의 비행 경각심이 낮아 개입이 곤란하다', '문제유형별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 '대상자의 태도 불성실로 관리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등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실무자들은 대상

자의 낮은 비행 경각심과 태도 불성실로 인해 전문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선도교육 처분 기준이 모호하다', '기소유예 취소 요청을 하기가 어렵다', '검사의 자의 개입 여지가 많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덟째, 기소유예 유형별 축소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단순기소유예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9.6%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48.9%)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40.0%)는 의견이 엇비슷하였다. 하지만 각 유형별로 의견을 비교해보면, 보호관찰관은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48.1%)이 많은 반면에, 법사랑위원과 비행예방센터 실무자들은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법사랑 52.1%, 센터 실무자 58.2%)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확대 및 유지 의견을 파악한 결과,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와 '보호관찰선도조건부'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와 '상담치료조건부'는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 방안을 살펴본 결과, '선도조건부 처분 기준 정립', '법사랑위원 전문성 강화', '교육조건부와 선도조건부 일원화하여 관리', '형사 사법통합 정보체계로 소년 기록 공유'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사랑위원은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강화'(66.2%), 보호관찰관은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로 소년 기록 공유'(40.7%), 비행예방센터 실무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관리의 일원화(41.1%)이라는 개선 방안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종사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소유예 대상자 조사에서 가장 효과가 높다고 조사된 보호관찰관의 경우 현실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선도대상자 관리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10-20분의 개인면담 위주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 관리의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소유예 참여 대상자들이 실무자와의 만남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와 실무자가 대상자와의 만남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대상 소년의 만족도가

실무자의 만족도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지적 측면에서 개별면담 횟수를 늘리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대상자 조사와 실무자 인식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선도조건부 혹은 교육조건부 처분의 기준이 모호한 점, 검사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점, 처분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프로그램 구성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제 5 장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이 승 현

제5장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대상

전문가 의견조사의 대상은 소년전담검사뿐만 아니라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관련 학계 전문가 및 실무가 그룹이다. 본 조사를 위해 소년전담검사 11명, 교수 및 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학계 전문가 7명, 조건부기소유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 3명 등 총 21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검찰청 협조를 받아 소년전담검사 11명에 대한 이메일과 검찰 내부통신망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학계나 실무계 종사자의 경우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전문가 10명에 대하여 의견조사 요청을 했다. 1차 의견조사를 요청한 결과 국정감사와 업무의 과중으로 설문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주관식 설문에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이유로 예상보다 회수율이 낮았고, 총 11명이 주관식 조사지에 응답하였다. 1차 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11명 중 10명이 2차 설문에 응답하였다.

〈표 5-1-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만)	경력 (소년전담비율)	소속	조사 참여		분야
					1차	2차	
1	남	32	1년 (20%)	검찰청	○	○	소년전담 검사
2	여	40	2년 2개월 (30~90%)	검찰청	○	○	
3	남	37	6개월	검찰청	○	x	
4	남	39	10년	연구원	○	○	학계
5	여	43	18년	교수	○	○	
6	남	53	28년	교수	○	○	
7	남	38	9년	교수	○	○	
8	여	51	19년	연구원	○	○	
9	남	43	15년	법무부	○	○	실무계
10	여	34	11년	법무부	○	○	
11	여	45	20	법무부	○	○	

2. 조사방법

전문가 의견조사는 2차례에 걸쳐 델파이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지로,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세부 문제점, 영역별 개선방안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선택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1차 조사에 응답한 11명을 대상으로 다시 2차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11명 중 10명이 응답하였다.

조사방법은 이메일 송부방식으로 이루어졌고, 1차 조사 결과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고, 2차 조사 결과는 SPSS를 사용하여 전산처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순위표기방식은 1순위 4점, 2순위 3점, 3순위 2점, 1순위 0점으로 부여하고 각 문항 평균은 점수를 더한 후 대상자 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3. 조사내용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조사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에 대한 인식과 의견에 관하여, 제도 도입 당시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지 현재 시점에서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어떠한 성격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가 인식하고 있는 바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성인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단순 기소유예제도와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유형에 관하여, 현재 소년범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인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각각의 대상의 적절성, 기간 및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고, 추가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에 대한 의견 관련 문항도 담았다. 셋째,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소유예 결정에 있어 중요 판단 요소, 결정전 조사제도의 영향, 결정전 조사서의 주요요소, 보호자교육의 의무화, 수사재기 사안, 집행상 문제점,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확대·축소에 관한 입장 등에 대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넷째, 조건부 기소유예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현행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전반의 문제점,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별 문제점,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결정전 조사서 활용도 제고방안, 대상자 선별방안, 프로그램 개선방안, 내실화된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기소유예 다양화방안, 사안처리절차 개선방안, 소년전담검사 전문성 강화방안,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을 구성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응답에서 제시된 내용의 정책추진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 의견을 정리하여 2차 선택형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 1차 조사내용과 동일하고 세부내용에 있어 중요도 또는 동의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1차 조사문항 가운데 1차 조사를 통해 분석이 가능한 일부 문항은 2차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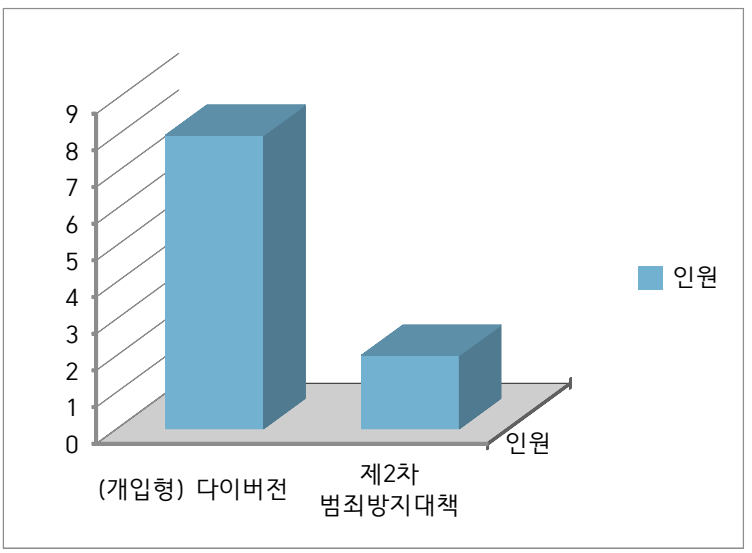
1.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의견

가.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성격

1) 제도 도입당시 조건부기소유예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의견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실시된 지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를 비교할 때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전문가그룹에게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도입 당시 법적 성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 8명이 조건부 기소유예는 '다이버전'이라고 본 반면에, 소년전담검사 2명은 '2차 범죄방지대책'이라고 보았다.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성격에 있어서 처분결정을 하는 집단과 아닌 집단 간에 성격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고 있었다.



[그림 5-2-1] 도입 당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성격

조건부 기소유예를 '다이버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소년범죄는 개인적 요인뿐만 환경적 요인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 절차에서 벗어나서 낙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 소년범에 대한 다이버전 및 비행성 개선의 의미로 도입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소년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개인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발달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선도, 보호활동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사례10〉

>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초범인 소년에 대해 법원심리까지 소년사법처리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낙인은 최소화하면서도 재비행 예방에 대한 효과는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사례9〉

> 조건부기소유예 제도는 다이버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다이버젼(Diversion)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식적 사법절차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의미와 사회내처우로의 '위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년사법절차는 그 자체가 범죄소년을 일반 형사사법절차에서 이탈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미 그 자체가 다이버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는 그러한 형사사법절차의 낙인효과로부터 범죄소년을 분리시키고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이버전으로 볼 있다.〈사례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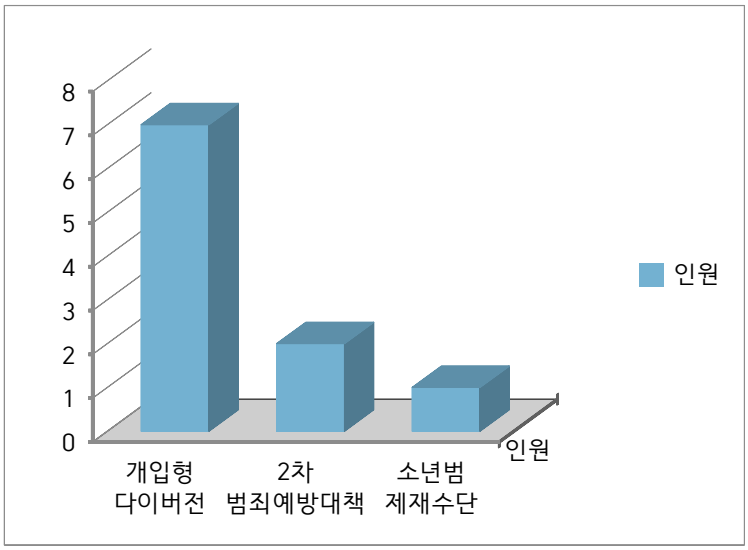
반면에,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2차 범죄방지대책'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어 경각심을 주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 소년범들은 재범의 유혹을 떨쳐내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받게 하거나 법사랑위원의 선도를 받게 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줌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이해한다.〈사례1〉

> 단순 기소유예의 경우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소년의 성향을 개선할 수 있는 지도나 교육이 병행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 상당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입되었다.〈사례2〉

2) 현재 조건부기소유예의 의의

그렇다면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문가 중 7명은 '개입형 다이버전'이라고 응답하였으나 2명은 '2차 범죄예방대책'이라고 하였으며, 1명은 '소년범에 대한 제재수단'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5-2-2]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성격

전문가 그룹에서 대체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 당시와 현재 동일하게 '다이버전'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응답하였다. 과거보다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의 유형이 다양화되었으나 조건을 전제로 기소유예보다 적극적인 처분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사례6〉의 경우 현재의 조건부 기소유예는 다이버전 확대로 보는 반면, 〈사례5〉의 경우 도입 당시에는 다이버전 성격을 지녔으나 현재는 '제재수단'으로서 성격이 강하다고 응답하였다.

> 기소유예 자체가 다이버전에 해당하고,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기소유예에 부담을 더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부담의 확보를 전제로 기소유예를 보다 적극적으로 처분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다이버전 확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사례6〉

그러나, 현재 소년범에게 실시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많은 변화를 겪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있었다. 실무상 단순 기소유예→상담조건부·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교육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구공판 순으로 기소유예 내에서도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초기비행자의 재범이 누적화된 이후에 법원 처분단계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조건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마련되어 죄질이나 재범횟수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할 순차적 조건(의무)을 부과하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첫 범행시 단순 기소유예를 하고 두번째는 상담 조건부/법사랑선도 조건부/교육조건부를, 세 번째는 보호관찰 조건부를 하고, 이후 소년보호사건 송치 또는 (구속) 구공판 순으로 가는 형태이다.〈사례2〉

다이버전의 의미로 시작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대상자 특성에 적정한 유형의 처분을 내린 후 그 이행결과에 따라 기소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 현재의 제도는 동일 대상소년에게 각 조건부 기소유예를 단계적으로 처분하여 재범방지, 사회 적응를 위한 제도적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사례11〉

또한 전문가그룹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대상자 선별과정에서 과거 전과나 피해자 합의 여부 등이 주요판단요소로 되고 있다는 점,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보호처분 단계에서의 보호관찰과 다르지 않아 조건부 기소유예의 낙인방지 목적이 이행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정상적인 다이버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관적인 소년범의 태도나 진정한 개전의 정보다는 겉으로 확인되는 “과거 전과”나 “피해자 합의여부” “가정환경” 등을 기준으로 단순히 경미한 범죄나 초범에게 광범위하게 내려지는바, 1차적인 “소년범 제재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듯해서 아쉬움이 크다.〈사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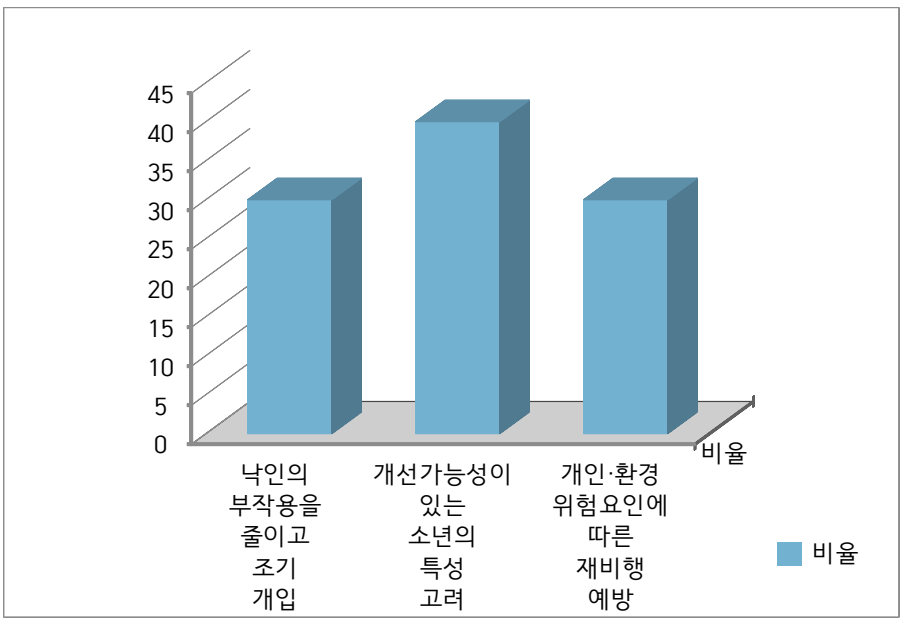
도입당시에는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만 있었는데, 현재는 선도교육이 추가되어 프로그램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보호관찰소 선도 때문에 사법적 낙인효과가 심화되었다. 〈사례8〉

나. 다른 제도와의 차이

1) 성인범에 대한 기소유예와의 차이

전문가 그룹에게 소년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와 성인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개선가능성이 있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낙인의 부작용을 줄이고 조기 개입하여 재사회화를 도모'와 '개인 및 환경의 위험요인에 의한 재비행을 예방하는 목적'에 있어서 다르다는 응답이 각각 30.0%를 차지하였다.



[그림 5-2-3] 성인범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와의 차이

전문가의 주관식 응답에서도 유사하게 낙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개입한다는 점, 개인의 특성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소년범과 성인범의 조건부 기소유예가 차이가 난다고 공통적으로 응답되었다.

> 성인범에 대한 기소유예는 기소와 재판에 따른 처벌의 재범방지 효과에 대한 회의적 전망을 전제한 다이버전 전략의 요소가 그다지 많지 않고 오히려 실제 처벌의 가능성이 미약하거나 무용할 때 기소를 포기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이에 비해 소년범에 대한 기소유예 및 조건부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또는 소년심판을 통한 보호처분의 가능성과 유용성이 충분할지라도 낙인의 부작용을 줄이고 조기의 개입으로 재사회화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성격이 뚜렷하다〈사례6〉

> 소년범의 경우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 개입이 들어감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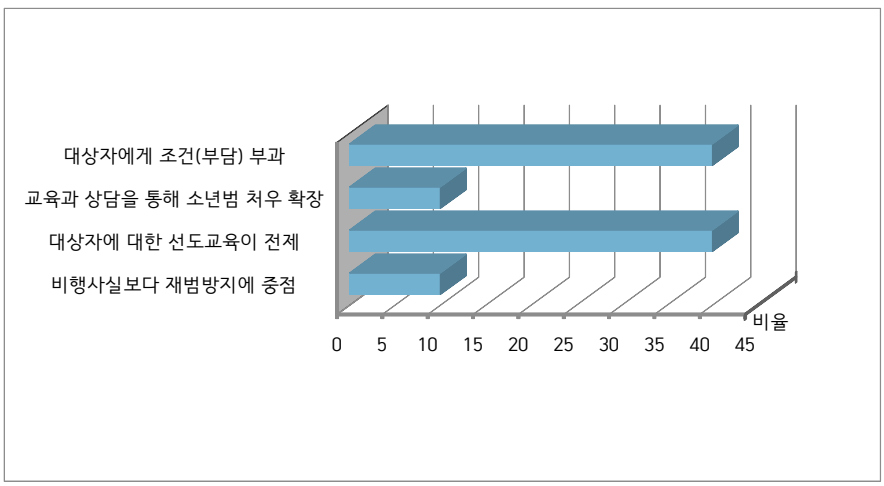
로써 스스로 비행의 원인을 찾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사례10〉

소년이든 성인이든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가벼운 첫 번째 범행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하는 대신 선처를 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소년에게는 조건을 부가하여, 교화, 성행개선, 준법의식 고취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성인 기소유예는 사실상 재기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소년범은 위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 재기하여 더 중한 처분(대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종 있다. 성인에 대한 조건부기소유예도 간간히 있으나, 해당 의무의 강도가 소년에 비해 가벼운 편이다(교육시간이 짧거나 비교적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 많다). 〈사례2〉

소년범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식시키고,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성장 유도 및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목적과 의미가 있으나, 성인범의 조건부기소유예는 "재범방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스쿨 등과 같은 보다 세분화된 범죄유형별 개입·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사례11〉

2) 단순 기소유예와의 차이

소년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단순 기소유예제도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대상소년에게 조건을 부과한다'는 점, '대상자에 대한 선도교육이 전제로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림 5-2-4] 단순 기소유예와의 차이

전문가들은 소년범에 대한 단순기소유예가 아무런 조치 없이 가정으로 돌려보낼 경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소년범의 특성에 맞게 맞춤화된 형태의 조건부 기소유예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문가는 맞춤형 조건부과를 위해서 담당검사의 대상소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화교육, 업무과중 해소, 대상소년 및 보호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조건부로 사용되는 세 가지 활동들이 비행청소년 개인의 삶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맞춤형” 개인주의 교정모델로 활용되어야 한다. 단순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자 개인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내릴 수 있지만, “조건부 기소유예”는 부가사항 조건을 어떻게 개별화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사용하되,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그 세부 활동 내용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례5〉

실무상 단순 기소유예는 별다른 조치 없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여 소년범으로 하여금 법에 대한 경각심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반면,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는 그러한 형사사법절차의 낙인효과로부터 범죄소년을 분리시키고 대상자 특징에 맞는 교육, 선도, 관리감독 등의 개입방안을 통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사례11〉

단순기소유예 대상은 초범으로 사안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가 되었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인 반면,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개인 및 환경적 위험요인으로 인해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선도 또는 교육이 필요한 경우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교육에 대한 보호자의 미동의, 담당검사의 소년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업무과중 등으로 조건부 기소유예가 필요함에도 단순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사례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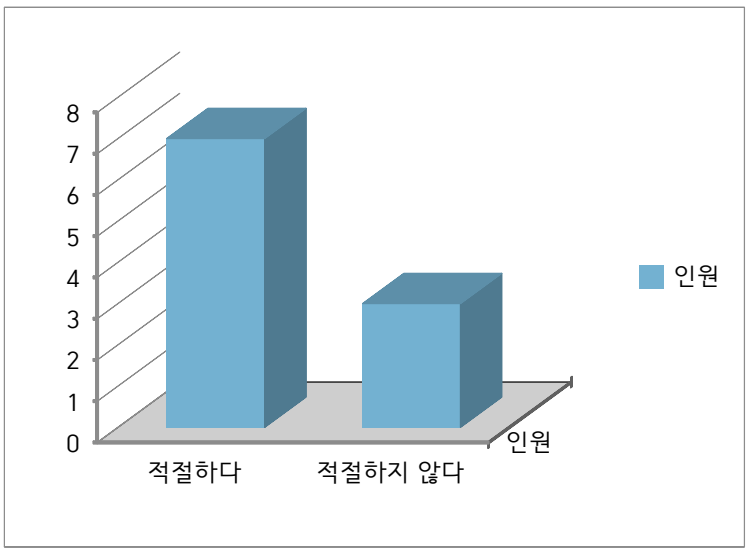
조건 이수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재기되어 중한 처분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다수 있다. 단순 기소유예는 아무런 이수 의무가 없어 재기 가능성이 거의 0% 이다.〈사례2〉

2.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에 관한 의견

가.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의 적절성 평가

현재 소년범에게 실시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전문가들에게 소년범에게 실시되는 조건부 기소유예로 이 세 가지 유형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7명은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에 3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2-5] 현행 기소유예 유형의 적절성

전문가 그룹 중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그룹의 이유를 살펴보면, 프로그램별 특색과 경중이 있어서 선택이 가능하므로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적절하다고 응답한 대상군 중에도 적절하긴 하나 조건부 기소유예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유형이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일부 전문가는 적절한 대상군 선정을 위해서는 각 제도별로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소년사법 내지 소년보호 분야에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절실한 바,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적극 활용에 그 유형을 세분화 내지 구체화하는 것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개별 처우의 실시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아울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소년보호역량의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사례6〉

> 각 조건별 프로그램상 특색과 경중이 있어서 소년범의 생활환경에 따라 적절히 선택 가능하다. 다만, 도시지역이 아닌 벽지에서는 인수기관(꿈키움센터나 준법지원센터)의 접근성 문제로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 일부 검찰청의 경우 더욱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의 형식이 활용되기도 하나 위 처분 외에 1~2종 정도 더 있는 것도 좋은 것 같다〈사례2〉.

> 현재 유형이 적절하나, 어떤 유형의 기소유예가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위험성 평가 기준이 실무에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해도, 분명 실효성 있는 판단 기준 근거를 가지고 개별 유형들이 실무에서 사용되고, 그 효과성이 주기적으로 평가받아야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사례5〉

반면, 현재의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를 살펴보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유형이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제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보호처분과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의 유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조건부 기소유예의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부과함으로써 회복적 사법의 요소를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사례4〉

> 보호관찰 선도위탁은 삭제되어야 한다.〈사례8〉

나. 각 유형별 기소유예 대상의 적절성 평가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어떤 대상에게 어떠한 조건이 부과되어 실시되고 있는지, 이러한 대상이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에게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

세 유형의 대상이 추가되면 적절하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1)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으로는 현재 대검예규인 「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상 즉, 〈1호〉 실질적 보호자가 없어 경제적·정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 〈2호〉 입시생으로 수업결손을 피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3호〉 경제적 생계곤란 또는 결손가정범죄로 장기 후원과 인성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대상이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1호의 경우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러한 가정에 있는 소년이 범죄를 더 저지른다고 평가하게 되는 사회적 낙인을 하게 되는 바,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1호와 3호의 대상이 내용상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1호 사유의 경우 단순히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후원이 필요하다는 전제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차라리 3호 사유만으로도 1호 사유는 충분히 포섭될 것으로 판단된다.〈사례7〉

> 지침에 비추어 볼 때,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는 위원으로 하여금 경제적·정서적 후원, 인성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데, 법사랑위원의 선도분야가 보다 다양화,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1항의 조손, 편부·편모와 같은 구조적 결손가정 이외에, 가정에서의 보호력이 취약한 기능적 결손가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내 사회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새터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열거한 '조손가정, 편부·편모 가정, 다문화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의 제시된 대상자 유형이 자칫 '잠재적 재범대상자' 등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기존 지침의 유지 등에 대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사례11〉

> 1.과 3.은 결국 같은 내용이므로 합쳐서 "가정의 보호력이 낮아 경제적 정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고, 기타 선도위원의 선도가 필요한 경우(일반 기소유예를 없애기 위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사례8〉

전문가는 2호에서 열거하고 입시생이라는 점을 이유로 법사랑위원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한다는 것도 최근 기소유예의 경우 교육기간이 짧은 형태로 실시되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에게는 학업을 지속하는 문제보다 비행을 단절하기 위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입시생'이라는 이유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 2호 입시생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유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이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교육시작 시점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어 현재 거의 사문화되어 있고, 선도조건부의 경우 법사랑위원의 인력풀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사례9〉

> 대체로 적절하나, 다만, 비교적 비행성이 중하지 않은 소년(비행성이 중한 경우 법사랑위원이 선도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집단교육이 적절하지 않은 소년(교육을 빙자하여 또래 비행집단과 어울려 다니며 비행성이 가중될 수 있는 경우)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처분이어야 한다.〈사례2〉

이에 전문가그룹에게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으로 적합한 유형을 제안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실질적 보호자가 없어 경제적·정서적 후원이 필요가 경우'가 1순위, '경제적 생계곤란 또는 결손가정 범죄로 장기 후원과 인성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2순위, '처벌전력이 없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3순위, '열악한 가정환경 등으로 재비행 예방을 위한 장기적 보호가 필요한 소년 중 관련기관장이 추천하는 경우'가 4순위를 차지하였다.

1순위 비율로는 '실질적 보호자가 없어 경제적·정서적 후원이 필요가 경우'가 40.0%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생계곤란 또는 결손가정 범죄로 장기 후원과 인성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30.0%, '처벌전력이 없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및 '열악한 가정환경 등으로 재비행 예방을 위해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소년 중 관련기관장이 추천(또는 지정)하는 경우'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피해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각각 10.0%를 차지하였다.

〈표 5-2-1〉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유형

순위	대상 유형	평균	1순위(%)
1	실질적 보호자가 없어 경제적·정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	2.80	40.0
2	경제적 생계곤란 또는 결손가정범죄로 장기 후원과 인성교육이 필요한 경우	2.40	30.0
3	처벌전력이 없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1.30	10.0
4	열악한 가정환경 등으로 재비행 예방을 위해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소년 중 관련기관장이 추천(또는 지정)하는 경우	0.90	10.0
5	학업의 도움 및 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	0.80	0
6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피해가능성이 있는 경우	0.70	10.0
7	집단교육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0.60	0
8	입시생으로 수업결손을 피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0.50	0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의 경우 현재 대검예규인 「소년사건처리지침」 제12조에서 전문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대상을 열거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전문가 3명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 7명은 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청소년의 경우, 건강관리, 인간관계, 사이버공간에서의 에티켓, 무면허운전의 심각성, 약물남용의 폐해 등 일반적인 기본 지식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제행동이 발견되는 경우, 특정 범죄유형보다는 이상행동 위주로 특정내용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사례5〉

> 사안이 경미하고, 법의식 부족 및 법적 가치관 등이 부족하여 비행을 유발하였으나, 법교육 및 비행예방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재발방지가 엿보이는 대상자 등을 선정해야 한다. 이전에 단순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나, 해당사건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있으며 가정·사회에서의 보호력이 충분하여 성행개선 및 환경조정의 여지가 있는 대상자, 상담·비행예방교육·진로교육 등의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을 통해 충분한 성행개선의 변화가 엿보이는 대상자 등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사례11〉

그렇다면 전문가는 어떠한 대상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순위, '준법의식 고취나 특정범죄 예방을 위한 특화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2순위, '입시 위주 교육에 부적응하거나 반발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이탈한 경우'가 3순위, '비행을 저질렀으나 안정된 가정 및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4순위, '일상생활을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5순위로 나타났다.

이를 1순위 비율별로 살펴보면, '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0.0%로 가장 높았고, '입시 위주 교육에 부적응하거나 반발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이탈한 경우'가 30.0%, '준법의식 고취나 특정범죄 예방을 위한 특화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20.0%, '저연령(14세 또는 16세 미만) 소년인 경우"가 10.0%를 차지하였다.

〈표 5-2-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유형

순위	대상 유형	평균	1순위 (%)
1	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70	40
2	준법의식 고취나 특정범죄 예방을 위한 특화교육이 필요한 경우	2.20	20
3	입시 위주 교육에 부적응하거나 반발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이탈한 경우	1.50	30
4	비행을 저질렀으나 안정된 가정 및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0.70	0
5	일상생활을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0.70	0
6	초범이거나 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경우	0.60	0
7	보호처분 부과할 경우 수강명령 대상이나 기소유예 할 경우	0.60	0
8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폭력, 교통범죄, 절도, 사기범죄인 경우	0.50	0
9	저연령(14세 또는 16세 미만) 소년인 경우	0.40	10
10	폭력 관련 분노조절 개선이 필요한 경우	0.10	0

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으로는 현재 대검예규인 「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상 즉, 〈1호〉 계획적·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호〉 소년이 이미 대안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거나 대안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3호〉 일정기간 체계적인 선도·교화가 필요한 경우, 〈4호〉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뿐이나 재범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 대상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조건부 기소유예 자체가 제재수단이 되고 보호처분과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소유예가 필요한지부터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있었다. 또한 2호의 경우 대안교육을 거부하는 대상에 대한 교육은 이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위반시 보호관찰 선도위탁이 전제되어 있는 형태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밖에도 대상자가 속한 사정을 고려하여 대상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보호관찰소 조건부 기소유예가 필요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기는 하지만 현재 보호처분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기소유예 자체가 사실상 제재로 작용하고 있고 대상 소년도 마찬가지로 인식할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는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이다. 〈사례4〉

> 1호 사유의 경우 사안의 경미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호 사유의 경우 대안교육이수 거부하는 경우의 사례가 현실적으로 상정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대안교육이수 거부시 보호관찰소에 의한 관여가 예정되어 있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사례7〉

> 4호 소년이 대안교육이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년사범을 선처하려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는 것이므로 굳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로 기소유예하기보다는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법원에서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도록 함이 상당하다.〈사례1〉

> 대상자가 속한 가정·사회 환경에서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 현재 학교·직장 등 특별히 소속된 집단이나 단체가 불명하고, 생활태도가 불규칙적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대상자 등 비행성 이외에 대상자의 개인·가정·사회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요소 추가가 필요하다.〈사례11〉

이에 대하여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으로 적합한 대상을 질문한 결과, '일정기간 동안 체계적인 선도·교화가 필요한 경우'가 1순위로 가장 높았고, '보호처분을 부과할 경우 보호관찰이 적절한 대상이나 기소유예 할 경우'가 2순위, '초범이지만 계획적·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3순위, '단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나 재범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 4순위, '보호자의 생업종사,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한 경우'가 5순위로 나타났다.

1순위 비율로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경우 보호관찰이 적절한 대상이나 기소유예 할 경우'가 30.0%, '일정기간 동안 체계적인 선도·교화가 필요한 경우'와 '보호자의 생업종사,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한 경우'가 각각 20.0%를 기록하였으며, '초범이지만 계획적·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계획적·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계획적·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각각 10.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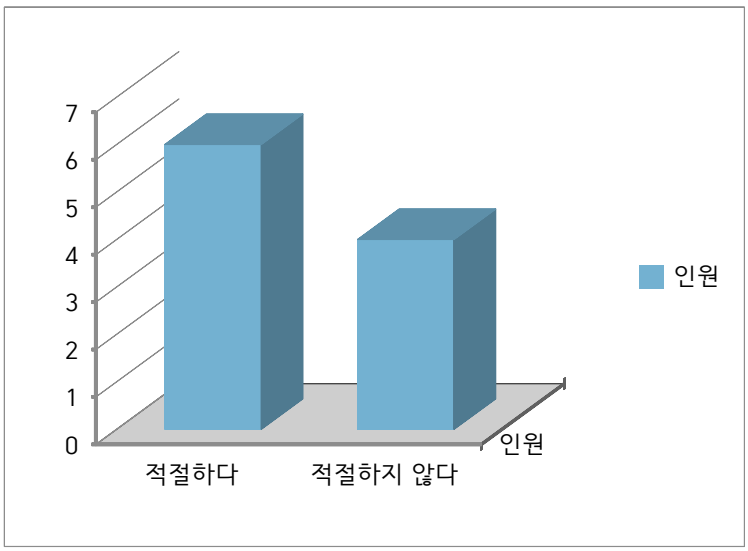
〈표 5-2-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유형

순위	대상자 유형	평균	1순위 (%)
1	일정기간 동안 체계적인 선도·교화가 필요한 경우	2.40	20
2	보호처분을 부과할 경우 보호관찰이 적절한 대상이나 기소유예 할 경우	1.60	30
3	초범이지만 계획적·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1.40	10
4	단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나 재범가능성이 높은 경우	1.10	10
5	보호자의 생업종사,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한 경우	1.00	20
6	소년이 이미 대안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경우	0.90	0
7	계획적·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0.80	10
8	불량교우와 다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0.40	0
9	소년이 대안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0.40	0

다.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의 기간 및 방법의 적절성

현재 법사랑위원·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6개월 내지 1년기간 동안 대면·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는 3일 내

지 5일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세가지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기간 및 방법이 적절한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 6명은 기간 및 방법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전문가 4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2-6]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의 기간 및 방법 적절성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이버전 성격에 맞게 기간과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사전에 처분기간과 방법을 특정하기 보다는 대상자의 처분이행 태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단축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처분기간 등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이버전 성격에 맞게 그 기간도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보다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때로는 "다이버전"이 공식적인 형사 제재수단보다 더 엄격하고 장기화될 수 있다. 부정기형 성격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다이버전 원리에 더 적합한 기소유예제도라고 본다. 단, 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사례5〉

라. 새롭게 추가할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외에 추가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소유예 유형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문가그룹은 '보호자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순위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관찰·법사랑위원 조건부 기소유예의 병합'이 2순위, '회복적 사법을 적용한 회합 조건부 기소유예'가 3순위, '청소년상담전문가에 의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4순위, '담임교사에 의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5순위, '가족캠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가 6순위, '사회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가 7순위로 응답하였다.

〈표 5-2-4〉 조건부 기소유예의 새로운 유형에 관한 의견

순위	새로운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	평균	1순위 (%)
1	보호자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2.20	30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관찰/법사랑위원 조건부 기소유예 병합	1.80	20
3	회복적 사법을 적용한 회합 조건부 기소유예	1.30	10
4	청소년상담전문가에 의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1.00	10
5	담임교사에 의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0.80	10
6	가족캠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0.80	10
7	사회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	0.80	0
8	놀이와 체험 등 활동중심의 조건부 기소유예	0.70	10
9	학교밖 지원센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0.40	0
10	질병치료 및 중독관리 조건부 기소유예	0.10	0

1순위의 비율로는 '보호자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30.0%,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관찰·법사랑위원 조건부 기소유예의 병합'이 20.0%, '회복적 사법을 적용한 회합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상담전문가에 의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담임교사에 의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족캠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놀이와 체험 등 활동중심의 조건부 기소유예'가 각각 10.0%를 차지하였다.

이는 1차 전문가 개방형 질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상소년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피해자에 대한 공감 등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회복적 사법 요소를 결합한 형태의 기소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되었고, 소년범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 문제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전문가에 대한 1차 개방형 질문에서도 새롭게 도입되어야 하는 기소유예 유형으로 멘토멘티형 기소유예제도가 제안되었는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상담전문가에 의한 조건부기소유예와 학업에 대한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담임교사 등에 의한 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전문가그룹은 보호자의 보호력 강화를 위해 가족갬프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자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도 제안했으며, 정신질환이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도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전문가 그룹에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관찰소·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결합한 형태의 기소유예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회복적 화해 조건부 기소유예

회복적 사법의 요소를 가미하여, 회합(VOM, FGC, Circle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기소유예를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형사조정의 문제(전문성 문제, 피해자의 회복 보다는 금전적 합의에 치중, 고소사건 간편 처리를 위한 수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사례4〉

②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일부 소년범들이 겪고 있는 질병 치료 및 단주/중독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가 있을 수 있고, 근로나 취업을 조건을 한 실질적인 기소유예도 있을 수 있다. 혹은 회복적 사법에 의거, 피해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나 경제적 배상 등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도 가능할 것이다. 단,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기소유예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사례5〉

최근 정신질환 청소년의 증가 및 정신·기질적 문제로 인한 소년범죄 발생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한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가정에서의 보호력 미약, 가족관계 또는 가족문제로 인한 비행유발 등을 고려, “가족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신설되어야 한다.〈사례11〉

③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상담조건부기소유예는 현재 여러 검찰청에서 청소년상담전문가인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이다. 검찰청 소환 당일에 소년범 및 보호자 상담이 가능하여, 검사나 수사관에 의한 일방적 훈계 후 이어지는 단순 기소유예를 가급적 지양하고 대신 소년과 보호자가 상담전문가와 잠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좋은 것 같다. 보호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범들 중에는 열악한 보육환경 속에서 자라온 경우가 많고, 보호자들의 보호력이 미미한 상태에 있음. 보호자들도 더 이상 소년범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소년 대상으로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보호자들 대상으로도 교육이 필요하다.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1~2일 정도, 소년처분 중 보호자교육이 병행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교사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를 선도위원으로, 일정기간 동안 해당 교사의 선도, 지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학교폭력 등 교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의미할 것으로 보이고, 소년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 및 교권 확립에도 도움이 될 듯)를 하는 것이다. 〈사례2〉

④ 담임교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재적 학교의 담임교사, 학생 주임 또는 상담 직원에 의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도입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학교 측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과 사법의 연계를 통한 소년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사례6〉

⑤ 가족캠프 등 보호자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부과시 소년의 보호자 등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조건을 추가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부모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사례7〉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일환으로 캠프조건부 기소유예(1박2일간 소년과 부모가 함께 캠프 가족관계 회복 캠프에 참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의뢰기관은 물론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고, 대상소년의 재비행 예방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 관련규정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그 외 기타 기소유예 처분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기소유예가 나열식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실효성 입증이 어려운 상황으로 정확한 실태 분석과 유형별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사례9〉

⑥ 교육조건부+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병합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만나는 검찰에서 의뢰한 소년들의 경우 범행 자체는 최초이나 학교, 가정, 또래, 정서적 문제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 이후가 우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재범예방을 위해 장기간 이루어지는 법사랑위원 또는 보호관찰소 조건부 기소유예와 함께 연동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사례10〉

3.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운영에 관한 의견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그룹에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 예를 들어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기준, 결정전 조사서의 활용도, 보호자 교육 효과, 재기수사의 예외사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가.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의 주요 판단기준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따라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가 결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전문가 그룹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기준에 있어서 주요판단요소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전문가그룹은 '대상소년의 자세나 의지'가 1순위로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해당 범죄의 종류와 내용'이 2순위, '보호자의 보호력'이 3순위, '이전 수사 경력(촉법, 기소유예 전력 포함)'이 4순위, '재범가능성'이 5순위, '범죄경력(보호처분 경험 여부)'이 6순위를 차지하였다. 1순위 비율로는 '해당범죄의 종류와 내용'이 4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대상소년의 의지와 자세'가 30.0%, '보호자의 보호력',

'재범가능성', '범죄경력'은 각각 10.0%를 차지하였다.

〈표 5-2-5〉 기소유예 결정의 중요판단요소

순위	기소유예 결정의 중요 판단요소	평균	1순위 (%)
1	대상소년의 자세나 의지	1.80	30
2	해당범죄의 종류와 내용	1.80	40
3	보호자의 보호력	1.40	10
4	이전 수사 경력(촉법, 기소유예 전력 포함)	1.10	0
5	재범가능성	1.00	10
6	범죄경력(보호처분 경험 여부)	0.70	10
7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0.50	0
8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0.50	0
9	가정환경(가족관계, 경제력 등)	0.40	0
10	대상소년의 연령	0.30	0
11	범행 동기	0.30	0
12	학생 신분	0.20	0

조건부 기소유예가 다이버전의 일환으로 사회적 낙인을 배제하기 위해 행위요소보다는 행위자요소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결정에 있어 중요요소로 해당범죄의 종류와 내용, 이전 수사경력이나 범죄경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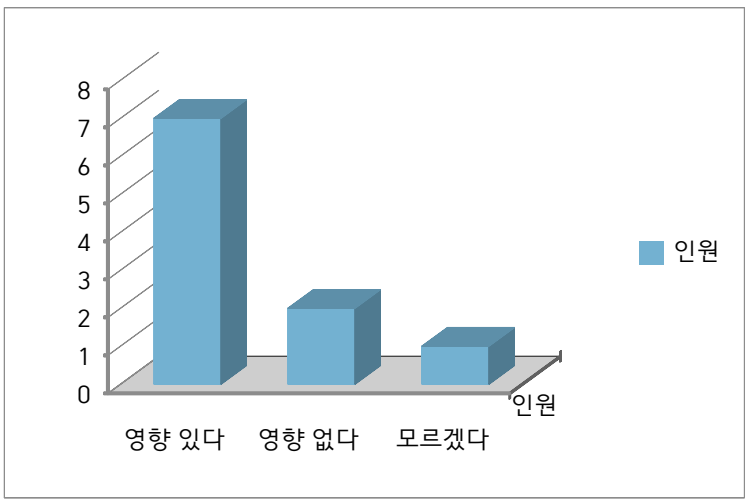
> 정적 요인과 동적 요인 모두 중요한 판단 요소겠지만, "객관적인 범죄의 경중이나 전과"보다는 청소년 개인이 갖고 있는 태도와 범행에 대한 합리화 기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기소유형 별로 어떤 유형이 가장 효과성이 컸는지 살펴보고, 어떤 요인이 그 재범방지 결과에 큰 영향을 살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례5〉

> 연령, 범죄경력, 학생신분, 가출경험, 재범가능성, 보호자의 보호력 이외에 비행원인(우발/계획/반복 등), 가정·사회적지지 체계 및 자원, 이번 비행에 대한 반성적 태도, 장래·진로에 대한 구체적 계획, 심리·정서적 특징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사례11〉

나. 결정전 조사서의 활용

1) 처분 결정에 있어 결정전 조사서의 영향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에 있어서 검사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장치로서 결정전 조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검사의 처분결정에 있어서 결정전 조사서의 내용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전문가 중 7명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명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1명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2-7] 처분결정에 있어 결정전 조사서의 영향

영향이 있다는 전문가그룹에서는 결정전 조사서가 보호관찰소에서 작성되고 있고, 분류심사원이나 비행예방센터 조사만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대상소년의 학교생활이나 가정환경 등에 주목해서 볼 수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 현재 검사결정전조사는 대부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원 결정전조사(분류심사, 상담조사)를 의뢰받아 집행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에서 상담조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신뢰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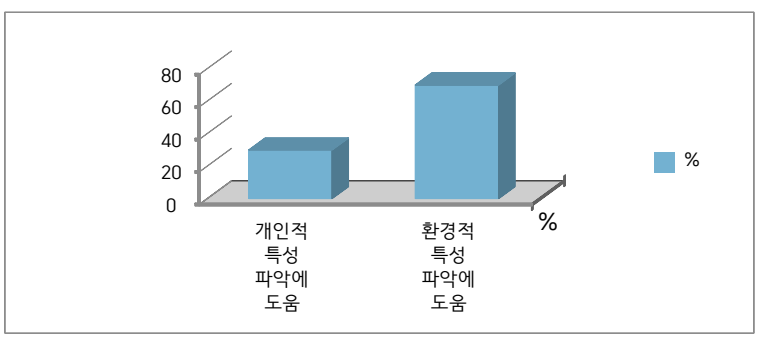
매우 높아 조사관의 처분의견이 판사의 종국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사례9〉

검사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위 판단요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보다 적정한 처분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결론 부분(단순 기소유예/교육조건부/보호관찰조건부/소년보호처분)은 크게 따르지 않고 있으며, 그 전제가 되고 있는 가정환경이나 보호자와 소년 본인 진술, 학교생활, 심리검사 결과지 등의 구체적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사례2〉

한편, 현장에서는 결정전조사제도가 처분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찰에서 결과통보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지 중요자료로 활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현장에서는 검사결정전조사제도가 처분결정 영향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공식, 비공식절차 등을 통해 처분결과, 처분내용 등을 인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지, 처분의 중요자료로 활용되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사례11〉

현재 실무상 제공되고 있는 결정전 조사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그룹에 질문한 결과, 전문가 중 70.0%는 '대상소년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나, 나머지 30.0%는 '대상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2-8] 결정전 조사서의 도움영역

그렇다면 실제 실무현장에서 결정전 조사서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문가그룹의 33.3%가 '50% 정도 활용한다'고 평가하였고, 전문가그룹의 22.2%는 '80% 정도 활용한다'고 보았다. 이는 공식통계에서 전체 검찰에서 처리된 소년사건 중 결정전 조사가 실시된 비율이 5% 미만이고, 대상소년 설문조사에서 결정전조사를 받은 경험이 21.4%에 불과한 것을 고려한다면, 전문가가 추정하는 활용률은 높게 평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5-2-6〉 결정전 조사사의 활용비율(추정치)

구분	빈도	%
20%	1	11.1
50%	3	33.3
60%	1	11.1
70%	1	11.1
80%	2	22.2
100%	1	11.1
알 수 없음	1	-

2) 결정전 조사서 작성의 중요요소

결정전 조사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문가는 '보호자의 보호력'이 1순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재범가능성'이 2순위, '대상소년의 처지와 상황'이 3순위, '범행동기와 범행 후 정황'이 4순위, '개선가능성'이 5순위, '가정환경'이 6순위, '대상소년의 평소성행'이 7순위였다. 1순위 비율을 살펴보면, '대상소년의 처지와 상황'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보호자의 보호력', '재범가능성'이 각각 20.0%,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가정환경','해당범죄의 죄질'이 각각 10.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2-7〉 결정전 조사의 주요기준

순위	결정전 조사의 주요판단기준	평균	1순위 (%)
1	보호자의 보호력	1.90	20
2	재범가능성	1.40	20
3	대상소년의 처지와 상황	1.30	30
4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1.10	10
5	개선가능성	1.00	0
6	가정환경	0.90	10
7	대상소년의 평소 성행	0.80	0
8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0.40	0
9	해당범죄의 죄질	0.40	10
10	비행에 노출된 과정	0.40	0
11	대상소년의 욕구	0.20	0
12	장애 또는 정신질환 유무	0.10	0
13	학업지속 여부	0.10	0

전문가 그룹은 검찰단계에서 실시되는 결정전 조사가 다른 단계에서 실시되는 상담조사서, 경찰단계의 조사와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각 조사별로 조사항목의 차별성을 가져야 하고, 앞 단계에서 실시한 조사결과가 공유되어 중복조사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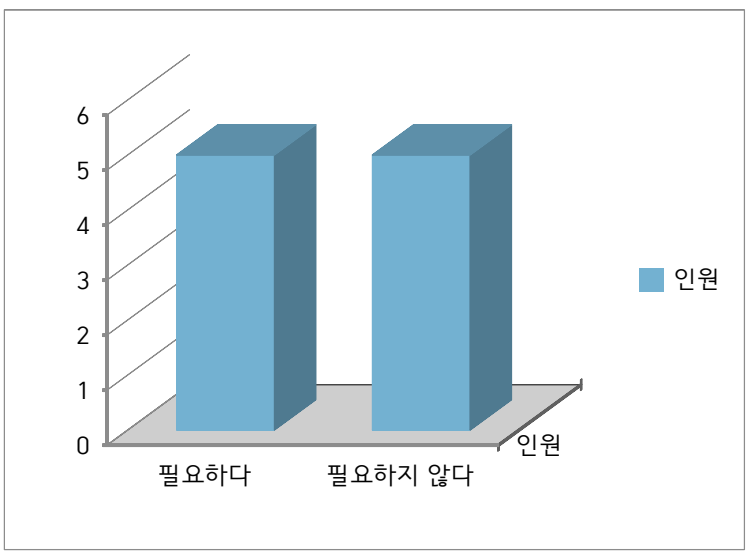
> 경찰단계에서 비행성예측자료표(PAI 검사)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결정전 조사가 의미 있을 것이나 이미 전문가가 참여한 비행성예측자료표가 존재한다면 결정전 조사는 중복 조사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결정전 조사도 요보호성 조사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조사관 조사나 경찰단계 조사(비행성예측자료표, 소년환경조사)와 동일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소년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대상으로도 조사)을 조사항목에 포함한다면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사례4〉

> 현재 소년범에 대한 조사서는 실시 기관별(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기관 등)에 특성에 따라 다양한 체계 및 양식에 따라 작성·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유사한 진단도구(심리검사, 비행위험성 평가도구 등)가 각 조사단계별로 활용되고 있어 피검사자는 진단·검사에

오염될 가능성이 많으며, 진단·검사에 불성실하고 형식적 태도로 임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각 조사단계별 진단 및 조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단계별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각 조사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조사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단계의 조사가 사건의 진위여부 등에 집중되고, 법원단계 조사가 재범위험성에 초점을 맞추는 점 등을 고려, 검찰단계 결정전조사는 대상자의 강점·약점, 보호·위험요인 등의 다각적 분석을 통한 건전육성 및 변화유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사례11〉

다. 보호자교육의 의무화 필요성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생계곤란, 직장생활 등을 이유로 보호자가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상소년의 재사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보호자교육을 의무화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전문그룹 중 5명은 '보호자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5명은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림 5-2-9] 보호자교육 의무화 필요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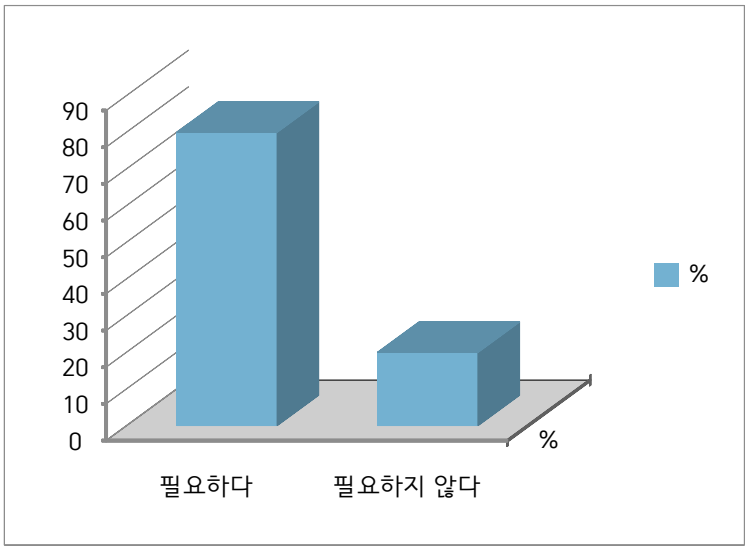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하여 '보호자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대상소년에 대한 교육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므로 보호자교육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반면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자체가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호자교육 등에 대하여 의무화를 시킬 경우 제재로서 성격이 강해질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 검찰단계의 조건부 기소유예자의 보호자 특별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현재 학교의뢰 학교폭력가해학생 보호자특별교육 및 법원의뢰 보호자특별교육은 법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학교-법원의 소년사법절차상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검찰단계의 보호자 특별교육만 법제도적으로 의무화되지 않는 실정이다. 소년범의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성행개선 등을 위해서는 대상소년 뿐 아니라 대상소년을 건전육성할 수 있는 보호자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 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대상소년과 보호자가 각각 교육장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가족캠프 조건부 기소유예'(대상소년, 보호자가 동시에 처분대상)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사례11〉

> 조건부 기소유예 자체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를 강제토록 한다면 사실상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적 성격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검찰단계에서의 처분으로 존재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다만, 동의를 전제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사례4〉

라. 조건 위반에 대한 재기수사 예외의 필요성

「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7조에 따르면 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재범에 준하여 재기 수사해야 하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시 기소유예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는 재기수사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0.0%이었고, 예외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20.0%이었다.



[그림 5-2-10] 재기수사의 예외 필요 여부

전문가그룹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재기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불이행 사유에 대한 청취 이후 재량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40.0%를 차지하였고, '질병, 군입대, 해외유학 등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건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가 30.0%를 차지하였다.

〈표 5-2-8〉 재기수사의 예외사유

재기수사의 예외사유		빈도	%
필요하다	불이행 사유에 대한 청취 이후 재량판단이 필요한 경우	4	40%
	질병, 군입대, 해외유학 등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건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3	30%
필요하지 않다		3	30%

1차 주관식 개방형질문에서도 전문가그룹은 대상소년이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 재기수사해야 하지만, 이때에도 '질병, 학사일정 등으로 조건 미이행에 고의성 등이 없는 경우', '비행이 경미하고 합의가 원만한 경우'에는 재기수사의 예외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는 게 재비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을 경시하고 원인과 결과를 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단, 비행이 매우 경미하고 합의가 원만히 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예외를 두도록 한다. 〈사례10〉

센터 교육조건부의 경우 1차 교육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번에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소를 진행하는 등 사건을 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소년들이 다른 소년들의 처분에도 관심이 매우 많고 이미 상호간 관계형성이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봐주기"식의 조치는 법의 엄정함을 퇴색시키고 교육의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질병, 군입대, 해외유학 등 소년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재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로 생각된다.〈사례9〉

원칙적으로 '처분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제도적 취지이므로, 이를 벗어나는 경우는 사건을 재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사전에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불성실한 이행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소년으로 하여금 법률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오히려 훼손하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 사건재기를 하지 않는 "예외사유"의 경우로는 고의성이 없는 질병, 학사일정 등의 특별한 경우로 제한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행자체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집행시기 등을 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처분이행을 독려하는 것이 제도적 실효성,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측면 등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사례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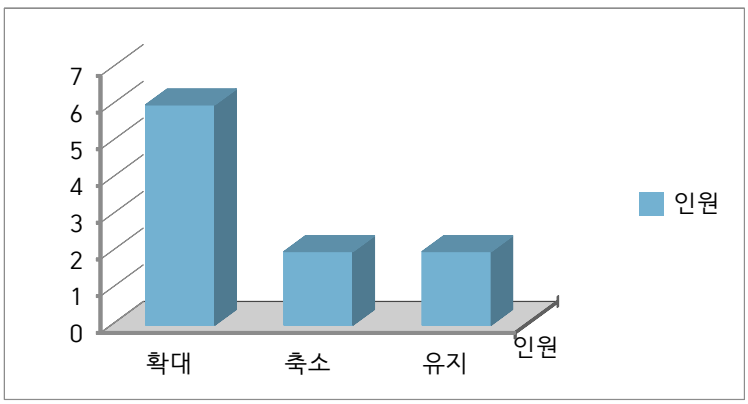
전문가그룹 중 재기수사의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예외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검사의 개인판단에 의하기 보다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는 의견과 재기 과정에서 불이행 사유에 대하여 소년과 보호자의 진술을 다시 청취하고 처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예외사유를 명시하기 보다는 조건 불이행시 검사에게 반드시 별도의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도록 한다면, 검사의 재량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사례4〉

재범 그자체 만으로 이미 충분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조건 미이행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재기 과정에서 불이행 사유 등에 대한 소년과 보호자의 진술을 다시 청취하고, 다른 적정한 처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사례2〉

마.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확대·축소에 관한 의견

최근 조건부기소유예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 6명은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반면에, 2명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또 다른 2명의 전문가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림 5-2-11] 조건부 기소유예의 확대 여부

조건부 기소유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입장에서는 단순 기소유예가 대상소년들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저하시켜 재비행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비행의 경중을 떠나 별도의 조치 없는 단순 기소유예는 소년들로 하여금 준법 및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저하시켜 재비행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대로 기소를 확대·강화할 경우 법원심리까지 소년사법절차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늘어 선택

과 집중이 어려워지고 낙인 효과는 커지는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므로 교육 등의 조건이 있는 다이버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사례9〉

검찰단계의 "단순 기소유예" 등은 오히려 사법절차상에 진입한 소년범에 대하여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한 반성과 변화계기를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 발달기적으로 가변성이 높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조건부 기소유예 다양화 및 교육조건부기소유예의 활성화 등을 통한 확대가 필요하다.〈사례11〉

4.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

가.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 전반의 문제점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대상소년의 참여의식 및 동기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유형별 대상자 선정기준의 불명확'이 2순위, '검사의 다이버전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 소극적'이 3순위, '불이행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이 4순위, '단순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의 기준 부재'가 5순위로 응답하였다.

1순위의 비율로 본다면, '대상소년의 참여의식 및 동기 부재'가 30.0%, '검사의 다이버전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 소극적'과 '단순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의 기준 부재'가 20.0%, '유형별 대상자 선정기준의 불명확', '불이행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학교폭력예방 특별교육 등 이전의 선도교육 내용과 중복'이 각각 10.0%를 차지하였다.

〈표 5-2-9〉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순위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평균	1순위 (%)
1	대상소년의 참여의식 및 동기 부재	1.40	30
2	유형별 대상자 선정기준의 불명확	1.40	10
3	검사의 다이버전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 소극적	1.10	20
4	불이행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1.00	10
5	단순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의 기준 부재	1.00	20

순위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평균	1순위 (%)
6	이전 선도교육 내용과 중복(학교폭력 특별교육)	0.90	10
7	다양한 조건(부담) 유형 개발에 소극적	0.90	0
8	피해회복을 위한 관점 결여로 처분의 신뢰성 및 공감도 저하	0.60	0
9	보호자의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	0.40	0
10	보호자 교육 미실시로 인한 가정의 보호력 지속의 어려움	0.40	0
11	검사의 기소재량의 하나로 활용	0.40	0
12	재학생이라 보호자동의서 작성시 민원 발생 우려	0.20	0
13	재범방지 효과 미약	0.20	0
14	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부족	0.10	0

1) 결정전조사의 문제점

1차 전문가 개방형 질문에서는 결정전 조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다수 있었다. 보호관찰소에서 주로 결정전조사서가 작성되고 있으나, 비행소년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거나 조사서 작성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작성한 조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과정에서 활용도를 낮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도 평가하였다.

>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결정전조사의 경우는 전공·자격보유 등의 전문인력을 전담 배치, 활용하는 부분에서 다소 형식적·미온적이며, 이러한 결정전조사서의 질적수준 미흡은 처분과정에서의 활용부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부 보호기관의 경우, 검찰의뢰 소년 결정전조사는 보호관찰소로 일원화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다. 성인 조사서의 경우는 임상심리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선발·배치하여 작성토록 하여 전문성을 기하고 있으나, 소년 조사서의 경우는 조사서 작성 전공, 자격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임직원을 선발, 배치·활용하기 보다는 전체 직원에게 분담토록 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비전문가에 의한 조사서 작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검찰청 내에서는 형사사건과 소년사건을 병행하여 검사에게 배당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전문검사제 운영이 미흡, 결정전조사서의 활용 저조까지 이어진다. 또한 소년 담당검사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조사서에 대한 피드백, 정보공유 등의 시스템 부족도 조사서 활용도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사례11〉

2) 집행상 문제점

일부 전문가들은 조건부 기소유예 집행과정에서도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실제로 학업 지장을 이유로 보호자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교육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 선도교육을 위탁함으로써 대상소년의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다수가 재학생 신분이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며, 실제 민원제기를 강하게 하는 보호자의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진행되지 않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사례9〉

> 검찰청에 따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같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 위탁을 함으로써, 사법절차 단계에 있는 처분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비행예방교육 분야의 전문역량 함양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사례11〉

3) 단계적 처분으로 인한 문제점

전문가들은 실무상 조건부 기소유예를 단계적 처우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대상소년별 특성에 따른 조건부과보다는 검찰청별 연계된 인프라에 따라 다른 처분을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 기존 3가지 유형의 조건부 기소유예(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교육조건부, 보호관찰 조건부 등) 부과시 대상자별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기 보다는 각 검찰청별 연계가능한 외부 인적·물적 인프라 등에 따라 처분을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각적인 사건 개시가 아니라 타 조건부 기소유예를 한번 더 부여하는 등 단계적 처우로 활용하는 점, 검찰청(소년담당 검사)의 처분 후 대상소년별 처분이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는 점 등이 문제이다.〈사례11〉

나.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별 문제점

전문가그룹에게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인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각

각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1)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전문가들은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으로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부족'을 1순위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법사랑위원 개인간 이해와 자질 편차 발생'이 2순위, '법사랑위원의 체계적인 지도·감독의 어려움'이 3순위, '지역유지 등 사회적 지위 있는 자의 경력 활용도구로 전락'이 4순위,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어 형식적인 절차 진행'을 5순위로 보았다. 1순위 비율로는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부족'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법사랑위원 개인간 이해와 자질 편차 발생'이 40.0%, '법사랑위원의 체계적인 지도·감독의 어려움'이 10.0%로 보았다.

〈표 5-2-10〉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순위	법사랑위원 조건부 기소유예 문제점	평균	1순위 (%)
1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부족	2.70	50
2	법사랑위원 개인간 이해와 자질 편차 발생	2.40	40
3	법사랑위원의 체계적인 지도·감독의 어려움	1.20	10
4	지역유지 등 사회적 지위 있는 자의 경력 활용도구로 전락	1.10	0
5	형식적인 절차 진행(관계형성에 미흡)	0.90	0
6	검사에게 선도결과 피드백 부실	0.50	0
7	기존 인맥관계에 의한 위촉 연장	0.40	0
8	법사랑위원의 시간 및 노력에 대한 보전 미흡	0.30	0
9	자체 실시되는 상담교육의 부적절	0.30	0
10	위탁운영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의 어려움	0.20	0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전문가들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부족으로 접근성 떨어짐'을 1순위로, 다음으로 '지나치게 단기교육이라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2순위, '교육대상에 대한 기준 미비'가 3순위, '기존 학교 내외 선도교육 대상 및 내용 중복'이 4순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전담인력

부족'이 5순위로 나타났다. 1순위 비율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부족으로 접근성 떨어짐'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나치게 단기교육이라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30.0%, '교육대상에 대한 기준 미비'가 20.0%로 나타났다.

〈표 5-2-1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순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평균	1순위 (%)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부족(접근성 떨어짐)	2.40	50
2	지나치게 단기교육(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	1.70	30
3	교육대상에 대한 기준 미비	1.40	20
4	기존 학교 내외 선도교육 대상 및 내용 중복	1.10	0
5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전담인력 부족	0.90	0
6	보호처분과의 차별성 부재(실질적 제재)	0.80	0
7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 및 위상을 고려한 컨트롤타워 부재	0.50	0
8	재학생 학기 중 교육에 대한 보호자 민원 제기	0.40	0
9	학교의 비행사실 인지에 대한 보호자의 부정적 입장	0.40	0
10	집단교육의 부작용(비행학습)	0.40	0

전문가그룹에 대한 1차 개방형 질문에서도 조건부 기소유예대상 70% 이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결손 등을 이유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호소하고 있어 검사가 처분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의 과반수 이상(약 70~75%) 정도가 학생이기 때문에 대상소년 및 보호자는 '학업결손' 등을 이유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강한 부담감, 거부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담당검사들이 처분시 처분기간(교육이수시간)을 단축, 축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비행예방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 3~5일 정도의 집중교육이 필요하나, 대상소년 및 보호자 등의 민원제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에게 4시간, 1일 이내의 교육과정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처분의 실효성에 한계로 작용한다〈사례11〉

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검찰 선도위탁대상과 법원 보호처분 대상에 대한 동일 처분'을 1순위로, 다음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포화상태'가 2순위, '소년보호관찰 인력 부족'이 3순위,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이 4순위, '보호관찰관의 소년업무 전문성 부족'이 5순위로 나타났다. 1순위 비율로는 '검찰 선도위탁대상과 법원 보호처분 대상에 대한 동일 처분'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포화상태'가 30.0%, '소년보호관찰 인력 부족', '보호관찰관의 소년업무 전문성 부족', '보호처분과 구분되지 않음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효과 우려'가 각각 10.0%로 나타났다.

〈표 5-2-12〉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순위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평균	1순위 비율(%)
1	검찰 선도위탁대상과 법원 보호처분 대상에 대한 동일 처분	2.30	40
2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포화상태	1.90	30
3	소년보호관찰 인력 부족	1.30	10
4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	1.30	0
5	보호관찰관의 소년업무 전문성 부족	1.20	10
6	보호처분과 구분되지 않음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효과 우려	0.90	10
7	보호관찰관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소년관리의 차질	0.70	0
8	비행심화 소년에게 노출될 가능성	0.10	0
9	소년범 개개인에 대한 관심 부족	0.10	0

1차전문가 개방형 질문에서도 보호처분단계에서의 보호관찰과 기소유예 단계에서의 보호관찰이 구분되지 않아 기소유예제도가 원래 목표했던 사법적 낙인을 배제하는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소년보호관찰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는 소년의 입장에서 보호처분의 보호관찰과 구분이 되지 않아 처분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있어 사법적 낙인효과가 있다. 〈사례8〉

선도위탁 1급의 경우 보호처분 4호와 처분기간이 동일(6개월)하다는 점에서 보호처분 과의 차별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선도위탁 2급의 경우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수준이 경미하여 제도적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사례11〉

현실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소년보호관찰 인력부족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도 버거운 현실이다. 또한 최근에 법무부의 소년사법정책 방향이 수강명령을 포함하여 소년범에 대한 교육적 처분 집행을 센터로 일원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관찰 선도위탁은 실효성에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사례9〉

5.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가.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전문가에게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바탕으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한 결과, '전담검사제와 소년보호관찰 전문화 등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가 1순위를 차지하였고, '검사의 필요성 자각 및 대상선별에 대한 관심 제고'가 2순위, '대상자 면담 및 결정전 조사 적극 활용'이 3순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회복적 사법 요소 가미'가 4순위,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5순위로 나타났다.

1순위 비율별로 살펴보면, '전담검사제와 소년보호관찰 전문화 등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검사의 필요성 자각 및 대상선별에 대한 관심 제고'가 각각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상자 면담 및 결정전 조사 적극 활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회복적 사법 요소 가미', '대상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의무규정 신설'이 각각 10.0%를 차지하였다.

〈표 5-2-13〉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

순위	조건부기소유예제도 개선방안	평균	1순위 (%)
1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전담검사, 전담 보호관찰제 등)	2.50	30
2	검사의 필요성 자각 및 대상선별에 대한 관심 제고	1.80	30
3	대상자 면담 및 결정전 조사 적극 활용	1.50	10

순위	조건부기소유예제도 개선방안	평균	1순위 (%)
4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회복적 사법 요소 가미	1.10	10
5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	1.10	0
6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0.80	10
7	개인편차 최소화를 위한 공통된 대상자 선정기준 및 목표 마련	0.60	0
8	대상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의무규정 신설	0.60	10
9	검찰청별 사정에 따라 운용 가능한 기소유예프로그램 구비	0.10	0

나.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선별방안

전문가에게 각각의 개선방안별로 필요한 대안을 중요도 순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먼저,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도록 하게 한 결과, '소년사건에 특화된 전담인력 확보'가 1순위였고, 다음으로 '결정전 조사의 의무화'가 2순위, '초범에 대한 결정전 조사 강화'가 3순위, '지침에 대상자 선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이4순위, '소년보호에 대한 전문지식 확보'가 5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1순위 비율별로 보면, '소년사건에 특화된 전담인력 확보'가 3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초범에 대한 결정전 조사 강화', '지침에 대상자 선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이 각각 20.0%를 차지하였으며, '결정전 조사의 의무화', '결정전 조사서의 질적 수준 향상', '소년 및 보호자 직접 면담 실시'가 각각 10.0%로 나타났다.

〈표 5-2-14〉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선별방안

순위	대상자 선별방안	평균	1순위 (%)
1	소년사건에 특화된 전담인력 확보	2.20	30
2	결정전 조사의 의무화(경찰 비행성예측자료표 작성사건은 예외)	1.80	10
3	초범에 대한 결정전 조사 강화	1.60	20
4	지침에 대상자 선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1.50	20
5	소년보호에 대한 전문지식 확보	1.40	0
6	결정전 조사서의 질적 수준 향상	0.90	10
7	소년 및 보호자 직접 면담 실시	0.60	10

다.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개선방안

전문가들은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결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투입'이 1순위였고, '회복적 사법 이념을 반영한 프로그램 도입'이 2순위, '지역사회내 전문기관 연계'가 3순위, '보호자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4순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가 5순위, '다른 조건부 기소유예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병과'가 6순위, '활동중심 교육프로그램 확대'가 7순위로 나타났다.

이를 1순위 비율별로 살펴보면, '회복적 사법 이념을 반영한 프로그램 도입'이 30.0%,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다른 조건부 기소유예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병과'가 20.0%,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투입', '보호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활동중심 교육프로그램 확대'가 각각 10.0%를 차지하였다.

〈표 5-2-15〉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개선방안

순위	프로그램 개선방안	평균	1순위 (%)
1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투입	1.60	10
2	회복적 사법 이념을 반영한 프로그램 도입	1.50	30
3	지역사회내 전문기관 연계	1.30	0
4	보호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1.20	10
5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1.10	20
6	다른 조건부 기소유예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병과	1.10	20
7	활동중심 교육프로그램 확대	1.10	10
8	인력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	0.60	0
9	전문기관 교육 강화	0.50	0

라.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절차 개선방안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절차상 개선할 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물은 결과, '소년전담검사의 충분한 확보'가 1순위였고, '소년사건

전담부서 설치'가 2순위, '결정전 조사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3순위, '법사랑위원의 자질검증 기준 및 절차 마련'이 4순위, '소년 및 보호자 면담 및 실무를 위한 수사관 및 조사관 전문성 강화'가 5순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부과 및 확인절차 마련'이 6순위를 차지하였다.

1순위 비율별로 보면, '소년전담검사의 충분한 확보'와 '소년사건 전담부서 설치'가 30.0%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부과 및 확인절차 마련'이 20.0%, '소년 및 보호자 면담 및 실무를 위한 수사관 및 조사관 전문성 강화'와 '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과 법사랑위원/보호관찰관 선도 병합처분'이 각각 10.0%로 나타났다.

〈표 5-2-16〉 조건부기소유예 처리절차 개선방안

순위	처리절차 개선방안	평균	1순위 (%)
1	소년전담검사의 충분한 확보(집중처리제)	2.00	30
2	소년사건 전담부서 설치	1.60	30
3	결정전 조사제도의 적극적 활용	1.50	0
4	법사랑위원의 자질검증 기준 및 절차 마련	1.30	0
5	소년 및 보호자 면담 및 실무를 위한 수사관 및 조사관 전문성 강화	1.20	10
6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부과 및 확인절차 마련	1.10	20
7	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과 법사랑위원/보호관찰관 선도 병합처분	0.80	10
8	재학생 학습권을 이유로 한 보호자 동의 거부에 대한 법률적 고려	0.50	0

마. 결정전 조사제도 활용도 제고방안

전문가들은 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절한 대상별로 조건을 잘 부과하기 위해서는 결정전 조사서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전문가그룹에게 결정전 조사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 '충실한 결정전 조사 선행'이 1순위로 가장 높았고, '결정전 조사의 의무화'가 2순위, '결정전 조사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검사대상 설명회 및 의견청취'가 3순위, '신속한 회신을 위한 약식조사 활용'이 4순위, '전문 조사 인력 채용'이 5순위, 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확대'가 6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1순위 비율별로 살펴보면, '충실한 결정전 조사 선행'과 '결정전 조사의 의무화'가 각각 4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결정전 조사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검사대상 설명회 및 의견청취'와 '신속한 회신을 위한 약식조사 활용'이 각각 10.0%를 차지하였다.

〈표 5-2-17〉 결정전 조사제도 활용도 제고방안

순위	결정전 조사제도 활용도 제고방안	평균	1순위 (%)
1	충실한 결정전 조사 선행	2.40	40
2	결정전 조사의 의무화(경찰 비행성예측자료표 작성사건은 제외)	1.60	40
3	결정전 조사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검사대상 설명회 및 의견청취	1.40	10
4	신속한 회신을 위한 약식조사 활용	1.00	10
5	전문 조사 인력 채용	0.80	0
6	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확대	0.80	0
7	신뢰도와 타당도 높은 조사도구 개발 및 활용	0.70	0
8	검사와 보호관찰소간 정기적 논의를 통한 필요사항 협의	0.60	0
9	관계기관 조사결과 의견에 대한 구속력 부여	0.30	0
10	조사도구 개발을 위한 학계와 공동연구 진행	0.20	0
11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조사서 평가 정례화	0.10	0
12	대상소년의 성장과정에 대한 심층조사	0.10	0

바. 소년전담검사의 전문성 강화방안

전문가들은 조건부 기소유예가 내실화되고 공정한 처분으로 인식되려면 소년전담검사의 전문성이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전문가들에게 소년전담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1차 주관식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소년사건 전담시간의 충분한 확보'가 1순위로 가장 높았고, '결정전 조사의 적극적 활용'이 2순위', '소년전담검사 양성'이 3순위, '소년전담검사에 대한 적정한 보수교육과 연수기회 제공'이 4순위, '지청별 소년전담검사 배치'가 5순위, '소년비행 관련기관 접촉 확대'가 6순위로 제시되었다.

1순위 비율별로 보면, '소년사건 전담시간의 충분한 확보', '결정전 조사의 적극적 활용', '소년전담검사 양성'이 각각 20.0%를 차지하였고, '소년전담검사에 대한 적정한 보수교육과 연수기회 제공', '지청별 소년전담검사 배치', '인사관리의 필요성', '소년의 생활환경 및 비행환경에 대한 이해'가 각각 10.0%를 차지하였다.

〈표 5-2-18〉 소년전담검사 전문성 강화방안

순위	소년전담검사 전문성 강화방안	평균	1순위 (%)
1	소년사건 전담시간의 충분한 확보	2.10	20
2	결정전 조사의 적극적 활용	1.50	20
3	소년전담검사 양성	1.30	20
4	소년전담검사에 대한 적정한 보수교육과 연수기회 제공	1.10	10
5	지청별 소년전담검사 배치	1.10	10
6	소년비행 관련기관 접촉 확대	1.10	0
7	인사관리의 필요성(일정지역 1년 이상 장기전담)	0.90	10
8	소년의 생활환경 및 비행환경에 대한 이해	0.90	10

사. 조건부 기소유예의 다양화방안

전문가들은 현재의 조건부 기소유예가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유형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조건부 기소유예를 다양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선도프로그램의 충실화'이 1순위, '다이버전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2순위,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집행기관의 운영상황 분석평가'가 3순위, '선도역량 강화'이 4순위, '지역사회의 협력과 인식 제고' 5순위, '신규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후 확대 실시'가 6순위로 나타났다.

이를 1순위 비율별로 보면, '선도프로그램의 충실화'가 40.0%, '다이버전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30.0%,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집행기관의 운영상황 분석평가', '신규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후 확대 실시',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연계'가 각각 10.0%를 차지하였다.

〈표 5-2-19〉 조건부 기소유예 다양화방안

순위	조건부기소유예 다양화방안	평균	1순위 (%)
1	선도프로그램의 충실화	1.90	40
2	다이버전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자세	1.60	30
3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집행기관의 운영상황 분석평가	1.50	10
4	선도역량 강화	1.40	0
5	지역사회의 협력과 인식 제고	1.10	0
6	신규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후 확대 실시	1.10	10
7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연계	1.00	10
8	법사랑위원의 인적 구성 다양화	0.40	0

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전문가그룹에게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1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대상자 추수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가 2순위, '부모교육 실시'가 3순위, '청소년학, 심리학 등 전공 대학생 및 전문가에 의한 멘토멘티제도 활성화'가 4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1순위 비율별로 보면,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50.0%,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이 20.0%, '대상자 추수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와 '부모교육 실시', '대상소년의 인격과 자율성 존중'이 각각 10.0%를 차지하였다.

〈표 5-2-20〉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방안

순위	추가지원방안	평균	1순위 (%)
1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2.90	50
2	대상자 추수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	1.30	10
3	부모교육 실시	1.20	10
4	청소년학, 심리학 등 전공 대학생 및 전문가에 의한 멘토멘티제도 활성화	1.00	0
5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0.90	20
6	대상소년의 인격과 자율성 존중	0.70	10

순위	추가지원방안	평균	1순위 (%)
7	희망직업분야 탐색 및 체험 지원 등 진로지도	0.60	0
8	검정고시 연계, 학습멘토 등 진학지도	0.40	0
9	찾아가는 소년 및 보호자 상담·심리치료 서비스	0.40	0
10	청소년 동반자 연계	0.30	0
11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심리적 지원	0.30	0

자.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사후관리방안

전문가들은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기간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차 개방형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사후관리 방안으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을 통한 대상소년의 정보 공유'가 1순위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검찰과 민간기관의 지속적인 교류'가 2순위, '보호자 및 학교와의 연계상담'이 3순위,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내 CYS-Net 활용 연계'가 4순위, '지역사회 기반 협의체의 종합 및 정리'가 5순위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를 1순위 비율별로 살펴보면, '시스템을 통한 대상소년의 정보 공유'가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검찰과 민간기관의 지속적인 교류', '보호자 및 학교와의 연계상담', '지역사회 기반 협의체의 종합 및 정리', '본인 희망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회 및 제도 마련',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교육적선도 및 특별지원청소년제도와의 연계'가 각각 10.0%로 나타났다.

〈표 5-2-21〉 조건부기소유예 대상자 사후관리방안

순위	대상자 사후관리방안	평균	1순위 (%)
1	시스템을 통한 대상소년의 정보 공유	3.10	50
2	검찰과 민간기관의 지속적인 교류	1.80	10
3	보호자 및 학교와의 연계상담	1.30	10
4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내 CYS-Net 활용 연계	1.10	0

순위	대상자 사후관리방안	평균	1순위 (%)
5	지역사회 기반 협의체의 종합 및 정리	1.10	10
6	본인 희망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회 및 제도 마련	1.00	10
7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교육적선도 및 특별지원청소년제도와 연계	0.60	10

제 6 장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이 승 현

제6장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제1절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선별방안

조건부 기소유예가 성공적으로 제도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검사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사회통제망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검찰 내부의 기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및 프로그램 운영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171] 그래야만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도 처우의 공정성을 인식하고 절차에 대한 신뢰하에 선도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구분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검찰청 예규인 「소년사건 처리지침」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지침상에 열거되어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하나하나에 대하여 점검하고 적절한 대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기준 변경

「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0조 제1호의 사유 중 괄호 안의 열거내용은 자칫 조손가정, 편부·편모가정,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정서적 후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새터민 등도 있을 수 있다. 제3호의 "결손가정으로 인한 범죄"라는 표현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바 수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괄호 안의 열거방식보다는 "가정의 보호력이 낮아 경제

171) 오영근/최병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30쪽.

적·정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 "경제적 생계 곤란 등으로 장기적인 후원과 인성교육이 필요한 경우"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호의 '입시생'의 경우에도 입시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도 유형을 결정짓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입시생이라 하더라도 이수 조건을 변경하는 형태로 조건부 기소유예 실시가 가능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교육 시작시간을 조율할 수 있으므로 입시생이라는 이유로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대상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삭제되는 것이 적절하다.

새롭게 추가가 필요한 유형으로는 "처벌전력이 없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고려될 수 있다. 처벌전력이 없고 사안이 경미하긴 하나 재비행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대상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과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경험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따뜻한 시선과 관심으로 초기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사랑위원이 관계적 유대감 형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밖에 관련기관장이 가정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도 포함하는 것이 대상자의 조기발견과 적절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1. 실질적 보호자가 없어 경제적·정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조손가정, 편부·편모가정, 다문화가정, 소년소년가장 등)~~ 2. ~~입시생으로 수업결손을 피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3. 경제적 생계곤란 ~~또는 결손가정으로 인한 범죄로서~~ 장기적인 후원과 인성교육이 필요한 경우	1.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어 경제적·정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 2. 경제적 생계 곤란 등으로 장기적인 후원과 인성교육이 필요한 경우 3. **처벌전력이 없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4. **과거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5. **기타 가정환경 어려움 등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소년 중 관련기관장이 추천하는 경우**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기준 마련

현행 「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전문교육이 필요한 대상이 구체화되어야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구체화 되고 전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바 지침상으로도 대상자가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교육대상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로는 센터에서 폭력 등 다양한 비행예방교육을 받기에 적절한 대상이어야 하는바,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준법의식 고취나 특정범죄 예방을 위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행을 저질렀으나 안정된 가정·학교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가정의 보호력이 전제가 되어 있거나 학교생활이 원만하다면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교육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4세 미만 저연령 소년의 경우” 법사랑위원 선도에 있어서는 선도위원과 대상자간의 간극 차로 인해 선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의 경우 중비행자도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연령 소년이 오가면서 비행을 학습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저연령 소년의 경우 단기간 집중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 적합하리라 본다.

현행	개정안
없음	1.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준법의식 고취나 특정범죄 예방을 위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한 경우** 3. **비행을 저질렀으나 안정된 가정·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4. **14세 미만 저연령 소년인 경우**

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대상자 기준 변경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보호처분에 있는 보호관찰과 처분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은 제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건부기소유예 단계에서 활용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는 '다이버전'이라는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 우리와 같이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이원화되지 않고 소년형법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독일마저도 소년형법은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적절하고 필요한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건부 기소유예의 유형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이 제재의 성격을 갖지 않도록 대상자 선별이나 선도위탁 내용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단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에 적합한 대상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4조 제1호의 "계획적·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인바 기소유예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초범이지만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호의 "대안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이미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상에게 처분을 한다해도 기소유예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다시 기소유예를 하기보다는 소년부 송치나 다른 처분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행	개정안
1. 계획적·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1. 초범이지만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소년이 이미 대안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거나 대안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2. 이미 대안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경우
3. 일정기간 체계적인 선도·교화가 필요한 경우	3. 일정기간 체계적인 선도·교화가 필요한 경우
4. 단순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나 재범가능성이 높은 경우	4. 단순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나 재범가능성이 높은 경우

4. 이전 보호처분 전력자에 대한 기소유예 자제

대상소년 설문조사에서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가 38.5%를 차지하고 있고, 과거 보호처분 경험이 2회 이상인 경우도 10.5%로 나타났다. 보호처분 경험자가 많다는 것은 조건부 기소유예가 대상자의 과거 처분전력 등을 충분히 반영한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조건부 기소유예 판단이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달려있고, 판단기준도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과거 처분력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결정문이 비공개로 되어 있어 검사가 과거 보호처분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현 사건에 대한 비행력에만 중점을 둔 처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보호처분 전력자인 대상이 다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처분의 경각심을 느끼기 어려워 사안을 경미하게 인식하게 되어 다시 재범에 노출된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이러한 취지에서 독일 「소년법원법」에서는 이미 여러차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도 제45조에 따른 절차중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각주의 「다이버전 행정규칙」에서는 소년전담검사가 여러 번 죄를 범한 소년에게 다이버전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제45조가 정한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 자문결과 현장에서는 반복하여 기소유예되거나 보호처분 유경험자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 선도 및 교육에 있어서 예상보다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는 안도감에 교육 및 선도에 적극적이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바 있다. 따라서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가급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처분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2절 조건부기소유예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방안

1. 검사의 전문성 강화방안

가. 검사의 업무전문성 확보

외국의 사례를 보면 검사가 기소재량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년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검사의 전문성이다. 미국의 경우 소년전담검사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법적 전문성, 목적의 일관성, 책임성을 필요로 하고, 소년의 구체적 상황 및 잠재적 사회복귀 가능성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소년전담검사가 구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대상소년에게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행소년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하기 위해 검사의 전문성은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검사의 전문성이 더더욱 요구된다,

국내 운영현황의 문제점과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관련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서 모두 검사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개선방안의 1순위로 꼽고 있다. 따라서 소년전담검사가 소년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검사의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가 소년사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소년사건과 일반사건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년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국 각 청별로 소년사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소년사건 전담검사가 소년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배당이 필요하다.

둘째, 소년전담검사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검찰청별로 소년전담검사가 지정되어 있긴 하나, 대부분 소년사건을 맡은 경험이 적고, 다른 사건 전담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년전담검사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대검찰청에서는 소년전담검사를 양성하기 위해 소년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소년전담검사라 할지라도 업무의 독립성과 소년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보수교육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전담검사 양성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전담검사가 다수 양성된 것과 같이 검찰 내부에

서 소년전담검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소년전담검사가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적합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소년전담검사의 전문화 교육과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인사관리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소년사건전담의 경우 짧게는 몇 개월에서 1년 이내인 경우가 다수이고 각 청별로 이동을 하는 지라 전담을 길게 맡을 수 없는 분위기이다. 그러다보니 소년사건을 몇 건 맡고 알만하면 자리를 옮겨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소년사건에 대한 전문성은 교육에 의해서도 담보되지만 다양한 사례 적용경험에 의해서도 축적된다. 소년전담판사의 경우도 검사와 유사한 상황이었으나, 내부적으로 소년사건 전담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인해 전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장기간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판사의 수도 늘고 있다. 따라서 소년사건전담의 경우 2년 이상 장기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인사과정에서 특정영역에 대한 차별성을 두고, 장기전담 검사에 대하여는 일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해외연수 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 전담을 독려하는 형태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담검사에 대한 정기적 보수교육과 연수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소년전담검사는 연 1-2회 1일 또는 2일짜리 교육을 통해 소년비행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만으로는 소년사법의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고, 다양한 처우에 대한 고민과 도전을 생각해볼 수도 없다. 따라서 소년전담검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히 사건처리절차 안내만이 아니라 소년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이해, 비행청소년의 비행원인과 특성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년사건 사례 공유를 위한 장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년사건 전담의 역량은 전담검사 개인의 지역정보와 역량에만 맡겨져 있다. 한 전담검사가 많은 사례를 경험하기에는 소년사건의 비율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소년사건의 경우 다양한 비행환경과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적 여건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위해서는 유사사례에 대한 다양한 정보교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년전담검사의 사건처리 사례경험이 공유될 수 있도록 분기별 또는 격월로 소년전담검사 사례회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나. 결정전 조사서 활용도 제고

결정전 조사서는 검사의 판단에 있어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그 활용도가 높아야 하지만 공식통계상 전체 소년사건의 5.0% 미만,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서 21.4%의 대상소년만이 결정전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아직 결정전 조사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결정전조사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초기비행 사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결정전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경찰단계에서 비행성예측자료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중복조사가 될 수 있는 부분만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임의규정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조사담당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검사가 제도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172] 그러나 비행소년의 적절하고 객관적인 처분을 위해 검사의 재량에 따라 위탁하는 임의적 규정이 아니라 필요적·강제적 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173]

둘째, 충실한 결정전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 내 조사전문인력이 양성될 필요가 있다. 현재 보호관찰소 내 조사서 작성자가 조사서 관련 전공이나 자격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에게 업무분담하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에 의한 조사도 실시되고 있고, 이렇게 작성된 조사서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호관찰 인력 중 결정전 조사서 작성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야 한다.

셋째, 검사와 보호관찰관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조사서의 결과가 처분에 있어 반영되고 그 결과가 다시 보호관찰소로 피드백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의 처분과 판단결과를 신뢰하고 보다 더 정확한 조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정전 조사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 대상 결정전 조사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

172) 박영규, "개정소년법상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57호, 한국교정학회, 2012, 117쪽.

173) 이승현, "한국 개정소년법상 소년의 권리보장", 소년보호연구 제1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8, 7쪽.

2.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강화방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와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법사랑위원의 전문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대상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평균 1개월에 1회 정도의 만남을 하고 있고, 그 마저도 20~40분의 짧은 만남이라는 응답이 약 50.0%를 차지하고 있다. 법사랑위원의 최대 장점은 민간인이라는 위치에서 인적 유대관계를 통해 재비행 예방을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에는 위와 같은 시간과 노력은 비행소년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문제는 법사랑위원 스스로 비행소년에 대하여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법사랑위원 스스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2차 범죄예방정책'으로 57.3%가 이해하고 있어 조건부 기소유예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 필요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법사랑위원이 전문성을 갖고 대상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법사랑위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를 통해 연 1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나, 주로 성과보고회인 경우가 많고, 소년사법제도의 개관에 대한 교육이 1-2시간 실시될 뿐이다. 교육내용도 매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이해하거나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새롭게 법사랑위원으로 위촉된 자와 이전부터 활동하는 자의 교육내용이 동일하다. 따라서 법사랑위원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분리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사랑위원간 편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현재 법사랑위원에 대하여는 위촉 이후 재위촉까지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지속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법사랑위원 위촉 이후에 본인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재위촉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 법사랑위원이 위촉된 이후 노력이 별다르게 투여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법사랑위원의 개인 자질에 의존하여 대상소년을 맡겨야 한다. 최근 법사랑위원에 대한 관리 업무가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되었다.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격차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검찰청 내 법사랑위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재위촉에 대하여도 지침상 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법사랑위원의 관리체계인 마일리지 제도에 대하여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법사랑위원의 재위촉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보면 활동분야별 양적 점수기준을 가지고 있을 뿐 활동분야에 대한 질적 평가가 전혀 없다.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하여 수탁 지정만으로 1인당 5포인트가 적립되고, 경과통보서를 제출한 횟수에 따라 2포인트가 지급되고 있을 뿐, 실제 기소유예 대상소년과 얼마나 자주 만나 선도를 하고 있는지, 경제적 또는 기타 지원을 위한 노력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 선도에 관한 배점보다는 오히려 간담회 등 회의참석, 교육수강 등에 대한 마일리지 적용배점이 더 높아 법사랑위원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사랑위원의 마일리지 점수가 이후 재위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대상소년의 선도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질적 평가결과가 마일리지 산정에 있어 점수화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이 개편되어야 한다.

3.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강화방안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1인당 전담하는 인력이 현재 6-10명인 경우가 29.1%를 차지하였고, 16명 이상인 경우도 10.9%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체업무 중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이내라고 응답한 보호관찰관이 63.6%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소년보호관찰 업무가 전문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소년보호관찰 전담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성인범 보호관찰 못지않게 소년범의 보호관찰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소년범의 보호관찰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년보호관찰에 전문화된 인력이 많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소유예단계에서의 보호관찰과 보호처분단계에서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분리하여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지도감독이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기소유예대상자와 보호처분 대상자와 혼재되어 관리됨으로 인해 기소유예대상자가 경비행 대상자로 분류되고 지도감독이 소홀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소유예 전담 보호관찰관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

제3절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다양화방안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처우 및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소유예제도가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이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상소년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는 16-17세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92.9%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경제수준이 보통 이상인 경우가 87.1%에 이를 정도로 보호처분 대상자와 비교할 때 가정의 외적 보호력 수준이 높은 대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에게 경제적 지원 강화해주는 개입은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음에도 대상소년이 비행을 저지른 이유는 가정의 기능적 보호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 보호자의 자녀지도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년범 중 학업중단자의 비율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최근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방안에서도 '학교밖지원센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신설 등 학업중단자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조건부기소유예 대상소년의 경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76.8%이었고, 학업중단자는 14.5%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소년범의 특성과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의 특성에 차이가 있고, 학업중단자 중심이 아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제도적 개입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대상소년 및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캠프 등 보호자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활성화

현재 보호자교육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고 자녀의 비행에 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교육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하지 않는 구조이다. 물론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자체가 다이버전 성격을 띠고 있고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부모에게 일정기간 교육을 강요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자녀의 비행에 대하여 일정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재비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검찰청 단위로 가족캠프가 시범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에게 자녀의 선도를 위한 지도감독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보호자교육이 병행되는 형태의 조건부 기소유예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녀의 지도감독에 소홀하거나 훈육방식에 문제가 있는 가정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캠프 참여를 통해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육과 선도의 병합 기소유예

현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은 초기비행자에 대하여 비행예방교육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으나 3-5일의 단기교육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보호관찰소나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나 대상자를 장기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병합처분 형태의 기소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의견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관찰/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병합형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순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실무상 두 개의 조건이 병합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새로운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으로 교육과 선도를 결합한 형태의 병합 기소유예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회복적 사법을 접목한 화해조건부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지도감독을 받거나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절차가 중지되기 때문에 대상소년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자기반성 기회가 부족한 채 절차가 종료된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의 요소를 조건부기소유예에 가미하여 회합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74]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

174)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성인범에 실시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에 착안하여, 소년범에 대하여도

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다이버전으로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사법을 접목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조건부 기소유예가 실시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독일 소년법원법 제45조 제2항의 조건부과형태로 실시되는 피해자-가해자 조정프로그램, 미국 뉴욕 브루클린과 브롱스의 『Common Justice』가 이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대상소년의 실질적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인과 같이 배상합의 등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사과와 반성에 기초를 한 회복적 사법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복적 사법을 중재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의 기소유예가 실시되어야 한다.

4.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최근 청소년 대부분이 학교와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 이후 청소년의 자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175]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나 흡연 또는 음주, 유해화학물질을 통한 중독증세가 심각해지고 있다.[176] 따라서 이들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이나 음주·흡연로 인한 중독증세 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유형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새로운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으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이 언급된 바 있다.

현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으로 중독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단시간의 교육에 불과하고 치료를 위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영국의 정신건강관련 다이버전(Psychiatric Diversion)이나 미국 워싱턴 킹카운티의 『The 180』 형태가 이러한 유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중독예방 교육프로그램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치료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피해자도 소년인 경우'나 '기소유예요건을 충족하지도 않고 조건부 기소유예에도 부적합한 소년'에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최영승, "소년범의 기소유예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7, 211쪽).

175) 2016년 13세~19세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면, 가정생활 스트레스가 32.0%,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50.5%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 통계, 2018).

176)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11년 11.4%에서 2017년 30.3%로 크게 증가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2018).

치료조건부 기소유예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이나 법사랑위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러한 기관에서의 치료과정과 결과가 검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5. 담임교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본 연구에서 대상자 설문조사 결과 학업중단자는 14.5%에 불과하였고, 기소유예 대상자 대부분이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재학생이었다. 따라서 학교 내에 있는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하여는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담임교사를 선도위원으로 지정하여 선도하도록 하는 형태인 담임교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학생인 경우 대검찰청「소년사건 처리지침」제6조에 따라 검사가 처분 전에 교사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긴 하나, 이는 참고사항일 뿐 기소유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학생에 대한 근거리 선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에게 선도의 역할을 부여하는 기소유예 형태가 필요하다.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교육청과 협업하여 '교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위해 담임교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학교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기관과 사법기관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 재범예방에 보다 충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절 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리절차 개선방안

1. 절차상 설명의무 부여

처분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조건부기소유예제도가 검사의 사건처리 편의를 위한 제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절차 진행과정에서 대상소년에 적절한 권리 등이 제공되어

야 한다. 대상소년 설문조사 결과 결정전 조사를 실시했는지를 모르겠다는 응답이 42.7%이고, 검사 처분 전 조건을 부과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대상자 및 보호자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보호자와 대상소년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이다. 따라서 대상소년 및 보호자의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건부기소유예 처분 이전 단계에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설명절차가 마련되고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방법 마련

아무리 조건부기소유예 대상자라 할지라도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해야 함에도 검사의 입장에서 유죄의 의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는 할 수 없다.[177] 그러나 현재 소년사건에서 1차적 선택권이 모두 검사의 재량에 달려있는 바 조건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불복할 방법이 없다. 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조건 선택의 신중성의 기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소년법상에 마련되어야 한다.

3. 조건부 기소유예 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

조건부기소유예제도는 법적 확정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조건부 기소유예는 언제든지 재기소가 가능하고 대상소년이 조건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178] 이러한 불안한 지위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상소년이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

177) 허일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 법학연구 통권 제3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9쪽.

178) 허일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 법학연구 통권 제3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9쪽.

현재 「소년사건 처리지침」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긴 하나, 조건의 취소는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소년법 제49조의3 규정에 “대상소년이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재범을 저지른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제5절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안

1. 조건부 기소유예 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고 재범방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처분과정에 대한 정보가 사법단계 및 위탁기관간 정보가 공유되어 초기비행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기소단계 다이버전을 위해 대상소년에 대한 정보가 사법단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팀에게까지 전달되어 검찰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소년 다이버전을 위한 민감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통합관리될 필요가 있다.

첫째, 사법단계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사사법 정보를 통합하여 단계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복된 조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경찰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조사결과마저도 검찰단계에서 공유되지 않아 검찰단계에서 또다시 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판단을 위해 불필요한 조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찰단계에서 제공되는 비행성예측자료표의 내용에 있는 조사만이라도 중복되지 않도록 정보가 공유해야 한다.

둘째, 조건부기소유예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해 소년사법 기관간 정보의 흐름을 조정하고 정보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최근에 소년비행예방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년비행예방기본계획의 ‘소년비행예방협의체’ 신설이 아마도 이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기구를 통해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정보가 연계되고, 검찰이 기소유예대상자로 확정하게 되면 이들 정보가 법사랑위원회,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전달되고,

이후 교육 또는 선도결과가 검찰에 정보가 회신되도록 하며, 교육 또는 선도 이후에도 해당 정보가 관련 지방자치단체로 연계되어 사후관리까지 유지될 수 있고, 지역사회 내 정보가 다시 데이터로 관리되어 대상자가 재범을 했을 경우 해당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강화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대상은 일정기간 교육 또는 선도를 경과한 이후에는 사회 내에서 방치되고 있다. 그때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의 보호력이 낮은 경우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기간 조건부 기소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자원과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에 기반한 CYS-Net상의 '교육적 선도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법기관간의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문화되고 있는 교육적 선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선도기관과 사법기관이 연계하도록 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종료 후 대상소년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지역사회내 자원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석배, 청소년선도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검찰선도유예제도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강동욱, “소년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9집, 20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2018.

김양균, “소년선도보호제도의 배경”, 청소년범죄연구 제4집, 법무부, 1983.

김성은, “독일의 기소유예와 법관동의제도”, 안암법학 제29권, 안암법학회, 2009.

김승구, 외국의 소년범죄처리제도와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김용우, 소년법개론, 도서출판 상린, 2007.

김을룡,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운영실태 및 내실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8-2017.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8-2017.

독일법연구회, 독일형사소송법, 사법발전재단, 2018.

박영규, “개정소년법상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57호, 한국교정학회, 2012.

박영수, “한국 소년선도보호제도의 과제”, 법무자료 제135집, 법무부, 1990.

박재윤/김병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한독간의 비교”, 법학논총 제9집,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형사소송법(제2판), 홍문사, 2016.

법무부, 독일형사소송법, 2012.

법무부, 2018년 법무연감, 2018.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 범죄예방활동 실무노트, 2018.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 제7회 청소년상담실 워크숍 자료집, 2016.

손동권·신이철, 형사소송법(제2판), 세창출판사, 2014.

송영구, 범죄자원봉사위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신동운, 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11.
신동운, “소년선도보호제도의 장래”, 청소년범죄연구 제4집, 법무부, 1986.
신동운, “Diversion 운동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정책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87.
신양균, 형사소송법(신판), 화산미디어, 2009.
심상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안경옥, “청소년범죄의 형사법적 대책과 검사의 역할”, 경희법학 제42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18학년도 교육계획, 2018.
양인철, “독일의 부담부 기소유예제도”,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13호, 대검찰청, 2008.
오영근/최병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옥필훈, 소년사법에 있어서 다이버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윤춘구, “한국과 독일의 소년사법제도”, 북부검찰실무연구 제2집, 서울북부지검, 2009.
이진국, “소년다이버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이진국, “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이승현, “한국 개정소년법상 소년의 권리보장”, 소년보호연구 제1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8.
이은모, 형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2015.
이재상/박미숙, 검사의 기소재량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전지연, “경찰다이버전의 도입필요성과 그 내용”,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4.
정태균, 소년범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관련하여, 법조문화사, 1981.
조광훈, “수사기관에 의한 다이버전의 활성화방안”, 사법행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진계호, 형사소송법(제2판), 형설출판사, 2004.
최영승, 형사소송법(제3판), 피엔씨미디어, 2015.

최영승, “소년범의 기소유예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7.

통계청 ·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 통계, 2018.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허일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 법학연구 통권 제3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국제신문, “청소년범죄 감소, 비결은 ‘조건부 기소유예’”, 2014년 12월 30일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1231.22008191914, 2018년 11월 8일 최종검색).

박주민 의원실, “「보도자료」 1년만에 소년원에 돌아오는 소년범 증가추세”, 2018년 10월 24일자.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omincenter&logNo=221383597331&categoryNo=14&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2018년 11월 5일 최종검색).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bumbang.or.kr/sub01/sub01_04.php, 2018년 6월 23일 최종검색).

연합뉴스, “가족참여교육 효과 있네, 소년범 재범률 뚝 떨어졌다”, 2017년 1월 13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3/0200000000AKR20170113094700054.HTML?input=1195m, 2018년 11월 8일 최종검색).

연합뉴스, “경기북부 소년범 재범률 작년 20.1%..전년보다 낮아져”, 2013년 11월 26일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17902, 2018년 11월 8일 최종검색).

2. 외국문헌

〈영미문헌〉

Fair and Just Prosecution, ISSUES AT A GLANCE: Promising Practices in Prosecutor-Led Diversion, 2017 (https://university.pretrial.org/HigherLogic/System/DownloadDocumentFile.ashx?DocumentFileKey=73a16fcf-c0fb-6d3b-32cc-d5584176126c,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Backstrom James C. & Walker, Gary L., "The Role of the Prosecutor in Juvenile Justice: Advocacy in the Courtroom and Leadership in the Community", William Mitchell Law Review Vol. 32 Issue3, 2006.

National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National Prosecution Standards Third Edition, NDAA, 2016. (http://ndaa.org/wp-content/uploads/NDAA-Juvenile-Prosecution-Standards-Revised-11-12-2016-Final.pdf, 2018년 8월 20일 최종검색).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OJJDP Statistical Briefing Book (https://www.ojjdp.gov/ojstatbb/crime/qa05101.asp, 2018년 9월 25일 최종검색)

The Scottish Government, Diversion from Prosecution Toolkit-Diverting Young People from Prosecution, 2011, p.1(https://www.gov.scot/Resource/Doc/351942/0118158.pdf, 2018년 11월 1일 최종검색).

U.K. Youth Justice Board/Ministry of Justice, Youth Justice Statistics 2016 to 17 England and Wales Statistics Bulletin, Ministry of Justice, 2018,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76072/youth_justice_statistics_2016-17.pdf, 2018년 7월 14일 최종검색).

Huffpost, If You Want To Totally Change America's Criminal Justice System, 2018.5.29(https://www.huffingtonpost.com/entry/fair-just-prosecution-criminal-justice-reform_us_5aff5a94e4b0463cdba1e59d, 2018년 11월 7일 최종검색)

Is Prison the Answer to Violence? (https://www.themarshallproject.org/2017/02/16/is-prison-the-answer-to-violence, 2018년 9월 10일 최종검색)

〈독일문헌〉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Juvenile Criminal Law: overview, 2012, p.6 (독일 연방법무부 출장 당시 제공자료)

Beulke/Swoboda, Strafprozessrecht, C.F. Müller, 2018.

Diversionsrichtlinienin Berlin, 2014. (https://www.dvjj.de/sites/default/files/medien/imce/documente/themenschwerpunkte/diversionsrichtlinie_berlin_2014.pdf, 2018년 11월 4일 최종검색)

Gerhard Nothacker, Erziehungsvorrang und Gesetzesauslegung im Jugendgerichtsgesetz.: Eine systematisch-methodologische Analyse jugendstrafrechtlicher Rechtsanwendungsprinzipien, Duncker & Humblot, 1985,

Heribert Ostendorf, Jugendgerichtsgesetz, Nomos, 2014.

Meier/Rössner/Trüg/Wulf, Jugendgerichtsgesetz: Handkommentar, Nomos, 2014.

Statistisches Bundesamt, 2016 Rechtspflege: Strafverfolgung, 2017.

Wolfgang Heinz, Kriminalität und Kriminalitätskontrolle in Deutschland: Berichtsstand 2015 im Überblick, 2017(http://www.uni-konstanz.de/rtf/kis/Kriminalitaet_und_Kriminalitaetskontrolle_in_Deutschland_Stand_2015.pdf, 2018년 10월 10일 최종검색)

〈일본문헌〉

内匠舞, 少年法の適用年齢引下げをめぐる議論, 国立国会図書館 調査と情報 ISSUE BRIEF No.963, 2017.

丸山雅夫, 少年法講義, 成文堂, 2016.

武内謙治, 少年法講義, 日本評論社, 2015.

河村 博, 少年法その動向と実務, 東京法令出版, 2010.

再犯防止推進計画等検討会(http://www.moj.go.jp/hisho/seisakuhyouka/hisho04_00050.html, 2018년 10월 14일 최종검색)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平成29年中における少年の補導及び保護の概況, (http://www.npa.go.jp/safetylife/syonen/hodouhogo_gaikyou/H29.pdf, 2018년 10월 14일 최종검색)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平成28 年における少年非行、児童虐待及び児童の性的搾取等の状況について, 2017, (https://www.npa.go.jp/safetylife/syonen/hikou_gyakutai_sakusyu/H28.pdf, 2017년 11월 25일 최종검색)

法務省, 平成29年版 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jp/64/nfm/n64_2_3_2_2_1.html, 2018년 10월 14일 최종검색)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for Juvenile Offenders

Lee, Seung-hyun · Kwon, Hae-soo

Prosecutor has first right to choose procedure of Juvenile case between criminal procedure and that of protection. Also prosecutor can impose various conditions to juvenile suspension of prosecution if there is necessity for proper guidance (Juvenile Law Article 49-3).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for juvenile offenders is diversion to minimize social labelling by imposing various community treatment not by institutional treatment based on potential for change of juvenile. It is widely used for adult criminals since it had started in 1978 at Gwangjoo. There are three types of juvenile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condition: suspension of prosecution with supervision of volunteer for juvenile crime protection, suspension of prosecution with education of juvenile delinquency protection center, and suspension of prosecution with supervision of probation officer.

All the decisions whether to prosecute, impose suspension of prosecution or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completely depend on the discretion of prosecutor. Although there are related provisions on practical guidance for juvenile case of Prosecutors' Office and instructions of Department of Justice, impartiality is under criticism because target selection is usually depending on prosecutor's discretion.

In this sense, it is needed to evaluate how the three types of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programs in operation carried out the purpose of the

system. First, with respect to guidance program from volunteer for juvenile crime protection, it is highly regarded from a perspective of community services using private resources. However, there are specialty problems because the way of intervention and the extent of understanding are different from individual volunteers. Second, juvenile delinquency protection center has a variety of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s but the efficacy is also under criticism in that the period of education is too short because of school curriculum. Third, probation office has nothing but face to face instruction of once or twice a month.

It is hard to find countries empowering prosecutor's wide discretion. In Germany Juvenile Court Act(Jugendgerichtsgesetz §45 ①) provides suspension of proceeding of prosecutor but details of diversion are provided in administrative rules of each states. Involvement of prosecutors in US is limited in scope because most juvenile cases are treated in Juvenile Court. In UK, the extent of intervention of prosecutor has been expanding since introduction of Crown Prosecution System in 1985. Also prosecutors focusing on juvenile case are needed to have specialty and meet the requirements. Prosecutors in Japan has no right to intervene because all juvenile case are processed in Juvenile Court.

This study tried to evaluate objectively whether current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has proper screening system and how each type of suspension of prosecution influences prevention of recidivism.

This study surveyed 582 juvenile delinquents imposed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Accord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76.8% of subjects were student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71.0% had parents, the economic level of 87.1% subjects was above normal. It means the subjects of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has better family backgrounds than subjects of probations or juvenile institutional disposition. Their criminal history was not much. Juveniles repeating suspension of prosecution occupied 17.8% and juveniles

being between suspension of prosecution and protective disposition occupied 37.8%. Regarding more details of each programs, juveniles under suspension of prosecution with supervision of probation officer and volunteer meets them once a month for 20 minutes on average. The subjects of suspension of prosecution with education had delinquent prevention education for 3~5 days. The effects of crime prevention of the subjects under suspension of prosecution with supervision of probation officer was the highest.

According to another survey of 190 staff working for juvenile suspension of prosecution, employment history of the volunteers were longer than other staff. All the staff focused on acknowledgment, encouragement, regular life, restoration of confidence. Especially, volunteers concentrated on restor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and financial support, probation officers focused on regular life, and staff from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helped juveniles to improve their legal mind. The problems the staff point out was low awareness of the subjects, lack of specialized program for each problematic behavior, supervision difficulty resulting from insincere attitude, obscurity of the standards for each type of programs, etc. The way of improvement the staff suggested was to establish each program standards, to strengthen specialty of the volunteers, to unify the management of suspension of prosecution with education and supervision, and to build the system for information sharing related to juvenile justice.

On the survey of 10 expert's opinion, the standards for subjects of each program are suggested. Also, they proposed parents educati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 counselling as a condition, and combination of education and supervision as new types of suspension of prosecution to be introduced. The problem and details for improvements they suggested were similar to that of staff. They said that i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specialty of staff and the standard of subject screening, to make the best use of investigation system before final decision of

prosecutor, and to support enough budget and human resources.

To improve the juvenile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following is needed.

First, the screening standards of practical guidance for the subjects should be changed to fit in individual's character and suspension of prosecution should be limited to the subjects experienced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Second, specialty of prosecutors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y need to make the best use of investigation system before final decision of prosecutor. Also, management system for volunteers should be established. Third, various conditions such as parent education, therapeutic program, reconciliation program, supervision of teacher in charge should be considered as a new type of program. Fourth, duty of explanation for the juveniles and their guardian and the procedure for appeal are also needed to improve the procedure. Fifth, information sharing for the subject through unified information system and continuous monitoring after disposition are also needed not to be exposed to criminal environment.

부록

[부록 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 설문지

ID | | | | | |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참여자 경험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명령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기소유예 처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8. 08.

A. 인적사항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당신이 태어난 년 월일을 해당되는 곳에 써 주세요.
   양력: □□년 □□월 □□일

3. 현재 당신의 교육수준은 어떠합니까?
   ① 초등학교 중퇴 ②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③ 중학교 재학
   ④ 중학교 졸업 ⑤ 고등학교 중퇴 ⑥ 고등학교 재학
   ⑦ 고등학교 졸업 ⑧ 전문대학 중퇴, 휴학 또는 재학
   ⑨ 대학교 중퇴, 휴학, 또는 재학

4. 현재 학교를 그만 둔 상태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 현재 학교를 그만 둔 상태라면, 학업중단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_____년 _____월

B. 가족사항

6. 지금 당신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① 친부모 ② 친어머니(아버지 안 계심)
   ③ 친아버지(어머니 안 계심) ④ 친어머니와 계부(새아버지)
   ⑤ 친아버지와 계모(새어머니) ⑥ 조부모(할아버지 · 할머니)
   ⑦ 친척 ⑧ 양부모(입양의 경우)
   ⑨ 기타 ( )

7. 부모님의 학력을 보기에서 골라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중퇴 · 졸업	③ 중학교 중퇴
④ 중학교 졸업	⑤ 고등학교 중퇴	⑥ 고등학교 졸업
⑦ 대학교 중퇴 · 졸업 이상	⑧ 모르겠다	

1) 아버지의 학력: ( )번

2) 어머니의 학력: ( )번

8. 당신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9. 현재 주거형태는 어떠합니까?

① 가족과 함께 거주 ② 혼자 자취 ③ 동성친구, 선·후배와 함께 거주

④ 이성친구와 동거 ⑤ 보호시설 거주 ⑥ 찜질방, PC방 등

C. 비행 경험

10. 당신은 술을 마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만약 술을 마신다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몇 살 때부터입니까?

만 _____세

12. 당신은 담배를 피웁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 만약 담배를 피운다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은 몇 살 때부터입니까?

만 _____세

14. 처음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_____세

15. 당신은 지금까지 전부 경찰에 몇 번이나 체포되었습니까? 총 _____회

16. 이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전부 기소유예 처분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총_____회

17. 처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_____ 세

18. 이번을 제외하고 과거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유형에 모두 ∨표 하고, 해당 유형의 횟수를 적어주세요.
① 단순기소유예, ____회 ②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_____회
③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____회
④ 꿈키움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_____회
⑤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____회 ⑥ 기타(_____)
⑦ 해당사항 없음 ⑧ 모르겠다

19. 지금까지 법원에서 받은 보호처분은 몇 번입니까? 총_____회

20. 지금까지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유형에 모두 ∨표 하세요.
① 1호(보호자감호위탁) ② 2호(수강명령) ③ 3호(사회봉사명령)
④ 4호(1년이내 보호관찰) ⑤ 5호(2년이내 보호관찰)
⑥ 6호(아동복지시설 위탁) ⑦ 7호(병원,요양소등 위탁)
⑧ 8호(1개월 소년원송치) ⑨ 9호(6개월이내 소년원송치)
⑩ 10호(2년이내 소년원송치) ⑪ 받은 적 없다 ⑫ 모르겠다

21. 당신의 친구 중에서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①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6명 ⑤ 7명 이상

22. 당신의 친구 중에서 보호관찰을 이미 받았었거나, 현재 받고 있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①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6명 ⑤ 7명 이상

23. 당신의 친구 중에서 소년원을 다녀왔거나, 현재 소년원에 입원 중인 친구는 몇 명입니까?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D.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프로그램 참여 경험

24. 이번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의 비행명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① 절도 · 특수절도 ② 사기 ③ (공동)폭행 · 상해
④ 강도 · 특수강도 ⑤ 성폭행 · 강간 ⑥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⑦ 본드 · 가스흡입 등 약물 ⑧ 보호관찰법 위반 ⑨ 살인
⑩ 야간건조물침입 ⑪ 기타( )

25. 이번 처분과 관련하여, 담당 검사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26. 이번 처분과 관련하여 담당 검사로부터 처분을 받을 때 부모님(혹은 법적 보호자)께서 함께 출석을 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27. 이번 처분을 받기 전에 보호관찰소에서 본인의 성장 환경 등에 대해 '검사결정전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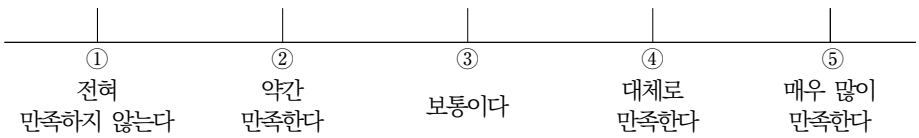
28. 당신은 이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③ 3개월 이상~4개월 미만

④ 4개월 이상~5개월 미만 ⑤ 5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⑥ 6개월 이상

29. 당신이 이번에 받고 있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일 ② 3일 ③ 4일 ⑤ 5일 ⑥ 10일 ⑦ 기타( )

30. 당신이 이번에 받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프로그램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폭력예방프로그램 ② 절도비행예방프로그램 ③ 교통안전프로그램
④ 중독예방프로그램 ⑤ 성비행예방프로그램 ⑥ 기타 ( )

31.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32. 당신은 꿈키움센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담당선생님과 개인 면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33. 담당선생님과 면담을 한 적이 있다면, 1회 상담 시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① 10분 이내 ② 10분~20분 ③ 20분~30분
④ 30~40분 ⑤ 40분~50분 ⑥ 50분 이상
⑦ 해당사항 없음 ⑧ 모르겠다

34. 당신은 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과 면담을 통해 어떤 도움을 제공받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 하세요.
① 물질적 후원(학비, 생활비 지원) ② 진로 및 진학지도
③ 취업 알선 ④ 규칙적인 생활 관리
⑤ 사회재적응 다짐 ⑥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연결
⑦ 가족관계 회복 ⑧ 인정과 격려
⑨ 자신감 회복 ⑩ 또래 등 대인관계 개선
⑪ 법의식 향상 ⑫ 기타(_____)

35. 당신이 다시 비행을 하지 않기 위해 특히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 하세요.

① 경제적 자립
② 학업 유지(복교 및 진학)
③ 규칙적인 생활 태도
④ 비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⑤ 미래에 대한 꿈이나 목표
⑥ 가족관계 회복
⑦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
⑧ 비행친구와의 단절
⑨ 자기조절능력(예, 분노조절, 충동성 조절 등)
⑩ 진로탐색 및 취업 준비
⑪ 기타(쓰시오_____)

36. 당신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담당선생님과의 만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거의 만족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많이 만족한다

37. 당신은 이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참여한다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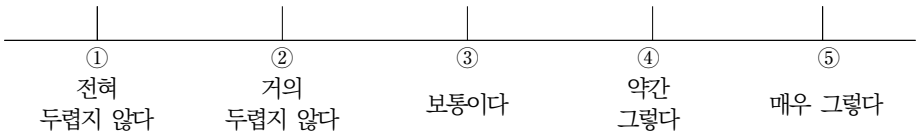
38. 당신이 <u>이번에</u> 받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공정했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별로 공정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공정했다	매우 공정했다

39. 이번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선생님이나 직원분들이 마치 당신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40. 당신은 사회에서 아는 사람들이 당신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봐 두렵습니까?



41. 당신은 지금 받고 있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당신의 재범을 예방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2. 당신은 향후 자신이 재범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43.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당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내 용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보통 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규칙적인 생활 태도 습득	①	②	③	④	⑤
2. 타인과의 관계형성 방법 터득	①	②	③	④	⑤
3. 자기조절 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4. 가족관계 회복	①	②	③	④	⑤
5. 학업 복귀 및 진학	①	②	③	④	⑤
6. 진로탐색 및 취업	①	②	③	④	⑤
7. 경제적 자립	①	②	③	④	⑤
8. 비행친구와의 단절	①	②	③	④	⑤

E. 생활태도

44. 다음 각 문항을 잘 읽고 당신의 생각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하세요.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저축하기보다는 곧바로 써버리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그 전에 하고 있던 일이 무엇이든지 그만 두고 재미있는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미리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말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일이 일어나는 곳에 가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스릴 있는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때때로 생각 없이 행동함으로써 곤란을 겪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불법적인 또는 금지된 일이라도 흥분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같은 것을 반복하면 쉽게 지겨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변화가 없으면 나는 빨리 지겨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결근하는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교나 직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제시간에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만약 복권에 당첨되어 많은 돈을 받으면 학교나 직장을 그만 두고 즐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학교나 직장에 자주 늦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것을 분실한 경우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다음 각 문항을 잘 읽고 당신의 생각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법을 어긴 사람과는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일 체포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 경찰은 공정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돈이 있으면 원하는 재판 판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법은 권력을 가진 힘이 있는 사람만 보호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46. 다음 각 문항을 잘 읽고 당신의 생각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스스로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시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에서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 선생님, 친구는 나를 문제아나 사회의 낙오자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7. 다음 각 문항을 잘 읽고 당신의 생각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나쁜 일을 하거나 법을 어긴 것을 알면 주위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기회가 된다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내가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기소유예 처분 명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창피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수사 과정과 처벌 과정에서 굴욕적인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8. 다음 각 문항을 잘 읽고 당신의 생각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문제아가 아닌 새로운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운명의 주인은 분명히 나 자신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제 내 삶의 의미를 찾았다.	①	②	③	④	⑤
4. 비행 행동을 계속하기엔 내 나이가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 설문지

ID | | | | | |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참여자 경험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명령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기소유예 처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8. 08.

A. 인적사항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당신이 태어난 년 월일을 해당되는 곳에 써 주세요.
   양력: □□년 □□월 □□일

3. 현재 당신의 교육수준은 어떠합니까?
   ① 초등학교 중퇴 ②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③ 중학교 재학
   ④ 중학교 졸업 ⑤ 고등학교 중퇴 ⑥ 고등학교 재학
   ⑦ 고등학교 졸업 ⑧ 전문대학 중퇴, 휴학 또는 재학 ⑨ 대학교 중퇴, 휴학, 또는 재학

4. 현재 학교를 그만 둔 상태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 현재 학교를 그만 둔 상태라면, 학업중단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_____년 _____월

B. 가족사항

6. 지금 당신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① 친부모 ② 친어머니(아버지 안 계심)
   ③ 친아버지(어머니 안 계심) ④ 친어머니와 계부(새아버지)
   ⑤ 친아버지와 계모(새어머니) ⑥ 조부모(할아버지 · 할머니)
   ⑦ 친척 ⑧ 양부모(입양의 경우)
   ⑨ 기타 ( )

7. 부모님의 학력을 보기에서 골라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중퇴 · 졸업	③ 중학교 중퇴
④ 중학교 졸업	⑤ 고등학교 중퇴	⑥ 고등학교 졸업
⑦ 대학교 중퇴 · 졸업 이상	⑧ 모르겠다	

1) 아버지의 학력: ( )번

2) 어머니의 학력: ( )번

8. 당신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9. 현재 주거형태는 어떠합니까?

① 가족과 함께 거주 ② 혼자 자취 ③ 동성친구, 선·후배와 함께 거주

④ 이성친구와 동거 ⑤ 보호시설 거주 ⑥ 찜질방, PC방 등

C. 비행 경험

10. 당신은 술을 마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만약 술을 마신다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몇 살 때부터입니까?

만 _____세

12. 당신은 담배를 피웁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 만약 담배를 피운다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은 몇 살 때부터입니까?

만 _____세

14. 처음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_____세

15. 당신은 지금까지 전부 경찰에 몇 번이나 체포되었습니까? 총 _____회

16. 이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전부 기소유예 처분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총_____회

17. 처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_____ 세

18. 이번을 제외하고 과거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유형에 모두 ∨표 하고, 해당 유형의 횟수를 적어주세요.
① 단순기소유예, ____회 ②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_____회
③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____회
④ 꿈키움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_____회
⑤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____회 ⑥ 기타(_____)
⑦ 해당사항 없음 ⑧ 모르겠다

19. 지금까지 법원에서 받은 보호처분은 몇 번입니까? 총_____회

20. 지금까지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유형에 모두 ∨표 하세요.
① 1호(보호자감호위탁) ② 2호(수강명령) ③ 3호(사회봉사명령)
④ 4호(1년이내 보호관찰) ⑤ 5호(2년이내 보호관찰)
⑥ 6호(아동복지시설 위탁) ⑦ 7호(병원,요양소등 위탁)
⑧ 8호(1개월 소년원송치) ⑨ 9호(6개월이내 소년원송치)
⑩ 10호(2년이내 소년원송치) ⑪ 받은 적 없다 ⑫ 모르겠다

21. 당신의 친구 중에서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①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6명 ⑤ 7명 이상

22. 당신의 친구 중에서 보호관찰을 이미 받았었거나, 현재 받고 있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①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6명 ⑤ 7명 이상

23. 당신의 친구 중에서 소년원을 다녀왔거나, 현재 소년원에 입원 중인 친구는 몇 명입니까?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D.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프로그램 참여 경험

24. **이번**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의 비행명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① 절도 · 특수절도 ② 사기 ③ (공동)폭행 · 상해
④ 강도 · 특수강도 ⑤ 성폭행 · 강간 ⑥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⑦ 본드 · 가스흡입 등 약물 ⑧ 보호관찰법 위반 ⑨ 살인
⑩ 야간건조물침입 ⑪ 기타( )

25. 이번 처분과 관련하여, 담당 검사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26. 이번 처분과 관련하여 담당 검사로부터 처분을 받을 때 부모님(혹은 법적 보호자)께서 함께 출석을 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27. 이번 처분을 받기 전에 보호관찰소에서 본인의 성장 환경 등에 대해 '검사결정전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28. 당신은 이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③ 3개월 이상~4개월 미만
④ 4개월 이상~5개월 미만 ⑤ 5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⑥ 6개월 이상

29. 당신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선생님과 얼마나 자주 연락합니까?

① 1주에 한 번 ② 2주에 한 번 ③ 1개월에 한 번
④ 2개월에 한 번 ⑤ 전혀 하지 않음 ⑥ 기타 ( )

30. 당신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담당선생님과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① 1주에 한 번 ② 2주에 한 번 ③ 1개월에 한 번
④ 2개월에 한 번 ⑤ 전혀 만나지 않음 ⑥ 기타 ( )

31. 당신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담당선생님과 주로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보호관찰소 ② 검찰청 내 상담실 ③ 까페(커피숍)
④ 식당(음식점) ⑤ 길거리/공원 ⑥ 자택(소년)
⑦ 자택(담당선생님) ⑧ 기타(쓰시오_____)

32. 당신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담당선생님과 1회 만남 시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① 10분 이내 ② 10분~20분 ③ 20분~30
④ 30~40분 ⑤ 40분~50분 ⑥ 50분 이상
⑦ 해당사항 없음 ⑧ 모르겠다

33. 당신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담당선생님으로부터 도움받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 하세요.

① 물질적 후원(학비, 생활비 지원) ② 진로 및 진학지도
③ 취업 알선 ④ 규칙적인 생활 관리
⑤ 사회재적응 다짐 ⑥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연결
⑦ 가족관계 회복 ⑧ 인정과 격려
⑨ 자신감 회복 ⑩ 또래 등 대인관계 개선
⑪ 법의식 향상 ⑫ 기타(_____)

34. 당신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특히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3개** ∨**표** 하세요.

① 경제적 자립 ② 학업 유지(복교 및 진학)
③ 규칙적인 생활 태도 ④ 비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⑤ 미래에 대한 꿈이나 목표 ⑥ 가족관계 회복
⑦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 ⑧ 비행친구와의 단절
⑨ 자기조절능력(예, 분노조절, 충동성 조절 등) ⑩ 진로탐색 및 취업 준비
⑪ 기타(쓰시오_____)

35. 당신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담당선생님과의 만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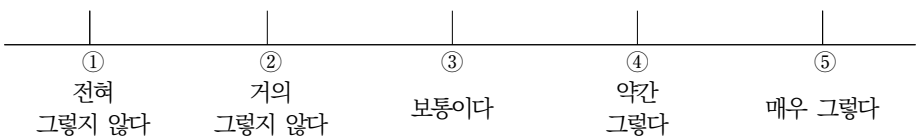
36. 당신은 이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37. 당신이 <u>이번에</u> 받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공정했다고 생각합니까?



38. 이번 처분이 집행되는 동안 담당선생님이나 직원분들이 마치 당신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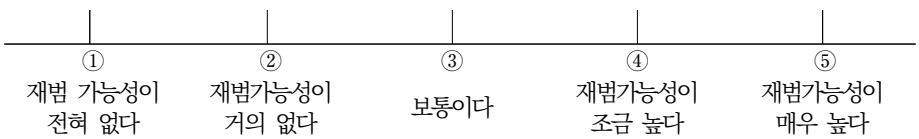
39. 당신은 사회에서 아는 사람들이 당신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봐 두렵습니까?



40. 당신은 지금 받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당신의 재범을 예방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1. 당신은 향후 자신이 재범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42. 이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담당선생님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당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내 용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보통 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규칙적인 생활 태도 습득	①	②	③	④	⑤
2. 타인과의 관계형성 방법 터득	①	②	③	④	⑤
3. 자기조절 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4. 가족관계 회복	①	②	③	④	⑤
5. 학업 복귀 및 진학	①	②	③	④	⑤
6. 진로탐색 및 취업	①	②	③	④	⑤
7. 경제적 자립	①	②	③	④	⑤
8. 비행친구와의 단절	①	②	③	④	⑤

E. 생활태도

43. 다음 각 문항을 잘 읽고 당신의 생각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하세요.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저축하기보다는 곧바로 써버리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그 전에 하고 있던 일이 무엇이든지 그만 두고 재미있는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미리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말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일이 일어나는 곳에 가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스릴 있는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때때로 생각 없이 행동함으로써 곤란을 겪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불법적인 또는 금지된 일이라도 흥분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같은 것을 반복하면 쉽게 지겨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변화가 없으면 나는 빨리 지겨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결근하는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교나 직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제시간에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만약 복권에 당첨되어 많은 돈을 받으면 학교나 직장을 그만 두고 즐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학교나 직장에 자주 늦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것을 분실한 경우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44. 다음 각 문항을 잘 읽고 당신의 생각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법을 어긴 사람과는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일 체포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 경찰은 공정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돈이 있으면 원하는 재판 판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법은 권력을 가진 힘이 있는 사람만 보호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45. 다음 각 문항을 잘 읽고 당신의 생각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스스로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시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에서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 선생님, 친구는 나를 문제아나 사회의 낙오자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6. 다음 각 문항을 잘 읽고 당신의 생각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나쁜 일을 하거나 법을 어긴 것을 알면 주위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기회가 된다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내가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기소유예 처분 명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창피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수사 과정과 처벌 과정에서 굴욕적인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7. 다음 각 문항을 잘 읽고 당신의 생각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하세요.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문제아가 아닌 새로운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운명의 주인은 분명히 나 자신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제 내 삶의 의미를 찾았다.	①	②	③	④	⑤
4. 비행 행동을 계속하기엔 내 나이가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종사자 설문지

ID | | | | | |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실무자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초기 비행청소년의 재범 방지에 미치는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도를 시행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운영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8. 08.

A. 인적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고졸 이하 ② 초대졸 ③ 대졸 ④ 석사학위 ⑤ 박사학위 이상

4. 귀하의 최종 학력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사회복지(사업) ② 심리학 ③ 교육학 ④ 법학
   ⑤ 경영학 ⑥ 교정학 ⑦ 범죄학 ⑧ 기타(_____)

5. 귀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 하세요.
   ① 사회복지사 ② 청소년상담사 ③ 상담심리사 ④ 범죄심리사
   ⑤ 청소년지도사 ⑥ 기타(_____) ⑦ 해당사항 없음

6. 귀하가 법사랑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총 얼마입니까? ____년 ___개월

B. 조건부 기소유예 관련 업무 현황

7. 귀하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 총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①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②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1년 미만 ④ 1년 이상~ 2년 미만
   ⑤ 2년 이상 ~ 3년 미만 ⑥ 3년 이상

8. 귀하의 업무 중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 이내 ② 11~20% ③ 21~30%
④ 31~40% ⑤ 40~51% ⑥ 51~60%
⑦ 61~70% ⑧ 71% 이상

9. 귀하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 ) 명

10. 귀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와 얼마나 자주 연락합니까?

① 1주에 한 번 ② 2주에 한 번 ③ 1개월에 한 번
④ 2개월에 한 번 ⑤ 전혀 하지 않음 ⑥ 기타(_____)

11. 귀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① 1주에 한 번 ② 2주에 한 번 ③ 1개월에 한 번
④ 2개월에 한 번 ⑤ 전혀 하지 않음 ⑥ 기타(_____)

12. 귀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만날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 하세요.

① 반갑다 ⑤ 강제적인 만남인 것 같아 불편하다
② 뭔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에 뿌듯하다 ⑥ 대상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짜증난다
③ 어색하다 ⑦ 잘 모르겠다
④ 아무 느낌이 없다 ⑧ 기타 (_____)

13. 귀하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만났을 때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 하세요.

① 개인면담 ② 전문심리치료
③ 집단상담(미술치료,원예치료 등) ④ 문화체험(영화감상 등)
⑤ 신체 활동(운동 등) ⑥ 식사
⑦ 부모면담 ⑧ 기타(_____)

14. 귀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게 주로 어떤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 하세요.

① 물질적 후원(학비, 생활비 지원) ② 진로 및 진학지도
③ 취업 알선 ④ 규칙적인 생활 관리
⑤ 사회재적응 다짐 ⑥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연결
⑦ 가족관계 회복 ⑧ 인정과 격려
⑨ 자신감 회복 ⑩ 또래 등 대인관계 개선
⑪ 법의식 향상 ⑫ 기타(_____)

15. 귀하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관리하는 동안 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 하세요.

① 경제적 자립 ② 학업 유지(복교 및 진학)
③ 규칙적인 생활 태도 ④ 비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⑤ 미래에 대한 꿈이나 목표 ⑥ 가족관계 회복
⑦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 ⑧ 비행친구와의 단절
⑨ 자기조절능력(예, 분노조절, 충동성 조절 등) ⑩ 진로탐색 및 취업 준비
⑪ 기타(_____)

16. 귀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와의 만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거의 만족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많이 만족한다

17.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가 귀하와의 만남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참여한다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C.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성과

18. 귀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근거, 취지, 목적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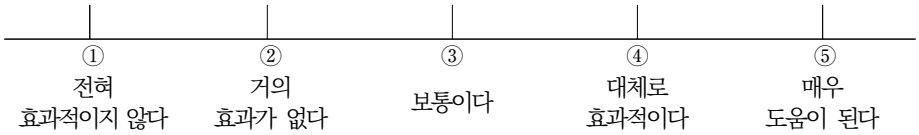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⑤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보통이다	대체로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9. 귀하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다이버전 프로그램**으로 공식사법절차를 최소화하여 소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② **중간제재** 프로그램으로 시설내 처우 이전에 보다 엄격한 환경에서 개입하는 것이다.
    ③ **이차적 범죄예방**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보호요인을 확장하는 것이다.
    ④ 기타(_____)

20. 귀하가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해당 대상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보통 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규칙적인 생활 태도 습득	①	②	③	④	⑤
2. 타인과의 관계형성 방법 터득	①	②	③	④	⑤
3. 자기조절 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4. 가족관계 회복	①	②	③	④	⑤
5. 학업 복귀 및 진학	①	②	③	④	⑤
6. 진로탐색 및 취업	①	②	③	④	⑤
7. 경제적 자립	①	②	③	④	⑤
8. 비행친구와의 단절	①	②	③	④	⑤

21.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1.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비행 청소년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21-2.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비행 소년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22. 귀하가 담당하였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중에서 기소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1~10% ③ 11~20%
④ 21~30% ⑤ 31~40% ⑥ 41~50%
⑦ 51% 이상 ⑧ 모르겠다

2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보호처분(1호~10호 처분) 대상자와 비교해볼 때, 기소유예 대상자의 비행 재범위험성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24. 귀하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관리할 때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3개**만 선택해 주세요.

① 대상자의 상담 동기가 낮고 상담 태도가 불성실하여 상담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② 본인의 비행에 비해 낮은 처분을 받아 비행에 대한 경각심이 낮고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
③ 대상자의 잦은 재범으로 상담 의욕이 상실된다.
④ 초기 비행 청소년을 다루는 스킬이 부족하여 적절한 개입을 하기 어렵다.
⑤ 다른 업무 과중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관리에 집중할 수 없다.
⑥ 비행 정도가 심각한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다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⑦ 대상자 정보(사건기록 및 환경조사서 등)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지 못하여 재조사할 것이 많다.
⑧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다.
⑨ 기타(_____)

25. 귀하는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만 선택해 주세요.

①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명확한 처분 규정이 없어 검사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
② 대상자를 선도조건부 혹은 교육조건부 등으로 처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③ 보호처분을 받아야 할 대상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기간 중에 재범하는 경우가 많다.
④ '협의 없음'을 받아야 할 소년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관리대상자 인원이 늘고 있다.
⑤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한 소년의 불성실로 기소유예 취소를 요청하기가 어렵다.
⑥ 심리치료, 멘토링, 인성교화 등 다양한 형태들의 조건들이 난무하고 있다.
⑦ 조건부 기소유예자의 재범 여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없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⑧ 비전문기관 혹은 처분 목적에 맞지 않은 기관에 의뢰하여 제도 및 처분의 실효성이 낮다.
⑨ 기타(_____)

26. 귀하는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만 선택해 주세요.

① 명예 혹은 공명성의 목적으로 위촉·활동하는 위원들이 무성의하고 형식적으로 활동한다.
②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다보니 법사랑위원의 봉사 지속 시간이 짧다.
③ 법사랑위원 선발에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 다른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보다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⑤ 법사랑위원의 형식적인 지위가 없어 선도의 구속력이 약하다.
⑥ 대상자를 법사랑위원으로 연계할 때 연계 기준이 모호하다.
⑦ 법사랑위원회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 위원들이 교통비조차 지원받지 못한다.
⑧ 불규칙한 상담 혹은 교육 의뢰로 상담/교육 스케줄을 계획하기가 어렵다.
⑨ 기타(_____)

27. 법사랑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만 선택해 주세요.

① 지인의 추천방식이 아니라 공개 모집 방식으로 전환한다.
②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다.
③ 위촉 시 자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④ 위촉 시 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④ 활동 후 보수교육 및 지도감독(수퍼비전)을 강화한다.
⑤ 선발 조건 기준을 마련하고 강화한다.
⑥ 법사랑위원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공식 기구를 창설한다.
⑧ 기타(_____)

28. 기소유예 유형별 축소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표 해 주세요.

		현행대로 **유지**한다	현행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현행보다 **축소**되어야 한다
단순 기소유예제도		①	②	③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①	②	③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①	②	③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①	②	③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①	②	③
	기타 (상담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①	②	③

28-1.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확대 또는 축소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29.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만 선택해 주세요.

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립한다.
②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전 조사 제도'를 활성화한다.
③ 법사랑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④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에 대한 각종 기록들을 공유한다.
⑤ 교육조건부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합하여 소년범 관리를 일원화한다.
⑥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을 다양화(예, 고용노동부와 연계, 지역사회 특성 활용 등)한다.
⑥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별 재범 현황을 파악하여 본 제도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한다.
⑦ 정부 예산을 들여 상담치료, 미술치료 분야 등 민간전문가 위촉을 확대한다.
⑧ 선도조건부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병합하여 처분한다.
⑨ 기소유예대상자 관리 기관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의 전문기관으로 확대한다.
⑩ 대상자 부모에게 부모교육(부모상담)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종사자 설문지

ID | | | | | |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실무자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초기 비행청소년의 재범 방지에 미치는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도를 시행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운영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8. 08.

A. 인적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고졸 이하 ② 초대졸 ③ 대졸 ④ 석사학위 ⑤ 박사학위 이상

4. 귀하의 최종 학력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사회복지(사업) ② 심리학 ③ 교육학 ④ 법학
   ⑤ 경영학 ⑥ 교정학 ⑦ 범죄학 ⑧ 기타(_____)

5. 귀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 하세요.
   ① 사회복지사 ② 청소년상담사 ③ 상담심리사 ④ 범죄심리사
   ⑤ 청소년지도사 ⑥ 기타(_____) ⑦ 해당사항 없음

6. 귀하가 보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총 기간은 얼마입니까? ___년 ___개월

B. 조건부 기소유예 관련 업무 현황

7. 귀하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 총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①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②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1년 미만 ④ 1년 이상~ 2년 미만
   ⑤ 2년 이상 ~ 3년 미만 ⑥ 3년 이상

8. 귀하의 업무 중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교육 및 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 이내 ② 11~20% ③ 21~30% ④ 31~40%
⑤ 40~51% ⑥ 51~60% ⑦ 61~70% ⑧ 71% 이상

9. 귀하가 **회차마다** 담당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는 평균 몇 명입니까?

( ) 명

10. 귀하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별로 직접 교육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시간 ~ 5시간 ③ 5시간 ~ 10시간
④ 10시간 ~ 15시간 ⑤ 15시간 이상 ⑥ 해당사항 없음

11. 귀하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와 개인 상담을 평균적으로 몇 번 합니까?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⑥ 해당사항 없음

12. 귀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교육할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 하세요.

① 반갑다
② 뭔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에 뿌듯하다
③ 어색하다
④ 아무 느낌이 없다
⑤ 강제적인 만남인 것 같아 불편하다
⑥ 대상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짜증난다
⑦ 잘 모르겠다
⑧ 기타 (_____)

13. 귀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게 주로 어떤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 하세요.

① 물질적 후원(학비, 생활비 지원)
② 진로 및 진학지도
③ 취업 알선
④ 규칙적인 생활 관리
⑤ 사회재적응 다짐
⑥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연결
⑦ 가족관계 회복
⑧ 인정과 격려
⑨ 자신감 회복
⑩ 또래 등 대인관계 개선
⑪ 법의식 향상
⑫ 기타(_____)

1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관리하는 동안 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 하세요.

① 경제적 자립 ② 학업 유지(복교 및 진학)
③ 규칙적인 생활 태도 ④ 비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⑤ 미래에 대한 꿈이나 목표 ⑥ 가족관계 회복
⑦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 ⑧ 비행친구와의 단절
⑨ 자기조절능력(예, 분노조절, 충동성 조절 등) ⑩ 진로탐색 및 취업 준비
⑪ 기타(_____)

15. 귀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거의 만족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많이 만족한다

1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는 귀하가 제공하는 교육 및 상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참여한다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C.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성과

17. 귀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근거, 취지, 목적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보통이다	대체로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8. 귀하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① **다이버전 프로그램**으로 공식사법절차를 최소화하여 소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② **중간제재** 프로그램으로 시설내 처우 이전에 보다 엄격한 환경에서 개입하는 것이다.

③ **이차적 범죄예방**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보호요인을 확장하는 것이다.

④ 기타(_____)

19.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9-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비행 청소년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19-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비행 소년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20. 귀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해당 대상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보통 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규칙적인 생활 태도 습득	①	②	③	④	⑤
2. 타인과의 관계형성 방법 터득	①	②	③	④	⑤
3. 자기조절 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4. 가족관계 회복	①	②	③	④	⑤
5. 학업 복귀 및 진학	①	②	③	④	⑤
6. 진로탐색 및 취업	①	②	③	④	⑤
7. 경제적 자립	①	②	③	④	⑤
8. 비행친구와의 단절	①	②	③	④	⑤

21. 귀하가 담당하였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중에서 기소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1~10% ③ 11~20%
④ 21~30% ⑤ 31~40% ⑥ 41~50%
⑦ 51% 이상 ⑧ 모르겠다

2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보호처분(1호~10호 처분) 대상자와 비교해볼 때, 기소유예 대상자의 비행 재범위험성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23. 귀하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관리할 때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3개**만 선택해 주세요.

① 대상자의 교육 동기가 낮고 태도가 불성실하여 교육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② 비행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적절한 개입을 하기 어렵다.
③ 대상자의 잦은 재범으로 상담 의욕이 상실된다.
④ 초기 비행 청소년을 다루는 스킬이 부족하여 적절한 개입을 하기 어렵다.
⑤ 다른 업무 과중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관리에 집중할 수 없다
⑥ 비행 정도가 심각한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다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⑦ 대상자 관련 정보(사건기록 및 환경조사서 등)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지 못하여 재조사할 것이 많다.
⑧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다.
⑨ 기타(_____)

24. 귀하는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만 선택해 주세요.
①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명확한 처분 규정이 없어 검사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
② 대상자를 선도조건부 혹은 교육조건부 등으로 처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③ 보호처분을 받아야 할 대상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기간 중에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다.
④ '협의 없음'을 받아야 할 소년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관리대상자 인원이 늘고 있다.
⑤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한 소년의 불성실로 기소유예 취소를 요청하기가 어렵다.
⑥ 심리치료, 멘토링, 인성교화 등 다양한 형태들의 조건들이 난무하고 있다.
⑦ 조건부 기소유예자의 재범 여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없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⑧ 비전문기관 혹은 처분 목적에 맞지 않은 기관에 의뢰하여 제도 및 처분의 실효성이 낮다.
⑨ 기타(_____)

25. 귀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만 선택해 주세요.
① 교육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② 소년의 비행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다(일부 비행에 대한 프로그램만 개발되어 있다)
③ 전국 16곳만 설치되다보니 물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진다.
④ 검찰에서 의뢰하는 인원이 규칙적이지 않아 기소유예자 특별반을 개설하기가

어렵다.

⑤ 집중교육이 종료되면 대상자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

⑥ 교육대상자의 재범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본 제도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⑦ 재학생의 경우 교육기간을 '방학 기간' 으로 요청하여 즉시적인 개입이 어렵다.

⑧ 기타(_____)

26. 기소유예 유형별 축소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표 해 주세요.

		현행대로 **유지**한다	현행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현행보다 **축소**되어야 한다
단순 기소유예제도		①	②	③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①	②	③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①	②	③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①	②	③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①	②	③
	기타 (상담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①	②	③

26-1.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확대** 또는 **축소**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27.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만 선택해 주세요.

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립한다.

②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전 조사 제도'를 활성화한다.

③ 법사랑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④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에 대한 각종 기록들을 공유한다.
⑤ 교육조건부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합하여 소년범 관리를 일원화한다.
⑥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을 다양화(예, 고용노동부와 연계, 지역사회 특성 활용 등)한다.
⑥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별 재범 현황을 파악하여 본 제도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한다.
⑦ 정부 예산을 들여 상담치료, 미술치료 분야 등 민간전문가 위촉을 확대한다.
⑧ 선도조건부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병합하여 처분한다.
⑨ 기소유예대상자 관리 기관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의 전문기관으로 확대한다.
⑩ 대상자 부모에게 부모교육(부모상담)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5]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종사자 설문지

ID | | | | | |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
기소유예제도 실무자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초기 비행청소년의 재범 방지에 미치는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도를 시행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운영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8. 08.

A. 인적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고졸 이하 ② 초대졸 ③ 대졸 ④ 석사학위 ⑤ 박사학위 이상

4. 귀하의 최종 학력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사회복지(사업) ② 심리학 ③ 교육학 ④ 법학
⑤ 경영학 ⑥ 교정학 ⑦ 범죄학 ⑧ 기타(_____)

5. 귀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무엇입니가?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 하세요.
① 사회복지사 ② 청소년상담사 ③ 상담심리사
④ 범죄심리사 ⑤ 청소년지도사 ⑥ 기타(_____)
⑦ 해당사항 없음

6. 귀하가 보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총기간은 얼마나 됩니까?____년 ___개월

B. 조건부 기소유예 관련 업무 현황

7. 귀하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 총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①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②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1년 미만 ④ 1년 이상~ 2년 미만
⑤ 2년 이상 ~ 3년 미만 ⑥ 3년 이상

8. 귀하의 업무 중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 이내 ② 11~20% ③ 21~30% ④ 31~40%
⑤ 40~51% ⑥ 51~60% ⑦ 61~70% ⑧ 71% 이상

9. 귀하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 ) 명

10. 귀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와 얼마나 자주 연락합니까?

① 1주에 한 번 ② 2주에 한 번 ③ 1개월에 한 번
④ 2개월에 한 번 ⑤ 전혀 하지 않음 ⑥ 기타(_____)

11. 귀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① 1주에 한 번 ② 2주에 한 번 ③ 1개월에 한 번
④ 2개월에 한 번 ⑤ 전혀 하지 않음 ⑥ 기타(_____)

12. 귀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만날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 하세요.

① 반갑다
② 뭔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에 뿌듯하다
③ 어색하다
④ 아무 느낌이 없다
⑤ 강제적인 만남인 것 같아 불편하다
⑥ 대상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짜증난다
⑦ 잘 모르겠다
⑧ 기타 (_____)

13. 귀하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를 만났을 때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 하세요.

① 개인면담
② 전문심리치료
③ 집단상담(미술치료,원예치료 등)
④ 문화체험(영화감상 등)
⑤ 신체 활동(운동 등)
⑥ 식사
⑦ 부모면담
⑧ 기타(_____)

14. 귀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게 주로 어떤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 하세요.

① 물질적 후원(학비, 생활비 지원) ② 진로 및 진학지도
③ 취업 알선 ④ 규칙적인 생활 관리
⑤ 사회재적응 다짐 ⑥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연결
⑦ 가족관계 회복 ⑧ 인정과 격려
⑨ 자신감 회복 ⑩ 또래 등 대인관계 개선
⑪ 법의식 향상 ⑫ 기타(_____)

15. 귀하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관리하는 동안 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 하세요.

① 경제적 자립 ② 학업 유지(복교 및 진학)
③ 규칙적인 생활 태도 ④ 비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⑤ 미래에 대한 꿈이나 목표 ⑥ 가족관계 회복
⑦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 ⑧ 비행친구와의 단절
⑨ 자기조절능력(예, 분노조절, 충동성 조절 등) ⑩ 진로탐색 및 취업 준비
⑪ 기타(_____)

16. 귀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와의 만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거의 만족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많이 만족한다

17. 귀하가 만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는 귀하와의 만남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참여한다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C.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성과

18. 귀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근거, 취지, 목적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19. 귀하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다이버전 프로그램**으로 공식사법절차를 최소화하여 소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② **중간제재** 프로그램으로 시설내 처우 이전에 보다 엄격한 환경에서 개입하는 것이다.

③ **이차적 범죄예방**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보호요인을 확장하는 것이다.

④ 기타(_____)

20. 귀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해당 대상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보통 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규칙적인 생활 태도 습득	①	②	③	④	⑤
2. 타인과의 관계형성 방법 터득	①	②	③	④	⑤
3. 자기조절 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4. 가족관계 회복	①	②	③	④	⑤
5. 학업 복귀 및 진학	①	②	③	④	⑤
6. 진로탐색 및 취업	①	②	③	④	⑤
7. 경제적 자립	①	②	③	④	⑤
8. 비행친구와의 단절	①	②	③	④	⑤

2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비행 청소년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21-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비행 소년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22. 귀하가 담당하였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중에서 기소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1~10% ③ 11~20%
④ 21~30% ⑤ 31~40% ⑥ 41~50%
⑦ 51% 이상 ⑧ 모르겠다

2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보호처분(1호~10호 처분) 대상자와 비교해볼 때, 기소유예 대상자의 비행 재범위험성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24. 귀하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관리할 때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3개만 선택해 주세요.
① 대상자의 상담 동기가 낮고 상담 태도가 불성실하여 상담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② 비행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적절한 개입을 하기 어렵다.
③ 대상자의 잦은 재범으로 상담 의욕이 상실된다.
④ 초기 비행 청소년을 다루는 스킬이 부족하여 적절한 개입을 하기 어렵다.
⑤ 다른 업무 과중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관리에 집중할 수 없다.
⑥ 비행 정도가 심각한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다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⑦ 대상자 관련 정보(사건기록 및 환경조사서 등)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지 못하여 재조사할 것이 많다.
⑧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다.
⑨ 기타(_____)

25. 귀하는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만 선택해 주세요.
①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명확한 처분 규정이 없어 검사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
② 대상자를 선도조건부 혹은 교육조건부 등으로 처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③ 보호처분을 받아야 할 대상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기간 중에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다.
④ '협의 없음'을 받아야 할 소년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관리대상자 인원이 늘고 있다.
⑤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한 소년의 불성실로 기소유예 취소를 요청하기가 어렵다.
⑥ 심리치료, 멘토링, 인성교화 등 다양한 형태들의 조건들이 난무하고 있다.
⑦ 조건부 기소유예자의 재범 여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없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⑧ 비전문기관 혹은 처분 목적에 맞지 않은 기관에 의뢰하여 제도 및 처분의 실효성이 낮다.
⑨ 기타(_____)

26. 기소유예 유형별 축소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표 해 주세요.

		현행대로 **유지**한다	현행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현행보다 **축소**되어야 한다
단순 기소유예제도		①	②	③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①	②	③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①	②	③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①	②	③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①	②	③
	기타 (상담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①	②	③

26-1.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확대 또는 축소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27.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만 선택해 주세요.

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립한다.

②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전 조사 제도'를 활성화한다.

③ 법사랑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④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에 대한 각종 기록들을 공유한다.

⑤ 교육조건부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합하여 소년범 관리를 일원화한다.

⑥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을 다양화(예, 고용노동부와 연계, 지역사회 특성 활용 등)한다.

⑥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별 재범 현황을 파악하여 본 제도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한다.

⑦ 정부 예산을 들여 상담치료, 미술치료 분야 등 민간전문가 위촉을 확대한다.

⑧ 선도조건부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병합하여 처분한다.

⑨ 기소유예대상자 관리 기관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의 전문 기관으로 확대한다.

⑩ 대상자 부모에게 부모교육(부모상담)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6] 제1차 관련전문가 의견조사지

ID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내실화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1차)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전문가 의견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형사정책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2018년도 연구과제인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지는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별·유형별 적절한 대책 수립을 위해 학계, 실무계, 관련부처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조사(1차 조사:10월 30일~11월 4일(개방형 질문)/ 2차 조사:11월 6일~11월 9일(선택형 질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지에 대한 의견은 **11월 4일(토요일)**까지 이승현 연구위원(02-3460-5193, saldana@kic.re.kr)에게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전적으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8. 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Ⅰ.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질문1】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도입 당시 어떠한 의미로 도입된 제도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도 기술해 주세요.

예) 다이버전, 회복적 사법, 중간제재, 2차적 범죄예방대책 등.

【질문2】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당시와 현재를 비교할 때 동일한 의미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이유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질문3】 소년범에게 실시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성인범에게 실시되고 있는 기소유예와 어떠한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4】 단순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떠한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Ⅱ. 조건부 기소유예의 유형

【질문5】 현재 「소년법」 제49조의3과 대검찰청 「소년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는 크게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유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절하다 or 적절하지 않다
이유:

【질문6】 대검예규 「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아래와 같은 자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해당 대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제외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대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실질적 보호자가 없어 경제적·정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
   (조손가정, 편부·편모 가정, 다문화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2. 입시생으로 수업결손을 피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3. 경제적 생계곤란 또는 결손가정으로 인한 범죄로서 장기적인 후원과 인성교육이 필요한 경우

〈추가 또는 제외대상〉

【질문7】 대검예규 「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청소년비행예방 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특별히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중점적으로 실시되어여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8】 대검예규 「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4조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아래와 같은 자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해당 대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제외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대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계획적·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소년이 이미 대안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거나 대안교육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3. 일정기간 체계적인 선도·교화가 필요한 경우
4. 단순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나 재범가능성이 높은 경우

〈추가 또는 제외대상〉

【질문9】 위의 세가지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은 다음과 같은 기간과 방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과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구분	기간과 방법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6개월 또는 1년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3일 또는 5일 대안교육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6개월 또는 1년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질문10】 위에 열거된 세가지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외에 추가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소유예 유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함께 기재해 주세요.

Ⅲ.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

【질문11】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열거해주세요.

예) 연령, 범죄경력, 학생신분, 가출경험, 재범가능성,
보호자의 보호력 등

【질문12】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보호관찰소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보호필요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결정전 조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정전 조사제도의 운영이 검사의 처분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참고자료일뿐, 결정전조사서의 어떤 영역이 주요 판단기준이 되고 있음 등

【질문13】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결정전 조사에서 중요시 되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 조사관 조사, 경찰단계 조사와의 차별성)

【질문14】 조건부 기소유예 단계에서 해당소년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기소유예단계에서도 보호자교육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15】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에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야 하나, 소년의 교화 및 선도를 고려하여 재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재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16】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및 집행과정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상소년의 참여의식 부재, 보호자의 요구, 결정전조사 지연 등

【질문17】 현재 실시되는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확대 또는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확대 ②축소 ③현행 유지

〈이유〉

Ⅳ.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질문18】 현행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19】 다음 각각의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영역	문제점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o
	o
	o
	o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o
	o
	o
	o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o
	o
	o
	o

【질문20】 현행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1】 현행 결정전 조사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2】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적절하게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3】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4】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상소년에게 어떠한 지원이 부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생활비 등 물질적 지원, 진로·진학지도,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연계 등

【질문25】 조건부 기소유예를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6】 조건부 기소유예 사안처리절차에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7】 소년전담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8】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사후관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특성〉	
소속 및 직위	
성별	
연령 (만)	
소년관련 근무경력(년)	1) 경력 : 년
	2) (소년전담검사만 응답) 전체 업무 중 소년사건의 비율

♣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7] 제2차 관련전문가 의견조사지

ID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내실화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2차)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전문가 의견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형사정책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2018년도 연구과제인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지는 현행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별·유형별 적절한 대책 수립을 위해 학계, 실무계, 관련부처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조사(1차 조사:10월 31일~11월 4일(개방형 질문)/ 2차 조사:11월 6일~11월 9일(선택형 질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지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금요일)**까지 이승현 연구위원(02-3460-5193, saldana@kic.re.kr)에게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전적으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8. 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ART 1.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1. 귀하께서는 **현재**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어떠한 **법적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입형) 다이버전
② 2차적 재범방지대책
③ 중간제재
④ 소년범에 대한 제재수단
⑤ 회복적 사법

2. 귀하께서는 **성인범의 조건부 기소유예와 달리**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낙인의 부작용을 줄이고 조기개입으로 재사회화
② 관련기관의 적극적 개입
③ 개선가능성이 있는 소년의 특성 고려
④ 개인 및 환경적 위험요인에 의한 재비행 예방 목적 선도교육
⑤ 죄질의 경중보다 반성하는 태도 및 부모의 보호력을 종합 판단
⑥ 원칙적 조건 부과 형태

3. 귀하께서는 **단순 기소유예와 달리**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상소년에게 조건(부담) 부과
② 교육과 상담을 통해 소년범 처우 확장
③ 보다 비행성이 진전된 대상에게 적용
④ 대상자에 대한 선도교육이 전제
⑤ 비행사실보다 재범방지에 중

PART 2.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의 유형

1. 아래에 열거된 사항 중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으로 적합한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_ , 2순위: _____ , 3순위:_____ , 4순위: _____)

   ① 실질적 보호자가 없어 경제적·정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
   ② 입시생으로 수업결손을 피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경제적 생계곤란 또는 결손가정범죄로 장기 후원과 인성교육이 필요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피해가능성이 있는 경우
   ⑤ 과거 본인 또는 가족이 범죄피해(학교폭력 등) 경험이 있는 경우
   ⑥ 학업의 도움 및 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
   ⑦ 집단교육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⑧ 처벌전력이 없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⑨ 열악한 가정환경 등으로 재비행 예방을 위해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소년 중 관련 기관장이 추천(또는 지정)하는 소년

2. 아래에 열거된 사항 중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으로 적합한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_ , 2순위: _____ , 3순위:_____ , 4순위: _____)

   ① 계획적·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초범이지만 계획적·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③ 일정기간 동안 체계적인 선도·교화가 필요한 경우
   ④ 단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나 재범가능성이 높은 경우
   ⑤ 불량교우와 다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⑥ 소년이 이미 대안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경우
   ⑦ 소년이 대안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⑧ 보호자의 생업종사,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한 경우
   ⑨ 보호처분을 부과할 경우 보호관찰이 적절한 대상이나 기소유예 할 경우

3. 아래에 열거된 사항 중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으로 적합한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_ , 2순위: _____ , 3순위:_____ , 4순위: _____)

① 입시 위주 교육에 부적응하거나 반발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이탈한 경우
② 초범이거나 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경우
③ 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④ 저연령(14세 또는 16세 미만) 소년인 경우
⑤ 비행을 저질렀으나 안정된 가정 및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⑥ 성범죄 관련 성인지 개선이 필요한 경우
⑦ 폭력 관련 분노조절 개선이 필요한 경우
⑧ 도벽 등 충동조절이 필요한 경우
⑨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회회복이 완료된 경우
⑩ 준법의식 고취나 특정범죄 예방을 위한 특화교육이 필요한 경우
⑪ 보호처분 부과할 경우 수강명령 대상이나 기소유예 할 경우
⑫ 일상생활을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⑬ 처벌전력이 없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폭력, 교통범죄, 절도, 사기범죄인 경우

4. 다음 유형 중 조건부 기소유예의 **새로운 유형**으로 적합한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1순위:_____ , 2순위: _____ , 3순위:_____ , 4순위: _____)

① 담임교사에 의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② 보호자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③ 가족캠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④ 청소년상담전문가에 의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⑤ 학교밖 지원센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⑥ 회복적 사법을 적용한 회합 조건부 기소유예(피해자 배상 포함)
⑦ 놀이와 체험 등 활동중심의 조건부 기소유예
⑧ 사회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
⑨ 질병치료 및 중독관리 조건부 기소유예
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관찰/법사랑위원 조건부 기소유예 병합

PART 3.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실태

1. 아래에 열거된 사항 중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에 있어서 판단요소**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도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_ , 2순위: _____ , 3순위:_____ , 4순위: _____)

   ① 대상소년의 자세나 의지
   ② 보호자의 보호력
   ③ 또래관계
   ④ 해당범죄의 종류와 내용
   ⑤ 가정환경(가족관계, 경제력 등)
   ⑥ 음주, 흡연 경험
   ⑦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⑧ 법을 대하는 태도
   ⑨ 범죄경력(보호처분 경험 여부)
   ⑩ 재범가능성
   ⑪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⑫ 대상소년의 연령
   ⑬ 학생 신분
   ⑭ 장래 계획
   ⑮ 불량교우와의 친밀도
   ⑯ 가출경험, 가출팸 가입 여부
   ⑰ 범행 동기
   ⑱ 이전 수사 경력(촉법, 기소유예 전력)
   ⑲ 장애 또는 정신질환 유무
   ⑳ 공범의 존재 여부

2. 귀하께서는 결정전 조사제도가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년의 개인적 특성 파악에 도움이 된다.
   ②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파악에 도움이 된다.
   ③ 소년의 반성 여부 파악에 도움이 된다.
   ④ 소년의 학교·가정 등 환경적 특성 파악에 도움이 된다.

3. 귀하께서는 결정전 조사서가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 %

4. 아래에 열거된 사항 중 **결정전 조사서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도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_ , 2순위: _____ , 3순위:_____ , 4순위: _____)

① 대상소년의 처지와 상황
②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③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④ 재범가능성
⑤ 해당범죄의 죄질
⑥ 가정환경
⑦ 이전 수사경력
⑧ 장애 또는 정신질환 유무
⑨ 연령
⑩ 학업지속 여부
⑪ 개선가능성
⑫ 교우관계
⑬ 음주, 흡연 여부
⑭ 가출경험
⑮ 보호자의 보호력
⑯ 대상소년의 평소 성행
⑰ 대상소년의 욕구
⑱ 비행에 노출된 과정

5. 다음 중 원칙적으로 조건부기소유예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재기**해야 하나,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다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 5-1로 이동) ② 필요하지 않다. (☞ Part4로 이동)

5-1.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다시 기소유예 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추가적으로 다이버전이 필요하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
②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결정한 예외사유의 경우
③ 불이행 사유에 대한 청취 이후 재량판단이 필요한 경우
④ 질병, 군입대, 해외유학 등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건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⑤ 기타 (_____)

PART 4.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1. 아래에 열거된 사항 중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_ , 2순위: _____ , 3순위:_____ , 4순위: _____)

① 검찰공무원의 다이버전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 소극적
② 대상소년의 참여의식 및 동기 부재
③ 보호자의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
④ 이전 선도교육 내용과 중복(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명령 등)
⑤ 불이행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⑥ 단순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의 기준 부재
⑦ 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부족
⑧ 보호자 교육 미실시로 인한 가정의 보호력 지속의 어려움
⑨ 재학생이라 보호자동의서 작성시 민원 발생 우려
⑩ 다양한 조건(부담) 유형 개발에 소극적
⑪ 피해회복을 위한 관점 결여로 처분의 신뢰성 및 공감도 저하
⑫ 유형별 대상자 선정기준의 불명확
⑬ 검사의 기소재량의 하나로 활용
⑭ 재범방지 효과 미약

2. 아래에 열거된 사항 중 **법사랑위원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1순위:___ , 2순위: ____ , 3순위:____ , 4순위: _____)

①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부족
② 형식적인 절차 진행(관계형성에 미흡)
③ 법사랑위원 개인간 이해와 자질 편차 발생
④ 법사랑위원의 시간 및 노력에 대한 보전 미흡
⑤ 기존 인맥관계에 의한 위촉 연장
⑥ 지역유지 등 사회적 지위 있는 자의 경력 활용도구로 전락
⑦ 법사랑위원의 체계적인 지도·감독의 어려움
⑧ 위탁운영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의 어려움
⑨ 검사에게 선도결과 피드백 부실
⑩ 자체 실시되는 상담교육의 부적절

3. 아래에 열거된 사항 중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_ , 2순위: _____ , 3순위:_____ , 4순위: _____)

① 지나치게 단기교육(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
② 기존 학교 내외 선도교육 대상 및 내용 중복
③ 교육대상에 대한 기준 미비
④ 보호처분과의 차별성 부재(실질적 제재)
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부족(접근성 떨어짐)
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전담인력 부족
⑦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 및 위상을 고려한 컨트롤타워 부재
⑧ 재학생 학기 중 교육에 대한 보호자 민원 제기
⑨ 학교의 비행사실 인지에 대한 보호자의 부정적 입장
⑩ 집단교육의 부작용(비행학습)

4. 아래에 열거된 사항 중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_ , 2순위: _____ , 3순위:_____ , 4순위: _____)

① 검찰 선도위탁대상과 법원 보호처분 대상에 대한 동일 처분
②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포화상태
③ 보호처분과 구분되지 않음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효과 우려
④ 비행심화 소년에게 노출될 가능성
⑤ 보호관찰관의 소년업무 전문성 부족
⑥ 보호관찰관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소년관리의 차질
⑦ 소년보호관찰 인력 부족
⑧ 소년범 개개인에 대한 관심 부족
⑨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

☞ **다음 장에 계속**

PART 5.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

1. 아래에 열거된 사항 중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_ , 2순위: _____ , 3순위:_____ , 4순위: _____)

①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전담검사, 전담 보호관찰제 등)
②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
③ 제도 운영 주체의 일원화
④ 개인편차 최소화를 위한 공통된 대상자 선정기준 및 목표 마련
⑤ 대상자 면담 및 결정전 조사 적극 활용
⑥ 검사의 필요성 자각 및 대상선별에 대한 관심 제고
⑦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회복적 사법 요소 가미
⑧ 대상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의무규정 신설
⑨ 검찰청별 사정에 따라 운용 가능한 기소유예프로그램 구비
⑩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2. 아래에 열거된 사항 중 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자를 적절하게 선별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_ , 2순위: _____ , 3순위:_____ , 4순위: _____)

① 소년보호에 대한 전문지식 확보
② 소년사건에 특화된 전담인력 확보
③ 초범에 대한 결정전 조사 강화
④ 결정전 조사의 의무화(경찰 비행성예측자료표 작성사건은 예외)
⑤ 결정전 조사서의 질적 수준 향상
⑥ 지침에 대상자 선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⑦ 소년 및 보호자 직접 면담 실시

3. 아래에 열거된 사항 중 **결정전 조사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_ , 2순위: _____ , 3순위:_____ , 4순위: _____)

① 충실한 결정전 조사 선행
② 검사와 보호관찰소간 정기적 논의를 통한 필요사항 협의
③ 결정전 조사의 의무화(경찰 비행성예측자료표 작성사건은 제외)
④ 전문 조사 인력 채용
⑤ 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확대
⑥ 신뢰도와 타당도 높은 조사도구 개발 및 활용
⑦ 조사도구 개발을 위한 학계와 공동연구 진행
⑧ 결정전 조사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검사대상 설명회 및 의견청취, 홍보
⑨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조사서 평가 정례화
⑩ 우수조사관에 대한 포상제도 마련
⑪ 신속한 회신을 위한 약식조사 활용
⑫ 대상소년의 성장과정에 대한 심층조사
⑬ 관계기관 조사결과 의견에 대한 구속력 부여

4. 아래에 열거된 사항 중 조건부 기소유예 관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_ , 2순위: _____ , 3순위:_____ , 4순위: _____)

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투입
③ 인력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
④ 지역사회내 전문기관 연계
⑤ 회복적 사법 이념을 반영한 프로그램 도입
⑥ 보호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⑦ 다른 조건부 기소유예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병과
⑧ 활동중심 교육프로그램 확대
⑨ 전문기관 교육 강화

5. 아래에 열거된 사항 중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_ , 2순위: _____ , 3순위:_____ , 4순위: _____)

① 대상소년의 인격과 자율성 존중
②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③ 검정고시 연계, 학습멘토 등 진학지도
④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⑤ 희망직업분야 탐색 및 체험 지원 등 진로지도
⑥ 주거지원
⑦ 청소년학, 심리학 등 전공 대학생 및 전문가에 의한 멘토멘티제도 활성화
⑧ 대상자 추수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
⑨ 찾아가는 소년 및 보호자 상담·심리치료 서비스
⑩ 부모교육 실시
⑪ 청소년 동반자 연계
⑫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심리적 지원

6. 아래에 열거된 사항 중 조건부 기소유예의 **다양화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_ , 2순위: _____ , 3순위:_____ , 4순위: _____)

① 선도프로그램의 충실화
② 선도역량 강화
③ 다이버전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자세
④ 지역사회의 협력과 인식 제고
⑤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연계(연계시 건당 보조금 지원)
⑥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집행기관의 운영상황 분석평가
⑦ 신규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후 확대 실시
⑧ 법사랑위원의 인적 구성 다양화

7. 아래에 열거된 사항 중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_ , 2순위: _____ , 3순위:_____ , 4순위: _____)

① 소년사건 전담부서 설치
② 소년전담검사의 충분한 확보(집중처리제)
③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부과 및 확인절차 마련
④ 법사랑위원의 자질검증 기준 및 절차 마련
⑤ 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과 법사랑위원/보호관찰관 선도 병합처분
⑥ 재학생 학습권을 이유로 한 보호자 동의 거부에 대한 법률적 고려
⑦ 소년 및 보호자 면담 및 실무를 위한 수사관 및 조사관 전문성 강화
⑧ 결정전 조사제도의 적극적 활용

8. 아래에 열거된 사항 중 **소년전담검사의 전문성 강화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_ , 2순위: _____ , 3순위:_____ , 4순위: _____)

① 소년전담검사 양성
② 소년사건 전담시간의 충분한 확보: 근무기간 연장 및 지속성 보장
③ 소년전담검사에 대한 적정한 보수교육과 연수기회 제공
④ 인사관리의 필요성(일정지역 1년 이상 장기전담)
⑤ 결정전 조사의 적극적 활용
⑥ 지청별 소년전담검사 배치
⑦ 소년비행 관련기관 접촉 확대
⑧ 소년의 생활환경 및 비행환경에 대한 이해

9. 아래에 열거된 사항 중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사후관리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서대로** 순위 칸에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_____ , 2순위: _____ , 3순위:_____ , 4순위: _____)

① 검찰과 민간기관의 지속적인 교류
② 시스템을 통한 대상소년의 정보 공유

③ 본인 희망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회 및 제도 마련
④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내 CYS-Net 활용 연계
⑤ 보호자 및 학교와의 연계상담
⑥ 지역사회 기반 협의체의 종합 및 정리
⑦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교육적선도 및 특별지원청소년제도와 연계

♣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총서 18-AA-05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발 행 | 2018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한 인 섭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10,000원
인 쇄 | (주)계문사 02-725-5216
I S B N | 979-11-87160-96-0 933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함.